

제21호
2024

수원학연구

Suwon Studies

우하영의 과거제 인식과 인재등용 정성희	1
수원지역 국채보상운동의 전개와 참여자 분석 이용철	29
수원 농민회관의 역사와 보존·활용 방안 이신재	61
수원시 생태교통마을 환경 만족도 분석 및 정책방향 : 거주자와 방문객 비교를 중심으로 김숙희·권남주	99
수원시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 분석 : 고용안정성, 임금, 일자리 미스매치를 중심으로 황광훈	137
수원시 미혼 청년의 결혼의향에 관한 연구 박건우	183
수원시민들의 직업 만족과 가정 만족이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 나이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문준호	215

우하영의 과거제 인식과 인재등용론

정성희*

1. 머리말
2. 근기학파의 과거제 논의
3. 우하영의 시론적 과거제 인식
4. 과천론과 인재등용론
5. 맺음말

1. 머리말

우하영(禹夏永, 1741~1812)이 살았던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초는 조선왕조의 정치 사회 질서가 모든 면에서 무너져 내리던 시기였다. 우하영은 가난하고 불우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조선 사회에 뿌리 깊게 박힌 정치 사회적 부조리를 바로잡을 실천 방안을 마련하고자 전국을 돌아다니며 견문을 넓히고 자료들을 조사, 수집하였다. 또한 몸소 농업경영을 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옛 문헌과 당대 제가(諸家)의 글들을 참고하여 국가 및 사회개혁의 방안을 강구한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농촌지식인이었다.¹

* 경기문화재단 전문위원(Professional researcher of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E-mail : bellvet@hanmail.net, Tel : 010-9268-4253

1 우하영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성과들이 있다. 정창렬, 1973, 「우하영의 千一錄」, 『實學研究入門』, 일조각; 宮嶋博史, 1977, 「李朝後期 農書の研究」, 『人文學報』 43, 京都大 人文科學研究所; 박화진, 1981, 「《千一錄》에 나타난 禹夏永의 농업기술론」, 『釜大史學』 5; 金容燮, 1986, 「《千一錄》의 農

수원 출신의 우하영은 성호(星湖) 이익(李瀼, 1681~1763)의 문하생은 아니었지만, 17세기 말 이래 근기학과(近畿學派)의 중농적인 경세치용(經世致用)의 학풍을 계승 발전시킨 인물이라 평가할 수 있다.² 그는 근기 지방 출신의 선배 학자, 예컨대 이이(李珥)·조헌(趙憲)·이수광(李睟光)·허목(許穆)·유형원(柳馨遠)·이익(李瀼) 등의 경세치용적 학문과 사상을 일정하게 계승하면서, 민본·중농적 입장에서 국토의 이용과 농업정책·농업기술·농업개혁론을 전개하였다. 그의 개혁론은 1796년(정조 20)과 1804년(순조 4) 왕의 구언교(求言教)에 응지상소(應旨上疏)의 형태로 올린 글들에 잘 나타나 있다. 1796년에 올린 <수원유생우하영경륜(水原儒生禹夏永經綸)>과 1804년에 이를 보완하여 『천일록(千一錄)』이라는 표제로 상정한 책에는 우리나라의 역사·지리·전제·군제·국방·관제·농업기술 등에 관한 그의 독창적인 견해가 실려 있다. 특히 농업기술, 농업정책 등에 관한 건의는 조선 후기 농학사에서 매우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³

우하영은 현실 상황에 맞추어 정치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른바 시의론(時宜論)을 주장하여 그 시대 다른 이들의 경세론 보다 현실주의적인 경세론을 펼쳤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삼대(三代)를 이상사회로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선의 대변화를 구상했던 근기학파의 유형원이나 이익, 정약용과는 크게 대비되는 인물이다.

業論』, 『東方學志』 50; 최홍규, 1995, 『禹夏永의 實學思想 研究』, 일지사; 엄정섭, 2000, 『우하영의 <千一錄> 편찬과 農法 정리』, 『韓國民族文化』 36; 정치영, 2003, 『<千一錄>을 통해 본 조선 후기 농업의 지역적 특성』, 『한국지역지리학회지』 9(2); 최홍규, 2000, 『취석실 우하영의 향촌사회발전론-정조대 향촌지식인의 對華城觀』, 『한국실학연구』 2; 김혁, 2013, 『우하영의 지리적 사유와 그 문화적 위치-팔도론과 풍토론 사이-』, 『규장각』 43; 김혁, 2014, 『실학자 우하영의 정치경제학과 향약설』, 『역사와 실학』 55; 정호훈, 2014, 『우하영의 학문과 『천일록』의 사상적 위상-17, 18세기 경세학의 흐름을 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 48; 박종훈, 2014, 『우하영의 『천일록』 편찬 의도와 특징 일고-관방(關防)과 잡록(雜錄)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53; 김정녀, 2016, 『千一錄』의 人物傳을 통해 본 우하영의 教化論』, 『한민족문화연구』 56 등이 있다.

2 우하영의 본관은 단양으로 수원부 호매절(好梅折) 어량천면(於良川面) 외촌에서 출생하였다. 자(字)가 대유(大猷) 호(號)는 취석실(醉石室)이며, 성석당(醒石堂)이라고도 한다. 『천일록』에는 근기 지방 출신의 학자나 정치가들의 시무론이 자주 소개되어 있으며 근기학파 실학자들의 특성을 생생하게 대면하고 있음이 발견된다(최홍규, 1995, 『禹夏永의 實學思想 研究』, 일지사, 16쪽).

3 향촌에 접거한 우하영은 30여 년에 걸친 노작 『천일록』 11권을 집필하면서 재야의 학자이자 농촌지식인으로 평생을 보냈다. 그중에서도 농학과 농정, 농민과 농촌 문제에 대한 탁월하고 각별한 인식은 『천일록』 속에 『농가총람(農家摠覽)』, 『전제(田制)』, 『관수만록(觀水漫錄)』, 『어초문답(漁樵問答)』 등과 『수원유생우하영경륜(水原儒生禹夏永經綸)』 등의 저술 속에 집중적으로 드러나 있다(최홍규, 1995, 『禹夏永의 實學思想 研究』, 일지사).

그는 역사상 이상적인 정치·제도로 알려진 옛 제도를 그대로 현실에 옮겨오거나 구현하려는 데 회의적이었으며, 현실의 풍속과 관습에 맞추어 정치를 해야 한다는 태도를 견지하였다.⁴ “풍속에 따라 백성들을 교화해야 한다.”거나 “현재의 제도를 따르면서 폐단을 고치는 방안을 내야 한다.”⁵고 한 언급은 그의 시의적 경세론의 일단을 보여 준다. 즉, 국가체제의 근본적인 개혁보다는 기존의 질서가 흐트러지고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고 보수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현실 풍속에 맞추어 정치 사회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시의적 경세론은 특히 과거제(科擧制) 문제와 인재등용안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맥락 위에서 2장에서 근기학파인 유형원, 이익, 정약용의 경세론적 과거제 논의를 개관해 보고 3장에서는 우하영이 인식한 과거제 폐단을 살펴보고자 한다. 4장에서는 우하영의 과거제 개혁안인 과천제(科薦制)와 인재등용 방안을 시의적 경세론의 입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2. 근기학파의 과거제 논의

조선 후기에는 이른바 근기학파를 비롯하여 관직과 거리를 둔 인물들을 중심으로 국가·사회의 개혁과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그 결과를 담은 경세서들이 많이 편찬되었다. 그 가운데서도 유형원의 『반계수록(磻溪隨錄)』, 이익의 『곽우록(藿憂錄)』, 유수원(柳壽垣)의 『우서(迂書)』, 정상기(鄭尙驥)의 『농포문답(農圃問答)』, 우정규(禹禎圭)의 『경제야언(經濟野言)』, 박제가(朴齊家)의 『북학의(北學

4 정호훈, 2014, 『우하영의 학문과 『천일록』의 사상적 위상-17, 18세기 경세학의 흐름을 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 48, 32쪽.

5 근기학파 혹은 근기실학은 근기지역 남인계열 즉 성호 이익을 중심으로 한 학파를 지칭한다. 만약 근기를 경기지역 전체를 가리면, 파주를 세거지로 한 소론계열의 달성서씨 서명응·서호수·서유구나 의정부 지역에 근거한 박세당도 포함되게 된다(윤재환, 2008, 『近畿南人 學統의 展開와 星湖學의 形成』, 『은지논총』 36, 은지학회). 그 외 근기실학에 대한 연구로는 박석무, 2001, 『근기실학의 연원탐색과 그 현대적 의의』, 『다산학』 2, 다산학술문화재단; 임형택, 2014, 『退溪學의 계승양상과 실학』, 『퇴계학과 근기실학』, 경인문화사; 김형찬, 2014, 『근기실학의 학문 연원과 퇴계학의 학문 정신 - 이익과 정약용의 퇴계학 계승을 중심으로』, 『국학연구』 21; 조성을, 2014, 『근기학의 퇴계학 수용과 실학』, 『퇴계학과 근기실학』, 경인문화사; 정성희, 2017, 『근기실학과 반계 유형원』, 『은지논총』 50 등이 있다.

議)』, 홍대용(洪大容)의 『임하경륜(林下經綸)』, 정약용(丁若鏞)의 『경세유표(經世遺表)』를 비롯하여 본고에서 살펴볼 우하영의 『천일록(千一錄)』 등이 대표적인 경세서이다.

경세론을 펼친 이들은 학문·정치적으로 북인계에 연결되는 서울 경기지역의 남인과 노론, 소론계 등 다양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남인들은 근기학과를 형성하면서 상호 계승과 지양의 노력이 뚜렷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근기학과는 근기 지역을 중심으로 성호학파가 주축을 이뤄 성립된 새로운 학문 경향이다.⁶ 성호학파를 개창한 성호 이익은 퇴계학을 계승한 성리학자이지만, 미수(眉叟) 허목(許穆, 1595~1682)과 반계 유형원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아 새로운 학문체계를 이루었다. 허목이 퇴계 이황과 한강(寒岡) 정구(鄭逵, 1543~1620)의 학문을 이어 근기 지역 학술의 발판을 개척했다면, 허목의 영향을 받아 실학이라는 학문의 토대를 마련했던 학자는 반계 유형원이었다. 다시 말해 허목과 연결되어 있던 반계 유형원의 실학사상이 성호 이익을 통해 이어졌고, 그것이 다시 성호 제자들을 통해 경기도 일대에 퍼져 남인계를 중심으로 한 근기학과(近畿學派)를 형성하였다.⁷

근기학과들의 경세론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경세서는 유형원의 『반계수록』이다. 유형원은 “나쁜 제도가 나쁘게 된 것은 그 원인이 몇 천 년 전에 생기고 쌓인 것으로서 착오에 착오를 거듭하여 낡은 규정이 되었으며 그것이 서로 엉켜서 마치 흐트러진 실과도 같게 되었다. 그 원인을 구명하여 혼란하게 된 것을 제거하지 않고는 그것을 바로잡을 수가 없다.”⁸고 하여 제도개혁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조선 후기 경세론의 핵심은 토지제도의 개혁에 있지만, 국가 개혁에서 토지제

6 근기학파 혹은 근기실학은 근기지역 남인계열 즉 성호 이익을 중심으로 한 학파를 지칭한다. 만약 근기를 경기지역 전체를 가리면, 파주를 세거지로 한 소론계열의 달성서씨 서명응·서호수·서유구나 의정부 지역에 근거한 박세당도 포함되게 된다(윤재환, 2008, 「近畿南人 學統의 展開와 星湖學의 形成」, 『은지논총』 36, 은지학회). 그 외 근기실학에 대한 연구로는 박석무, 2001, 「근기실학의 연원탐색과 그 현대적 의의」, 『다산학』 2, 다산학술문화재단; 임형택, 2014, 「退溪學의 계승양상과 실학」, 『퇴계학과 근기실학』, 경인문화사; 김형찬, 2014, 「근기실학의 학문 연원과 퇴계학의 학문 정신 - 이익과 정약용의 퇴계학 계승을 중심으로」, 『국학연구』 21; 조성을, 2014, 「근기학의 퇴계학 수용과 실학」, 『퇴계학과 근기실학』, 경인문화사; 정성희, 2017, 「근기실학과 반계 유형원」, 『은지논총』 50 등이 있다.

7 박석무, 2001, 「근기실학의 연원탐색과 그 현대적 의의」, 『다산학』 2, 다산학술문화재단, 162쪽.

8 柳馨遠, 『礪溪隱錄』, 「書隱錄後」. “顧弊之爲弊也 其積漸數百千年 以謬襲謬 仍成舊規 膠錯相因 有如亂絲 不究其本而祛其弊 無以救正.”

도 다음으로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것이 과거제 폐단이었다. 500여 년간에 걸쳐 그 효율성을 발휘하였던 조선시대 통치체제의 핵심은 관료제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유교적 이상에 기초한 문치주의 이념과 능력을 중심으로 관료를 선발하는 과거제(科擧制)를 주요 기반으로 하여 구축되었다. 이 때문에 과거제는 여러 가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확고한 체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가지고 있었다. 다만, 조선시대 과거는 입신양명(立身揚名)의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사회 변동에 따른 변화와 폐단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 16세기 이후 과거제가 더 이상 인재를 뽑아내지 못하는 유명무실의 인재등용책이라는 인식 아래 이를 대치할 만한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천거제(薦擧制)였지만, 과거제라는 공적(公的) 선발제도를 대체할 수는 없었다.

16세기 이후 향촌에 은거하며 학문을 업으로 삼던 이른바 처사형(處士型)의 학자들은 관료진출의 길이었던 과거제도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이들은 당시 과거제도가 학자들을 시험 그 자체에만 매몰되게 함으로써 학문 연구보다는 문장의 기교나 과문(科文)에 맞는 문장만 학습하는 경향만 커지게 한다고 비판했다.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옳은 인재를 발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 방법이 오로지 과거에만 맡겨져 있다 보니 과유(科儒)들은 자신의 재능을 자랑하여 요행히 유사(有司)에게 뽑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보았다.⁹

조선 후기 과거제 부정론의 바탕에는 시험장의 부정행위만 근절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시험만을 바탕으로 인재를 선발하는 과거 자체를 부정한 것이었다. 과거제가 관료로 나가는 인재를 제대로 선발하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인식은 처사적인 삶을 지향한 지식인들의 처세와 관련이 깊다. 남인계 학자 중에 과폐(科弊) 개혁에 포문을 연 이는 백호(白湖) 윤훤(尹鑣, 1617~1680)였다. 그는 천하의 법 중에서 가장 심한 것이 과폐라고 진단하였다. “과거의 폐습은 백성들의 삶을 해치고 사람의 마음을 고혹하고 사람의 행실을 그르치는 데 있어 양주(楊朱)·묵적(墨翟)의 해보다 더 심하고 홍수와 맹수의 재앙보다 더 혹심한 것이다.”¹⁰고 할 정도로 과거제에 비판적이었다.

9 李瀾, 『星湖全集』 卷44, 「雜著」 貢擧私議. “自唐以來專付科擧 迄于今不變 科擧者使士自衒 嚮 徼 行於有司 所業不過乎記誦詞章之末.”

10 尹鑣, 『白湖全書』 卷27, 「雜著」 漫筆 中.

과거제 폐지에 대한 인식은 윤희에 이어 반계 유형원으로 이어진다. 유형원은 “선비를 취하는 것은 장차 인재를 얻어서 나라를 다스리려 함이니 경사(慶事)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라 하여 국가의 인재 등용이 국가의 경사에 맞추어 행사처럼 시행되는 것을 옳지 않게 보았다. 17세기 거자수(擧子數)의 급증과 그에 따른 과폐에 대해 유형원은 과거제의 전면 폐지를 주장하며 그 대안으로 공거제(貢舉制)의 실시를 제안했다.¹¹ 공거제는 단순한 천거제가 아닌 학교제와 연계한 선거제(選舉制)로서 과거가 출세의 도구가 되고 있음을 비판하고 선비로서 학문에 뜻을 두어도 오직 옛 문구만 모으는 것에만 치중하는 현실 인식에서 나온 것이다.¹²

과거제를 전면 폐지하고 학교제와 연계한 공거제로 대체해야 한다는 유형원과 달리 성호 이익은 과거제와 천거제의 장점을 취한 ‘과천합일(科薦合一)’을 주장했다. 이익은 당대의 과거 폐단은 기본적으로 잦은 비정기과거와 유생과시의 실시에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응시자들이 공부에 열심이지 않았는데 계속 시험이 실시되니 요행을 바라고 부정행위가 난무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익은 응시자들의 유학적인 소양이 성숙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문무과 모두 5년대비법(五年大比法)을 제시했다. 이것은 4년 동안은 경서(經書)시험을 치르고 5년째에 치도(治道)를 책문(策問)하는 대책(對策)으로 인재를 선발하는 방법이다.¹³ 5년대비법을 바탕으로 한 이익의 과천합일론은 향거이선(鄉舉里選)의 제도를 회복하는 것이었다.

이익은 과거제에서 완벽한 제도란 없으며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달린 것이므로 결점을 잘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이익은 “과거를 보는 것은 장차 등용하려는 것인데, 합격자를 뽑아 놓고 등용하지 않는다면 과거를 보인 의도가 어디에 있겠는가?” 하여 실제 관직수보다 더 많이 선발하는 과거 합격자수를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식년(式年) 외에도 각종 별시 등으로 3년 동안에 문과(文科) 합격자가 100여 명에 이르는 것이 현실이었다.¹⁴ 부정기시험의 남설에 대해 “조정은 과거를 남설하는 것이 선비들을 위로하는 것이라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원망을 사는 길”이라 평가하였다. 결국 이를 해결하는 위해서는 적은 수를 선발하는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11 柳馨遠, 『礪溪隨錄』卷10, 「教選之制」下 貢舉事目.

12 柳馨遠, 『礪溪隨錄』卷12, 「教選攷說」下 本國選舉制附.

13 정성희, 2017, 「礪溪 經世學의 계승과 과거제 개혁론」, 『한국실학연구』 34, 398쪽

14 李瀾, 『星湖僊說』卷7, 「人事門」科薦合一.

이익이 제시한 해법은 관료로 합당한 사람을 선발하는데 시험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깔려있던 것이었다. 시험만으로는 관료에 합당한 인격이나 자질이 갖추어져 있는지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검증된 사람들을 추천받아 그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치르자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이미 중국에서는 효렴과(孝廉科)라는 이름으로 조선에서는 중종 때 현량과(賢良科)라는 이름으로 실시되었지만, 실패한 것이었다. 이익은 과거만으로 인재를 선발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면 시험 횟수를 줄이고 시부(詩賦)나 표전(表箋)과 같은 문예 과목이 아닌 경의(經義)와 시무책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계 유형원에서 성호 이익으로 이어지는 왕정론적 경세론의 전통을 계승한 다산 정약용은 삼대 왕정이 지난 이후의 통치법제는 폐법(弊法)을 인습해 온 것이라는 현실 인식에서 과거제를 비판하였다. 정사를 가지런하게 하기 위해서는 ‘도량형(度量衡)’ 사업이 가장 급선무이지만, 관리의 선발 또한 도량형을 공평히 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었다. 많고 적음이 서로 어그러져 좋은 말과 되가 아니면 공평하지 않고, 가볍고 무겁기를 서로 속이니 관청의 저울이 아니면 결정이 나지 않기 때문이다.¹⁵ 『경세유표』에 실려 있는 정약용의 <과거지규(科擧之規)>는 이른바 과거제의 ‘규정(規正)’이자 ‘동률도량형(同律度量衡)’의 연장으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정약용은 『목민심서』 이전(吏典) 거현조(擧賢條)에서 “군현의 장이 천거하면 천거된 자가 그 천거에 응하여 나아갔으므로 이를 과거라 한 것이다. 우리나라 과거에는 본래 과목의 분류가 없고, 또 천거하는 법도 없으니 그저 이름만 과거라고 했지, 실은 과거가 아니다.”고 했다. 천거된 자가 천거에 응하여 나가는 것이 과거의 본령이지 추천도 없이 자신 마음대로 시험장에 나가는 것은 과거가 아닌 것이다. 이 때문에 정약용은 모든 과폐(科弊)의 연유가 천거 받지 못한 자가 시험 보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보았다.

정약용은 현 과거제의 폐단을 열 가지로 요약하여, “첫째가 천거하지 않아도 응시해서, 선비가 응시하는 데 정원이 없는 것이고, 둘째는 학사행정에 관원이 없고

15 陸贄, 『翰苑集』卷21, 「論朝官闕員及刺史等改轉倫序狀」. “夫多少相繆 非嘉量不平 輕重相欺 非縣衡不定.”

교수가 간여하지 않는 것이고, 셋째는 대소과(大小科)에 뽑은 인원이 달라서 공부하는 데에 전일하지 못한 것이고, 넷째는 한 가지 기예로 뽑으므로 요행으로 차지하는 것을 금하기 어려운 것이고, 다섯째는 시험 시간 너무 길어 차술(借述)의 여가가 있음이고, 여섯째는 고사, 선발이 정밀하지 못하여 사의(私意)가 멋대로 흐를 수 있고, 일곱째는 시권(試券)을 반포하지 않으니 잘함과 못함을 검증하기 어렵고, 여덟째는 잡시(雜試)가 너무 잦아서 수업할 날짜가 없음이고, 아홉째는 경과(慶科)가 연달아서 요행을 넘보는 문이 열려 있는 것이고, 열째는 명경(明經)을 주로 했으나 선발해서 등용함에는 길이 다른 것이다.”고 했다.¹⁶

정약용은 중서인과 천민이라도 능력이 있으면 등용하되, 귀한 이를 구별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무과 응시를 허용할 거인(擧人)을 선정하는 단계를 두고 전국단위에서 급제자를 결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직부전시와 같은 특혜를 배제하려는 일환의 하나였다. 아울러 정약용은 무과 응시자인 거자(擧子)의 경우도 일차적으로는 천거를 통하여 선정하려고 하였다. 무사의 선발도 덕행을 우선시하고 그다음으로 지략과 기예를 갖춘 사람을 선사(選士)로 선발하려 했다. 표면적으로는 능력을 우선시켰으나 문과는 물론이고 무과에서도 ‘사(士)’ 위주의 선발기준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근기학과들은 유형원의 변법적 경세론의 입장을 계승하면서도 과거제에서는 이익과 정약용의 사례에서 보듯이 천거제를 과거제의 폐단을 보완하는 장치로 인식하였다. 조선시대 과거제는 유일한 관료등용제로서 능력 본위의 공정한 시험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정된 관직수와 양반 신분을 유지하는 유일한 길이었던 관제로 그에 따른 폐단도 많았다. 이에 따라 천거제가 대안으로 제시된 적은 있었지만, 과거제를 대신할만한 제도로 인식되거나 본격적으로 채택된 적은 없었다. 그럼에도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유형원과 이익, 정약용은 궁극적으로 과거제를 폐지하려는 입장이었다. 이는 아마도 고대 경전

16 丁若鏞, 『經世遺表』 卷15, 「春官修制」 〈科擧之規〉. “一不擧而赴士 無定額也 二學政無官 教授不豫也 三大小異等 肄業不專也 四單技取準 倖占難禁也 五晷刻太緩 借述有暇也 六考選不精 私意橫流也 七試券不頒 功罪難驗也 八雜試頻數 修業無日也 九慶科連疊 倖門以啓也 十明經爲主 選用殊岐也 謬十謬爲之幹 而千條萬枝 錯然相糾 以至今日 壞亂無紀 作一戲子 人才不作 國脈以傷 臣以爲科弊者 當今之急疾先擣者也 臣請略擧而論之.”

을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실의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 이들의 경세론적 입장과 더불어 몇몇 문벌 위주로 독점되는 불공정한 경쟁에서 소외된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싶다.

3. 우하영의 시의론적 과거제 인식

우하영은 시조로부터 21대에 이르기까지 벼슬길에 나간 명문 가문 출신이었다. 특히 유성룡, 김성일과 더불어 퇴계 이황의 제자로 명망이 높았던 7대조 우성전(禹性傳, 1542~1593)은 임진왜란 때 경기도 의병장으로 활약한 인물로 남인의 실질적인 영수였다. 조선시대 양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통해 관료로 나가야 했으나, 증조부 때부터 집안에 벼슬한 인물이 나오지 않았다. 특히 어린 시절에 조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급격히 가세가 기울어 학업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우하영은 15세 이후 과거 시험에 힘을 쏟아 여러 차례 과거에 응시했으나 당시 만연해 있던 과거시험의 부정 때문인지 사마시(司馬試) 초시에는 12번이나 붙었으나 번번이 회시(會試)에서 낙방하여 평생을 유생으로 살았다. 초시를 12번이나 응시했다는 사실은 그가 과거를 통해 관료가 되어 양반 신분을 유지하려는 열망이 강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열두 번에 걸친 회시 불합격은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당시 만연했던 과거 시험의 폐단 탓이 컸다. 과거 시험의 부당성을 뼈저리게 체험한 우하영은 이후 관직의 뜻을 버린 채 화성(華城)의 한 시골 유생으로 살면서 모멸과 냉대, 빈곤으로 점철된 불우한 일생을 보냈다. 그럼에도 우하영은 당시의 문란한 사회경제 질서를 어떻게 하면 바로잡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실천한 농촌지식인이자 실학자였다.

우하영은 1796년(정조 20)에 정조의 구언윤음(求言綸音)에 응지(應旨)하여 「시무책(時務策)」 13조목을 상소하였다. 1804년(순조 4)에는 순조의 구언윤음에 응지하여¹⁷ “감히 선조께 올리던 대로 이어서 책자를 만들었기에 천일록(千一錄)이라 이름하고 망령되이 임금께 올리는 정성을 바치니, 부디 사람이 미천하다고 하여 말까지 버리지는 마소

17 『純祖實錄』 卷6, 순조 4년 2월 9일(己巳).

서.”라고 하며 『천일록』을 바쳤다.¹⁸

우하영이 살았던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초는 조선왕조의 정치 사회 질서가 모든 면에서 무너져 내기던 시기였다. 근기 남인 출신으로 학문적으로 이익의 영향을 받은 우하영은 정치 사회적 부조리를 바로잡을 실천 방안을 평생토록 고민하였는데, 그 시대 다른 근기학과 지식인들 보다 현실적인 경세관을 펼쳤다. 우하영은 이익이나 정약용과 달리 옛 제도를 그대로 현실에 옮겨오거나 구현하려는 데 회의적이었다. 예컨대 이익이나 정약용이 주장한 고대의 이상적인 토지제도인 정전제(井田制)를 당시 조선 사회에서 실현할 수 없는 제도로 보고 이상적인 토지제도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우하영은 고금의 풍속이 고대와는 다른 즉 ‘시의(時宜)’가 다르기 때문이라 보았다.

옛날부터 성왕의 정치는 전부(田賦)를 무엇보다 우선시하였으므로 뒤에 정치의 방법을 말하는 자들은 모두 정전법을 일컬었다. 그 중 우리 동방에서 실행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의 지형은 산이 많고 들이 적어서 정전제를 시행하기 어렵다.”고 말할 뿐 고금의 시의(時宜)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니 이것이 어찌 아는 사람이 할 논의이겠는가? … (중략) … 오늘날 정전제를 시행한다면 관리들의 간악한 피와 송사의 단서가 필시 측량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보다 백 배나 많이 일어날 것이니 이것이 정전제를 후세에 시행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¹⁹

우하영은 정전제가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해도 그 제도가 오늘날 시의적절(時宜適切)한 것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면 오히려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폐단을 만들어낼 뿐이라 생각한 것이다. 그는 자신의 견해를 증명하기 위해 그 누구보다 문헌을 정치(精緻)하게 연구하고 각 시대마다 어떤 기준으로 제도를 만들었는지 장단점은 무엇인지 식음을 전폐하며 연구한 뒤에야 자신의 생각을 펼친 현실적인 지식인이었다.

문헌을 널리 연구하고 고금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참작하여 정밀하게 생각을 다하고 어떤 것이 이롭고 어떤 것이 해로우며 어떤 것이 편하고 어떤 것이 그렇지 않은지 생각하느라 먹고 자는 것도 거의 잊었다.²⁰

우하영은 어떤 전형적인 제도가 시대를 초월하여 항상 옳바르다고 주장하기 보다는 모든 제도는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므로 오랜 역사를 통해 수정되고 보완되어 왔다고 여겼다. 따라서 고금을 막론하고 완벽하게 좋은 제도란 존재하지 않으며 좋은 제도를 추구하려는 사람들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²¹ 우하영이 생각하는 폐단이라는 것은 시대마다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제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어떠한 이유로든지 끊임없이 발생하는 폐단을 발견하여 해결책을 찾는 것이 더 현실적인 것이었다. 그의 목표는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을 추구함으로써 시중(時中) 혹은 급선무의 발견을 학문적으로 혹은 정치 실천적으로 요청하는 데 있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하영은 『천일록』에서 일관되게 폐단이나 대안을 제시하기에 앞서 역사적으로 제도가 어떻게 변천되었는지를 먼저 고찰하는 서술 방식을 취하고 있다.²² 그러한 방식은 과거제 논의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우하영은 기본적으로 과거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당나라 이래로 오로지 과거만으로 인재를 선발하니 인재들이 넓게 학문을 하지 못하고 과거라는 틀 속에만 갇히게 된다고 비판하였다.²³ 그야말로 시험은 시험일 뿐 수험용의 지식은 현실에서는 무용지물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본격적으로 과거제가 끼치는 폐단을 주장하기에 앞서 이수광의 발언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였다.

지봉 이수광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나라는 과거에서 쓰는 문장의 폐단이 심하다. 사륙변려문(四六駢麗文)은 쓸데없이 기니, 줄글과 똑같다. 이른바 줄글이란 또 공사장(公事場)의 문자인 듯하고, 시와 부에는 입제(入題)·포서(鋪敘)·회제(回題) 등의 형식이 있으며, 더욱이 문장과 문체가 합치되지 않았다. 비록 과

18 『日省錄』 卷105, 순조 4년 2월 9일(己巳). 본 논문에서 인용한 「시무책」과 「천일록」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을 사용하였다.

19 禹夏永, 『千一錄』 卷10, 「漁樵問答」.

20 禹夏永, 『千一錄』 卷10, 「醉石室主人翁自敘」.

21 禹夏永, 『千一錄』 卷5, 「科制」.

22 김혁, 2014, 「실학자 우하영의 정치경제학과 향약설」, 『역사와 실학』 55, 165쪽 참조.

23 禹夏永, 『千一錄』 卷5, 「科制」.

거에 붙을 수 있지만 끝내는 문장을 지을 줄 모르는 사람이 되니 세상에 어떤 쓸모가 있겠는가? 반드시 근본을 크게 변화시켜야만 될 것이다.”고 하였다.²⁴

우하영은 이수광의 입을 빌어 “우리나라의 식년제는 오직 강경(講經)으로만 뽑으니 그 뜻은 아름다우나 강경하는 사람들만이 치용(致用)의 실재가 없고 어떤 이는 글을 지을 수 없으므로 세속에서는 반드시 그것을 모멸하여 ‘실학급제(實學及第)’라고 했다고 비판하면서 실학을 돈독히 숭상한 다음에 사서(四書)와 자집(子集)에 이르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²⁵ 우하영은 “인재를 선발하는 것은 예로부터 있어 온 것인데 과거제의 폐단이 지금보다 심한 적이 없었다.”고 단언하였다. 그는 “천하의 모든 일은 극(極)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通)하는 것이니, 이것이 이 세상의 참된 이치이며 지금이야말로 극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는 때일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²⁶

우하영은 과거가 문란하게 된 원인을 실력이 아닌 요행으로 과거에 합격하려는 자들 때문인 것으로 진단했다. 우하영은 “과거의 폐단이 어디에 원인이 있는지 곰곰 생각해 보면 다른 무엇보다도 과거를 요행으로 여기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고 지적하였다. 과거 때만 되던 전국에서 놀고먹던 한가한 잡된 무리들이 과거를 ‘관광(觀光)’이라 부르며 권세가의 수종이 되어 문을 막고 시권을 먼저 접수시키려고 시험장의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서로 다투고, 과장에 들어갔을 때는 남의 손을 빌려 시권을 작성하여 제출한다고 지적하고 있다.²⁷

우하영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실제 조선 후기에는 요행히 합격을 기대하고 전국에서 몰려든 응시자들의 수가 대폭 증가하였다. 예컨대 1695년(영조 15)에 1만 6천여 명에 이르렀던 응시자가 1800년(정조 24)에는 10만 4천여 명까지 치솟았다.²⁸ 60년 사이에 무려 10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17세기 이후 과거 시험이 남행(濫行)되고, 응시생 또한 급증하게 되자 이로 말미

24 禹夏永, 『千一錄』 卷5, 「科制」〈附名賢議〉.

25 禹夏永, 『千一錄』 卷5, 「科制」.

26 禹夏永, 『千一錄』 卷5, 「科制」〈附錄〉.

27 禹夏永, 『千一錄』 卷5, 「科制」〈附錄〉.

28 이원재, 2010, 「조선 후기 과거 교육에서의 요행의 문제」, 『교육학연구』 84(4), 172쪽.

암아 여러 가지 폐단이 속출하였다. 조선시대 군역(軍役)에서 면제되려면 양반이 확실하거나,²⁹ 혹은 학생임을 증명해야 했다. 그런데 양반임을 확실하게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생이 군역 면제 대상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글도 모르면서 향교(鄕校)에 이름만 올린 이른바 가짜 유생들이 많았다.³⁰ 병자호란 이후 군인 수가 크게 감소하자 인조는 그 대책으로 군역을 피해 향교에 적을 둔 학생들에게 강서(講書) 시험을 보게 해서 떨어지면 군역을 담당하게 하기도 했다. 학생들은 각 지방의 수령이 주관하는 『소학』 강서 시험에 합격하고 증서를 받으면 군역에서 면제되었다. 물론 말을 바치고 강서 시험을 면제받는 경우도 있었지만,³¹ 군역의 면제를 위해 향교에 적을 두는 유생들이 증가하였고 이는 과거 시험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었다.

뽑는 인원은 정해져 있는데 응시자 수가 폭증하는 현상은 응시자들의 요행심을 더욱 부추기게 하였다. 요행은 곧 부정을 저지르는 것이었다. 우하영은 과장에 먼저 들어가 유리한 자리를 선점하고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 시험을 치르는 등 부정한 방법이 횡횡함에도 불구하고 주관하는 자가 그 진위 여부를 감별해 내지 못하고 있으니 인재와 그렇지 못한 자가 뒤섞여 급제 결과가 뒤바뀌게 되는 세태를 통탄하였다.³² 시관(試官)들이 능력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채점 기준도 공정하지 못하여 실력 있는 유생들은 불합격하는 대신 기본 글자도 구분하지 못하는 무능력자들이 합격하는 세상이 된 것이다. 시관들의 능력 문제는 결국 과거를 요행으로 합격하려는 세태를 부추기고 이렇게 등용된 사람들은 후일에 다시 시관이 되니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될 수밖에 없었다.

우하영은 불공정성이 이러한 세태를 부추긴다고 보았다. 무엇보다도 공정하게 치러져야 할 과거에서 이러한 행태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되다 보니 과거를 요행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실력도 없는 자들이 분수도 모르고 과장에 나가는 이들이 더욱 빈번해졌다고 진단하였다.³³ 우하영이 지적한 문제

29 양반이라는 증거는 4조 이내에 현달한 관직을 지낸 사람이 있거나, 문과·무과 합격자의 자손이거나, 본인이 생원진사시에 합격한 자이다.

30 『仁祖實錄』 卷35, 인조 22년 7월 30일(乙卯).

31 『仁祖實錄』 卷35, 인조 22년 6월 22일(戊寅).

32 禹夏永, 『千一錄』 卷5, 「科制」〈附錄〉.

33 禹夏永, 『千一錄』 卷5, 「科制」〈附錄〉.

점을 중앙에서 인식하지 못한 것도 아니었다. 1796년(정조 20) 2월에 치러진 별시에서도 실력 없는 자들이 요행을 바라며 과장에 입시하여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이번 별시(別試)에 강(講)과 제술(製述)이 있음은 시험이 임박하기를 기다리지 않고도 알 수 있었는데, 과장을 설치한 날에 찌를 뽑아 강을 시험한 결과 하나도 된 자가 없었고 행동거지와 걸음걸이도 분잡하기가 막심하였습니다. 종장(終場)에 이르러서는 문에 와서 방황하다가 절반 이상의 숫자가 스스로 물러갔고 혹은 들어왔다가 곧 나가기도 해서 일소(一所)·이소(二所)에 입장한 자가 3백여 명에 불과하였으니, 과거 제도를 설치한 후로 이런 모양은 전에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들어온 자 역시 반드시 모두 강과 제술이 뛰어난 것이 아니요 요행히 무릅쓰고 나온 자가 절반입니다.³⁴

실제 과거 시험을 주관하는 중앙 정부에서도 응시자수가 늘어날수록 과거 시험에서의 부정행위 또한 늘어나 공정하고 능력 있는 관리 선발이 최대 난제였다. 물론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부정행위 정도에 따라 과거 응시 자격을 정지하거나, 이미 합격하였다면 합격자 명단에서 이름을 삭제하기도 했다. 조선 후기에는 대리시험으로 인한 시험 부정이 심각해지자 법을 강화해서 변방의 군인으로 혹은 수군(水軍)으로 보내어 시험을 볼 수 없게 하는 조치가 있기도 했다. 부정행위자를 서울과는 거리가 먼 변방으로 보내 과거 응시는 생각하지도 못하게 하는 형벌이었다. 그럼에도 과거 응시자의 부정행위는 근절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대신 시험을 치르거나, 책을 가지고 들어가는 등 여러 가지 부정행위가 자행되었다.³⁵

조선 후기에 과거 응시자들의 부정 행태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 중의 하나가 시권, 즉 답안지 제출과 관련된 것이었다. 남보다 먼저 시권을 제출하는 것이 유리했다.

34 『정조실록』 卷44 정조 20년 2월(壬午).

35 시험장에 응시자가 아닌 사람이 들어가서 시험을 치르게 하거나, 병사들의 삼엄한 경계에도 불구하고 시험장 밖에서 답안을 작성하여 시험장 안으로 들여보내기도 하였다. 시험을 관리하는 관료나 서리가 개입되기도 하였다. 시험을 주관하는 시관이 시험 문제를 유출하거나, 할봉된 피봉을 빼돌려서 불합격자를 합격자로 둔갑시키기도 하였다.

때문에 먼저 입장하기 위해 건장한 수종인을 고용하여 이들이 과장 문 앞에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다투는 일이 다반사였다. 우하영은 시험 답안지를 일찍 제출하는 폐단에 대하여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응시자들은 모두 시권을 일찍 제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두세 명이 합하여 1편을 합작하기도 하고 또 수삼 인이 각기 1본을 써서 그중 먼저 쓴 사람의 것을 올리기도 한다. 또한 시제(試題)를 걸어놓는 곳 아래에 앉아 있지 않으면 시권을 일찍 작성했다 하더라도 왕래하는 도중에 지체되어 미처 올리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를 염려하여 힘세고 건장한 수종을 모집하여 문을 막게 하고 먼저 답안을 올리려고 다투는데 이때 수종들은 목숨을 다해 충성한다.³⁶

우하영은 부유한 집안 자제들이 남의 글이나 글씨를 돈을 주고 사거나 잡된 무리들이 다른 사람의 글과 글씨를 빌려 요행을 바라고 반면에 고생스럽게 독서한 인재들은 낙방하여 눈물을 머금고 한양을 떠나니 조정은 귀한 옥을 내던져 버린 격이고 응시자의 입장에서는 쓰지도 못한 옥을 품은 채 여한이 남는 것이라 하였다. 이 때문에 위로는 공부를 권하며 흥기시키는 효과가 없게 되고 아래로는 분발하여 자신을 닦고자 하는 마음이 없게 되는 것이라 하였다.³⁷

전국 각지의 힘없고 궁핍한 선비들 중에는 아무리 훌륭한 문필가가 있더라도 그가 문을 막고 먼저 답안을 올리려고 다투 수는 없다. 그가 요지를 차지하지 못한 채 글을 손수 짓고 글씨를 손수 썼더라도 그의 시권은 결국 어지럽게 쌓인 시권들 더미 속에 파묻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이들도 이해득실을 따지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정성을 다하여 시권을 작성하여 올리고는 오히려 요행을 바라는 편이 낫지 않을까 하여 실력자들과 문장가들이 권세가로 다투어 달려가게 되니 선비들의 습속이 날로 바닥에 떨어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³⁸

우하영은 과거의 근본적인 원인을 조정이 부호가의 자제나 잡배의 부정을 근절

36 禹夏永, 『千一錄』 卷5, 「科制」〈附錄〉.

37 禹夏永, 『千一錄』 卷5, 「科制」〈附錄〉.

38 禹夏永, 『千一錄』 卷5, 「科制」〈附錄〉.

시키지 못하고 결국 이 때문에 요행을 바라는 응시자들이 늘어나는 데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세태가 근절되지 못하고 반복되면 조정의 폐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 가서는 과거가 실력 있는 인재를 선발하는 공정한 제도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벼슬길에 나아가는 길이 오로지 과거밖에는 없는 현실에서 이제 학문에 힘써 실력으로 합격하는 것이 아닌 부정확한 방법과 요행으로 합격만을 노리는 세상이 되고 말았으니 과거는 더 이상 인재 등용의 기능을 상실하고 만 것이다. 우하영은 지금이야말로 과거제는 그 폐단이 극에 달하여 변통지책(變通之策)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되었다고 보았다.

4. 과천론과 인재등용론

1) 천거

우하영은 수차례에 걸쳐 과거를 보고 낙방하면서 겪은 경험을 토대로 당시 만연되어 있던 과거제의 폐단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폐단을 고칠 수 있는 방법으로 오늘날 조훈(照諭)하는 법을 엄격히 세워 조훈첩을 받은 뒤 과장에 들어갈 수 있게 하지만, 우하영은 단연코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하였다.

조훈하는 법을 엄격히 세워 거자들이 강(講)에 응하게 한 다음 조훈첩(照諭帖)을 받은 뒤에 과장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데 문자를 대충해도 소학 장구만 약간 익히면 강에 응하기는 충분하므로 강에 응하였다는 것만으로 과장의 입장을 허락한다면 역시 과장에서 시끄러운 말썽이 일어날 수 있고, 아무리 실력 있는 노유(老儒)라도 얼마든지 강에서 떨어질 수 있다.³⁹

조훈첩은 조훈강(照諭講)에 합격한 사람에게 주는 일종의 부시(赴試) 자격증이다. 조훈강은 과거 응시 직전에 실시하는 일종의 예비고사인데, 과거 응시자의 신

39 禹夏永, 『千一錄』 卷5, 「科制」〈附錄〉.

원을 확인하고 소학(小學)을 외우는 시험을 보게 하였다. 그런데 소학 장구만 약간 익혀도 충분히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조훈강만으로는 실력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간의 변별력은 없고 자칫 실력 있는 노유(老儒)가 떨어질 수도 있었다. 결국 우하영은 과거만으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그는 과거제의 폐단을 보완할 방법으로 ‘과천법(科薦法)’보다 좋은 것이 없다고 단언하였다.⁴⁰ 과천법은 과거와 천거를 병용하는 방법인데, 그 구체적인 시행 절차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서울은 문음(文蔭) 3품부터 생원, 진사에 이르기까지 각자가 응시자를 추천할 수 있는 천주(薦主)가 될 수 있다. 천거의 규정은 시(詩)·부(賦)·의(義)·의(疑) 중 하나의 글을 완성하여 올리고, 상(上)으로 한계를 삼는다. 천주는 착서(着書)한 단자를 작성하여 성균관에 보내는데, 혹 실력은 있는데 추천해 줄 사람이 없어 천거 단자에 들어가지 못하면 반장(泮長)에게 단자를 올려 대면 시험을 치러 허락을 받는다.⁴¹

둘째, 천거단자(薦舉單子)를 모두 다 받은 뒤에 기록하고 성책(成冊)한 후 예조에 이송하면 예조에서 입계(入啓)한 뒤에 제1, 제2 조훈소에 나누어 보낸다. 조훈소에서 성책을 살펴 강(講)을 받고 입문(入門) 시의 고첩(考帖)으로 삼아 입문을 허락한다.⁴² 외읍의 경우는 고을 수령이 재임(齎任)을 거느리고 단자를 받아 대면 시험을 보게 하는데 외읍은 조관(朝官), 생원, 진사가 전혀 없을 것이니 자천단자(自薦單子)만 받을 수 있을 것이다.⁴³

셋째, 시험일 2~3일 전에 조정에서 제비를 뽑아 시험을 치르는데 글을 완성할 수 없는 사람은 천주와 응시자를 해당 형률에 따라 엄격히 세우고 정해진 제도를 따르면 과장이 자연히 엄격하게 되어 요행을 바라는 폐단이 없어질 것이다.⁴⁴

넷째, 과천을 할 때 시(詩)·부(賦)·의(義)·의(疑) 중 1편 이상 시권을 작성하여 그것이 상(上)이 되어야 천거한다. 면접시험 때에 4가지 시제를 걸어놓고 유생들이 각자

40 禹夏永, 『千一錄』 卷5, 「科制」〈附錄〉.

41 禹夏永, 『千一錄』 卷5, 「科制」〈附錄〉.

42 禹夏永, 『千一錄』 卷5, 「科制」〈附錄〉.

43 禹夏永, 『千一錄』 卷5, 「科制」〈附錄〉.

44 禹夏永, 『千一錄』 卷5, 「科制」〈附錄〉.

천거 받은 글을 따르게 하여 지어 올리게 하면 글을 작성하지 않고 백지를 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⁴⁵

이상은 우하영이 주장한 과천제의 대강인데 그가 주장하는 과거제 개혁안의 핵심은 준비도 없이 과장에 들어오는 응시자들을 막고 제대로 실력 있는 응시자들을 변별력 있게 선발하는 데 있었다. 이를 위해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응시자들을 원천적으로 과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시험 장벽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 방법으로 추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먼저 추천자가 응시자를 천거를 하여 단자를 제출하고 이 단자에 이름이 오른 사람만이 시험을 볼 수 있게 규정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결국은 학문에 힘쓰지 않고 요행만 바라는 무리들의 과거 응시를 근절하는 것이 제대로 된 인재 등용의 지름길이라 본 것이다.⁴⁶ 더불어 그는 응시자를 잘못 추천한 천주(薦主)도 연좌시켜 처벌하면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하려는 응시자가 사라질 것이라 하면서, 과거 응시자 수가 줄어들면 자연히 과장에서 부정의 사라질 것이라 보았다.

우하영의 과거제 비판과 그 개혁론은 당시 현실적으로 만연된 과폐를 자신이 직접 체험하고 그 대처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는 특히 선조 이후로 당색이 우선이 되어 세상의 도가 퇴색하여 염치가 어그러졌고 관직의 법도가 어지러워졌다고 지적하며, 세도가들이 문벌(門閥)을 배경으로 관직 자리를 독점하는 현실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다.⁴⁷ 우하영은 인재 선발의 기본 방침을 과거제에 두고 있으나 천거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었다. 다만 천거제 자체는 훌륭한 인재를 배출할 수 있는 장치이나 오늘날 세상의 도가 땅에 떨어졌을 때 이 법을 시행한다면 오히려 많은 폐단이 발생한다고 보았다.⁴⁸ 만약 다시 천거법을 실시한다면 당색을 떠나 지벌(地閥)이나 나이에 구애하지 말고 오직 사람의 그릇만을 기준으로 천거하되 덕행을 먼저 보고 능력은 그 다음이라 하였다.⁴⁹

45 禹夏永, 『千一錄』卷5, 「科制」〈附錄〉.

46 禹夏永, 『千一錄』卷5, 「科制」〈附錄〉.

47 禹夏永, 『千一錄』卷5, 「用人」.

48 禹夏永, 『千一錄』卷5, 「用人」.

49 禹夏永, 『千一錄』卷5, 「用人」.

2) 무과

우하영은 무과(武科) 시험에 대해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우하영은 인재를 얻는 것은 문과나 무과 모두 마찬가지며 무과도 문과만큼 수많은 폐단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하였다. 그는 무과를 시행하는 목적이 과거에서 등수 안에 든 사람을 장수로 만드는 데 있는 것만이 아니라, 유사시에 대비하는 것이 목적이라 전제하고, 따라서 “아무리 신분이 낮은 하층민이라 해도 활을 잡고 기예를 익힐 수만 있다면 가장 위급할 때 그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고 하여 무예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⁵⁰

우하영은 문과든 무과든 과거 폐지론자는 결코 아니었다. 예를 들어 적합한 장수감을 찾아내거나 무예를 열심히 수련하게 하는 데 있어 과거제만큼 좋은 장치는 없다고 보았다. 다만,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고 전제하였다. 예를 들어 과거 규칙을 소홀히 하고 뽑는 데만 힘쓴다면 제대로 된 군사 수는 날로 줄어들 것이고, 사람들은 자기 분수도 모르고 과거에 응시했다가 선발되지 않으면 오히려 조정을 원망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설사 과거 규칙을 엄밀히 적용하여 선발한다고 해도 선발된 자는 결과적으로 과거 등수를 절대적인 것으로 믿고 더 이상 무예 연마를 하려고 하지 않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적게 뽑아도 문제가 생기고 많이 뽑아도 모두 폐단이 발생하는 셈인데 우하영은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그렇다면 광취(廣取)나 소취(小取) 모두 폐단이 있기 마련이니, 장차 어찌하면 좋겠는가? 그에 대한 가장 올바른 대책은 과거 때마다 기사(騎射), 보사(步射), 유엽전(柳葉箭), 편전(片箭), 조총(鳥銃), 강서(講書) 등 6기(六技)를 초시(初試)의 시험과목으로 하여 그 규정을 가볍게 정하여 합격자를 많이 뽑고, 회시에서는 그 규제를 엄중히 적용하여 정예(精銳)를 뽑는 것이 가장 좋다. 또 초시 합격자 중에 배나 쌀을 낸 사람들은 그 해의 신역(身役)을 면제해 준다.⁵¹

50 禹夏永, 『千一錄』卷5, 「科制」〈附錄〉.

51 禹夏永, 『千一錄』卷5, 「科制」〈附錄〉.

우하영은 무과시험의 폐단을 일소하는 가장 올바른 대책으로 초시의 과규(科規)를 회시에 비해 가볍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과거 때마다 기사(騎射), 보사(步射), 유엽전(柳葉箭), 편전(片箭), 조총(鳥銃), 강서(講書) 등 여섯 가지 기예를 초시(初試) 때의 시험과목으로 삼아 과규를 가볍게 정하여 되도록 합격자를 많이 뽑았다가 회시(會試) 때에는 과거의 규칙을 엄중히 적용하여 적은 수로 정밀하게 뽑는 것이 좋은 해결책이라 하였다. 그가 말하는 6기는 기존의 무과 시험과는 다소 다른데, 조선 전기에 식년 무과의 초시 과목은 목전(木箭), 철전(鐵箭), 편전(片箭), 기사(騎射), 기창(騎槍), 격구(擊毬)에서 후기에는 격구를 폐지하고 기사를 기추(騎筈)로 바꾸었으며, 새롭게 유엽전(柳葉箭), 관혁(貫革), 조총과 편추(鞭筈)를 추가해 9과목이 되었다. 따라서 우하영이 제시한 6기를 기존 무과시험에 견주어 보면 다소 수위가 낮은 시험인 것으로 추측된다. 초시를 쉽게 하여 합격자를 많이 뽑아 이들이 자긍심을 가지게 하고 2차 시험인 회시에서 제대로 된 정예요원을 뽑자는 계획이라 할 수 있다.

무과 개혁에 대해서는 정약용도 제시한 바 있는데 무과 합격자 인원을 조정해야 하는 것에는 두 사람이 유사하지만, 정약용의 경우 많은 수의 응시자와 급제자 선발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정약용은 무과도 문과와 마찬가지로 응시자와 선발 인원을 한정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⁵² 정약용은 100년 이래로 무예를 갖춘 이가 사라진 원인은 무과를 천시하는 폐단이 심해졌기 때문이라고 보고, 격축(擊逐), 공로(空老), 징포(徵布), 만과(萬科), 무액(無額) 다섯 가지가 무과 대란(大亂)의 요인이라 하였다. 이 다섯 가지가 근절되지 않는 한 세상에 활을 잡고 나오는 자는 없을 것이라 단언하였다.⁵³ 나아가 무예 실력이 향상되지 않은 원인에 대해서 “우리나라 풍속은 온순하고 근신하여 무예를 즐기지 않고 익히는 것은 오직 활쏘기뿐인데, 요즘은 이것마저 익히지 않으니 무예를 권장하는 것이 오늘날의 급선무이다.”라고 하여 무예를 즐기지 않는 풍속 탓으로 돌렸다.⁵⁴

52 丁若鏞, 『經世遺表』 卷15, 「春官修制」 〈科擧之規〉.

53 丁若鏞, 『牧民心書』 卷8, 「兵典」 제4조 〈勸武〉.

54 丁若鏞, 『牧民心書』 卷8, 「兵典」 제4조 〈勸武〉. “東俗柔謹 不喜武技 所習惟射 今亦不習 勸武者 今日之急務也.”

주지하다시피 문과에 비해 무과는 조선 후기에 만과(萬科)라 불릴 정도로 많은 수의 급제자를 배출하면서, 응시 자격의 문호가 넓어졌다. 따라서 합격자를 선별하는 기능은 상실되고 말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우하영은 촌구석의 무사들에게 초시의 과거 규칙이 가볍다는 사실을 알게 한다면, 무사들이 설사 회시에서 급제할 수 없다 하더라도, 초시를 오히려 영광으로 알고 지속적으로 무업(武業)에 힘쓸 것이라 보았다. 즉, 초시와 회시의 합격자 수를 조정함으로써 무과의 폐단을 개혁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우하영의 과거제 개혁안과 인재등용론은 기존 과거제 질서를 존중하면서 그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는 입장으로 여타 동시대 실학자들에 비해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한 해결책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5. 맺음말

이상에서 실학자 우하영의 과거제 인식과 인재등용론을 조선 후기 경세론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조선 후기 경세론의 핵심은 토지제도의 개혁에 있지만, 국가 개혁에 있어 토지제도 다음으로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것이 과거제 폐단이었다. 조선시대 과거제는 유일한 관료등용제로서 능력 본위의 공정한 시험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정된 관직수와 양반 신분을 유지하는 유일한 길이었던 관계로 그에 따른 폐단도 많았다. 이에 따라 천거제가 대안으로 제시된 적은 있었지만, 과거제를 대신할만한 제도로 인식되거나 본격적으로 채택된 적은 없었다. 몇몇 문벌 위주로 독점되는 불공정한 경쟁에서 소외된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한 측면도 없지 않았다.

우하영은 원칙적으로 인재를 등용하는 방법에서 과거제가 가장 우수한 것이며 과거를 통해 인재가 많이 관직에 임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는 과거제가 시행상의 문제로 발생하는 폐단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과천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유형원, 이익, 정약용으로 이어지는 근기학파들의 과거제 폐지 주장과는 다소 상이한 면이 있다고 하겠다.

응시자수의 급증과 그에 따른 폐단을 목도한 우하영은 덕행보다 문예를 기준으로 선발하는 현행 과거제에 대해 비판적이었는데, 변법적(變法的) 개혁을 주장한 유형원이나 정약용과 달리 현재의 제도를 유지하면서 폐단을 고쳐 나가야 한다는

시의론적 개혁론자였다. 그는 “옛것을 쫓는 것을 소중히 생각하여 개혁을 일삼지는 않지만, 상황이 막히면 변해야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이다. 현재의 제도를 따르면서 폐단을 고치는 방안을 내야 하니 이것은 마땅히 식자들이 의논하여 정해야 할 것이다.”⁵⁵ 하여 현행 제도 안에서 부분적으로 폐단을 시정하고 개선하는 개혁안을 제시한 인물이라 평가할 수 있다.

조선시대 과거는 국가 차원에서 보면 관료를 뽑기 위한 인재 선발의 관문이지만, 사족 입장에서는 양반 신분을 유지하는 기득권의 문제였고 상천(常賤)에게는 신분 상승의 통로였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릴 수 있는 것이었고, 다른 경세 문제들 보다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이 더욱 반영되었다고 생각한다. 조선 사회가 엄격한 신분제 사회기 때문에 사족 출신인 우하영의 과거제 개혁론도 사족의 신분 유지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폐지론까지 가지는 못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우하영의 과거제 비판과 개혁론은 본인이 직접 체험한 데서 나온 방안으로 제시된 것으로 근본적으로 과거제를 개혁하려는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인지 무과 응시자들에게는 지속적인 무업을 위해 초시에서 더 많이 뽑고, 생원진사시나 문과는 초시 응시자 수를 천거로 처음부터 제한해야 한다는 그의 의견은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주장대로 시의(時宜)에 맞추어 실현 가능한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동시대 변법론적 경세론자들과 다른 차별점을 발견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투고일 2024년 8월 29일 심사일 2024년 10월 24일 게재확정일 2024년 10월 31일

55 禹夏永, 『千一錄』 卷5, 「用人」.

참고문헌

- 국사편찬위원회, 『朝鮮王朝實錄』.
『經國大典』, 1983, 아세아문화사.
李瀾, 1988, 『星湖先生文集』, 경인문화사.
禹夏永, 『千一錄』 1~10, 규장각한국학연구원.
丁若鏞, 『經世遺表』.
충남대학교, 1968, 국역주해 『礪溪隧錄』 1~4.
- 宮嶋博史, 1977, 「李朝後期 農書の研究」, 『人文學報』 43, 京都大 人文科學研究所.
김 혁, 2013, 「우하영의 지리적 사유와 그 문화적 위치-팔도론과 풍토론 사이-」, 『규장각』 43,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김 혁, 2014, 「실학자 우하영의 정치경제학과 향약설」, 『역사와 실학』 55.
김용섭, 1986, 「《千一錄》의 農業論」, 『東方學志』 50,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김정녀, 2016, 「『千一錄』의 人物傳을 통해 본 우하영의 教化論」, 『한민족문화연구』 56, 한민족문화학회.
박종훈, 2014, 「우하영의 「천일록」 편찬 의도와 특징 일고-관방(關防)과 잡록(雜錄)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53, 한국언어문학회.
박화진, 1981, 「《千一錄》에 나타난 禹夏永의 농업기술론」, 『釜大史學』 5, 부산경남사학회.
염정섭, 2000, 「우하영의 《千一錄》 편찬과 農法 정리」, 『韓國民族文化』 36,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원.
이병걸, 1971, 「茶山 丁若鏞의 科學制 改革論」, 『東洋文化』 13.
이원재, 2010, 「조선 후기 과거 교육에서의 요행의 문제」, 『교육학연구』 84(4), 한국교육학회.
정성희, 2017, 「반계 경세학의 계승과 과거제 개혁론」, 『한국실학연구』 34, 한국실학학회.
정성희, 2017, 「근기실학과 반계 유형원」, 『온지논총』 50, 온지학회.
정은란, 2013, 「星湖 李瀾의 武인식과 武人養成論」, 『조선시대사학보』 65, 조선시대사학회.
정창렬, 1973, 「우하영의 千一錄」, 『實學研究入門』, 일조각.
정치영, 2003, 「《千一錄》을 통해 본 조선 후기 농업의 지역적 특성」, 『한국지역지리학회지』 9(2), 한국지역지리학회.
정해은, 2007, 「17세기 常賤 무과급제자에 대한 차별과 士族의 勸武」, 『조선시대사학보』 42, 조선시대사학회.

- 정호훈, 2014, 「우하영의 학문과 『천일록』의 사상적 위상-17, 18세기 경세학의 흐름을 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 48, 한국사상사학회.
- 정호훈, 2005, 「17세기 體制 改革論의 전개와 『周禮』」, 『한국실학연구』 10, 한국실학학회.
- 조성을, 1998, 「丁若鏞의 科擧制度 개혁론」, 『역사학보』 157, 역사학회.
- 조성을, 2014, 「근기학의 퇴계학 수용과 실학」, 『퇴계학과 근기실학』, 경인문화사.
- 차미희, 1992, 「18세기 科擧制 改革의 推移」, 『역사교육』 52, 역사교육연구회.
- 최광만, 2004, 「磻溪 柳馨遠의 教育改革論 分析」, 『교육사학연구』 14, 교육사학회.
- 최홍규, 1995, 「禹夏永의 實學思想 研究」, 일지사.
- 최홍규, 2000, 「취석실 우하영의 향촌사회발전론-정조대 향촌지식인의 對華城觀」, 『한국실학연구』 2, 한국실학학회.
- 최홍규, 2007, 「정조시대 禹夏永의 華城發展論」, 『수원학연구』 4, 수원시정연구원.
- 피수경, 2014, 「정약용의 무과제도 개혁안」, 『조선시대사학보』 69, 조선시대사학회.

요약

수원 출신의 우하영은 17세기 말 이래 근기학과(近畿學派)의 중농적인 경세치용(經世致用)의 학풍을 계승 발전시킨 인물로 현실 상황에 맞추어 정치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른바 시의론(時宜論)을 주장하여 그 시대 다른 이들의 경세론 보다 현실주의적인 경세론을 펼친 인물이다. 그는 역사상 이상적인 정치·체도로 알려진 옛 제도를 그대로 현실에 옮겨오거나 구현하려는 데 회의적이었으며, 현실의 풍속과 관습에 맞추어 정치를 해야 한다는 태도를 견지하였다. 즉, 국가체제의 근본적인 개혁 보다는 기존의 질서가 흐트러지고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고 보수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진 인물이었다. 현실 풍속에 맞추어 정치 사회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시의적 경세론은 특히 과거제(科擧制) 문제와 인재등용론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우하영은 원칙적으로 인재를 등용하는 방법에서 과거제가 가장 우수한 것이며 과거를 통해 인재가 많이 관직에 임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는 과거제가 시행상의 문제로 발생하는 폐단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과천제(科薦制)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유형원, 이익, 정약용으로 이어지는 근기학파들의 과거제 폐지 주장과는 다소 상이한 면이 있다고 하겠다.

우하영의 과거제 비판과 개혁론은 당시 만연했던 과거제 폐단을 직접 체험한 데서 나온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었다. 그의 과거제 개혁안은 현행의 과거제를 폐지하거나 근본적으로 개혁하려는 것은 아니었으며 시의(時宜)에 맞추어 개선안을 제시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주제어 : 과거제, 과천제, 인재등용, 경세론

ABSTRACT

Woo Ha-young's recognition of the examination system and talent selection

Jeong Seong-hee

Woo Ha-young(禹夏永), a native of Suwon(水原), was a person who inherited and developed the tradition since the end of the 17th century, and insisted on the current situation theory that the political framework should be prepared according to the actual situation, and he was more realistic than the current theory of others in that era. He was skeptical of bringing or embodying the old system known as the ideal political system in history into reality, and maintained an attitude that politics should be done in accordance with the customs and customs of reality. In other words, he was more interested in protecting and repairing the existing order from being disturbed and collapsed rather than fundamental reform of the state system. The timely economic theory that political society should be changed according to the actual customs is reflected in the examination system(科擧制) issue and the theory of talent selection.

In principle, Woo Ha-young was in the position that the examination system was the best in the way of hiring talented people, and that a lot of talented people should be appointed to government positions through the examination system. However, the Gwacheon system(科薦制) was proposed as a way to overcome the disadvantages of the examination system, which is not carried out fairly, caused by implementation problems.

Woo Ha-young's criticism of the examination system and the theory of reform were suggested as a way to directly experience the abolition of the past tense that was prevalent at the time. His proposal for reform of the examination system was

not intended to abolish or fundamentally reform the current examination system, but was characterized by suggesting an improvement plan in accordance with the current situation.

Key words : examination system, Gwacheon system(科薦制), talent selection, national reform plan

수원지역 국채보상운동의 전개와 참여자 분석

이용철*

- 1. 머리말
- 2. 수원지역 국채보상운동의 전개
- 3. 운동 참여 경로와 참여자 분석
- 4. 맺음말

1. 머리말

1876년 개항 이래 한국에 대한 침탈을 본격화한 일본은 1904~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뒤 을사늑약(乙巳勒約)을 강제하였고, 이를 통해 한국통감부를 설치하여 내정 간섭을 강화하였다. 이 과정 속에서 경제침탈 또한 극심해졌는데, 그 결과 1907년이 되면 신문 등 매체를 통해 대일부채가 1,300만 원에 달한다는 소식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이 같은 배경에서 전국적으로 일어난 국채보상운동은 경술국치(庚戌國恥) 이전, 한국인이 국권을 지키기 위해 전국적으로 참여한 운동이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상징성과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런 연유로 1960년대 이래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운동의 촉발 과정과 주도층, 취지서 등에 대한 연구와 함께 일부 지역의 전개양상에 대한 미시

* 충남도청 주무관(Manager, Chungnam Provincial Office), E-mail : lyc223513@gmail.com, Tel : 010-9670-0678

적인 연구도 이루어졌다.

하지만 그럼에도 국채보상운동에 대한 연구는 충분치 않은 실정이다. 무엇보다 운동의 지역 사례에 대한 연구가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주지하듯이 국채보상운동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일어난 운동이었음에도 지금까지 이루어진 지역 연구들은 몇몇 도단위 연구를 제외하면, 발상지였던 대구와 인근 성주를 비롯해 몇몇 지역에 편중되어 연구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는 본 연구의 주제가 되는 수원지역에 대한 연구도 마찬가지이다. 일부 연구에서 하나의 챕터 정도로 간략하게 언급되었고,¹ 또 수원지역 국채보상운동 자료의 일부만이 제한적으로 활용되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² 더욱이 국채보상운동의 전국적 동향을 연구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수원지역에서는 거의 5,000건에 달하는 의연 건수가 확인되는데, 이는 전국에서도 가장 많은 축에 드는 것이었다.³ 더 나아가 수원은 오늘날 경기도의 수부(首府)로서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매우 크고, 국채보상운동 전후로도 서울의 입구로서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 중 하나였기에 전국적으로 보았을 때도 운동이 대단히 활성화된 지역 중 하나인 것이다.⁴

이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수원지역의 국채보상운동 전개 양상과 참여층을 최대한 면밀히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황성신문(皇城新聞)』·『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만세보(萬歲報)』·『제국신문(帝國新聞)』 등에서 총 4,866명의 의연자

1 김형목, 2007, 「한말 수원지역 계몽운동과 운영주체」,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3, 한국민족운동사학회, 14~21쪽.
 2 김형목의 선행연구(김형목, 2007, 「한말 수원지역 계몽운동과 운영주체」,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3, 한국민족운동사학회, 18쪽) 〈표 1〉 수원지역 국채보상의연금 모금현황'을 보면, '부내 성당'에서 '부재열·김만준 등 신도'가 '120원 40전(60전 20전)'을 의연했다고 하였고, 그 아래에는 다시 '부내'에서 '성당 신도'가 '60원 20전'을 의연하였다고 기재하였다. 그런데 이는 중복이다. 여기서 말하는 성당은 '영성당(英聖堂)'을 지칭하는데, 실제 수원에 '영성당'이란 곳이 있는 것은 아니고 영국인(英國人) 신부였던 부재열(夫在烈)이 주관하는 성공회 성당을 의미한다.
 3 수원지역에서는 실제 거의 5,000건에 달하는 국채보상운동 의연이 확인된 것으로 언급된 바 있다(한상구, 2015, 「1907년 국채보상운동의 전국적 전개양상 연구」, 『인문연구』 75,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39-146쪽).
 4 수원은 조선 태종 13년(1413) 지방제도 개편 뒤 수원도호부로 경기도에 편입된 뒤, 1896년 13도제의 단행과 함께 경기도 수원군으로 편입되었다. 이때 수원도호부 산하 관찰사가 수원군에 설치되어 경기관찰부가 되었다. 이로써 수원에 행정관청과 주요 관공서가 들어서면서 행정도시이자 경기도의 중심도시로 성장하게 되었다. 조선시대 수원지역의 행정구역 변천과 위상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차선혜, 2014, 「대한제국기 수원지역의 사회변화-범죄양상과 법의식을 중심으로-」, 『수원역사문화연구』 4, 수원박물관, 141~143쪽).

(건)을 확인하였다. 참고로 이는 선행연구는 물론 현재 구축되고 있는 국채보상운동 아카이브의 집계보다도 많다는 점에서 자체로 의미를 갖는다. 이를 통해 1907년 국채보상운동 당시 수원지역의 양상을 검토하는 한편, 국채보상운동의 전국적 양상의 연구와 이해에도 일정 부분 보탬이 되고자 한다.⁵

2. 수원지역 국채보상운동의 전개

수원지역의 국채보상운동이 정확히 언제 시작되었는가는 알 수 없다. 다만 의연금 수록 기사가 3월 28일 확인되고 있고, 기타 운동을 독려하거나 취지서를 공포했다는 기사는 그보다도 앞선 3월 초부터 나왔다. 따라서 이 같은 정황을 볼 때 수원의 운동은 타 지역보다 빨리 일어났다고 봐도 될 것이다.

먼저 운동의 독려와 관련된 행보로 가장 먼저 확인되는 내용을 보자. 이에 대해서는 경기도 관찰서리(觀察署理) 참서관(參書官) 김한목(金漢穆)과 주사(主事) 나기정(羅基貞)⁶이 서상돈(徐相敦)의 국채보상운동 발기에 찬동하여 국채보상금모집사무지소(國債報償金募集事務支所)를 수원군(水原郡) 종로(鍾路)에 특설한 뒤, 인민들을 효유하여 참여케 하고 각 군의 관리들에게도 참여할 것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확인된다.⁷

5 단, 연구의 범위는 1907년 국채보상운동 당시, 엄밀히 말하면 당시 자료에 기재된 '수원(水原)' 지역에 한정했음을 밝힌다. 사실 국채보상운동이 있던 시기를 전후하여 전국적으로 행정구역 개편이 진행되었는데, 수원은 그 정도가 특히 심한 곳 중 하나였다. 그로 인해 1907년 운동을 기점으로 이전까지 수원이었다가 운동 1년 전인 1906년에 다른 지역으로 편입되거나, 또는 반대로 운동 당시엔 다른 지역이었다가 이후 수원으로 편입되는 등의 사례가 적지 않았다. 그런데 이런 경우의 수를 모두 반영하면 오늘날 화성, 광주, 남양주 등 여러 도시의 사례를 집적하게 되므로 이를 지양코자 하는 것이다. 참고로 수원지역의 행정구역 변천은 다음의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수원시사편찬위원회, 2014, 『수원시사』 1, 241~246쪽).
 6 나기정(1863~1915)은 1863년 5월 20일 봉담 분천리에서 출생하였고, 1897년 대한제국 성립 직후 수원 지역에서 관료 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채보상운동 전인 1906년 8~9월경 황성신문(皇城新聞) 지원을 위해 157환 50전 3리를 기부하였고, 국채보상운동이 한창이던 1907년 6월에는 삼일학교에 60환을 기부하는 등 교육구국운동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그러나 1912년 8월 29일 일제의 한국 강제 병합 2주년 기념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고, 그 결과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었다. 수원지역 유지 나중석(羅重錫, 1878~1970)과 근대 서양화가이자 독립운동가이기도 했던 나혜석(羅蕙錫, 1896~1948)의 부친이기도 하다. 나기정에 대한 내용은 다음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한동민, 2012, 「수원 나누나씨와 나혜석의 부모 형제들」, 『나혜석연구』 1, 나혜석학회).
 7 「兩氏愛國」, 『皇城新聞』 1907년 3월 2일.

이들의 활동은 수원지역 운동의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직후 기독교인들이 호응하면서 운동이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김한목의 국채보상금모집사무지소 설치 기사가 나온 지 일주일 뒤인 3월 9일 기사로 수원에 거주하는 기독교인 이하영(李夏榮)·임면수(林勉壽)·김제구(金濟九) 3인이 국한문취지(國漢文趣旨)를 공포하고, 운동에 동참하였다는 내용이 있는 것이다.⁸

이들이 공포한 취지서는 3월 29일자 기사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국민의 의무가 애국에 있어 현재 외채 1,300만 원을 갚고자 남녀 불문, 심지어 거지와 병신, 아이까지 나서고 있고, 더욱이 황제 폐하와 관리까지 금연에 동참하고 있으니 경기 서쪽의 동포들도 힘닿는대로 의연금을 찬조하자는 것이었다.⁹ 또한 이 기사에 따르면, 이들 3인은 ‘수원영어삼학당찬성회(水原英語三學堂贊成會)’를 조직했음을 알 수 있으며, 임원은 김제구(金濟九)가 회장(會長), 이하영·임면수가 각각 서기를 맡고 있었다.

한편 영국인 신부 부재열과 전교사 김만준(金萬俊)의 행보도 초기 수원지역 국채보상운동 동향과 관련하여 중요하다. 이들은 3월 17일 일요일 성당에서 대한제국을 위한 미사를 진행하면서 근래 적잖은 국채보상금을 입수하였음을 밝히고, 이렇게 모인 구화(舊貨) 120원 40전을 추후 본사(本社)에 기송하되 확실한 위원을 물색할 때까지는 일단 맡아 둘 것임을 밝힌 바 있는 것이다.¹⁰ 이후 수원지역 국채보상운동 상황을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수원지역 국채보상운동 상황

번호	의연 주체	발간일	인원	금액	비고
1	龍珠寺 僧徒	07.03.28	25	1,200	단체(25); 불교(25)
2	玄巖面 二洞 寶善洞	07.04.10	4	신120	
3	松洞面 柿谷里	07.04.16	3	90	
4	北部面 桐村	07.04.17	43	2,500	
5	晴湖面 烏山洞	07.04.17	73	X신5,215	신문5,365

8 「奮發義氣」, 『大韓每日申報』 1907년 3월 9일; 「三卍奮義」, 『大韓每日申報』 1907년 3월 26일.

9 「國債報償趣旨書」, 『大韓每日申報』 1907년 3월 29일.

10 「奮發義氣」, 『大韓每日申報』 1907년 3월 9일; 「三卍奮義」, 『大韓每日申報』 1907년 3월 26일.

번호	의연 주체	발간일	인원	금액	비고
6	台村面 六洞 莘村	07.04.21	47	X820	신문840
7	官立水原農林學校	07.04.21	36	2,700	단체(36); 관리(2); 학생(34)
8	荊石面 梨木洞 등	07.04.21	181	X3,950	신문4,140; 마을(4)
9	水原郡	07.04.26	4	200	
10	梧井面 看斗里 金谷 등	07.04.26	↑5	12,500	마을(5)
11	西新里面 玄谷	07.04.30	47	신2,910	
12	宿城面 宿城里	07.04.30	37	X4,100	신문4,000(當五四百兩)
13	漁灘面 작천동 등	07.05.01	54	2,376	마을(2)
14	文市面 錦巖洞	07.05.01	42	신1,540	
15	楚坪面 六洞	07.05.02	23	1,045	
16	貢鄉面 一洞 斗谷	07.05.08	14	440	
17	英聖堂	07.05.09	↑1	6,020	단체(↑1); 기독교(↑1)
18	床笏南面 兩洞 光山 金氏 宗中	07.05.10	32	신1,120	단체(32); 종중(32)
19	正林面 二洞	07.05.14	18	1,000	
20	雨井面 二洞	07.05.14	74	1,845	
21	梧井面 五洞 등	07.05.18	51	1,346	마을(2)
22	梧井面 栗里 鶴峴 兩洞民	07.05.19	↑7	900	마을(2)
23	楚坪面 一洞 佳水洞	07.05.20	27	3,650	
24	貢鄉面 一洞 三岩里	07.05.21	8	275	여성(1)
25	床笏面 仙儀洞	07.05.22	52	930	
26	南部面 禿山洞	07.05.22	44	X569	신문804; 여성(1)
27	台村面 中六洞 梅灘里	07.05.23	40	850	
28	南部面 遠川洞	07.05.26	60	X970	신문1,550
29	宗德面 三洞 杜陵里 등	07.05.28	↑2	2,600	마을(4)
30	南谷面 歸來洞	07.05.29	35	896	
31	梅谷面 院坪里	07.06.08	51	1,024	아동(1)
32	商社	07.06.11	↑2	↑30,000	단체(1); 상인(1)
33	水原府 申天動	07.06.11	1	50	아동(1)
34	水原公立普通學校	07.06.22	51	7,825	단체(51); 학생(51)
35	文市面 篤洞	07.06.25	17	530	
36	南部面 南昌洞	07.07.04	1	200	
37	水原府 内外	07.07.07	280	28,308	단체(2); 가족(10); 아동(2); 여성(12); 관리(4); 기생(2)
38	水原府 耶蘇教會堂	07.07.09	44	4,250	단체(44); 여성(3); 기독교(44)

번호	의연 주체	발간일	인원	금액	비고
39	貢郷面 一洞 海倉耶蘇教堂	07.07.09	19	640	단체(19); 여성(1); 기독교(19)
40	東北面 仙納財耶蘇教堂	07.07.09	12	250	단체(12); 기독교(12)
41	東北面 右洞里	07.07.09	12	165	
42	安寧面 安寧里	07.07.09	71	2,580	
43	楊澗面	07.07.09	12	660	
44	南谷面 普通川	07.07.09	↑13	1,650	
45	堰里面 堂里 등	07.07.09	34	680	마을(3)
46	東北面 二洞 등	07.07.09	73	1,930	마을(2)
47	北部面 西屯村	07.07.09	37	1,000	
48	文市面 五洞	07.07.10	72	X2,420	신문2,410; 여성(2)
49	土津面 甕浦四洞	07.07.10	56	2,165	
50	土津面 甘味洞·유桓동 耶蘇教員	07.07.10	14	320	단체(14); 기독교(14)
51	北部面 迎華亭	07.07.10	64	1,525	여성(2)
52	台村面 三洞	07.07.10	161	7,920	관리(1)
53	南部面 高等村 등	07.07.11	54	1,874	마을(2); 단체(7); 기독교(7)
54	龍伏面 一洞 등	07.07.11	↑3	1,700	마을(3)
55	三峯面 水機洞	07.07.11	41	1,500	
56	台村面 一洞 등	07.07.11	107	4,790	마을(4)
57	北部面 觀吉洞	07.07.11	18	430	
58	文市面 石串洞	07.07.11	33	1,020	
59	山城面 細橋洞	07.07.12	32	847	
60	荊石面 下九雲石洞	07.07.12	54	1,600	
61	宿城面 四洞	07.07.12	10	430	
62	堰北面 橋浦洞	07.07.12	25	1,120	
63	甘味面 大陽里 등	07.07.12	↑50	2,850	마을(6)
64	北部面 紙所洞 등	07.07.12	133	X3,200	신문3,205; 마을(5)
65	日用面 花山洞	07.07.12	4	100	
66	安寧面 培養洞	07.07.12	26	480	
67	三峯面 防築洞	07.07.13	11	210	
68	貢郷面 海倉 등	07.07.13	67	1,705	마을(3)
69	土津面 一洞 於橋里	07.07.13	11	180	
70	山城面 陽山里 등	07.07.13	↑13	1,314	마을(2); 여성(1)
71	東北面 石隅洞	07.07.13	50	1,400	
72	床笏面 一洞	07.07.13	100	4,020	여성(1)

번호	의연 주체	발간일	인원	금액	비고
73	北部面 上光教洞	07.07.13	42	965	
74	台村面 四洞	07.07.13	32	960	
75	南部面 上柳川洞	07.07.14	24	660	
76	漁呑面 防橋里 등	07.07.14	41	X920	신문1200; 마을(2)
77	漁呑面 長芝洞 耶蘇堂	07.07.14	39	1,171	단체(39); 여성(6); 기독교(39)
78	漁呑面 長芝洞	07.07.14	↑1	400	
79	宿城面 梁橋洞 등	07.07.14	110	2,712.5	마을(6)
80	東北面 池沙井 등	07.07.14	42	1,130	마을(3)
81	安寧面 中泮亭里	07.07.14	31	940	
82	安寧面 下泮亭里	07.07.16	21	684	
83	北部面 下光教	07.07.16	23	410	
84	文市面 中細橋	07.07.16	19	460	
85	漁呑面 山尺洞 耶蘇教堂	07.07.16	6	160	단체(6); 기독교(6)
86	日用面 彌勒堂	07.07.16	13	300	단체(13); 불교(13)
87	粟北面 磨川 등	07.07.16	86	1,660	마을(2); 여성(1)
88	三峰面 內洞	07.07.16	49	970	
89	堰北面 安頭院 등	07.07.16	22	470	마을(2)
90	文市面 一洞 등	07.07.16	78	2,255	
91	南面 上斗里	07.07.16	24	617.5	
92	三峯面 上洞	07.07.16	77	1,050	
93	宿城面 舟橋洞	07.07.17	20	860	
94	靑龍面 德佑里	07.07.17	32	900	
95	文市面 細橋	07.07.17	16	810	
96	北部面 軍器洞	07.07.17	28	X2,115	신문2,125; 관리(1); 상인(1)
97	三峯面 汾川洞	07.07.17	↑2	680	
98	楊澗面 三洞 西新旺里 등	07.07.17	↑65	1,390	마을(6)
99	楚坪面 西村 등	07.07.25	4	400	마을(2); 관리(1)
100	水原府 右支社 本所兩民秩	07.08.03	↑33	5,650	단체(33); 상인(33)
101	水原府 發安場商民秩	07.08.03	63	2,330	단체(63); 상인(63)
102	水原府 安仲場商民秩	07.08.03	36	1,310	단체(36); 상인(36)
103	水原府 金良場商民秩	07.08.03	47	1,000	단체(47); 상인(47)
104	水原府 烏山場商民秩	07.08.03	45	2,185	단체(45); 상인(45)
105	水原郡	07.08.07	1	50	상인(1)

번호	의연 주체	발간일	인원	금액	비고
106	土津面 桃湖	07.08.20	118	4,934	
107	南部面 仁道川	08.03.08	87	2,230	
108	北部面 山南洞	08.03.08	33	1,080	
109	南部面 大村洞	08.03.10	15	649	
110	安寧面 澗村洞	08.03.10	31	669	
111	漁吞面 內洞	08.03.10	10	370	
112	土津面 板橋里	08.03.10	13	260	
113	葛潭面 二洞 등	08.03.10	↑3	839	마을(3)
114	宗德面 四洞	08.03.10	32	550	
115	南谷面 官項洞 등	08.03.12	↑3	1790	마을(3)
116	梅谷面 二洞 造山里	08.03.12	50	820	
117	貢鄉面 月門里 등	08.03.12	59	1,940	마을(3)
118	貢鄉面 西近村 등	08.03.13	↑61	2,445.5	마을(9)
119	廣德面 一洞 등	08.03.13	↑5	2,480	마을(5)
120	北部面 北水洞	08.03.14	31	1,300	
121	水北面 壁洞 등	08.06.02	72	1,490	마을(7); 관리(3)
122	水北面 佳川洞 등	08.06.03	48	1,840	마을(2); 관리(6)

- ① '의연 주체'는 자료에서 확인되는 이름으로, '지역' 또는 '단체'를 의미함.
- ② 일부 오기로 보이는 '의연 주체' 이름은 수정하여 표기하고 해당 사례는 다음과 같음.
4번 '경村'→'洞村', 47번 '西屯村'→'西屯村', 62-89번 '小北面'→'堰北面', 102번 '安伸場'→'安伸場', 119번 '水下廣德面'→'廣德面', 121~122번 '運水北面'→'水北面'.
- ③ '발간일'은 의연 사례가 수록된 자료(신문)의 발간일임.
- ④ '인원'은 의연에 참여한 인원(건)이며, 일부 단체나 기관을 포함.
- ⑤ '↑' 기호는 인원 또는 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이며, 실제 가입된 수치보다 많음을 뜻함.
- ⑥ '금액'의 단위는 전(錢, 0.01원 또는 환)이고, 수치는 의연금의 합계임. 금액 앞 '신'은 '新貨'를 뜻함.
- ⑦ '비고'의 '마을'은 해당 항목에서 의연에 참여한 '리(里)·'동(洞)'의 수이고, '단체'·'가족'·'아동'·'여성'·'관리'는 각각 해당 항목 의연자를 의미함.

〈표 1〉은 수원지역 국채보상운동 동향을 의연 주체를 기준으로 하여 구분·제시한 것이다. 일부 한계는 있지만,¹¹ 수원지역 국채보상운동의 전반적인 흐름을 개략

11 자료의 한계로 인해 일부 인원과 금액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인원의 경우 10-17-22-29-32-44-54-63-70-78-97-98-100-113-115-118-119번이 이에 해당한다. 10번 오정면(梧井面)은 尹近榮이란 인물이 一洞 看斗里 金谷, 二洞 監村, 四洞 黃金里, 六洞 三丁里, 七洞 塔峴 등 다섯 곳의 대표자로 의연에 나서고 있었다. 윤근영이란 이름만 기재되어 있고, 금액이 상당히 큰 점을 놓고 보면 아마도 의연금 모집

적으로 살펴보면 유용하다. 이때 의연의 주체는 크게 지역(面 단위로 한정)과 단체(종중·회사·종교 등등)로 구분하였는데, 총 122건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의연의 시기는 1907년 3월부터 1908년 6월까지 확인된다. 이를 토대로 수원지역 국채보상운동의 일반적인 동향을 시기별·금액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수원지역 국채보상운동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수원지역 국채보상운동의 시기별 추이

구분	1907.3.	1907.4.	1907.5.	1907.6.	1907.7.	1907.8.	1908.3.	1908.6.	합계	
의연자	인원(건)	25	480	578	121	2,766	343	433	120	4,866
	비율(%)	0.51	9.86	11.88	2.49	56.84	7.05	8.90	2.47	100
의연금	금액(전)	1,200	34,995	28,368	39,429	113,483	17,459	17,422.5	3,330	255,686.5
	비율(%)	0.47	13.69	11.09	15.42	44.38	6.83	6.81	1.30	100

* '금액'의 단위인 전(錢)은 0.01원임.

〈표 2〉를 통해 수원지역 국채보상운동의 시기별 추이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실제 수원지역의 운동과 관련된 동향은 앞서 언급했듯이 3월 초부터 확인되고 있었으나, 실제 의연금 모집 및 공표는 3월 말부터 확인되기 시작하였다. 그 포문을 연 주체는 용주사(龍珠寺) 승도(僧徒) 25명(0.51%)이 1,200전(0.47%)을 의연한 것이

인이 아닐까 생각되며, 그가 각 마을을 대표하여 의연한 금액은 차례대로 각각 3,100전, 2,900전, 1,700전, 4,000전, 800전이였다. 29번도 비슷하다. 모집 대표인 千九鉉이 宗德面 三洞 杜陵里를, 南相吉이 五洞 文谷里, 六洞 芝串里, 七洞 佳山·新基를 대표하여 각각 1,100전과 1,500전을 의연하고 있었다. 한편 22번은 '梧井面 栗里·鶴峴'의 주민 단체 의연인데, 金溶寅 등 9인의 성명이 있지만 그 9인이 전체인지 명확하지 않다. 이외 17번의 '英聖堂 內', 22번의 '栗里·鶴峴 兩洞民', 32번의 '商社 林興洙·宋允明 등', 44번의 '右洞中', 54번 '一洞·二洞·臥牛洞' 등 3개 마을, 63번의 '關此里·古蘭坪·동倉里·甕浦洞' 등 4개 마을, 70번 '陽山里·紙串洞' 등 2개 마을, 78번 '長芝洞', 97번 '汾川洞', 98번 '石村洞', 100번 '府內 新場基商民계都中·府內新場基동里계中'('水原府 右支社 本所兩民秩' 안에 포함), 113번 '葛潭面 二洞·三洞·四洞' 등 3개 마을, 115번 '南谷面 官項洞·晉施洞·浦內一洞' 등 3개 마을, 118번 貢鄉面 '花塘村洞·葛谷拾洞·古州洞·上坪村洞·下坪村洞·上杏亭洞' 등 5개 마을, 119번 廣德面 '一洞·二洞·古州洞·五洞·六洞' 등의 의연은 단일 명의의 합산 의연으로 정확한 참여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이다. 반면, 금액은 인원에 비해 비교적 그 규모를 명확히 알 수 있었다. 구체적인 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가 4건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해당 건은 모두 37번 '수원부(水原府) 內外'에 포함되어 있으며, '車孝舜 夫人朴氏'의 1兩 5錢 6分 무게의 은지환(銀指環) 1건, '車喜均 夫人安氏'의 9錢 7分 무게의 은잠(銀簪) 1건, 李敬儀의 夫人洪氏와 副室崔氏의 무게 1냥 3分짜리 은잠 2건이 그것이다.

었다. 이후 4월부터 수원지역의 운동은 꾸준히 확대되었다. 4월에는 480명(9.86%)이 3만 4,995전(13.69%)을, 5월에는 578명(11.88%)이 2만 8,368전(11.09%)을 의연한 것이다. 이 같은 추세는 6월 들어 조금 주춤하긴 했으나, 7월부터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6월 121명(2.49%)이 3만 9,429전(15.42%)을 의연하여 그 금액 면에서는 앞선 3~5월의 월별 의연금보다는 많았지만, 의연자가 4월과 5월의 거의 20%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다. 하지만 7월에는 다시 반등하여 무려 2,766건(56.84%)의 의연이 확인되고 있으며, 그 금액도 11만 3,483전(44.38%)으로 앞선 기간의 의연건수와 금액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많이 집계되고 있었다. 물론 이 같은 압도적인 추세는 그리 오래 지속되지 못했는데, 바로 다음 달부터 참여 인원과 모금액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해를 바꿔 1908년 3월까지도 어느 정도 의연은 지속되었던 것 같다. 8월 343건(7.05%)의 의연 속에서 1만 7,459전(6.83%)이 모집되었고, 1908년 3월에도 역시 433건(8.90%)의 의연과 1만 7,422.5전(6.81%)의 의연금이 집계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원의 운동은 1908년 6월을 기점으로 사실상 종결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시기 120건(2.47%)의 의연, 3,330전(1.3%)의 모집을 끝으로 더 이상의 집계가 확인되지 않는다. 물론 이런 추세는 신문 자료의 게재일을 기점으로 산정한 것으로 운동의 동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수원지역 국채보상운동의 시기별 동향을 어느 정도 추산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표 3〉 수원지역 국채보상운동 의연금 분포

구분	10전 미만	10~49전	50~99전	100~499전	500~999전	1,000전 이상	미상	합계
의연자	인원(건)	82	3,577	709	454	18	22	4,866
	비율(%)	1.69	73.51	14.57	9.33	0.37	0.45	100
의연금	금액(전)	426.5	70,855.5	38,141	66,663.5	10,780	68,820	255,686.5
	비율(%)	0.17	27.71	14.92	26.07	4.22	26.92	100

① '금액'의 '미상'은 금액 환산이 안 되어 있는 때를 의연을 의미함.

② '금액'의 단위는 전(錢, 0.01원)임.

다음으로 〈표 3〉을 통해 수원지역 국채보상운동의 의연금 분포를 보고자 한다. 의연금은 크게 '10전 미만' > '10~49전' > '50~99전' > '100~499전' > '500~999전' > '1,000전 이상' > '미상' 순으로 구분하였는데, '미상'을 제외한 구간을 참여자의 다과를 기준으로 다시 나열하면 '10~49전'(3,577/73.51%) > '50~99전'(709/14.57%) > '100~499전'(454/9.33%) > '10전 미만'(82/1.69%) > '1,000전 이상'(22/0.45%) > '500~999전'(18/0.37%) 순이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수원지역 국채보상운동 참여자들의 의연금은 대개 100전 이하의 비교적 소액에 집중되어 있었다. 실제 '10전 미만'과 '10~49전', '50~99전' 구간의 의연 건수를 합산하면, 총 4,368건이나 되었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무려 89.77%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는 그만큼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한 이들 대부분이 나라를 위해 빈한한 가세를 돌아보지 않고 참여한 애국적 인민들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그런데 전체 의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앞선 금액 구간별 참여자(건) 비율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이를 금액이 높은 구간 순으로 나열하면, '10~49전'(70,855.5/27.71%) > '1,000전 이상'(68,820/26.92%) > '100~499전'(66,663.5/26.07%) > '50~99전'(38,141/14.92%) > '500~999전'(10,780/4.22%) > '10전 미만'(426.5/0.17%) 순이었다. 물론 참여자가 70% 이상 집중되어 있었던 '10~49전' 구간의 총 의연 금액이 7만 855.5전으로 역시 가장 많았지만, 그 비중은 27.71%로 1,000전 이상 고액 의연자들의 의연금 합인 6만 8,820전과 큰 차이가 없었다. 이 같은 경향은 어느 정도 유의미한 의연금 액수라고 할 수 있는 100전(1원·환)을 기준으로 나눠볼 때 좀 더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100전 미만의 경우는 앞서 언급했듯이 총 4,368건으로 사실상 전체의 90%를 점하고 있었지만, 그 의연금의 합계는 10만 9,423전으로 전체 25만 5,686.5전의 42.7%에 그치는 것이다.¹²

이 같은 경향을 염두에 두고 수원지역 운동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의연한 이들 상위 30명(건)을 추출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들은 대개가 1,000전 이상 의연자였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전체 금액에서 고액의연자의 의연액이 갖는 비중과

12 그런데 이 같은 경향성은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수원지역 국채보상운동 의연 사례 중 단일 건으로 가장 큰 금액을 모금한 것은 '상사(商社)'의 두령 '임흥수(林興洙)'·'송윤명(宋允明)' 등이 취합한 30,000전이었던. 이는 수원지역 국채보상운동 전체 모금액의 10%가 넘는 금액이었는데, 문제는 구체적으로 상사의 회원 몇 명이 각각 얼마의 금액을 의연했는지 알 길이 없다는 사실이다.

그 성격 및 한계를 설명하는 데에도 어느 정도 효용성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표 4〉 수원지역 국채보상운동 의연금 상위 목록¹³

순위	명의	금액	구분	순위	명의	금액	구분
1	商社 林興洙·宋允明 등	30,000	단체	16	車喜均(水原府)	1,000	개인
2	英聖堂	6,020	단체	17	李敬儀(水原府)	1,000	개인
3	梧井面 三丁里 윤근영	4,000	마을	18	차형린(水原府 耶蘇教會堂)	1,000	개인
4	梧井面 看斗里 金谷 윤근영	3,100	마을	19	림XX(右支社 本所兩民秩)	1,000	개인
5	金宗漢(水原府)	3,000	개인	20	宋윤명(右支社 本所兩民秩)	1,000	개인
6	梧井面 監村 윤근영	2,900	마을	21	新場基商民界都中	1,000	단체
7	羅聖奎(國債報償會 財務員)	2,000	단체	22	南谷面 浦內一洞	1,000	마을
8	車裕순(國債報償會 財務員)	2,000	단체	23	梧井面 栗里·鶴峴 兩洞民	900	마을
9	梧井面 黃金里 윤근영	1,700	마을	24	梧井面 塔峴 윤근영	800	마을
10	宗德面 文谷里·芝串里·佳山里·新基里 대표인 南相吉	1,500	마을	25	朴致伯(西新里面 玄谷洞)	800	개인
11	정인철(左社 教務員)	1,500	개인	26	龍伏面 一洞	700	마을
12	宗德面 杜陵里 대표인 千九鉉	1,100	마을	27	廣德面 一洞	700	마을
13	徐賢輔(宿城面 宿城里)	1,000	개인	28	甘味面 甕浦洞	600	마을
14	車孝舜(水原府)	1,000	개인	29	南谷面 官項洞	600	마을
15	崔東弼(水原府)	1,000	개인	30	廣德面 四洞	600	마을

* '금액'의 단위는 전(錢, 0.01원)임.

〈표 4〉를 통해 수원지역 국채보상운동 상위 목록을 보자. 이들을 크게 단체·마을·개인으로 구분해 보면, 단체는 5건(16.6%), 마을은 14건(46.6%), 개인은 11건

13 본 논문 심사자께서 1번 '商社 林興洙·宋允明 등'과 19번[림XX(右支社 本所兩民秩)] 및 20번[宋윤명(右支社 本所兩民秩)]의 중복 가능성(1번 안에 19·20번이 포함)에 대한 의견을 주셨다. 해당 의견대로 19번 '림XX'는 1번의 '林興洙', 20번의 '宋윤명'은 1번의 '宋允明'으로 보인다. 단, 19·20번의 의연액이 1번에 포함된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이는 해당 의연금이 게재된 시점 때문인데, 예컨대 1번은 「대한매일신보」 1907년 6월 11일자 '商社義捐' 기사에 게재되어 있고, 19·20번은 「대한매일신보」 한글판 1907년 8월 3일자 「國債報償義捐金: 八月中本社收入總額每日逐号明細錄」 기사에 탑재되어 있다. 게재일 기준으로 두 달의 간격이 있고, 더 나아가 후자의 경우는 의연 주체가 '水原府 右支社 本所兩民秩'로 해당 기사 의연액의 합계는 5,650원이었다. 무엇보다 8월자 기사 제목 자체가 '八月中本社收入'을 표방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의견대로 상사에서 30,000원의 의연금을 6월 11일자로 게재하고, 이후 右支社에서 의연한 금액 5,650원을 명단을 첨부해서 한글판에 탑재했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현재로서는 정확한 사정을 파악하기 어렵다.

(36.6%)으로 마을 전체의 의연을 하나의 명의로 의연한 게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순수 개인이 고액을 의연한 경우가 뒤를 이었다. 그리고 마을을 제외한 특정 목적을 위해 결성된 결사의 의연이 비교적 가장 적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금액은 건수와 비례하지 않았다. 단체가 4만 1,020전(55.05%)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마을로 2만 200전(27.11%), 마지막으로 개인으로 1만 3,300전(17.85%)이었다. 그리고 단체 의연금 중에서도 가장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1위 '상사'의 의연액 3만 전이었다. 이들은 '상무사(商務社)'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며, 그 의연 규모는 수도 서울의 관문으로 상업의 중심지이기도 했던 수원지역의 인문사회적 환경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도 했다.

그리고 이 같은 맥락에서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을 의연한 '영성당'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수원지역 운동의 초기 동향과 관련하여 영국인 신부 부재열과 전교사 김만준의 사례를 언급하였는데, 정황상 '영성당'은 이 영국인 신부 부재열이 주관하는 성공회 성당을 의미한다. 물론 해당 기사에 언급된 금액의 절반만 모금된 것은 좀 의아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 규모가 상기 '상사' 의연액에 이어 두 번째로 고액이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기독교도의 의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수원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다음으로 개인 고액 의연자를 보자. 김중한(金宗漢)·정인철(鄭寅哲)·서현보(徐賢輔)·차효순(車孝舜)·최동필(崔東弼)·차희균(車喜均)·이경의(李敬儀)·차형린·림XX(임윤수 추정)·송윤명·박치백(朴致伯) 등 11인으로, 많게는 3,000전에서 적게는 800전을 의연하고 있었다. 이들 중 정인철·림XX·송윤명 등 3인은 상업계 종사자였고, 차형린은 기독교인이었음을 의연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외 김중한 등 7인을 보면 대개 전·현직 관리였는데, 이들과 관련된 내용은 뒤에서 좀 더 부연하고자 한다.

3. 운동 참여 경로와 참여자 분석

국채보상운동 참여자들은 크게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운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지역'과 '단체'가 그것이다. 주지하듯 운동은 대개 '지역'을 매개로 이루어졌다. 특

정 동리의 주민들이 해당 동리에서 단체로 의연에 동참하거나, 또는 ‘단체’를 매개로 하여 운동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이다. 수원지역도 마찬가지였으며, 이는 <표 5>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표 5> 수원지역 국제보상운동 지역별 의연 인원·금액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의 연 자	인원(건)	284	↑50	↑209	↑51	24	278	↑178	↑3	101	277	453
	비율(%)	5.84	1.03	4.30	1.05	0.49	5.71	3.66	0.06	2.08	5.69	9.31
	지역비율	6.54	1.15	4.82	1.18	0.55	6.41	4.10	0.07	2.33	6.38	10.44
의 연 금	금액(전)	↑24,608	2,850	6,805.5	4,336	617.5	7,023	4,625	1,700	1,844	9,035	14,415
	비율(%)	9.62	1.11	2.66	1.70	0.24	2.75	1.81	0.66	0.72	3.53	5.64
	지역비율	13.44	1.56	3.72	2.37	0.34	3.84	2.53	0.93	1.01	4.93	7.87
구분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㉒	
의 연 자	인원(건)	↑45	↑180	152	47	47	86	3	177	180	↑77	↑106
	비율(%)	0.92	3.70	3.12	0.97	0.97	1.77	0.06	3.64	3.70	1.58	2.18
	지역비율	1.04	4.15	3.50	1.08	1.08	1.98	0.07	4.08	4.15	1.77	2.44
의 연 금	금액(전)	2,161	4,410	4,950	2,910	1,590	1,660	90	8,102.5	5,353	2,050	4,066
	비율(%)	0.85	1.72	1.94	1.14	0.62	0.65	0.04	3.17	2.09	0.80	1.59
	지역비율	1.18	2.41	2.70	1.59	0.87	0.91	0.05	4.42	2.92	1.12	2.22
구분	㉓	㉔	㉕	㉖	㉗	㉘	㉙	㉚	㉛	㉜	㉝	
의 연 자	인원(건)	34	↑57	74	120	4	18	↑34	32	73	54	387
	비율(%)	0.70	1.17	1.52	2.47	0.08	0.37	0.70	0.66	1.50	1.11	7.95
	지역비율	0.78	1.31	1.71	2.76	0.09	0.41	0.78	0.74	1.68	1.24	8.92
의 연 금	금액(전)	680	14,746	1,841	3,330	100	1,000	3,150	900	5,215	5,095	15,340
	비율(%)	0.27	5.77	0.72	1.30	0.04	0.39	1.23	0.35	2.04	1.99	6.00
	지역비율	0.37	8.05	1.01	1.82	0.05	0.55	1.72	0.49	2.85	2.78	8.38
구분	㉞	㉟	㊱	㊲	㊳	계(①~㉞)	단체	합계				
의 연 자	인원(건)	198	4	235	↑3	↑5	4,340	526	4,866			
	비율(%)	4.07	0.08	4.83	0.06	0.10	89.19	10.81	100			
	지역비율	4.56	0.09	5.41	0.07	0.12	100					
의 연 금	금액(전)	7,539	120	5,550	839	2,480	183,126.5	72,560	255,686.5			
	비율(%)	2.95	0.05	2.17	0.33	0.97	71.62	23.88	100			
	지역비율	4.12	0.07	3.03	0.46	1.35	100					

* 괄호 안 지역은 해당 면 내에서 의연에 참여한 리·洞임. ① 水原府·郡; ② 甘味(大陽里·松山里·開此里·古蘭里·동倉里·甕浦洞); ③ 貢鄕(斗谷洞·三峯里·海倉洞·梅安洞·桃李洞·月門里·堤巖洞·卜村洞·西近村洞·場基洞·防築洞·花塘村洞·葛谷洞·古州洞·上坪村洞·下坪村洞·上杏亭洞); ④ 南谷(歸來洞·普通川洞·官項洞·晉施洞·浦內一洞); ⑤ 南(上斗里); ⑥ 南部(禿山洞·遠川洞·高等村洞·芝長洞·上柳川洞·大村洞); ⑦ 東北(右洞里·二洞·清溪里·石隅洞·池沙井洞·內洞·中村洞); ⑧ 龍伏(一洞·二洞·臥牛洞); ⑨ 梅谷(院坪里·造山里); ⑩ 文市(錦巖洞·篤洞·五洞·石串洞·中細橋·一洞·祭廳峴洞·細橋洞); ⑪ 北部(桐村·西屯村洞·迎華亭·觀吉洞·紙所洞·石山洞·花山洞·店村洞·高陽洞·上光教洞·下光教洞·軍器洞·山南洞·北水洞); ⑫ 山城(細橋洞·陽山里·紙串洞); ⑬ 三峯(水機洞·防築洞·內洞·上洞·汾川洞); ⑭ 床笏(床笏面·仙儀洞·一洞·二洞); ⑮ 西新里(玄谷洞); ⑯ 堰北(橋浦洞·安頭院·上垈里); ⑰ 粟北(磨川洞·東青里); ⑱ 松洞(柿谷里); ⑲ 宿城(宿城里·四洞·梁橋洞·大兼堂里·二洞·竹洞·小竹洞·三洞·舟橋洞); ⑳ 安寧(安寧里·培養洞·中泮亭里·下泮亭里·澗村洞); ㉑ 楊口(楊口面·西新旺里·篤柱洞·倉洞·大晚村洞·石村洞·一洞); ㉒ 漁吞(防橋里·山尺洞·長芝川洞·長芝洞·內洞); ㉓ 堰里(堂里·右二洞·右塔洞); ㉔ 梧井(看斗里·金谷·監村·黃金里·三丁里·塔峴·五洞·龍村·栗里·鶴峴); ㉕ 雨井(二洞); ㉖ 水北(壁洞·栢峯里·道念里·東堰里·X里洞·黃谷里·間山洞·佳川洞·魚淵里); ㉗ 日用(花山洞); ㉘ 正林(二洞); ㉙ 宗德(四洞·杜陵里·文谷里·芝串里·佳山里·新基里); ㉚ 青龍(德佑里); ㉛ 晴湖(烏山洞); ㉜ 楚坪(六洞·佳水洞·西村洞·伍洞); ㉝ 台村(一洞·貳洞·三洞·四洞·莘村洞·梅灘里·龜峰里·防築里); ㉞ 土津(甕浦四洞·於橋里·桃湖洞·板橋里); ㉟ 玄巖(寶善洞); ㊱ 荊石(梨木洞·栗田洞·上九雲洞·泉川洞·下九雲石洞); ㊲ 葛潭(二洞·三洞·四洞); ㊳ 廣德(一洞·二洞·四洞·五洞·六洞).

* ‘인원’ 및 ‘금액’의 ‘비율’은 ‘단체’ 단위 의연자 인원·금액을 포함한 수치이고, ‘지역비율’은 ‘지역’ 단위 의연자 인원·금액만을 합산한 수치임.

먼저 수원지역 국제보상운동의 지역 의연을 보자. <표 5>는 수원지역 운동 의연금 중 지역 단위 의연을 표로 정리하여 제시한 것이다. 이를 통해 보면, 지역 단위 의연은 총 4,340명(건)이 확인되며, 그 금액은 18만 3,126.5천으로 전체의 각각 89.19%와 71.62%를 차지하고 있었다. 참여 건수와 금액 모두 단체를 통한 의연을 압도하고 있었는데, 특히 참여자(건)의 경우가 그랬다. 면(面)을 기준으로 수원지역에서 가장 많은 참여자를 배출한 곳은 구체적인 세부 지역을 알 수 없는 ‘① 수원부’를 제외하고 200건 이상인 여섯 곳(③ 貢鄕面, ⑥ 南部面, ⑩ 文市面, ⑪ 北部面, ㉓ 台村面, ㉞ 荊石面) 정도로 압축된다. 가장 많은 곳은 북부면(北部面)으로 무려 453건의 의연이 이루어졌고, 금액도 1만 4,415천이나 되었다. 지역 의연 건수의 10.43%, 금액도 7.87%에 달한다. 금액 측면에서는 ‘① 수원부’가 2만 4,608천 이상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김중환 등 수원에 거주하는 전·현직 고위 관료들의 거액 의연금을 머금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① 수원부’의 의연액은 지역 단위 의연액의 13.43%, 전체 의연액의 9.62%에 달했다.

이외 ‘면(面)’ 단위로 많은 의연금을 낸 지역은 세 곳 정도를 지목할 수 있다. ⑩ 북부면, ㉔ 오정면, ㉓ 태촌면인데, 각각 1만 4,415천(7.87%), 1만 4,746천(8.05%), 1

만 5,340(8.37%)전이였다. 이중 ⑪ 북부면과 ⑬ 태촌면은 자체로 의연 건수가 각각 453건과 387건으로 가장 많은 곳들이었으므로 연계가 되는데, ⑭ 오정면의 의연 건수는 57건으로 다소 차이가 있다. 이는 ⑭ 오정면의 의연 사례 중 일부가 실제로는 복수 인원의 의연이었음에도 단일 명의로 의연된 경우가 많아서 그렇다. 예컨대 오정면 내 간두리(看斗里) 금곡(金谷), 감촌(監村), 황금리(黃金里), 삼정리(三丁里), 탑현(塔峴) 등은 모두 윤근영이란 인물이 단독 명의로 의연금을 수합하여 의연한 것인데, 그 금액만도 1만 2,500전이였다.

다음으로 <표 6>을 토대로 수원지역 국채보상운동 중 단체를 통한 의연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의연 건수와 금액 규모를 보면, 건수의 경우 526건으로 전체 4,866건 대비 10.81%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규모가 크지는 않았다. 다만 앞서도 언급했듯이 금액은 비교적 높은 편으로 7만 2,560전을 모집했는데 이는 전체의 28.38%에 달한다.

이들 단체 의연은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 가능하다. 상업·종교·학생·종중·국채보상회가 그것이다. 일단 상업계 단체 의연 동향을 보자. 상업계 단체 의연은 ⑤ 상사, ⑬ 우지사(右支社) 본소량민질(本所兩民秩), ⑰ 발안장상민질(發安場商民秩), ⑱ 안중장상민질(安仲場商民秩), ⑲ 김량장상민질(金良場商民秩), ⑳ 오산장상민질(烏山場商民秩) 총 6개 단체에서 확인된다. 이들 중 ⑬~⑳은 '수원부내우지사(水原府內右支社) 제2회' 의연에 묶여서 모금되었다. 이들 6개 단체의 의연 건수는 총 225건, 금액은 4만 2,475전으로 단체 의연 건수의 42.7%, 금액은 58.5%였다. 참여 건수는 물론 금액에도 수원지역 단체 의연을 주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금액의 경우는 단체 의연금의 절반을 상회하고 있었다.¹⁴

상업계만큼은 아니나 종교계 역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종교는 다시 기독교와 불교계로 구분되는데, 기독교는 ③ 영성당, ⑧ 야소교회당(수원부), ⑨ 해창야소교당(海倉耶蘇教堂, 貢鄉面), ⑩ 선납재야소교당(仙納財耶蘇教堂), ⑪ 감미(甘味)·유원동 야소교원(토진면), ⑫ 지장동(芝長洞) 야소교중(南部面), ⑬ 장지동(長

14 물론 '水原府內右支社 第二回'에 묶인 시장들을 수원지역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안중장(安仲場)은 오늘날 평택시, 김량장(金良場)은 용인시, 오산장(烏山場)은 오산시에 속한 지역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원부 내 우지사(右支社) 단체의 의연의 일환으로 모금되어 게재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수원지역 내 상업계 모금으로 분류하여 취급하고자 한다.

芝洞) 耶蘇堂(漁吞面), ⑭ 산척동(山尺洞) 야소교당(漁吞面) 등 여덟 개 단체, 불교계는 ① 용주사승도(龍珠寺僧徒), ⑮ 미륵당(彌勒堂, 日用面)으로 두 개 단체가 참여하였다. 이들 종교계 단체 건수와 금액은 각각 180건에 1만 4,440전에 달해 단체 의연 건수의 34.2%와 19.9%에 달하고 있었다.

<표 6> 수원지역 국채보상운동 단체 의연 경로·인원·금액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의연자	인원(건)	25	36	11	32	11	51	12	44	19	12	14	7	39
	비율(%)	0.51	0.74	0.02	0.66	0.02	1.05	0.04	0.90	0.39	0.25	0.29	0.14	0.80
	단체비율	4.75	6.84	0.19	6.08	0.19	9.70	0.38	8.37	3.61	2.28	2.66	1.33	7.41
의연금	금액(전)	1,200	2,700	6,020	1,120	30,000	7,825	4,000	4,250	640	250	320	129	1,171
	비율(%)	0.47	1.06	2.35	0.44	11.73	3.06	1.56	1.66	0.25	0.10	0.13	0.05	0.46
	단체비율	1.65	3.72	8.30	1.54	41.35	10.78	5.51	5.86	0.88	0.34	0.44	0.18	1.61

구분	⑭	⑮	⑯	⑰	⑱	⑳	계(①~⑳)	지역	합계		
의연자	인원(건)	6	13	33	63	36	47	45	526	4,340	4,866
	비율(%)	0.12	0.27	0.68	1.29	0.74	0.97	0.92	10.81	89.19	100
	단체비율	1.14	2.47	6.27	11.98	6.84	8.94	8.56	100		
의연금	금액(전)	160	300	5,650	2,330	1,310	1,000	2,185	72,560	183,126.5	255,686.5
	비율(%)	0.06	0.12	2.21	0.91	0.51	0.39	0.85	28.38	71.62	100
	단체비율	0.22	0.41	7.79	3.21	1.81	1.38	3.01	100		

① '구분'의 '단체' 이름은 다음과 같다. ① 龍珠寺僧徒; ② 官立水原農林學校; ③ 英聖堂; ④ 光山金氏宗中(床笏南 兩面); ⑤ 商社; ⑥ 水原公立普通學校; ⑦ 水原府國債報償會; ⑧ 耶蘇教會堂(水原府); ⑨ 海倉耶蘇教堂(貢鄉面); ⑩ 仙納財耶蘇教堂; ⑪ 甘味·유원동 耶蘇教員(土津面)¹⁵; ⑫ 芝長洞 耶蘇教中(南部面); ⑬ 長芝洞 耶蘇堂(漁吞面); ⑭ 山尺洞 耶蘇教堂(漁吞面); ⑮ 彌勒堂(日用面); ⑯ 右支社 本所兩民秩; ⑰ 發安場商民秩; ⑱ 安仲場商民秩; ⑲ 金良場商民秩; ⑳ 烏山場商民秩

② '인원(건)'과 '금액'의 '비율'은 '합계' 대비 의연자 인원(건)·금액의 비율이고, '단체비율'은 단체 의연자 인원(건)·금액 대비 비율임.

15 원문엔 '土津面 甘味洞 유원동'으로 나오는데, 오키로 보인다('國債報償義捐金: 七月中本社收入總額 毎日逐号明細錄(한글판)', 『大韓每日申報』 1907년 7월 10일). 이 시기 '甘味'는 '洞'이 아니라 '面'이었고, '유원동'이란 지명도 확인되지 않는다. 그런데 '토진면(土津面)'은 실제 있었기 때문에 '토진면'과 '감미면(甘味面)'을 연달아 기재하는 것도 형식상 맞지 않는 실정이다.

교육계 단체는 ② 관립수원농림학교(官立水原農林學校)와 ⑥ 수원공립보통학교(水原公立普通學校) 두 곳이 참여하였다. 의연 건수는 도합 87건, 금액은 1만 525전으로, 단체 건수의 16.5%, 금액의 14.5%였다.

이의 종중과 국채보상기성회의 단체의연도 확인되는데, 이들의 의연은 실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물론 표면적으로 종중은 ‘④ 광산김씨종중(床笏·南 兩面)’ 32명이 1,120전을 의연하였고, 국채보상기성회는 ‘⑦ 수원부국채보상회(水原府國債報償會)’가 2건 4,000전을 의연하였지만 실상을 보면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 건들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부언하면, 종중의 경우는 사실 자료에서 명확하게 종중 의연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실제 명단을 보면 종중 의연으로 보이는 사례가 적잖이 확인되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 필자의 추정에 따르면 앞서 언급한 ‘④ 광산김씨종중(床笏·南 兩面)’ 32명 외에도 무려 375명이 더 확인된다. 이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 7>과 같다.

<표 7>을 통해 보면, 수원지역 내 12개 면단위 지역(甘味·南·文市·北部·三峯·床笏·粟北·宿城·楊澗·台村·土津·荊石)에서 16개 성씨(金·徐·孫·申·安·梁·嚴·芮·元·尹·李·任·정·車·崔·許)가 무리를 이루어 의연에 동참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¹⁶ 이들을 종중으로 편입하여 보면 수원지역 국채보상운동의 판도는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즉 의연 건수만도 407명에 이르기 때문에 단체 의연이 526건에서 901건으로 증가하고, 그에 따라 전체에서 차지하는 단체의연의 비중은 18.5%로 8%나 증가하게 된다. 자연히 단체의연에서 차지하는 종중의 비중도 증가하는데, 인원은 6%에서 무려 45%로 거의 40%가 증가하고, 의연금의 규모도 1,120전 1만 5,089전으로 10배

16 물론 이들 성씨들의 의연을 보면, 앞서 언급한 ‘④ 光山金氏宗中’처럼 구체적인 본이 적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하나의 종중으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에서 이들을 하나의 종중으로 추정하는 것은 孫·梁·嚴·申씨처럼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희성에 해당하는 성씨들이 이처럼 무리를 이루어 의연을 하는 경우를 찾아보기 힘든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더 나아가 실제 그 이름의 면면을 보면 항렬에 따른 돌림자를 쓰는 것으로 보이는 이름이 다수 확인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南面 上斗里 김씨 의연자의 이름만 순서대로 나열하면, 君슈·東洙·明洙·武鎭·善明·陽슈·영建·영득·영錫·영善·영승·영點·영祚·영柱·영흥·完슈·容九·容大·원明·潤洙·儀洙·益洙·泰슈 등인데, 이들은 김○洙(또는 ○슈) 9명(39.1%), 김영○ 9명(39.1%), 김容○ 2명(8.6%), 김○明 2명(8.6%), 불명(김武鎭) 1명(4.3%)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즉 구체적인 본관과 항렬을 파악하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이들이 하나의 종중 자격으로 마을에서 의연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추정하기에는 충분한 것이다.

이상 증가한 가운데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기존 1.5%에서 20.7%로 대폭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 수원지역 국채보상운동 종중 의연 추정 사례

번호	지역			종중 성씨	종중			
	지역	의연자(건)	의연금(전)		의연자		의연금	
					인원(건)	비율(%)	금액(전)	비율(%)
1	土津面 桃湖洞	118	4,934	신씨(申哲雨 등)	64	54.2	3,370	68.3
2	台村面 三洞	161	7,920	엄씨(嚴勳섭 등)	39	24.2	1,686	21.2
3	甘味面 大陽里	26	960	이씨(李啓郁 등)	25	96.1	950	99.0
4	南面 上斗里	24	617.5	김씨(김영點 등)	23	95.8	597.5	96.8
5	文市面 五洞	72	2,420	차씨(車濟南 등)	21	29.1	1,220	50.4
6	粟北面 東靑里	56	1,060	허씨(許萬植 등)	19	33.9	340	32.1
7	甘味面 松山里	20	800	양씨(梁己환 등)	18	90	650	81.3
8	文市面 五洞	72	2,420	임씨(任成준 등)	18	25	480	19.8
9	粟北面 磨川洞	30	600	정씨(正鳳海 등)	17	56.6	410	68.3
10	台村面 一洞	41	1,600	이씨(李潤性 등)	16	39	760	47.5
11	台村面 貳洞	20	660	안씨(安河錫 등)	15	75	510	77.3
12	文市面 中細橋	19	460	원씨(元興賢 등)	13	68.4	325	70.7
13	文市面 一洞	49	1,735	엄씨(嚴主尙 등)	12	24.4	340	19.6
14	文市面 一洞	49	1,735	윤씨(尹仁求 등)	12	24.4	480	27.7
15	楊澗面 篤柱洞	14	320	이씨(李康信 등)	12	85.7	300	93.8
16	荊石面 下九雲石洞	54	1,600	손씨(손호근 등)	11	20.3	460	28.8
17	北部面 高陽洞	16	400	정씨(正弼朝 등)	11	68.7	280	70.0
18	床笏面 一洞	26	900	예씨(芮大尹 등)	10	38.4	450	50.0
19	宿城面 宿城里	37	4,100	서씨(徐賢輔 등)	9	24.3	200	4.8
20	三峯面 防築洞	11	210	최씨(崔特환 등)	8	72.7	160	76.2

물론 종중 간의 의연에서도 참여의 경중은 있었다. 참여 인원과 금액에 있어서는 토진면 도호동(桃湖洞)에서 64명이 3,370전을 의연한 신철우(申哲雨)를 필두로 한 신씨가 가장 왕성했다. 이들의 의연은 도호동 의연 건수의 절반을 상회하는 54.2%,

금액은 거의 3분의 2에 근접하는 68.3%를 차지하였다.¹⁷ 이외 참여 인원은 비교적 적지만 해당 지역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오히려 더 높은 경우도 여럿 있었다. 대표적인 게 감미면 대양리(大陽里)에서 이계욱(李啓郁)을 중심으로 참여한 이씨, 남면 상두리(上斗里)에서 김영점을 중심으로 참여한 김씨, 감미면 송산리(松山里)에서 양기환을 중심으로 참여한 양씨였다. 먼저 감미면 대양리의 이씨는 25명이 950전을 의연했는데, 이는 해당 지역 의연 건수의 96.1%, 금액은 99%에 달하는 것이었다.¹⁸ 남면 상두리 김씨의 의연도 비슷해서 23명이 597.5전을 의연했는데, 이는 건수의 95.8%, 금액의 96.8%에 달하는 것이었고,¹⁹ 감미면 송산리의 양씨도 18명이 650전을 의연하여 해당 지역 의연 건수의 90%, 의연금의 81.3%를 차지하고 있었다.²⁰

다음으로 수원부국채보상회의 단체의연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자. 현재 자료에서 명확하게 확인되는 ‘수원부국채보상회’ 명의의 의연은 2건으로, 엄밀히 보면 수원부국채보상회 재무(財務) 나성규(羅聖奎)와 차유순이 각각 의연한 2,000전이다. 이 금액은 양인이 보상회의 임원으로 수급한 금액을 의연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단체를 통해 의연한 이들을 명확하게 알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앞서 고액 의연자에 이름을 다섯 차례나 올린 윤근영 역시 오정면 내 다섯 마을의 대표인으로 의연을 5회나 하고 있는데, 정황상 이 역시 수원부국채보상회 또는 여타 확인되지 않는 보상회(報償會)의 회원 자격으로 의연을 중간에서 취합·전달했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²¹ 결국 이 같은 한계를 염두에 놓고 보면, 실제 수원지역 국채보상운동에서 단체를 통한 의연 건수와 금액은 앞서 언급한 것보다 더욱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다음으로 수원지역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한 전·현직 관료에 대해 검토해 보자. 필자가 확인한 이들은 총 18인이었는데, 이들을 정리해 보면 <표 8>과 같다.

17 「國債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 『皇城新聞』 1907년 8월 20일.
 18 「國債報償義務捐金: 七月中本社收入總額每日逐号明細錄(한글판)」, 『大韓每日申報』 1907년 7월 12일.
 19 「國債報償義務捐金: 七月中本社收入總額每日逐号明細錄(한글판)」, 『大韓每日申報』 1907년 7월 16일.
 20 「國債報償義務捐金: 七月中本社收入總額每日逐号明細錄(한글판)」, 『大韓每日申報』 1907년 7월 12일.
 21 「國債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 『皇城新聞』 1907년 4월 26일.

<표 8> 수원지역 국채보상운동 전·현직 관료 참여자

번호	이름	신분 또는 지역	금액	번호	이름	신분 또는 지역	금액
1	윤태重	官立水原農林學校 生徒教授補	150	10	김永根	前主事(水北面 壁洞)	80
2	변國璿	官立水原農林學校 生徒教授補	150	11	韓明教	前主事(水北面 ◆里洞)	200
3	김宗漢	宮內府 特進官(1904년)	3,000	12	金元奎	主事(水北面 間山洞)	100
4	車孝舜	水原監官(1904년)	1,000	13	朴悌乘	司果(水北面 佳川洞)	80
5	崔東弼	華寧殿儀物修改時別監董	1,000	14	리永官	參奉(水北面 佳川洞)	20
6	車喜均	西屯防禦養魚監官(1904년)	1,000	15	金◆植	司果(水北面 魚淵里)	200
7	김斗鉉	執綱(台村面 三洞)	140	16	徐相祿	參奉(水北面 魚淵里)	100
8	鄭寅哲	左社 教務員(北部面 軍器洞)	1,500	17	김庭植	司果(水北面 魚淵里)	80
9	俞炳五	議官(楚坪面 西村洞)	100	18	崔善基	參奉(水北面 魚淵里)	10

수원지역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한 전·현직 관료층은 낮게는 종9품에 해당하는 참봉부터 높게는 당시 정권 실세들이 거쳐갔던 궁내부(宮內府) 특진관(特進官)까지 다양한 층위를 구성하고 있었다. 이들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인물은 3,000전을 의연한 김종한이다. 그는 조선시대의 저명한 문신이었던 김상용(金尙容)의 제12대 후손으로 1876년 문과에 급제한 이래 1886년 종2품을 거쳐 1901년 종1품으로 승진하였고, 운동 직전인 1904년에는 궁내부 특진관을 역임한 인물이었다. 그리고 오늘날 신한은행의 전신인 조흥은행의 초대 은행장이기도 했다.²² 국채보상운동 당시 수원지역에 대한 영향력 역시 가장 강력한 인물 중 한 명이 아니었나 생각되는데, 실제 그는 13도 대표로 구성된 국채보상연합회의소 의장에 추대되기도 하였다.²³

김종한보다는 금액이 적지만 역시나 중요한 인물들이 더 있는데, 1904년 ‘수원감관’을 지낸 것으로 전해지는 차효순이 그 주인공이다.²⁴ 자체로 1,000전이라는 상당히 고액을 의연하였고, 운동 3년 전에 ‘수원감관’을 지냈다고 전해진다는 점에서 수원지

22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근현대인물자료 김종한(http://db.history.go.kr/id/im_101_03394).
 23 「組織總會」, 『大韓每日申報』 1907년 4월 11일.
 24 수원지역에는 ‘현(縣)’이 설치된 적이 없으므로, 차효순이 ‘수원현감’을 역임했다는 내용 역시 와전된 것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그가 1907년 9월 30일 정3품의 자격으로 수원지역의 지방위원에 선임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수원현감’ 역임 여부를 차치하고서라도 수원지역에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음을 파악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다(『官廳事項』, 『官報』 1907년 9월 30일).

역에서 갖고 있는 영향력 역시 상당했으리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다.²⁵

최동필은 1907년 당시 정3품으로 화령전의물수개시별감동(華寧殿儀物修改時別監董)에 임명되고 있었다.²⁶ 참고로 이 화령전(華寧殿)은 화성행궁 옆에 세운 건물로 정조의 초상화를 모셔 놓은 영전(影殿)이었다. 그런데 최동필의 임명과 관련해서는 그 시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07년 3월 8일 관보에 해당 사실이 고시되었는데, 이때 같이 발령을 받은 인물이 바로 '김한목'이기 때문이다. 경기관찰도참서관(京畿觀察道參書官) 김한목은 주지하듯 이미 3월 초 수원지역에서 국채보상운동을 가장 먼저 독려했던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인물이었다.

이 외에 1,000전의 고액을 의연한 차회군도 수원군 서둔방축양어감관(西屯防禦養魚監官)이었고,²⁷ <표 8>에서는 특정하여 기재하지 않았지만 마찬가지로 1,000전을 의연한 서현보·이경의 등도 동명이인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나 관직활동을 한 정황이 확인된다.²⁸

이 같은 맥락에서 보면 전·현직 관료가 직접적으로 의연한 금액이나 그 참여자의 수는 전체 규모와 금액을 놓고 볼 때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수원지역의 운동을 가장 먼저 추동한 김한목이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현직 관료였고, 실제 이후 수원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의연한 이들의 상당수가 전·현직 관료였다는 점을 놓고 보면, 적어도 근기의 핵심 지역 중 한 곳이었던 수원의 경우는 전·현직 관료의 운동 참여가 나름 유의미한 반향을 일으키는 하나의 계제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다음으로 상인층의 참여를 보자. 사실 수원지역 상인층의 의연 참여는 단체 참여 방식을 띠고 있다. 앞서 언급한 단체를 통한 참여자 225건을 제외하고, 개별적으로 참여한 상인은 2명 정도가 확인된다. 북부면 군기동(軍器洞)에서 좌사(左社) 교무원 정인철이 1,500전을 의연하였고,²⁹ 이외 주소가 명확하지 않은 수원지역의 유기

25 車孝舜(水原監官), 「報告書副本」, 『光武八年度 京畿各郡報告 上』, 1904년(https://db.history.go.kr/joseon/level.do?levelId=ks_002_0080_0120).

26 「敍任及辭令」, 『官報』 1907년 3월 8일.

27 http://db.history.go.kr/id/mk_082_0090_0550.

28 徐賢輔(「敍任及辭令」, 『官報』 1905년 2월 17일), 李敬儀(「敍任及辭令」, 『官報』 1906년 8월 14일). 단, 이 양인의 경우 전·현직관리로 분류하지는 않았다.

29 「國債報償義捐金: 七月本中社收入總額每日逐号明細錄(한글판)」, 『大韓每日申報』 1907년 7월 17일.

상(鑰器商) 김병욱(金炳旭)이 의연한 50전이 전부인 것이다.³⁰ 그런데 정인철도 '좌사 교무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상인단체의 일원이었고, 그가 의연한 금액이 1,500전이나 되었다는 점에서 자료상으로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좌사 회원들의 의연금을 수합하여 제출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결국 그렇다면 남는 것은 수원지역에 거주하는 유기상 김병욱을 제외하면 지역의 상인들은 개별적인 의연에는 참여하지 않고, 사실상 전부가 조직적으로 운동에 동참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앞서 단체를 통한 의연에서 언급했듯이, 수원지역 국채보상운동에는 종교를 신봉하는 이들이 적잖이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크게 기독교와 불교로 양분된다. 일단 기독교는 143명이 확인되는데, 실제로는 그 이상이였다. 영국인 신부 부재열이 취합하여 의연한 6,020전이 1건으로 산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제외하고 볼 때 가장 주목할 만한 인물로 네 명을 언급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차형린이다. 정황상 그는 연안차씨 가문의 '차형린(車珩麟)'으로 보이는데, 다른 기록에 따르면 이미 국채보상운동 이전에 수원지역을 대표하는 자산가 중 한 명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³¹ 그런 배경에서 그는 '수원부 야소교회당' 소속으로 의연에 참여, 1,000전에 달하는 금액을 의연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기독교 참여자 중 가장 많은 금액인 동시에 앞서 제시한 <표 4>에서 알 수 있듯, 지역에서 의연한 개인 중 그 금액 규모가 세 번째로 많은 것이었다.

다음으로는 김제구·임면수·이하영 3인이다. 이들은 각각 300·500·100전의 금액을 의연하였다는 점에서 기독교인 중에서는 비교적 유의미한 금액을 의연하였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³² 하지만 정작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는데, 그것은 이들이 수원지역 국채보상운동을 추동한 주역들이었다는 사실이다. 이들의 활약상은 수원지역의 국채보상운동이 활성화되기 전인 3월 초부터 확인된다. 김제구는 수원영어삼학당 찬성회(贊成會)의 회장을, 나머지 양인은 서기가 되어 지역민의 운동 참여를 권유하는 취지서를 공포하였고, 실제 본인들도 의연에 동참하는 등 수원지역 국

30 「國債報償義捐金收入廣告」, 『大韓每日申報』 1907년 8월 7일 .

31 한동민, 2012, 「성안 우시장과 팔부자거리」, 『골목잡지 사이다』, (주)더페이퍼, 43~46쪽. 이 글에 따르면 1900년대 이전 차형린은 이미 188평에 달하는 기와집을 소유하고 있었다.

32 「國債報償義捐金: 七月本中社收入總額每日逐号明細錄(한글판)」, 『大韓每日申報』 1907년 7월 9일.

채보상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의 활약상은 단순히 기독교인의 운동 참여로 한정할 게 아니고, 수원지역 국채보상운동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기독교에 비해서는 참여자와 금액이 적지만 불교계도 성의를 갖고 운동에 동참하였다. 특히 용주사의 승려 25인의 의연금 1,200전은 적어도 필자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가장 먼저 신문에 공표되고 있었다.³³ 이들은 100전을 의연한 차응허(車應虛)를 중심으로 의연에 참여하였는데, 그는 국채보상운동 직전인 1906년 11월, 용주사 내 명화학교(明化學校)를 세워 불교계의 교육운동에 족적을 남긴 인물이기도 했다.³⁴ 결국 수원지역 불교계의 국채보상운동 참여는 그 시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던 교육운동의 연장선에서 국권회복의 사명을 띠고 추진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외 일용면(日用面)에 위치한 미륵당(彌勒堂)에서 이용수(李淵秀)를 중심으로 13명이 총 300전을 의연하였다.³⁵

다음으로 여성의 참여를 보자. 국채보상운동과 여성의 관계는 중요하다.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이 당당히 국민의 일원으로 발돋움하게 된 주요 사건으로 이 국채보상운동이 언급되어 왔기 때문이다. 수원지역에서도 여성들이 운동에 참여한 정황이 확인되는데, 다만 수원의 운동 참여자가 타 지역에 비해서도 상당히 많은 편에 속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율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크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필자

33 「國債報償期成會義金廣告續」, 『大韓每日申報』 1907년 3월 28일.

34 「龍寺設校」, 『皇城新聞』 1906년 11월 26일; 매산백년사 편찬위원회, 2007, 『梅山百年史』, 매산초등학교 총동문회, 196~197쪽.

35 '彌勒堂'이 불교 법당이 아니라 마을 이름이라는 심사자 의견이 있었다. 이를 검토한 결과 건축물을 중심으로 한 단체 의연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는 게 현재로서는 좀 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선행연구에 따르면, 1899년(광무 3) 발간된 『수원군읍지(水原郡邑誌)』 방리조(方里條)에 미륵당이 일용면의 마을로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1914년 4월 1일 행정구역 개편 때 '미륵당'이라는 이름 대신 '미륵동'으로 기재되어 있다. 즉 미륵당이란 명칭이 1900년대를 거치며 미륵동으로 굳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는 인접한 파장동(현재 건축물 미륵당이 위치한 곳)도 마찬가지였다. 미륵동과 인접한 파장동도 원래 파동이었다가 1900년대를 거치며 파장동으로 바뀐 것으로 전해지므로, 미륵당 역시 같은 수순을 밟은 게 아닌가 생각한 대(수원시, 『수원의 동족마을』, 2006, 79~82쪽). 그리고 이 '미륵동'이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파장동과 합쳐 파장리가 되었고, 이것이 오늘날 '미륵당'이 위치한 장안구 파장동이다. 정리하면 마을 미륵당은 1900년대를 거치며 미륵동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건조물 미륵당은 조선 중기 이후 만들어진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국채보상운동의 시기를 거쳐 오늘날까지 현전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는 일단 미륵당을 마을이 아니라 불교 관련 건조물로 간주하였음을 밝힌다(https://jangan.suwon.go.kr/sub_view.asp?menu_id=sub04010303).

가 확인한 여성 참여자를 제시하면 <표 9>와 같다.

<표 9> 수원지역 국채보상운동 여성 참여자

번호	이름	금액	비고	번호	이름	금액	비고
1	金召史	15		17	教師 夫人	10	기독교인 (수원부 耶蘇教會堂)
2	李召史	15		18	신夫人	10	
3	朴氏	銀指環	車孝舜 夫人	19	리召史	30	
4	安氏	銀簪	車喜均 夫人	20	박召史	10	
5	洪氏	銀簪	李敬儀 夫人	21	주召史	10	
6	崔氏	銀簪	李敬儀 副室	22	박召史	40	
7	女兒	40	李敬儀 女兒	23	최召史	20	
8	김召史 ³⁶	200		24	文氏	50	朴윤己 夫人
9	洪氏	100	崔東翊 夫人	25	宋召史	100	
10	김召史	100		26	安京淑 夫人	60	기독교인 (漁呑面 耶蘇堂)
11	강仙	50	기생	27	李學俊 祖母	40	
12	蓮花	50	기생	28	趙昌植 母親	30	
13	김召史	50		29	徐性友 夫人	10	
14	車召史	20		30	리德眞 母親	10	
15	教師 夫人	20	기독교인	31	박性友 母親	8	
16	教師 夫人	20	(수원부 耶蘇教會堂)	32	黃魯聖	200	

<표 9>와 같이 수원지역 국채보상운동에서 확인되는 여성 참여자는 총 32인이었다. 이들은 1,318전(은지환 1개, 은잡 3개 미합산)을 의연하였는데, 건수는 전체의 0.6%, 금액은 전체의 0.5%에 불과했고, 네 건의 현물을 제외한 금액을 갖고 1인당 의연을 구하면 47.07전 수준이었다는 점에서 의연의 규모와 액수, 1인당 액수 모두 그리 높지 않은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외중에 가장 많은 금액을 의연한 이들은 환산액을 알 수는 없지만 은지환과 은잡을 의연한 박씨(朴氏)·안씨(安氏)·홍씨(洪氏)·최씨(崔氏) 등으로 판단되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수원지역 운동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의연한 전·현직 관리들의 부인이었다는 사실이다. 한편 기독교인으로 다른 교인들과 함께 의연한 사례

36 원문에서는 '김史史'인데, '김召史'의 오키로 보이므로 수정하였고, 여성 의연 참여자로 편입하였다.

도 네 건이 확인되는데, 이름을 알 수 없는 수원부 야소교회당 소속 '교사(教師) 부인(夫人)' 3인과 어탄면(漁呑面) 야소당(耶蘇堂) 소속으로 의연에 참여한 '안경숙(安京淑) 부인'이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많게는 60전에서 적게는 10전의 의연금을 냈다. 한편 사회적 하층이라고 할 수 있는 기생들의 의연도 확인되어 주목을 요한다. 각각 50전을 의연한 강선(강仙)·연화(蓮花)가 그 주인공이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의연 참여를 보자. 아동은 자료상 '몇 세 아이' 또는 '남아(男兒)'나 '녀아(女兒)'처럼 연령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거나 아니면 의연자가 아동임을 알려주는 내용이 있어 이를 판별하는 게 가능하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수원지역에서는 3명의 아동이 4건 의연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각각 매곡면(梅谷面) 원평리(院坪里)에서 20전을 의연한 황명연(黃命淵), 수원부에서 50전과 10전을 두 번을 의연한 6세 아이 신천동(申天動), 그리고 같은 곳에서 40전을 의연한 이경의의 여아가 그들이었다. 여기서 이경의 여아는 1,000전을 의연한 이경의와 그의 부인 및 부실(副室)이 의연에 동참하는 과정에서 같이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보면 가장 주목할 만한 인물은 역시 신천동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의 의연을 단독으로 보도한 기사 내용에 따르면,³⁷ 그는 어린 나이에 불구하고 타 지역의 국채보상운동 소식을 듣고 감응하여 세뱃돈으로 모은 50전을 의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단, 신천동의 이 같은 활동상은 6월자 기사에서 확인되고 있는데, 그다음 달 기사에서 신천동이 10전을 의연했다는 기사가 또 확인되고 있다.³⁸ 두 번 의연을 한 것인지, 한 번 의연한 게 두 번에 걸쳐 실린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그 정확한 의연액이 50인지 10전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데, 본 연구에서는 일단 동일인이 2회 의연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술하였음을 밝힌다.

4. 맺음말

본 연구는 경기 수원지역의 국채보상운동을 연구한 것이다. 운동의 전개 흐름과

37 「幼兒感動」, 『大韓每日申報』 1907년 6월 11일.

38 「國債報償義捐金: 七月中本社收入總額每日逐号明細錄(한글판)」, 『大韓每日申報』 1907년 7월 7일.

성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각종 의연 기사의 신문 게재일을 기준으로 보면, 수원지역의 운동은 3월 초부터 시작되었고, 이듬해인 1908년 6월까지 이어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타 지역 대비 빨리 시작되어 오래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운동은 4월부터 크게 확대되기 시작했으며, 절정에 달한 시점은 1907년 7월이었다. 특히 7월 한 달간 파악되는 의연 건은 2,766건으로 전체의 56.84%였고, 그 금액도 11만 3,483전에 달해 전체의 44.38%나 되었다.

수원지역의 국채보상운동의 참여 경로를 지역과 단체로 양분하여 보면, 그 중심은 지역을 통한 의연에 치우쳐져 있었다. 전체 4,866건의 89.1%에 달하는 4,340건이 지역을 통해 의연에 참여하였고, 이렇게 모인 금액도 전체의 71.6%에 달하는 18만 3,126.5전에 이르렀던 것이다. 반면 단체를 통한 의연은 526건에 7만 2,560전으로 각각 전체의 10.8%와 23.8%에 불과했는데, 참여 인원(건)은 적었지만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 않았고, 이는 수원지역 상계(商界)의 적극적인 참여에 힘입은 바 컸다. 또한 자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는 종종과 국채보상기생회의 의연을 고려할 때 더욱 올라갈 여지가 있었다.

계층을 중심으로 보면, 전·현직 관리들의 활약이 특히 주목된다. 경기도 관찰서리 참서관 김한목이 수원지역에서 최초로 운동의 참여를 독려했고, 궁내부 특진관을 역임한 바 있는 김종한을 필두로 총 18명의 전·현직 관료들이 8,910전의 금액을 의연했는데, 이는 1인당 의연액이 495전에 달하는 비교적 거액에 달한 것이다. 더욱이 1,000전을 의연한 차효순은 운동 3년 전인 1904년 이미 '수원감관'을 역임한 인물로 소개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지역에 대한 남다른 영향력을 엿볼 수 있는 경우이다.

한편 종교계의 참여도 돋보였다. 김제구·이하영·임면수 등 기독교인들은 찬성회를 조직하여 초기 수원지역 국채보상운동을 지원했고, 영국인 신부 부재열과 전교사 김만준도 국채보상금 모금의 가교 역할을 훌륭히 수행한 것이다. 단, 여성과 아동 등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부진하였다.

이상 수원지역 국채보상운동의 전개 양상을 보면, 근기지역답게 시류에 민감한 전·현직 관료들의 주도 하에 운동이 촉발되었고, 이를 지역에 전파되어 있던 기독교계가 수용하여 견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확산되던 수원지역의 운동 기류는 각 지역에 뿌리내리고 있던 여러 동종 성씨 집단의 밑받침 속에서 폭넓게 진행되었던 게 아닌가 생각한다. 바로 이런 배경에서 수원지역의 국채보상운동

은 전국적 양상을 염두에 두고서라도 그 규모에 있어 특기할 만한 현상을 이루어냈던 것이다.

아쉬운 점은 수원지역 국채보상운동이 이후 지역의 국권회복운동 및 독립운동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충분치 못했다는 사실이다. 물론 초기 운동 확대에 기여한 임면수가 이후 간도로 망명한 뒤 운동을 지속하여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에 서훈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가장 많은 의연금을 낸 김종한은 운동 이후 변절하였고, 기독교인으로 역시 많은 금액을 의연한 차형린 역시 『조선총독부관보』에서 목배(木杯)를 하사받았다거나 광업권을 취득했다거나 하는 내용이 확인되므로 그 양면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상 본 연구는 수원지역의 국채보상운동 관계 자료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하여 그 전개 양상과 참여계층의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지금까지 일부 연구에서 제한적으로 다뤄진 수원지역의 운동 양상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했다는 점에서 나름의 연구사적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단, 수원지역 국채보상운동 주요 참여자에 대한 운동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는 추후의 과제로 상정하고자 한다

투고일 2024년 4월 23일 심사일 2024년 6월 20일 게재확정일 2024년 6월 27일

참고문헌

- 『官報』.
 『光武八年度 京畿各郡報告 上』.
 『大韓每日申報』.
 『萬歲報』.
 『帝國新聞』.
 『皇城新聞』.
- 김상기, 2013, 「한말 국채보상운동의 전개와 이념」, 『충청문화연구』 10, 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김형목, 2007, 「한말 수원지역 계몽운동과 운영주체」,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3, 한국민족운동사학회.
 수원시, 『수원의 동족마을』, 2006.
 수원시사편찬위원회, 2014, 『수원시사』 1,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이승렬, 2013, 「한말·일제하 ‘근대의 충격’과 수원 지역 상인층의 대응」, 『서울과 역사』 84, 서울역사편찬원.
 차선혜, 2014, 「대한제국기 수원지역의 사회변화 - 범죄양상과 범의식을 중심으로 -」, 『수원역사문화연구』 4, 수원박물관.
 최기영, 2009, 『애국계몽운동Ⅱ 문화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한동민, 2012, 「수원 나주나씨와 나혜석의 부모 형제들」, 『나혜석연구』 1, 나혜석학회.
 한동민, 2012, 「성안 우시장과 팔부자거리」, 『골목잡지 사이다』, (주)더페이퍼.
 한상구, 2015, 「1907년 국채보상운동의 전국적 전개양상 연구」, 『인문연구』 75,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요 약

본 연구는 경기 수원지역의 국채보상운동을 연구한 것이다. 수원지역의 운동의 전개 양상과 그 성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수원지역의 운동은 3월 초 시작되어 이듬해인 1908년 6월까지 이어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타 지역 대비 빨리 시작되어 오래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운동은 시작 한 달 뒤인 4월부터 확대되기 시작했으며, 절정에 달한 시점은 1907년 7월이었다. 특히 7월 한 달 파악되는 의연 건은 2,766건으로 전체의 56.84%였고, 그 금액도 11만 3,483전에 달해 전체의 44.38%나 되었다.

수원지역의 국채보상운동은 주로 지역을 통해 이루어졌다. 전체 의연 4,866건의 89.1%에 달하는 4,340건이 지역을 통해 이루어졌고, 이렇게 모인 금액도 전체의 71.6%에 달하는 18만 3,126.5전에 이르렀던 것이다. 반면 단체를 통한 의연은 526건에 7만 2,560전으로 각각 전체의 10.8%와 23.8%에 불과했으나, 상업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한 덕분에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비교적 높았다. 또한 자료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중등 등의 의연을 고려하면 단체를 통한 의연의 비중은 더 높아질 수 있다.

계층에서는 전·현직 관리들과 종교계의 활약이 특히 주목된다. 경기도 관찰서리(觀察署理) 참서관(參書官) 김한목이 수원지역에서 최초로 운동의 참여를 독려했고, 궁내부 특진관을 역임한 바 있는 김종한을 필두로 총 18명의 전·현직 관료들이 8,910전의 금액을 의연했는데, 이는 1인당 의연액이 495전이나 되었다. 여기에 김제구 등 기독교인이 찬성회를 조직하여 지원하였고, 영국인 신부 부재열 등은 국채보상금 모금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이상 수원지역 국채보상운동의 전개 양상을 보면, 수도에 가까웠기 때문인지 시류에 민감한 전·현직 관료들의 주도 하에 운동이 촉발되었고, 이를 지역에 전파되어 있던 기독교계가 수용하여 견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확산되던 수원지역의 운동 기류는 각 지역에 뿌리내리고 있던 여러 동종 성씨 집단의 밀반침 속에서 폭넓게 진행되었던 게 아닌가 생각한다. 바로 이런 배경에서 수원지역의 국채보상운동은 전국적 양상을 염두에 두고서라도 그 규모에서 특기할 만한 현상을 이루어냈던 것이다.

주제어 : 국채보상운동, 수원, 임면수, 국권회복운동, 독립운동

ABSTRACT

Analysis of the Development and Participants of The National Debt Redemption Movement in Suwon area

Lee Yongcheol

This study studied the The National Debt Redemption Movement in Suwon, Gyeonggi Province. The movement in Suwon began in early March and continued until the following year, June 1908, indicating that it began faster and lasted longer than other regions. The movement began to expand in April, a month after it began, and the peak was in July 1907. In particular, 2,766 cases were identified in July, accounting for 56.84% of the total, and the amount reached 113,483錢, accounting for 44.38% of the total.

The The National Debt Redemption Movement of the Suwon area was mainly through the region. 4,340 cases, or 89.1% of the total 4,866 donations, were made through the region, and the amount collected reached 183,126.5錢, or 71.6% of the total. On the other hand, 526 donations through organizations were 72,560錢, accounting for only 10.8% and 23.8% of the total, respectively, but the proportion of the amount was relatively high thanks to the active participation of the commercial community.

The performance of current and former officials is particularly noteworthy at the class. 京畿道 觀察署理 參書官 金漢睦 encouraged the participation of the movement for the first time in the Suwon area. In addition, a total of 18 former and current officials donated 8,910 won, led by Kim Jong-han, who served as a 宮內府 特進官. In addition, Christians such as Kim Je-gu organized and supported the supporters' association, and British Bride Bu Jae-yeol served as a bridge to raise government bond compensation.

Looking at the development of Suwon's The National Debt Redemption Movement, it can be seen that it was led by current and former officials who are sensitive to the current trend as it is close to the capital. And it was spread more widely by the Christian community that had spread in the region, and I think that the movement in Suwon was finally widespread under the support of various clans in each region. Against this backdrop, the The National Debt Redemption Movement in the Suwon area achieved a remarkable phenomenon in scale.

Key words : The National Debt Redemption Movement, Patriotic Enlightenment Movement, Independence movement, Suwon, Immyeonsu

수원 농민회관의 역사와 보존·활용 방안

이신재*

- 1. 서론
- 2. 농민회관의 건립 배경과 과정
- 3. 농민회관의 활용과 변천
- 4. 농민회관의 가치와 보존·활용 방안
- 5. 결론

1. 서론

수원은 ‘20세기 한국 농업의 중심지’ 또는 ‘한국 근대농업의 발상지’로 불리고 있다. 수원이 이렇게 불리게 된 배경에는 그동안 수원이 간직했던 농업 관련 역사와 관련이 깊다. 수원에는 조선 정조시대 만들어진 축만제(祝萬堤, 현재의 西湖), 만석거(萬石渠)와 같은 인공저수지가 있고, 20세기 들어서면서 한국의 주요 농업연구, 행정, 교육기관이 속속 자리를 잡았다. 이것은 지난 100여 년 동안 수원과 함께 성장하면서 수원을 한국 농업의 중심지로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20세기 수원의 농업 관련 역사의 시작은 1906년 4월 권업모범장(勸業模範場)이 설립되면서부터였다. 이것은 일제강점기인 1929년 농사시험장이 되었고, 광복 이후에

* 군사편찬연구소 조사연구부장(Director,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E-mail : sjlee@mnd.go.kr, Tel : 02 -748-1690

는 농사개량원, 농업기술원, 농사원을 거쳐 1962년 농촌진흥청으로 변모하였다.¹

여기에 1907년 대한제국의 농상공학교가 수원으로 이전해 수원농림전문학교 등을 거쳐 1946년 국립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이 설립되었다.²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은 2003년 서울 관악캠퍼스로 이전할 때까지 대학의 전신을 포함하면 100년 가까운 시간을 수원에서 보냈다. 농촌진흥청과 서울대 농과대학의 설립으로 수원의 서호와 서둔동 일대는 명실상부 한국 농업의 상징적 지역으로 자리를 잡았다.

지난 100여 년간 수원이 간직해 왔던 농업의 역사는 수원 곳곳에 많은 유물과 유적을 남겼고, 특히 대표적인 것들이 서호와 서둔동 일대에 남아 있다. 이러한 유물, 유적은 수원이 가졌던 한국 농업의 메카로서 위상을 당당하게 보여 주는 귀중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수원의 농업과 관련된 주요 시설 중 하나가 농민회관(農民會館)이다. 수원시 팔달구 서호공원에 인접한 건물 중 눈에 띄는 외관과 10층 높이의 건물이 농민회관이다. 농민회관은 1973년 건립되어 농민들의 교육과 휴양 등의 용도로 운영되었지만, 현재는 결혼식장과 농업 관련 단체의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다. 전국 농업지도자중앙회, 농어민신문, 여성농어민신문 등이 입주해 사용하고 있지만, 이곳을 찾는 다수의 이용객은 결혼식에 참석하는 하객들이다. 농민회관은 건립 직후 새마을지도자연수원으로도 사용되었는데, 그 기간은 경기도 성남에 새로운 연수원 건물이 신축되기 전까지 10년간이었다.

농민회관은 1973년 준공되어 50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한 건물이다. 그러나 농민회관의 역사에 대해서는 쉽게 찾아보기 힘들다. 농민회관 1층 내부에 사진을 포함한 게시물이 그 역사를 말해주는 정도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수원문화원이 수원지역의 옛 건물들을 조사하면서 농민회관을 ‘가치 있는 옛 건물’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 또한 10여 쪽의 지면에 농민회관의 외향적 특징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어 건립과 운영의 역사에 대해서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³

1 농촌진흥청 홈페이지(https://www.rda.go.kr/board/board.do?mode=html&prgId=ogj_hstyQuery&html_page=ogj_hstyQuery, 검색일 2024.3.13.).
 2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홈페이지(<https://cals.snu.ac.kr/about/introduction/history>, 검색일 2024.4.8.).
 3 김우영 외 6명, 2019, 『수원의 옛 건물과 문화』, 수원문화원, 81~92쪽.

수원이 한국 농업의 중심지로서 간직한 다양한 역사를 이야기할 때 농민회관과 같은 건축물은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그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역사적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일반 시민들에게 농민회관을 알려 주기 위한 노력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서 이 연구는 2023년 건립 50주년을 맞이한 농민회관의 건립과 운영의 역사를 살펴보고, 보존과 활용방안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농민회관의 건립 배경과 과정, 그리고 변천 과정을 알아보고, 역사적, 문화적 측면에서 농민회관의 가치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영농기술자중앙회(현재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의 전신)⁴와 새마을지도자연수원의 편찬 기록물, 국가기록원 소장 자료, 각종 언론 보도 및 대한뉴스 등의 자료를 중심으로 농민회관이 간직한 역사를 입체적으로 조명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수원 농민회관을 보존 및 활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2. 농민회관의 건립 배경과 과정

1) 농민회관 건립 배경

농민회관의 건립이 처음 논의된 것은 1969년이였다. 1969년 11월 각 도 농촌지도자⁵ 대표들이 수원의 농촌진흥청에 모여 중앙회 발기 협의를 할 당시 건립구상이 처음 거론되었다. 그리고 1970년 1월 11일 개최된 전국 농촌지도자 발기대회에서 중앙회 설립과 함께 농민의 전당인 농민회관 건립의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⁶

이렇게 모아진 의견은 다음날인 1970년 1월 12일 각도 농촌지도자 대표와

4 1970년 전국농촌지도자연합회가 설립된 이후, 1973년 전국농촌지도자중앙회, 1976년 새마을영농기술자중앙회 등으로 개칭되었고, 1999년 현재 명칭인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가 되었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홈페이지(<http://www.korlca.or.kr/introduce/introduction.php>, 검색일 2024.4.19.).
 5 농촌지도자란 ‘지역 내의 덕식을 겸비한 모범농가로서 농촌지도사업을 이해하고 지도사와 협조해서 적극적인 지도력을 발휘하는 한편 인근 농민에 숭선수범하고 지역 농촌발전에 헌신 노력하는 사람’으로 정의되어 있다(허성득, 1970, 「농촌지도자의 육성과 그 의의」, 『연구와지도』 11(3), 농촌진흥청, 2쪽).
 6 영농기술자중앙회, 1989, 『흙에 뿌은 뿌리-농촌지도자 40년사』, 우신문화사, 141쪽.

당시 김인환 농촌진흥청장이 함께 농림부 장관을 방문해 중앙회 창립 건과 농민회관 건립 문제를 토의하고, 농림부 장관의 협조를 약속받았다. 이후 농민회관 건립 안은 1970년 2월 14일 중앙회 창립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되었다.⁷

한편, 농민회관 건립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한 것은 이로부터 10여 개월이 지난 1970년 12월이었다. 시간상으로 볼 때 내부 논의를 거쳐 공사가 확정된 것을 언론에 보도한 것으로 보인다. 기사에 따르면, “농림부는 수원의 농촌진흥청 안에 농민회관을 세워 농민지도 및 농사 교육 등에 사용키로 했다. 이 회관은 1억 5,000만 원의 공사비로 내년 3월에 착공된다.”⁸는 것이었다.

이 무렵 정부에서는 전국 농촌에 농민복지회관을 건립하기 시작하였다. 1971년 3월 10일 내무부는 농민복지향상을 위해 4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1972년부터 1975년까지 4억 6,0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전국 1만 8,652개 리·동에 농민복지회관을 세우기로 결정하였다. 이 농민복지회관에는 이발소, 목욕탕, 공동구판장, 공동진료소, 회의실, 약방 등을 갖추어 농민들이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었다.⁹ 이러한 계획은 당시 국내 농촌과 농업이 처했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의도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초반은 공업 중심의 산업화를 통해 농업과 농촌이 상대적으로 소외를 당하고 있었고, 인구가 농촌을 떠나 도시로 집중하는 ‘이촌향도(離村向都)’와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 수요 증대로 농업과 농촌을 안정시키는 정책이 필요한 시기였다. 이 무렵 정부차원에서 추진한 새마을운동도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농촌이 처했던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농민복지 향상을 위해 중앙에는 농민회관을, 전국 각 리와 동에는 농민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것을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기 시작한 것이다.

농민회관 건립이 결정된 이후에는 건립기금 마련이 당면한 과제로 제기되었다. 건립기금은 이른바 대통령의 ‘권농일 지시’와 농민들의 모금을 통해 추진되었다.

대통령의 ‘권농일(勸農日) 지시’란 1970년 6월 10일 농업진흥청에서 개최된 권농일 행사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농민회관 건립 필요성에 공감하고, 국고지원을 약속

7 영농기술자중앙회, 1989, 『흙에 뵈은 뿌리-농촌지도자 40년사』, 우신문화사, 141쪽.

8 「농민회관 건립」, 『조선일보』 1970년 12월 26일.

9 「리, 동에 농민복지회관. 내무부 1만 8천 곳에 설치」, 『매일경제』 1971년 3월 10일; 「1만 8천 곳에 농민복지회관」, 『경향신문』 1971년 3월 10일.

한 것을 말한다. 이날 행사에서 전국 농촌자원지도자 중앙회 박재룡 초대회장이 대통령에게 농민회관 건립 필요성을 보고하고, 대통령의 지원을 요청하자, 박정희 대통령은 그 타당성에 동의하며 1억 원의 국고지원을 약속하였다. 당시 박 대통령은 “여러 종류의 회관이 건립되었는데 농민회관도 건립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관계 장관들과 동석한 자리에서 회관 건립비로 1억 원의 국고지원을 약속했다고 한다. 대통령의 ‘권농일 지시’는 농민회관 건립기반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¹⁰

또한, 전국 농촌자원지도자 중앙회는 “농민이 주체가 되어 건립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1970년 3월부터 당시 250만 농가당 20원의 모금액을 정하고, 대대적인 건립기금 모금을 추진하였다. ‘농민회관은 농민의 손으로’라는 구호 아래 전국적인 성금 모금을 한 결과 11만 5,752명이 참여하여 5,200만 원이 모이게 되었다. 여기에 정부의 국고보조금 2억 7,900만 원을 합해 총 3억 3,100만으로 농민회관 건립 공사가 시작되었다.¹¹

농민회관의 부지가 현재 위치한 서호 인근에 결정되는 과정도 흥미롭다. 현재의 농민회관은 수원시 화서동 436-3번지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곳은 건립 당시에는 서호 매립지로 있던 땅이었다.

농민회관 건축 위치에 대해서는 애초 서울과 수원에 건립하자는 의견들이 제기되었다. 건립 이후 활용 가치를 고려해 서울에 건립하자는 주장과 우리나라 농업중심지인 수원에 건립하자는 두 가지 안이 맞서고 있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농촌진흥청장은 “우리나라 농업중심지인 수원에 건립하자.”라고 제안하였고, 중앙회장과 자원지도자들은 만약 수원에 건립을 추진한다면 서호 매립지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농림부장관 또한 농업기관이 집중된 수원에 건립하는 것이 유리하고, 향후 농림부의 수원 이전 가능성도 있으니, 수원에 있는 국유지를 몰색하면 불하받도록 알선해 주겠다는 입장이었다.¹²

10 당시 박재룡 회장은 ‘낙후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1등 농업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농민의 의지와 혼이 응집된 어떤 구심체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그것이 바로 농민의 집인 농민회관을 짓는 일이라며 농민회관 건설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고 한다(영농기술자중앙회, 1989, 『흙에 뵈은 뿌리-농촌지도자 40년사』, 우신문화사, 141쪽).

11 영농기술자중앙회, 1989, 『흙에 뵈은 뿌리-농촌지도자 40년사』, 우신문화사, 143쪽; 「수원서 농민회관 기공」, 『동아일보』 1971년 4월 8일.

12 영농기술자중앙회, 1989, 『흙에 뵈은 뿌리-농촌지도자 40년사』, 우신문화사, 142쪽.



〈그림 1〉 1977년 농민회관과 서호 일대 위성사진(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

결과적으로 서울과 수원을 놓고 건립 부지를 검토한 결과 서울의 높은 부지 매입비용과 비교해 수원은 국유지 사용 가능성이 고려되면서 현재의 서호 저수지 주변으로 결정되었다.

〈그림 1〉은 농민회관이 건립된 직후인 1977년 2월 촬영한 위성사진이다. 사진의 우측 상단에 새로 건립된 농민회관이 있고, 가운데는 결빙된 서호의 모습이다. 사진에서 보이는 서호 주변의 건물 배치는 2024년 현재와 비교할 때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이것은 농민회관이 건립된 부지가 당시 이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희지였다는 것을 보여 준다.

부지 확정 후 건축계 전문가, 농과대학 교수 등으로 구성된 농민회관 건축설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과 외국 농민회관의 건립구조 및 설계도 등을 입수하여 참고하였다. 당초 예산 부족으로 2층이나 3층 규모로 구상했으나, 100년을 내다보는 농민회관인데 10층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모여 지상 10층, 지하 1층으로 정해졌다.¹³

13 영농기술자중앙회, 1989, 『흙에 뿌은 뿌리-농촌지도자 40년사』, 우신문화사, 142쪽.

2) 농민회관 공사과정

농민회관은 1971년 4월 7일 백두진 국무총리, 김보현 농림부장관, 박재룡 중앙회장을 비롯해 약 3천여 명의 농민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가졌다. 1971년 4월 8일자 신문에는 농민회관 기공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¹⁴

농림부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농민회관을 수원에 세우기로 결정, 7일 오전 수원시 서둔동에서 기공식을 올렸다. 총공사비 3억 2천 7백만 원을 들여 내년 11월 말까지 완공기로 한 이 회관은 1만 7천 평 대지 위에 연건평 2,436평짜리 10층 철근 콘크리트로 세워지는데 완공 후엔 각종 농민단체 및 농촌지도자들의 회의 장소로 이용되며 연간 1만 3천 8백 명의 농민들을 이곳에서 집단교육시킨다.

공사는 2년 8개월간 진행되었다. 연도별 주요 추진 현황을 보면, 1971년 3월 22일 입찰을 실시해 건설업체를 선정하였다. 그 결과 공사업체는 우신건설주식회사(대표 최희춘), 설계 및 공사감리, 부지시추, 우물 시추 등은 범아건축연구소(대표 김종근)가 선정되었다. 목조 가교 설치는 신흥건설주식회사가 맡았다. 업체가 선정되면서 본격적인 건설공사가 시작되었다. 공사 3차연도인 1973년에는 본관 10층 마감 공사와 부대공사로 11인승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고, 진입로 교량인 새싹교(길이



〈그림 2〉 1971년 농민회관 기공식(출처 : 국가기록원)

14 「수원서 농민회관 기공」, 『동아일보』 1971년 4월 8일.

60m, 폭 6m) 가설과 옥외화장실, 우물을 비롯한 시설 공사가 진행되었다.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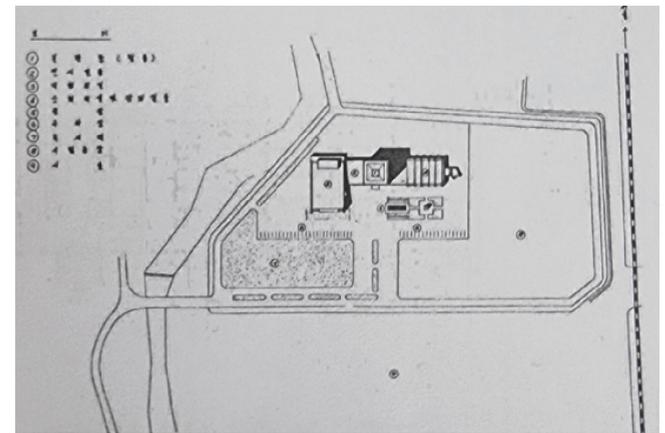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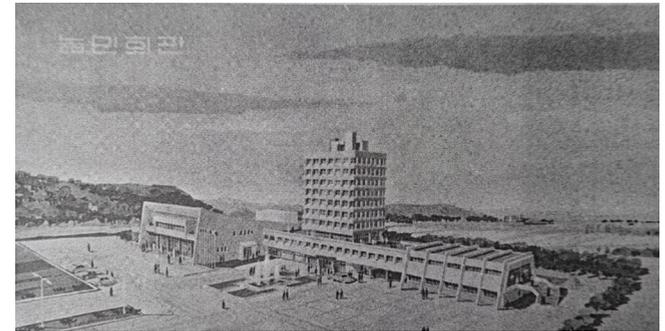
농민회관 건설공사는 1973년 12월 4일 부지 1만 2,000평에 연건평 1,871.76평, 지하 1층 지상 10층의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준공되었다. 전체적인 농민회관 공사 개요는 <표 1>과 같다.

<표 1> 농민회관 공사 개요

사업주체	사단법인 전국 농촌자원지도자 중앙회			
위 치	경기도 수원시 화서동 436-3(농촌진흥청 내 서호 매립지)			
총공사비	3억 3,100만 원(국고보조 2억 7,900만 원, 농민성금 5,200만 원)			
규 모	부지 1만 2천 평, 연건평 1871.76평, 지하 1층, 지상 10층의 콘크리트 건물			
공사기간	1971.4.7.~1973.12.4.			
시설 내용	층별	규모(단위:평)	용도	비고
	지하층	100(329.28㎡)	보일러실, 전기실, 펌프실 외	· 강의실 4개 (588명 수용)
	1층	403.60(1,332.12㎡)	사무실, 회의실, 강의실 외	
	2층	455.14(1,505.28㎡)	숙소, 식당, 대강당, 휴게실	· 숙소 84명, 식당 300명, 대강당 448명 수용
	3층	100.33(332.08㎡)	농업전시실	· 농경문화재 800점, 고증자료 및 사진 54점 전시
	4층	111.71(368.64㎡)	휴게실 및 숙소	· 4~10층 숙소에 360명 수용 가능
	5층	111.71(368.64㎡)	숙소	
	6층	111.71(368.64㎡)	숙소	
	7층	111.71(368.64㎡)	숙소	
	8층	111.71(368.64㎡)	숙소	
	9층	111.71(368.64㎡)	숙소	
	10층	111.71(368.64㎡)	숙소	
	옥탑 1	18.86(62.81㎡)	물탱크	
	옥탑 2	10.45(34.82㎡)	기계실	
계	1871.76평			

출처 : 영농기술자중앙회, 1989, 『흙에 뿌은 뿌리-농촌지도자 40년사』, 146쪽.

15 영농기술자중앙회, 1989, 『흙에 뿌은 뿌리-농촌지도자 40년사』, 우신문화사, 143~144쪽.



<그림 3> 농민회관 조감도(출처 : 김종근, 1971, 「농민회관 신축계획」, 『공간』 6월호, 공간사)보기 : ① 본관동(탑동), ② 전시실동, ③ 대회의실, ④ 소회의실 및 강의실동, ⑤ 광장, ⑥ 주차장, ⑦ 녹지대, ⑧ 시범농장, ⑨ 서호

1971년에 발간된 건축잡지 『공간』에는 '농민회관 신축계획'에 대해 조감도와 설계 도면이 함께 소개되어 있다.¹⁶ <그림 3>은 당시 『공간』에 실린 농민회관의 조감도이다. 조감도는 현재의 농민회관과 거의 유사한 모습이지만, 자세히 보면 일부 다른 점도 확인된다. 이것은 당초 계획과 달리 건설이 진행되면서 설계의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 준다.

한편 전체 농민회관 부지의 구성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에서처럼 가장 높은 부분인 본관동 이외에 전시실동, 대회의실, 소회의실, 강의실동, 광장, 주차장, 녹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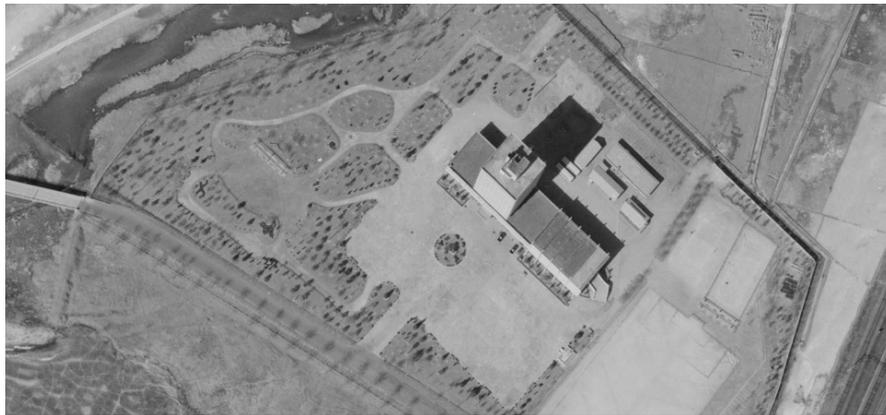
16 김종근, 1971, 「농민회관 신축계획」, 『공간』 6월호, 공간사, 31~33쪽.

대, 시범농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현재의 농민회관과 비교할 때 대부분은 동일하지만, 일부 부분에서는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조감도에서처럼 부지 구성도에서도 대회의실(③번)이 있지만, 1973년 준공 당시나 현재도 ③번 위치에 해당하는 건물은 없다. 2024년 현재 ③번 위치에는 1층짜리 카페가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조감도에서 농민회관의 부속건물은 나타나 있지 않다. 그 이유는 현재의 농민회관 식당과 생활관 등 부속건물은 1989년 2월 준공되었기 때문이다.¹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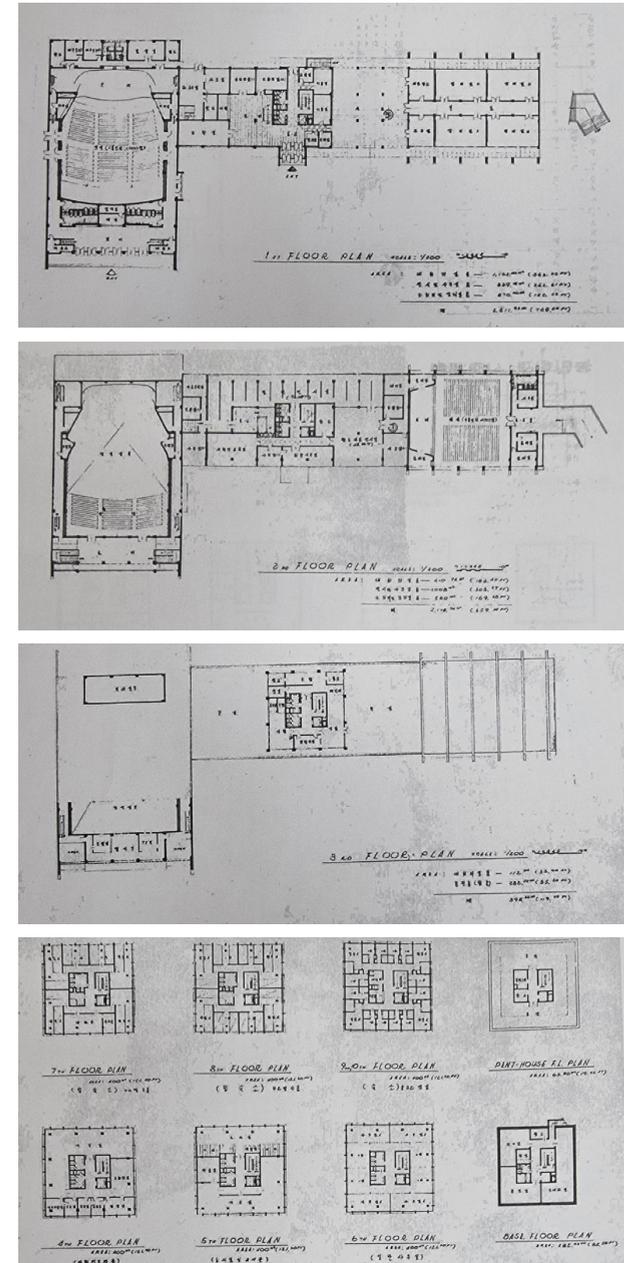
〈그림 4〉는 1977년 농민회관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이다. 사진 가운데 건립 4년 차에 들어서는 농민회관이 있고, 왼쪽에는 진입교량인 새싹교, 오른쪽에는 경부선 철길, 아래쪽에는 서호가 선명하게 보인다. 특히, 농민회관 뒤편에는 여러 동의 부속건물이 있고, 농민회관과 경부선 철길 사이에는 큰 운동장(2024년 현재는 경작지로 사용 중)도 보인다.

한편, 〈그림 5〉는 농민회관의 설계도면이다. 전체 10층이었던 농민회관의 1, 2, 3층과 4층 이상 층의 배치와 규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림 4〉 1977년 농민회관과 주변 환경 위성사진(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

17 식당과 생활관은 1987년 9월 30일 기공, 1989년 2월 21일 완공되었다. 건립비용은 남해화학(주)이 이익금을 농촌에 환원한다는 취지로 지원한 10억 원이 사용되었다(영농기술자중앙회, 1989, 『흙에 땀은 뿌리-농촌지도자 40년사』, 우신문화사, 156쪽).



〈그림 5〉 농민회관 도면도(출처 : 김종근, 1971, 「농민회관 신축계획」, 「공간」 6월호, 공간사)

3) 진입 교량 '새싹교' 건설

농민회관 건설과 함께 회관으로 진입하는 교량에 대한 공사도 진행되었다. 현재 차량으로 농민회관을 진입하려면 '새싹교'를 통과해야 한다. '새싹교'란 이름은 진해화학주식회사의 상징인 새싹을 본떠서 지은 이름이다.¹⁸

'새싹교'는 농민회관 기공식이 있던 다음 해인 1972년 12월 19일 공사에 착수하였다. 기공식은 '코리아-겔프 석유화학'의 사장(잭. E. 하버)과 '겔프 석유화학주식회사'의 아시아 지구 부사장(S. E. 비들)을 비롯해 다수의 현지 농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¹⁹ 길이 60m, 폭 10m인 이 진입교는 영농기술자중앙회와 자매결연을 맺은 진해화학이 기증한 2,950만 원 중 1,500만 원을 들여 기공한 것으로, 1973년 4월 1일 준공되었다. <그림 6>과 <그림 7>은 새싹교의 공사 당시 모습과 2023년 모습이다.



<그림 6> 새싹교 공사 전·후(출처: 농민회관)



<그림 7> 2023년 새싹교

18 영농기술자중앙회, 1989, 『흙에 뿌린 부리-농촌지도자 40년사』, 우신문화사, 144~145쪽.
19 「겔프 회사서 공비기증 농민회관 진입교 19일 수원서 기공」, 『매일경제』 1972년 12월 19일.

3. 농민회관의 활용과 변천

1) 건립 당시 활용계획

농민회관은 건립을 시작하면서부터 준공 후 활용계획도 함께 수립되었다. 건립 당시 수립된 농민회관의 용도는 농민, 중견농촌자원지도자, 4H 회원 등의 교육을 주된 목표로 하고 있었다.

1971년 농민회관 신축계획에 포함된 활용계획은 <표 2>와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민훈련, 중견농촌자원지도자 훈련, 4H 기계훈련 등 연간 13,800명에 대해 짧게는 3일에서 길게는 8주에 걸쳐 합숙 훈련을 하는 용도로 계획되었다.

<표 2> 건설 당시 계획한 활용계획

구분	대상	인원	시기	기간	훈련방법	비고
농민훈련	중견농민	7,000	농한기 (12~3월)	1주	합숙	매 기당 500명
중견 농촌자원지도자 훈련	연합회 임원	2,500	4~5월	3주	합숙	매 기당 250명 10회
4H 기계훈련	4H 연장 부원	300	연중	8주	합숙	매 기당 60명 5회
기타	중견농민	4,000	-	3일	합숙	농민대회 등
계	-	13,800	-	-	-	-

출처: 김종근, 1971, 「농민회관 신축계획」, 『공간』 6월호, 공간사.

농민회관에서는 기공식부터 건물이 준공되기 이전까지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고 있었다. 농민회관은 건설 중이었지만, 이곳의 신축 부지를 이용해 농민과 농촌 관련 각종 대회가 개최되었다.

기공식이 열렸던 1971년 4월 7일 농민회관 신축 부지에서는 제16회 4H 중앙경진대회와 제3회 농촌부업경진대회 시상식이 함께 개최되었다.²⁰ 본격적인 공사가

20 「4H경진대회 종합 1위 경기도」, 『동아일보』 1971년 4월 8일.

진행 중이던 기간에도 부분적으로 완공된 건물을 이용해 농업 관련 행사가 개최되었다. 1972년 10월 31일에는 농민회관에서 농림부장관, 농촌진흥청장과 각 지역의 농촌자원지도자, 각도 농촌진흥원장, 농촌지도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농촌자원지도자 및 농촌지도소장 대회가 개최되었다.²¹

농민회관 건립 직후인 1973년 4월 6일~9일까지는 제18회 4H구락부 중앙경진대회가 농림관계 공무원과 4H 부원 등 1,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²² 1973년 5월 4일에는 농수산부장관을 비롯한 농수산 관계 공무원과 전국 농과계학교 대표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량증산 산학협조회의가 있었다.²³ 이것은 농민회관이 농민들을 위한 시설로 활용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러나 농민회관은 건립과 동시에 용도가 변화되었다. 농민들의 기대를 모아 ‘농민회관’으로 건설되었지만, 농민회관과 새마을지도자연수원이 함께 사용되게 된 것이다.

새마을지도자연수원이 수원의 농민회관으로 이전, 사용하게 된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관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3년 1월 5일 국무회의에서 새마을운동의 기본방침을 천명하였다. 새마을운동을 유신이념을 구현하는 범국민적 운동으로 규정하고, 새마을운동의 기본방침으로 모든 국토의 산업화권, 모든 일손의 생산화, 모든 농민의 기술자화를 설정, 추진하라고 지시하였다.²⁴ 새마을운동에 대한 대통령의 높은 관심은 이후 농민회관이 준공도 되기 전에 “농민회관을 새마을지도자 양성의 산실로 하라.”는 농수산부의 지시로 이어졌다.²⁵ 이에 따라 농민회관에는 새마을지도자연수원이 1973년 4월 1일부로 이전하고, 7월 2일 정식으로 개원식을 가졌다. 농민회관이 새마을연수원으로 이용된 것은 1973년부터 1983년까지 10년간이다. 이 기간은 전국농촌자원지도자와 새마을지도자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는 시기였다.

21 「녹색혁명 단시일 내 이룩 농촌자원지도자 등 대회」, 『동아일보』 1972년 11월 1일.

22 「4H중앙경진대회 개막」, 『조선일보』 1973년 4월 6일.

23 「식량증산 산학협조회의」, 『조선일보』 1973년 5월 5일.

24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https://www.pa.go.kr/portal/contents/stroll/schedule/scheduleIndex.do?year=1973&month=01&searchDate=1973-01-05>, 검색일 2024.4.10.).

25 영농기술자중앙회, 1989, 『흙에 뺀 부리-농촌지도자 40년사』, 우신문화사, 148쪽.

새마을지도자연수원이 농민회관으로 이전하여 시설을 함께 사용함에 따라 농촌지도자 중앙회의 각종 사업은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당초 농수산부는 1973년도 농촌지도자 교육계획에 농민회관을 활용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었다. 그 내용에는 새마을지도자 1,420명을 하반기에 2주간, 영농지도자 1,200명을 4월에 2주간, 부녀지도자 697명을 5월에 2주간 농민회관에서 각각 교육하겠다는 것이었다.²⁶ 또한, 1973년 농업지도자 훈련사업으로 연간 450명의 전문교육지도자 양성교육을 농민회관에서 실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새마을연수원의 이전으로 인해 이러한 계획은 수정되어 지역별 연찬 교육으로 전환해야만 하였다.

2) 농민회관과 새마을지도자연수원의 동거

새마을지도자연수원은 1972년 1월 14일 경기도 고양의 농협대학에 부설로 설립된 ‘독농가연수원’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전국 시·군에서 선발된 선진농민을 대상으로 영농기술교육과 이념교육을 펼치기 위해서였다.²⁷ 여기서 ‘독농가(篤農家)’는 ‘농사를 열심히 짓는 착실한 사람 또는 그런 집’을 의미한다.

독농가연수원은 설립 1년여 만인 1973년 4월 8일 수원의 농민회관으로 이전하였다. 이전과 함께 연수원의 명칭도 5월 31일 ‘새마을지도자연수원’으로 개칭되었다.²⁸ 이후 1973년 7월 2일, 김보현 농수산부장관을 비롯해 많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농민회관에서 새마을지도자연수원이 공식 개원하였다.²⁹

그러나 농민회관의 운영과 관리가 이원화되면서 효율적인 교육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를 위해 1974년 5월 1일 청와대 정부 제2수석비서관실에서는 관계관 회의를 거쳐 새마을지도자연수원이 전국 농촌지도자중앙회와 건물 사용에 관한 정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하였다. 그 결과 1974년 6월 20일 전국농민

26 「1만 3백 29명 교육 새마을지도자 양성」, 『매일경제』 1973년 1월 19일.

27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독농가연수원의 개원과 운영에 큰 인상을 받았다고 전해진다. 박 대통령은 새마을운동 성공의 첫번째 조건으로 농민들의 자조 정신을 꼽고 있었기 때문이며, 이를 계기로 새마을운동 초기에는 농협이 지도자 교육을 맡게 되었다. 『농촌 변화 바람, 새마을운동 주도』, 『농민신문』 2021년 4월 16일.

28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홈페이지(<https://sua.saemaul.or.kr/sub/intro/history.php>, 검색일 2024.4.3.); 『새마을 교육·외출금지 합숙도』, 『조선일보』 1973년 3월 31일.

29 「새마을지도자연수원 농촌진흥청에 개원」, 『조선일보』 1973년 7월 3일.

지도자중앙회장과 새마을지도자연수원장 간에 농민회관 사용관리에 관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 계약은 1979년 5월 31일부로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새마을지도자연수원 측의 요청으로 계약이 연장되어 1983년까지 이어졌다.³⁰

농민회관이 새마을지도자연수원으로 사용될 당시인 1979년 기준 새마을지도자연수원의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았다.³¹ 먼저, 연수원은 원장, 부원장 산하에 총무, 교육, 기획, 연구평가, 생활지도, 사후지도의 부서로 조직되었다. 인원은 원장, 부원장, 교관(31명), 사무직(10명), 기능직(23명), 촉탁(5명), 일용잡급(16명)³² 등 총 88명이 정원이었다.

교육인원은 1979년 9월 30일 기준 총 3만 9,087명(남 31,206명, 여 7,881명)이었다. 대상별로는 새마을지도자(2만 2,792명), 부녀사회지도자(135명), 사회지도자(7,908명), 기업인(1,247명), 대학생 간부(1,517명), 농수산단체(5,068명), 모범농가(420명)였다. 특히 사회지도자에는 장·차관 143명, 국회의원 149명, 대학총장 165명, 교수 1,465명, 법조인 556명 등이었다. 연도별 교육 인원은 <표 3>과 같다.

<표 3> 새마을지도자연수원 연도별 교육 실적

연도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9.	합계
인원	1,490	4,354	6,134	5,448	5,451	5,991	5,892	4,327	39,087

출처 : 「새마을지도자연수원현황(1979.10.10.)」(국가기록원).

1979년 새마을지도자연수원 설치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³³ 이후 새마을지도자연수원은 1980년 4월 22일 특수법인으로 개편되었고, 1983년 4월 26일 경기도 성남(현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율동 200)으로 이전하였다. 성남에 자체 연수원을 신축하고 이전한 것이었다. 현재의 명칭은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이다.³⁴

30 영농기술자중앙회, 1989, 『흙에 뽀은 뿌리-농촌지도자 40년사』, 우신문화사, 101쪽.

31 내무부, 「새마을지도자연수원현황(1979.10.10.)」(국가기록원 관리번호 : BA0844842).

32 일용잡급 16명은 식당, 청소, 사진, 보일러 기관 보조, 사환이었다.

33 「새마을지도자연수원설치법」(법률 제3171호, 1979.12.28.).

34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홈페이지(<https://sua.saemaul.or.kr/sub/intro/history.php>, 검색일 2024.4.3.).



새싹교에서 바라본 농민회관(1980)



제1기 지도급 인사 새마을교육 점호(1975)



새마을지도자 실내 강의(1974)



새마을지도자 영농교육(1974)



연수생들과 식사하는 박정희 대통령(1976)



서호 주변을 달리는 새마을 교육생(1975)

<그림 8> 새마을지도자연수원 당시 농민회관에서의 교육³⁵

1980년 내무부가 편찬한 『새마을운동 10년사(자료편)』에는 새마을 전담 교육기관으로 제시된 7개 기관 중 수원시 화서동 436-3번지에 위치한 '새마을지도자연수원'을 제일 먼저 명시하고 있다. 자료에는 설립일자 1972년 1월 14일이고, 교육 시

35 사진은 다음 대한뉴스의 방송화면이다. 「새마을」, 『대한뉴스』 제994호(1974년); 「새마을교육」, 『대한뉴스』 제1045호(1975년); 「박정희 대통령 동정」, 『대한뉴스』 제1090호(1976년); 「새마을 운동 열풍」, 『대한뉴스』 제1282호(1980년).

설은 강의실 102평과 합숙실 555평, 수용능력 360명으로 되어 있다.³⁶

1973년부터 1983년까지 수원의 농민회관은 전국적인 새마을운동의 교육을 담당하는 연수원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새마을지도자연수원이 수원에 있었다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잊혀 가고 있다. 현재의 농민회관 부지 안에 이러한 사실과 관련된 기록은 쉽게 찾아볼 수 없다. 그나마 2010년 농민회관 앞쪽의 서호공원 입구에 기념비가 건립되어 공원을 찾는 이들에게 그 역사를 알려 주고 있다.

〈표 4〉 기념비 내용

<p>새마을지도자연수원 터</p> <p>이곳(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436-3) 농민회관에서 1973년 4월부터 1983년 3월까지 새마을국민정신교육을 실시하였다. 일주일 내외의 합숙교육에서 “나는 마을과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행동방안을 찾게 하고, 그 실천의지의 고양에 교육의 중점을 두었다.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정신을 수련한 지도자들의 열정은 마침내 새마을운동을 요원의 불길처럼 전국방방곡곡에서 타오르게 하였으며, 실의에 빠져있던 국민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일깨워 오천년 찌든 가난의 한을 풀 수 있게 하였다. 그동안 전국의 새마을지도자는 물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계의 지도급을 포함 총 550회에 걸쳐 총 77,851명의 수료생이 배출되었다. 우리는 이곳을 일러 정신혁명의 발화점이며 새마을지도자의 산실이며 새마을운동의 요람이라 할 것이다.</p> <p style="text-align: right;">2010년 3월 25일</p> <p style="text-align: right;">수원시장 새마을운동중앙회장 수원시회의장 수원시새마을회장</p>

3) 농민회관으로 재조정

새마을지도자연수원이 1973년 공사가 진행 중이던 농민회관에 입주하여 회관 본관과 그 부대시설을 사용해 온 지 10년 만인 1983년 4월 신축된 자체연수원으로

36 내무부, 1980, 『새마을운동 10년사(자료편)』, 743쪽.

이전하였다. 이에 따라 농민회관은 본래의 건립 목적인 ‘1천만 농민의 집’으로 돌아와 농민들의 휴식과 만남, 그리고 선진 영농교육장이 되었다.³⁷

본래의 용도로 돌아온 후 부속건물에 대한 신축도 이루어졌다. 1989년 2월 21일 생활관과 식당이 준공되었다. 농민회관 서북쪽에 연건평 1,364평(생활관, 지상 3층 937.39평, 식당, 지하 1층, 지상 1층 394.51평) 규모의 건물은 영농기술자중앙회와 자매결연한 남해화학(주)의 기부금 10억 7,000만 원으로 건립이 이루어졌다.



〈그림 9〉 서호공원 내 새마을지도자연수원 기념비



〈그림 10〉 2023년 농민회관 전경

생활관 이외에도 휴게실, 욕실, 소회의장 등의 부대시설이 함께 갖춰지게 되었다. 새 생활관이 준공되면서 기존 시설을 포함해 한 번에 7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게 되어 전국적 규모의 행사도 치를 수 있게 되었다. 동시에 현대 교육시설을 갖춘

37 영농기술자중앙회, 1989, 『흙에 뿌은 뿌리-농촌지도자 40년사』, 우신문화사, 130쪽.

명실상부한 농민의 전당으로 위용을 갖추게 되었다.³⁸ 2024년 현재의 농민회관은 예식장과 사무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동안 농민회관과 건립과 변천 과정을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농민회관은 건립 구상 및 준비기, 공사단계, 새마을연수원 운영기, 농민회관 전용기의 과정을 거쳤다.

한편, 농민회관의 건립은 주변 지역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당시 화서역 일대의 주요 건축물로는 전매청 연초제조창과 새로 건립된 농민회관 정도였다. 현재 서울과 수원을 잇는 1호선 전철은 1971년 4월 7일 공사를 시작해 29주년 광복절인 1974년 8월 15일 개통되었다. 현재의 화서역과 수원역은 1974년 개통 당시부터 운영을 시작하였다.³⁹ 화서역은 1973년 역사 착공에 이어 1974년 7월 역사를 신축하고, 1974년 8월 수도권 전철역 중 하나로 영업을 시작하였다.⁴⁰

화서역이 1호선 전철 개통 당시부터 운영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직접적으로는 화서역 인근에 연초제조창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시 전매청은 국가 차원의 주요 사업이었으며, 이로 인해 전철역이 생길 수 있었을 것이다.⁴¹ 그러나, 1971년 기공 당시부터 화서역의 신설이 반영되었던 이유 중에는 ‘농민회관’의 건립도 하나의 고려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38 영농기술자중앙회, 1989, 『흙에 뺨은 부리-농촌지도자 40년사』, 우신문화사, 137쪽.
 39 「수도권 전철 7일 기공」, 『조선일보』 1971년 4월 1일; 「지하철-수도권 전철 개통」, 『경향신문』 1974년 8월 15일; 「경수전철역 주변 땅값 대체로 높은 수준」, 『매일경제』 1974년 4월 26일. 이 기사에 따르면, 1974년 8월 15일 서울-수원 간 전철 개통과 관련하여 전철역 주변 땅값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당시 기사에서는 “화서”를 “수원시 북부 개발계획으로 앞으로 가장 발전 속도가 빠른 곳”으로 평가하였다. 다만, 수원 연초제조창 주변 택지 값은 1만 3천 원 선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 신설되는 화서전철역 건너편(농민회관 있는 곳)에는 평당 3천 원짜리 논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40 국가철도공단, 『한국의 철도역』 (2021). 국가철도공단 홈페이지(<https://www.kr.or.kr/storytelling/view.do?page=1220>, 검색일 2024.3.30.). 한편, 현재의 성균관대역은 1979년 2월 1일 율전역(栗田驛)이라는 역명으로 운영을 시작하였고, 이후 역명이 변화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총무처, 『관보』 제8162호(1979.1.31.)-철도청고시 제2호(1979년 1월 25일).
 41 대규모 물동량 처리를 위해 1980년대 말까지 화서역에서 전매청 수원공장으로 열차가 직접 진입하는 인입 선로가 있었다고 한다.

<표 5> 농민회관의 건립과 운영 변화

시기	내용	비고
1969.11.	각도 농촌자원지도자 대표, 농촌진흥청에서 중앙회 발기 협의 시 농민회관 건립 첫 거론	건립구상/준비기
1970. 6.10.	대통령의 권농일 지시(농민회관 건립 필요성 공감)	
1970. 3.	250만 농가당 20원씩 모금 운동 전개	
1970. 1.11.	전국농촌자원지도자 발기대회에서 농민회관 건립 필요성 확인	
1970. 1.12.	농림부 장관, 농민회관 건립 협조 약속	
1970. 2.14.	농촌자원지도자중앙회 창립총회에서 농민회관 건립안 만장일치 통과	공사단계
1971. 4. 7.	농민회관 기공식 개최	
1972. 1.14.	고양시 농협대학 내 ‘독농가연수원’ 설립	
1972.12.19.	농민회관 진입교(새싹교) 기공식 개최	
1973. 3.14.	박정희 대통령, 농민회관 공사현장 순시	
1973. 4. 1.	새싹교 준공	새마을 연수원 운영기
1973. 4. 6.	제18회 4H 중앙경진대회 개막(농민회관)	
1973. 4. 8.	독농가연수원, 농민회관으로 이전	
1973. 6. 1.	독농가연수원→ 새마을지도자연수원으로 개칭	
1973. 6.20.	박정희 대통령, 농민회관을 새마을지도자 교육장소로 활용 지시	
1973. 7. 2.	농민회관에서 새마을지도자연수원 개원	
1973.12. 4.	농민회관 준공	
1974. 6.20.	(사)전국농민지도자중앙회장-새마을지도자연수원장 농민회관 사용관리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농민회관 전용기
1983. 4.26.	새마을지도자연수원, 성남으로 이전	
1984. 1.	농업박물관 설치 운영(농경문화재 734점 등)	
1987. 9.30.	농민회관 생활관 및 식당 신축공사 기공식	
1989. 2.21.	농민회관 생활관과 식당 준공	

4. 농민회관의 가치와 보존·활용 방안

1) 농민회관의 가치와 보존 필요성

농민회관은 역사와 문화적 측면에서 많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역사적 측면에서

농민회관은 건립 당시인 1970년대 한국의 농업 상황과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된 새마을운동의 역사를 간직한 상징적 건축물이다. 특히 새마을지도자연수원으로 운영된 10년 기간은 수원이 농업뿐만 아니라 새마을운동에서도 중심지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는 실증적 자료로서 의미가 있다.

더불어, 농민회관은 전국 농민들의 뜻을 모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농민’만을 위하여 건립된 회관이었다는 점과 건립 이후 5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초창기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는 점은 이 건축물의 역사적 의미를 더해주고 있다.

문화적 측면에서 농민회관은 수원의 농업 관련 기관과 시설이 모여 있는 ‘농업연구 및 행정단지’ 속에서 독창성과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농민회관은 수원시 화서동에 자리 잡고 있는데, 지리적으로 서둔동 일대의 농업 관련 기구들과 연계되어 있다. 이 지역은 조선시대 건설된 인공저수지인 서호, 과거 권업모범장으로 시작한 농촌진흥청, 2022년 개관한 국립농업박물관 등 농업관련 시설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농민회관은 처음 건립될 당시에도 부지 선정에서 이 부분이 중요하게 고려되었고, 현재도 이러한 측면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다. 건축물 자체만으로도 건립 당시 농민회관은 수원에서 가장 높은 건물 중 하나였다. 마치 거북선을 형상화한 외형은 예술적 가치도 지니고 있다. 이 점은 농민회관의 상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밖에도 현재까지는 관련 연구의 부족으로 평가가 제한되지만, 농민회관의 학술적 가치도 평가될 필요가 있다. 1970~1980년대 농민회관의 역할과 이곳에서 이루어진 각종 교육을 통해 농업 생산량의 성과, 농촌 문화 개선 등에 관한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농민회관이 한국 농업발전에 미친 성과에 대해서도 학술적 측면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농민회관의 가치는 법률과 시행규칙, 조례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화유산(구 문화재)의 등록기준에 적용해 보아도 상당 부분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먼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문화유산을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⁴² 농민회관이 위치한 경기도의 문화재 보호조례 시행규칙에는 경기도 등록문화유산의 지정기준으로 “건설·제작·형성된

4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20369호, 2024.2.27.), 제2조(정의).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 중에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 및 원형 유지 및 희소성이 있는 것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⁴³ 특히, 역사적 가치에서는 “개항기 이후 각 분야의 변화·발전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 항일독립운동과 해방 후 민주화 및 산업화 등의 과정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을 것”, 학술적 가치로는 “각 분야의 변화·발전에 기여한 성과물로서 당시의 시대성을 반영하고 있어 관련 분야 연구에 학술적으로 가치가 클 것”, 예술적 가치로는 “당시의 시대성을 반영한 것으로, 독창적이면서 예술적 완성도가 높고 그 분야에서 대표성이 있을 것”, 원형유지 및 희소성에 대해서는 “대상 문화재가 전체적으로 원형을 유지하고 있고, 희소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의 각호에서도 “①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또는 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 ②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 ③ 기술 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⁴⁴

이런 사항을 고려해 볼 때 농민회관은 1970년대 우리나라가 산업화시대로 나아갈 때 농업의 중심적 역할을 하였고, 새마을운동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곳이었다. 건립 이후 5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지만, 건립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농민회관이 문화유산의 가치도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수원의 급속한 도시화와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속에서 이러한 유물들 또한 적지 않게 영향을 받고 있다. 2014년 7월 농촌진흥청과 국립농업과학원은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라 전라북도 전주시로 이전하였다. 2015년 4월에는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도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였다. 현재 수원에는 농촌진흥청의 산하조직인 식물과학원의 중부작물부만이 남아서 그 활동을 계속해 오고 있다. 서울대학교 농과대학(현재의 농업생명과학대

43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시행규칙」(경기도규칙 제3930호, 2020.10.7.), 별표 1; 2024년 6월 현재 시행규칙은 개정되지 않았으나, 상위 법률 등의 개정에 따라 주요 용어의 변경(문화재→문화유산) 등을 포함한 개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4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555호, 2024.6.14.), 제34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기준 및 절차).

학)도 2003년 서울의 관악캠퍼스로 이전하였다. 학교 터는 여전히 수원에 남아 시민을 위한 시설로도 이용되고 있지만, 새로운 개발계획이 수립된다면, 현재까지 남겨진 건물이나 유물, 유적들이 온전히 유지될지는 알 수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현실 상황은 농민회관의 보존과 활용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될 것이다.

2) 농민회관 보존·활용방안

(1) 안내판 설치와 탐방로 개발

농민회관의 보존 활용을 위해서는 여러 방안들이 검토될 수 있다. 여기에는 시간과 주체에 따라 다양한 방안이 있을 것이다. 시간상으로는 단기적인 것과 중·장기적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주체별로는 농민회관의 소유 및 운영 주체가 할 수 있는 것과 수원시나 경기도, 또는 국가 차원의 보존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여기서는 우선 단기적이면서 동시에 가시적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으로 안내판 제작 설치와 농업을 주제로 한 탐방로 개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안내판 설치에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농민회관의 역사와 유래, 가치 등을 설명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이것을 통해 시민들이 농민회관의 역사와 가치를 알게 되고, 보존과 활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현재 농민회관에 대해서는 회관 내부에 일부 안내사항이 게시되어 있다. 그 내용 중에는 농업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이외에 농민회관의 건립, 경과 등을 사진과 함께 설명하고 있다. 이것을 대하는 시민들은 농민회관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내부에 설치된 안내사항 이외에 외부에 건립된 안내판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서호 저수지 주변에는 몇 가지 종류의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다. <그림 11>처럼 서호 저수지에 대한 것, 향미정에 대한 안내판 등이 건립 주체에 따라 각각 다른 디자인으로 세워져 있다. 따라서 농민회관과 새싹교에 대한 안내판 제작은 역사적 배경과 건설, 유래 등을 정리하여 현재 설치된 다양한 안내판과 차별성을 가지는 방법으로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림 11> 현재 서호 주변에 설치된 안내판

다음으로 농민회관을 포함하여 해당 지역 일대를 탐방로로 개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농민회관 주변에는 농업을 주제로 하여 묶을 수 있는 다양한 유물, 유적들이 산재해 있다. 이것을 도보 답사 코스로 엮으면 흥미와 의미를 모두 갖춘 탐방로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호 주변에는 앞서 살펴본 농민회관, 새싹교, 새마을연수원기념비 이외에도 축만제(서호 저수지), (구)농촌진흥청, 녹색혁명성취 기념비, 우장춘 박사 묘역 등 의미 있는 유물, 유적들이 있다.

축만제는 조선 정조시대인 1799년 만들어진 인공저수지로 2016년 국제관개배수위원회(ICID)의 세계관개시설물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작물시험장은 농촌진흥청 식량과학원의 중부작물부에서 작물시험을 위해 현재도 활용하는 곳이다. 향미정(抗眉亭)은 1831년 건립된 정자건물로, 2021년에는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98호로 지정되었다. (구)농촌진흥청 본관은 6·25전쟁 초기 한국군 작전지휘소로 사용되면서 이승만 대통령, 맥아더 사령관 등이 찾았던 장소이다. 권업모범장 관련 기념비들은 이 지역 농업의 기록과 함께 일제강점기의 역사도 보여 주고 있다. 4-H운동 50주년 기념상은 1947년 국내에서 처음 시작된 4-H운동의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997년 건립되었다. 녹색혁명성취 기념비는 우리나라 영농사상 첫 3,000만 석 대풍을 기념하기 위해 1978년 제막되었다. 국립농업박물관은 2022년 개관한

농업전문박물관이다. 우장춘 박사는 농생물과학자, 식물학자, 원예육종학자로 한국 농업과학연구소장, 중앙원예기술원장 등을 역임하며 국내 농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다.



〈그림 12〉 서호 주변 문화유산

이와 함께 지리적으로 약간 떨어져 있지만,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지역까지 포함하는 안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서울시 관악구에 있는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은 1904년 서울에서 농상공학교로 개교하였다가 1907년 1월 수원으로 이전하였고, 일제강점기 변화를 거쳐 1946년 국립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으로 변경되었다.⁴⁵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은 1907년 수원으로 이전한 이후 2003년 서울의 관악캠퍼스로 이전할 때까지 근 100년에 가까운 시간을 수원과 함께 보냈다.

이상에서 살펴본 농업 관련 유물, 유적을 주제로 한 탐방 코스는 다음의 두 가지 방안으로 정리할 수 있다.

〈표 6〉 도보 답사 코스안

구분	장소
1코스	농민회관→새마을연수원기념비→서호 둘레길→식량과학원 작물시험장→축만제 비석→항미정→농촌진흥청 터→권업모범장 비→4H 50주년 기념상→녹색혁명성취기념비→국립농업박물관→우장춘 박사묘→새싹교
2코스	1코스 +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부지(추가 검토)

1코스는 농민회관을 출발하여 새마을지도자연수원 기념비, 서호 둘레길, 식량과학원 작물시험장, 축만제 비석, 항미정, 농촌진흥청 터, 권업모범장 비, 4H 50주년 기념상, 녹색혁명성취기념비, 국립농업박물관, 우장춘 박사묘, 새싹교를 연결하는 약 3.5km 거리의 코스이다. 도보로 이동할 때 약 1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2코스는 1코스와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을 연결하여 도보로 답사하는 것이다. 약 7km 거리로 2시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 코스 모두 해설사의 안내를 포함하면 참가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이럴 경우 관람시간, 해설시간, 휴식시간 등을 포함할 때 소요시간은 두 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2024년 현재 서호 주변에는 ‘근대 농업 탐방로’라는 이름의 일부 안내판들이 세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이 지역에 산재한 유물, 유적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알린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된다.⁴⁶ 그러

45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홈페이지(<https://cals.snu.ac.kr/about/introduction/history>, 검색일 2024.4.8.).

46 이것은 수원시정연구원에서 서수원지역의 역사와 문화자산을 연계한 탐방로 조성계획을 수원특례시에 제

나, 아직은 서호 주변 일부에만 세워져 있는 상태이다. 농민회관이나 새싹교, 새마을연수원 기념비를 비롯한 상당수 유물, 유적들에는 안내판이 없는 상태이다. 또한,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부지와 연계한 탐방로는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안내판 추가 설치와 새로운 탐방로 개설, 그리고 주기적으로 해설사를 동반한 프로그램의 신설 및 운영이 필요해 보인다.



〈그림 13〉 답사 코스와 주요 유물, 유적 위치

안한 것이 실행된 것으로 보인다. '민선 8기 수원특례시 정책제언'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보고서는 '농업의 메카 서호', '교육의 본고장 구농대', '젊음의 공간 수원역' 등 세 개 권역을 도보 탐방로로 연결하는 구상이다. 서수원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주목한 매우 의미 있는 연구이자, 수원시정연구원의 설립 목적에 부합한 연구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탐방로 조성과 함께 해당 역사·문화자산에 관한 안내 및 해설프로그램도 연계되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보고서를 참고할 것. 안국진 외 2인, 2023, 「서수원 역사·문화자산 탐방로 조성계획」, 『SRI정책Brief』 No.22, 수원시정연구원.

한편으로, 지난 100년의 세월 동안 서호저수지와 서둔동 일대에 담겨 있는 새로운 농업 관련 소재를 발굴하는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 새로운 유적을 찾아내거나 관련된 인물을 발굴한다면 콘텐츠를 더욱 다양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북한의 잠업 분야에서 '영웅' 칭호를 받은 계응상은 일제강점기 수원의 잠업시험장과 수원고등농림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측에서 연구한 잠업 기술이 북측에서도 활용되었다면 집에서 향후 남북 농업협력의 연구소재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⁴⁷

(2) 향후 등록문화유산 추진 검토

문화유산의 종류, 보호, 등록업무에 관해서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약칭 : 문화유산법)에서 규정되어 있다.⁴⁸ 이 법에서는 문화유산의 종류를 지정 문화유산과 등록문화유산으로 나누고 있다.

지정문화유산이란 보물이나 국보로 지정된 문화유산을 말하고, 등록문화유산이란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및 민속문화유산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말한다.⁴⁹ 지정문화유산이 엄격한 원형 보존 원칙에 따라 관리되는 문화유산인데 반해, 등록문화유산은 보존과 활용을 조화롭게 운영하며 완화된 보존조치를 시행하는 문화유산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⁵⁰ 또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등록문화유산의 조건을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 정하고 있다.⁵¹

2024년 기준 수원에는 국보, 보물, 사적 등을 제외하고도 여러 건의 등록문화유산과 경기도 문화유산자료들이 확인되고 있다.⁵²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가등록문

47 계응상은 1893년 평안북도에서 출생하였고, 일제강점기 일본 유학을 통해 농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러나 계응상은 광복 이후 월북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접근에는 남북관계와 국민들의 공감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48 2024년 5월 17일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재편되었다. 이와 함께 이전까지 사용하던 '문화재'라는 명칭은 '문화유산'으로 바뀌었다.

49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50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2009, 『등록문화재 실무편람』, 문화재청, 7쪽.

5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기준 및 절차).

52 이것에 대해서는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https://www.heritage.go.kr>) 참조.

화유산으로는 (구)수원문화원, (구)수원시청사, 경기도청사 구관, (구)소화초등학교, (구)부곡원, 수원역 급수탑이 있고, 경기도 등록문화유산으로는 일제강점기 문화재 실측 및 수리도면, 방화수류정 자개상이 있다. 경기도 문화유산자료는 항미정, 수원향교 등이 있고, 경기도기념물로는 노송지대, 축만제, 여기산 선사유적지, 김준룡 장군 전승지 및 비, 창성사지 등이 있다.

등록문화유산에 대한 개념과 현재 수원에 있는 등록문화유산 현황을 참고해 볼 때 농민회관도 등록문화유산으로 추진을 검토할 수 있다. 농민회관의 문화유산 등록은 국가 또는 시·도 차원의 등록문화유산 추진이 가능한데, 우선 시·도 차원의 등록문화유산 등록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경기도의 문화유산에 관한 조례에는 “도지사는 도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유산으로서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국가등록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것을 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⁵³ 그리고 “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 시행규칙⁵⁴에는 문화유산을 등록하려는 경우 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가 해당 문화유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를 거쳐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농민회관을 등록 문화유산으로 신청할 때는 소유자나 관리자가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수원시장에게 제출하면, 수원시장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게 된다. 이에 대해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유산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농민회관의 보존 측면에서 문화유산 등록을 검토할 수 있으나, 개발 및 활용 측면에서는 또 다른 검토의 여지가 있다. 그 이유는 등록문화유산이 지정문화유산과 비교해 완화된 보존조치를 시행하기는 하지만, 이 또한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의 제약 등 여러 가지 제한요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

53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경기도조례 제8026호, 2024. 5. 16.) 제54조(문화유산의 등록).

54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 시행규칙,(경기도규칙 제3930호, 2020.10.7.). 2024년 6월 경기도청 확인 결과, 조례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도 개정을 준비 중에 있다고 한다. 그러나 ‘문화재’가 ‘문화유산’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것 이외에 문화유산의 등록과 관련해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한다.

민회관의 문화유산적 가치와는 별도로 이것을 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것은 소유주의 의견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등록문화유산이 아니라 ‘문화유산 자료’로 지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경기도 문화유산에 관한 조례는 “도지사는 도지정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중에서 원형대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을 도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유산자료 및 자연유산자료로 지정한다.”라고 되어 있다.⁵⁵

5. 결론

수원은 한국 농업의 역사에서 상징성을 가지는 도시이다. 수원에는 조선시대부터 오늘날까지 농업 관련 유물, 유적들이 산재해 있다. 특히, 서호와 서둔동 일대는 한국 농업의 행정, 연구, 교육기관이 ‘복합단지’를 이루면서 한국 농업의 ‘메카(Mecca)’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중에서 농민회관은 농업 분야에서 수원의 역사성을 잘 담고 있는 중요한 건축물 중 하나이다.

이 연구는 1970년대 건립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농민회관의 건설과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보존과 활용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농민회관은 1970년대 국내 농민들이 뜻과 성금을 모아 건립이 추진되었고, 그 과정에는 박정희 대통령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건립 직후부터 10년간 정부 주도로 추진되던 새마을운동의 지도자연수원으로 활용된 역사도 간직하고 있었다.

2023년 건립 50년이 경과한 농민회관이 간직하고 있는 농민들에 대한 영농교육과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연수의 기록은 1970년대 산업화가 본격화되던 시기에 이루어졌던 농업 관련 역사라는 점에서 의미를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농민회관의 역사와 가치는 제대로 조명받지 못한 측면이 있다. 농민회관의 건립, 운영, 성과 등을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고, 일반 시민들에게 농민회관의 역사와 가치를 알리려는 노력 또한 미흡하였다.

55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4조(문화유산자료 및 자연유산자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앞으로 농민회관의 가치를 알리고 보존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먼저 농민회관의 역사와 가치를 알리는 안내관 설치가 필요해 보인다. 이어서 농민회관과 새싹교, 새마을연수원기념비를 비롯해 서호 주변의 농업 관련 유물, 유적을 연계한 탐방로 개설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탐방로는 (구)서울대 농대와의 연계하는 방안도 구상해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론, 건립 50주년이 지난 농민회관과 새싹교를 문화유산법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등록문화유산이나 문화유산자료로 등록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수원시민들의 일상 속에 있는 건축물이면서도 그동안 그 역사와 가치가 제대로 알려지지 못했던 농민회관에 대해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사항이 농업 관련 역사의 보존과 활용이나 수원시의 새로운 관광 콘텐츠 개발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규명하지 못한 사항들에 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이를테면 농민회관이 한국 농업에 미친 성과나 영향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는 다루지 못하였다. 또한, 농민회관을 이용한 사람들의 이야기나 서호와 서둔동 일대에서 농업연구와 관계된 인물들의 이야기를 추가로 발굴한다면, 향후 관련 콘텐츠 개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분야와 관련된 추가연구와 수원시 등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관심을 기대해 본다.

투고일 2024년 4월 25일 심사일 2024년 6월 20일 게재확정일 2024년 6월 27일

참고문헌

1. 1차 사료

-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경기도조례 제8026호, 2024.5.16.).
-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 시행규칙」(경기도규칙 제3930호, 2020.10.7.).
- 「국가유산기본법」(법률 제20309호, 2024.2.13.).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555호, 2024.6.14.).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20369호, 2024.2.27.).
- 「문화재보호법」(법률 제20194호, 2024.2.6.).
-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530호, 2023.12.26.).
- 「새마을지도자연수원설치법」(법률 제3171호, 1979.12.28.).
- 공보처, 1971, 「백두진국무총회 농민회관 기공식 참석연설」(국가기록원 관리번호 : CET0033179).
- 내무부, 1979, 「새마을지도자연수원현황(1979.10.10.)」(국가기록원 관리번호 : BA0844842).
- 총무처, 『관보』 제8162호(1979.1.31.).

2. 단행본 및 논문

- 국가철도공단, 2021, 『한국의 철도역』, 국가철도공단.
- 김우영 외 6인, 2019, 『수원의 옛 건물과 문화』, 수원문화원.
- 김종근, 1971, 「농민회관 신축계획」, 『공간』 6월호, 공간사.
- 내무부, 1980, 『새마을운동 10년사(자료편)』, 내무부.
-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2009, 『등록문화재 실무편람』, 문화재청.
- 안국진 외 3인, 2023, 「서수원 역사 · 문화자산 탐방로 조성계획」, 『SRI정책Brief』 No.22, 수원시정연구원.
- 영농기술자중앙회, 1989, 『흙에 뺀 뿌리-농촌지도자 40년사』, 우신문화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9, 『한국농정50년사 I』, 농림부.
- 허성득, 1970, 「농촌자원지도자의 육성과 그 의의」, 『연구와지도』 11(3), 농촌진흥청.

3. 신문 및 인터넷, 기타

- 「1만 3백 29명 교육 새마을지도자 양성」, 『매일경제』 1973년 1월 19일.
- 「1만 8천 곳에 농민복지 회관」, 『경향신문』 1971년 3월 10일.
- 「4H경진대회 종합 1위 경기도」, 『동아일보』 1971년 4월 8일.

「4H중앙경진대회 개막」, 『조선일보』 1973년 4월 6일.
 「걸프회사서 공비기증 농민회관 진입교 19일 수원서 기공」, 『매일경제』 1972년 12월 19일.
 「경수전철역 주변 땅값 대체로 높은 수준」, 『매일경제』 1974년 4월 26일.
 「녹색혁명 단시일 내 이룩 농촌자원지도자등 대회」, 『동아일보』 1972년 11월 1일.
 「농민회관 건립 기공」, 『대한뉴스』 제823호(1971년).
 「농민회관 건립」, 『조선일보』 1970년 12월 26일.
 「농촌 변화 바람, 새마을운동 주도」, 『농민신문』 2021년 4월 16일.
 「리, 등에 농민복지회관 내부부 1만 8천 곳에 설치」, 『매일경제』 1971년 3월 10일.
 「박정희 대통령 동정」, 『대한뉴스』 제1090호(1976년).
 「새마을 교육」, 『대한뉴스』 제1045호(1975년).
 「새마을 운동 열돌」, 『대한뉴스』 제1282호(1980년).
 「새마을」, 『대한뉴스』 제994호(1974년).
 「새마을교육...외출금지 합숙도」, 『조선일보』 1973년 3월 31일.
 「새마을의 역군들」, 『대한뉴스』 제985호(1974년).
 「새마을지도자연수원 농촌진흥청에 개원」, 『조선일보』 1973년 7월 3일.
 「수도권전철 7일 기공」, 『조선일보』 1971년 4월 1일.
 「수원서 농민회관 기공」, 『동아일보』 1971년 4월 8일.
 「식량증산 산학협조회의」, 『조선일보』 1973년 5월 5일.
 「지하철·수도권전철 개통」, 『경향신문』 1974년 8월 15일.
 국가유산청(<https://www.khs.go.kr>).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https://www.heritage.go.kr>).
 국가철도공단(<https://www.kr.or.kr>).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https://map.ngii.go.kr>).
 농촌진흥청(<https://www.rda.go.kr>).
 대통령기록관(<https://www.pa.go.kr>).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https://sua.saemaui.or.kr>).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https://cals.snu.ac.kr>).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http://www.korlca.or.kr>).
 K-TV e영상역사관(www.ehistory.go.kr).

요 약

이 연구는 수원시 화서동에 위치한 농민회관의 건립과 운영의 역사를 살펴보고, 역사적 기념물로서 농민회관의 보존과 활용방안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영농기술자중앙회와 새마을지도자연수원의 편찬기록물, 국가기록원 소장 자료, 각종 언론 보도 및 대한뉴스 등의 자료 등을 중심으로 농민회관이 간직한 역사를 입체적으로 조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농민회관은 1971년 전국 농민들의 뜻을 모아 건립이 추진되었다. 건립 비용은 박정희 대통령의 지원과 전국 농민들의 성금으로 추진되었으며, 서울과 수원의 설립 방안을 검토한 결과 현재의 서호 저수지 주변에 건립되었다. 그러나 건립 추진의 목적과 달리 1973년 준공된 이후 1983년까지 10년간 새마을지도자연수원으로 사용되었다. 이것은 1970년대 국가적 사업이었던 새마을운동의 확산 지침에 따른 것이었으나, 이 기간 농민회관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 인사들이 방문하는 의미 있는 장소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2023년 농민회관은 건립 50주년을 맞이하였다. 건립과정과 1970년대 정부의 농업 중시 정책, 그리고 새마을운동의 역사를 종합적으로 지니고 있어 문화적, 역사적 측면에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현재 농민회관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반해 보존과 활용에 관한 관심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를 위해 농민회관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문화유산 등록 추진, 그리고 서호 저수지 주변에 산재한 각종 농업 관련 유물, 유적과 연계한 탐방 프로그램 신설과 운영을 검토하였다. 이것은 농업 관련 역사 보존과 활용, 나아가 수원시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주제어 : 농민회관, 새마을운동연수원, 농업, 문화유산, 수원

ABSTRACT

The History of Suwon Farmers' Hall and Preservation-Utilization Plan

Lee Sinja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history of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the Farmers' Hall in Suwon, and to examine the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of the Farmers' Hall as a historical monument.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construction of the Farmers' Hall was carried out in 1971 with the support of national wide farmers and the support of President Park Chung Hee, and the establishment around the present Seocho(West Lake). However, unlike the purpose of the construction, it was used as a Saemaul leader Academy for 10 years from the completion in 1973 until 1983. This was in accordance with the proliferation guidelines of the Saemaul Undong(Movement), which was a national project in the 1970s, as a result, the Farmers' Hall was used as a meaningful place to visit not only domestic but also overseas.

In 2023, the Farmers' Hall celebrated its 50th anniversary, and it has a high value in terms of culture and history because it has a comprehensive history of the construction process, the government's agriculture-oriented policy in the 1970s, and the Saemaul Undong. However, the interest in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is still low compared to the value of the farmers' hall.

To this end, we reviewed the installation of information boards at the Farmer's Hall that citizens can understand, the promotion of cultural property registration to

the extent possible,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 visit program linking various agricultural artifacts and relics scattered around the Seocho. This will require continued interest and research in that it can preserve and utilize agricultural-related history and furthermore utilize it as a new tourism resource for Suwon City.

Key words : Farmers' Hall, Saemaul Undong Academy, Agriculture, Cultural Heritage, Suwon City

수원시 생태교통마을 환경 만족도 분석 및 정책방향 : 거주자와 방문객 비교를 중심으로*

김숙희** / 권남주***

1. 서론
2. 문헌 분석
3. 거주자와 방문객의 마을 환경 만족도 비교 분석
4. 생태교통마을의 운영요소 및 불편수준 분석
5. 결론 및 정책제언

1.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세계 교통 선진국들은 최근 차량이 아닌 사람 중심의 교통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 과거의 차량 중심 교통 정책은 교통 혼잡, 주차 공간 부족 등의 문제를 야기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 확장 및 도로망 건설이 추진되었지만, 오히려 자동차 통행량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보행 환경의 질과 삶의 만족도를 악화시키고, 사람을 위한 공간이 점점 줄어들게 만들었다. 이

* 본 연구는 SRI-전략-2023-03 「수원시 생태교통 정책의 성과평가 및 발전방향 연구(생태교통 마을 중심으로)」 내용 일부를 수정·보완한 논문입니다.

**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선임연구위원(Senior Research Fellow, Suwon Research Institute, E-mail : sukheek@suwon.re.kr, Tel : 031-220-80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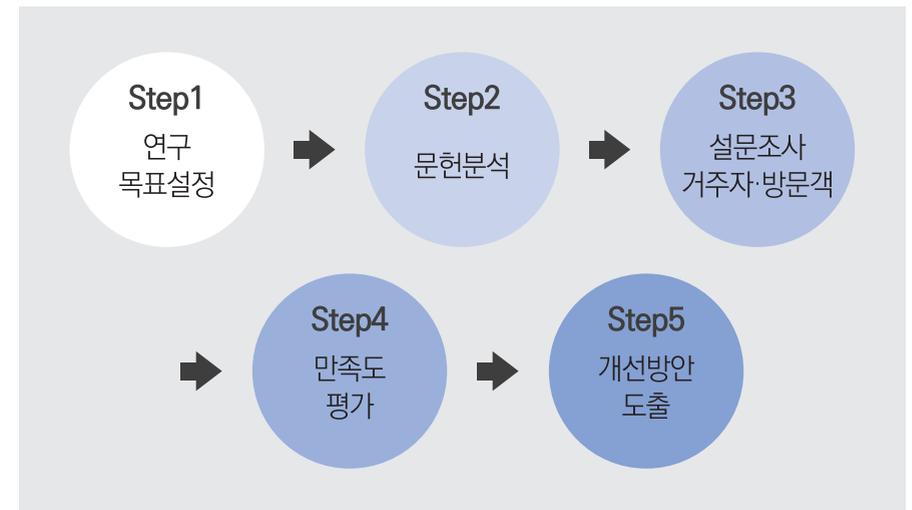
*** (전)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위촉연구위원(E-mail : njoo0304@suwon.re.kr, Tel : 031-220-8080)

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원시는 2013년 9월 한 달 동안 행궁동 일원인 신평동, 장안동에서 차 없는 생활을 체험하는 '생태교통 수원 2013'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행궁동 일대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이 위치한 지역으로, 생태적 가치와 역사·문화적 가치의 결합을 통해 관광 효과의 극대화 와 도시 브랜드 확립 등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며 이 사업을 시행하였다. 이 사업은 일회성 행사가 아닌 도시 내 교통 패러다임 전환을 목표로 한 혁신적인 실험으로, 사람 중심의 교통 체계를 도입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이 지역은 역사문화유적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개발이 제한되어 인구 감소, 상권 약화, 지역 낙후 등의 문제를 겪고 있었다. 이에 따라 도시 기반 정비와 지역 내 생태교통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시 재생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최근 행궁동의 행리단길은 인기 드라마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국내외 방문객이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주말에는 방문객들의 차량으로 인해 주차문제가 심각해지고 보행 환경이 열악해지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생태교통 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생태교통 수원 2013'의 10주년을 맞아 행궁동 일대 생태교통마을의 거주자와 방문객을 중심으로 만족도 분석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생태교통 수원 2013' 이후 10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행궁동이 생태교통마을로서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생태교통의 개념이 단순한 일회성 프로젝트가 아닌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전략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 준다. 또한, 보행 환경,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등 다양한 도시재생과 관련한 공공사업이 행궁동에서 이루어졌으며, 주민들의 생태교통에 대한 인식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행궁동은 여전히 생태교통의 선도적인 모델로서 주목받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생태교통 정책이 거주자와 방문객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며, 향후 정책적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거주자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보행 환경, 대중교통 접근성, 주차 문제 등 주요 요인들을 조사하고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생태교통마을로서의 행궁동의 만족도를 평가하고, 향후 정책 제언을 통해 지속 가능한 교통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 절차

이 연구의 목표는 생태교통이 지역사회 내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행궁동 거주자 및 방문객의 요구 분석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중요성을 설명하고, 연구 문제를 정의한다. 생태교통 관련 기존 연구 성과를 분석하여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 국내외 문헌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행궁동과 같은 도시 환경에서 생태교통 정책이 주민과 방문객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며 주요 영향 요인을 도출한다. 연구 방법은 설문 조사를 중심으로 하였고, 설문 문항은 문헌 고찰을 통해 도출된 후 여러 차례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구성되었다. 수집된 데이터는 이상치를 제거한 후 교차분석을 통해 거주자와 방문객의 응답을 비교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태교통 정책의 개선 사항과 방향을 제안한다. 연구 결과를 통해 도출된 생태교통의 발전 가능성과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며, 연구 수행 절차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 절차

2. 문헌 분석

1) 생태교통의 개념¹

생태교통이란 보행, 자전거, 수레와 같은 무동력 이동수단이나 대중교통, 친환경 전기 동력 수단과의 연계를 포함하는 환경적·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지역 교통체계를 의미한다. 생태교통은 친환경성(Environmentally friendly)과 사회적 포용성(Socially inclusive)을 지향한다. 친환경성이란 기후 변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와 환경오염 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사회적 포용성이란 장애인, 어린이, 노인과 같은 교통약자를 포함하여, 사회적 취약 계층 등 다양한 계층이 소외받지 않고 교통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을 지향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도로 공간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인식하는 관점을 포함한다.

2) 선행 연구

박소현 외²는 설문을 통해 보행량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보행 환경 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행 친화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작성하여 활용 방안을 모색하였다. 도출된 주요 요소로는 편의성, 안정성, 목적성, 쾌적성, 장소성 등이 있다.

최효승·김혜영³은 문화거리 조성을 위한 보행 환경 개선사업이 상업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는 충장로 특화거리를 대상으로 하여, 상업 환경 개선, 방문객 증가, 매출액 증가 등의 영향 요인을 도출하였다. 특히 쾌적성, 접근 편리성, 상징성, 접근 장소 요소가 상업 환경 개선의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1 생태교통(Ecomobility)은 ICLEI 사무총장이며, 세계생태교통연맹(EcoMobility Alliance) 총재를 역임하였던 Konrad Otto-Zimmerman이 주창한 개념이다.
 2 박소현 외, 2008, 「도시주거지의 물리적 보행 환경요소 지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24(1), 161~172쪽.
 3 최효승·김혜영, 2009, 「문화거리조성을 위한 보행 환경 개선사업이 상업 환경에 미치는 영향분석(충장로 특화거리 조성 시범 가로를 대상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9(8), 237~247쪽.

민현석·여혜진⁴은 서울시 차 없는 거리의 개선 및 확대 방안 연구를 수행하여, 차 없는 거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주민 참여를 통한 지속적 관리 및 운영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차소라 등⁵은 '생태교통 수원 2013' 개최에 따른 보행 만족도를 조사하고, 보행 환경 요소가 보행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신흥·장안동 주민 1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보도 폭, 야간 환경(조명), 차량 경계시설, 청결, 휴식 공간, 조정시설 등이 보행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이 연구는 보행 환경의 안전성과 관리성이 보행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백수진·유석연⁶은 보행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안전성, 쾌적성, 편리성, 연속성, 접근성, 장소성으로 구분하고, 이를 물리적·비물리적 요소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주거지의 보행 친화적 환경은 물리적 요소에서 만족도가 높았으나, 비물리적 요소에서는 사업 시행 전보다 만족도가 낮아졌다.

김숙희·이승규⁷는 '생태교통 수원 2013' 시범사업을 통해 조성된 마을 기반 시설과 차 없는 마을 운영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조사하였고, 이를 통해 주민들의 수단전환과 교통행태 변화를 분석하였다.

김숙희·이승규⁸는 '생태교통 수원 2013' 행사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우려되는 교통 문제를 분석하고 사업 시행 중 거주민들의 교통행태의 변화를 분석하여 생태교통 사업 시행 시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Kim et al.⁹은 차 없는 거리 선정 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방법론 연구를 통해, 차 없는 거리를 상업지역형, 주거지역형, 학교지역형, 문화지역형으로 구분하고, 차 없

4 민현석·여혜진, 2012, 「서울시 차 없는 거리 개선 및 확대방안 연구(도심부를 중심으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5 차소라 외 2인, 2014, 「거주자의 보행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분석-생태교통수원2013이 개최된 행궁동 일대를 중심으로」.
 6 백수진·유석연, 2014, 「주거지의 보행친화적 근린 환경 요소 특성에 관한 연구 - 생태교통 수원 2013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5(6).
 7 김숙희·이승규, 2014, 「생태교통 수원 2013 사업지역의 마을 환경 만족도 분석」, 『교통기술과 정책』 11(4), 대한교통학회.
 8 김숙희·이승규, 2014, 「생태교통 수원 2013 - 교통변화분석」, 『교통기술과 정책』 11(1), 대한교통학회.
 9 Kim, Y., Park, J., Lee, J., & Ha, T., 2016, "Methodology of Selecting Criteria for Pedestrian only Stree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36(5), 867-879쪽.

는 거리의 목표로 안정성, 쾌적성, 연속성, 접근성, 환경성, 소통성을 제시하였다.

장재민 등¹⁰은 행궁동 생태교통 시범사업에 따른 보행자 우선 도로 시행의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보행자 관련 사고는 줄었지만 불법 유턴 사고와 속도 저하에 따른 신호 위반 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정원 등¹¹은 COVID-19 이후 차 없는 거리가 도입된 종로 52길을 대상으로 차 없는 거리 정책의 효과를 평가한 결과, 유입 인구 증가를 통해 도시 활력 증진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COVID-19 시기에는 생활 인구 밀도 증가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Carlos Moreno et al¹²은 ‘15분 도시 소개- 미래 포스트 팬데믹 도시에서 지속가능성, 회복력 및 장소 정체성’ 연구에서 COVID-19 팬데믹으로 도시의 사회경제적 충격이 커짐에 따라 기존의 도시 설계 개념을 재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16년 Carlos Moreno가 제안한 ‘15분 도시’ 개념이 재부상하며 주목받았습니다. 이 개념은 시민들이 도보나 자전거로 15분 이내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목표로 하며, 보행 친화적인 도시 설계의 중요한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스마트 도시와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보완하며, 도시가 더 인간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였습니다.

과리 15분 도시개념과 스페인 바르셀로나 슈퍼블록, 스웨덴의 1분 도시와 같은 이러한 개념은 생태교통과 밀접한 관련 있어 수원 행궁동과 같은 역사 문화 도시에서도 적용 가능한 가능성을 보여준다. Konrad Otto-Zimmerman의 연구¹³는 보행자 중심 교통 체계가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본 연구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었다.

10 장재민·이영민·김숙하·최희균, 2018, 「보행자 우선도로 개선 사업으로 인한 교통사고 변화에 대한 연구」, 『대한교통학회지』 36(2).
 11 하정원·하재현·이수기, 2022, 「통제집단합성법을 활용한 차 없는 거리 정책의 도시활력 증진 효과 분석」, 『지역연구』 38(2), 59-72쪽.
 12 Carlos Moreno, Zaheer Allam et al, 2021, "Introducing the '15-Minute City' : Sustainability", Resilience and Place Identity in Future Post-Pandemic Cities, MDPI, Smart Cities 2021, 4, pp.93~111(<https://doi.org/10.3390/smartcities4010006>).
 13 Konrad Otto - Zimmerman & ICLEI, 2012, "EcoMobility SHIFT."

3) 본 연구의 차별성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거주자와 방문객을 대상으로 생태교통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를 분석하고, 정책적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기존 연구들이 보행 환경에 중점을 두었다면, 본 연구는 자전거 이용 환경과 대중교통 접근성, 심각한 주차문제 등 다양한 요인들을 추가적으로 분석하고, 생태교통이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는 다양한 지표들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3. 거주자와 방문객의 마을 환경 만족도 비교 분석

1) 설문조사 개요

행궁동에 거주하는 주민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생태교통마을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는 2023년 6월 26일부터 7월 3일까지 일주일간 대면 방식으로 7점 리커트 척도로 진행되었다. 거주민 설문은 행궁동 내 주민 463명을 대상으로 마을 통장 8명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여 수행하였으며, 방문객 설문은 행궁동 내 카페와 음식점 등 방문객이 밀집한 장소에서 472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수집된 설문 데이터에서 각각 2건의 이상치를 제거한 후, 최종적으로 거주민 461건과 방문객 470건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1) 설문조사 항목 도출 과정

설문 항목은 선행연구와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구성하였다. 생태교통마을로서의 행궁동에서 거주자와 방문객이 느끼는 보행 환경, 자전거 인프라, 대중교통 접근성, 주차문제 등 주요 요인들을 평가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설문 항목 도출 과정은 크게 4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 선행연구 검토

먼저 생태교통 보행 환경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보행 환경, 자전거 인프라, 대중교통 접근성이 도시의 지속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한 요소로 다루고 있으며, 이러한 지표들은 연구 설계에 반영되었다. Konrad Otto-Zimmerman의 연구¹⁴는 생태교통의 개념과 관련하여 보행 친화적 환경이 도시재생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박소현의 연구¹⁵에서는 보행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물리적 요소들을 도출하였다. 차소라 등¹⁶과 김숙희 등¹⁷에서는 생태교통에 대한 다양한 요인들을 다루고 있어 이는 연구의 설문항목에 반영되었다.

[2단계] 전문가 자문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도출된 초안 항목은 생태교통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통해 검토되었다. '생태교통 수원 2013'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설문 항목의 타당성과 관련성을 평가하였다. 특히, 방문자의 방문 목적을 세분화하였으며, 대중교통 접근성, 주차 문제 등 연구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항목들이 보강되었다.

[3단계] 2차 전문가 서면자문

전문가 자문을 통해 수정된 설문 초안은 서면 자문을 통해 다시 한 번 검토되었다. 이 과정에서 설문 항목 간의 논리적 흐름과 항목의 이해도가 평가되었으며,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 항목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수정되었다. 예를 들어,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생태교통에 대한 설명을 추가, 마을 환경 만족도 항목에 '도로 이용 환경(교통 혼잡)'을 추가 및 교통정책 결정사항으로는 '일방통행

14 Konrad Otto - Zimmerman & ICLEI, 2012, "EcoMobility SHIFT."

15 박소현 외, 2008, 「도시주거지의 물리적 보행 환경요소 지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24(1), 161~172쪽.

16 차소라 외 2인, 2014, 「거주자의 보행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분석-생태교통수원 2013이 개최된 행궁동 일대를 중심으로」.

17 김숙희·이승규, 2014, 「생태교통 수원 2013 사업지역의 마을 환경 만족도 분석」, 『교통기술과 정책』 11(4), 대한교통학회.

제' 시행 찬반에 대한 문항을 포함하였다. 방문객의 마을 환경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 정보', '주차장 이용 정보' 항목을 추가하였다.

[4단계] 사전 설문 및 최종 설문 문항 선정

거주자는 고령층이 다수 분포되어 있으므로 쉽게 이해 가능한 문구로 수정하였다. 방문객 설문은 빠른 시간 내에 응답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구성하였다. 이와 같은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생태교통마을 만족도 및 발전방향을 도출할 수 있는 설문조사 항목을 구축하였다. 일반특성으로 행궁동 거주자(성별, 연령대, 주택 유형, 거주기간, 소유 차량 및 이륜차 등), 방문객(성별, 연령대, 방문 목적·횟수·수단 등)을 조사하였다. 생태교통마을 만족도 항목(보행 환경, 자전거이용 환경, 대중교통접근성, 주차문제 등)을 통해 생태교통에 대한 인지도 및 인식을 조사항목으로 설정하였다. 생태교통마을 불편수준 항목을 통해 불법주차, 방문(관광)차량, 주차 이용 환경(주차공간 부족 여부, 주차 편의성, 불법 주차 문제 등)에 대한 불편수준을 조사하였다.

(2) 연구 목적과 설문 항목의 연계성

본 연구의 설문 항목은 선행연구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도출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설문 항목들이 연구 목적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다. 보행 환경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도시재생과 교통 정책 개선에 대한 거주자와 방문객의 요구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또한, 자전거 인프라와 대중교통 접근성에 대한 설문 항목은 향후 생태교통 정책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데에 핵심적인 지표로 활용될 것이다. 거주자와 방문객의 생태교통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설계되었다. 세부적인 설문조사 항목은 <표 1>과 같다.

〈표 1〉 행공동 거주자 및 방문객 대상 설문조사 항목

구분	내용	
일반특성	공통	성별, 연령대, 직업, 주소
	거주자	주택 유형 및 거주 유형, 거주기간, 소유 차량 및 이륜차
	방문객	방문 목적, 방문 횟수(빈도), 방문지 체류시간, 방문 수단
생태교통 마을 만족도	공통	생태교통 인지도 및 인식 생태교통마을 환경 만족도 : 보행 환경, 도로 이용 환경, 자전거 이용 환경, 대중교통 편리성, 주차장 이용 환경, 지역 내 미관, 야간 조명시설, 쉼터 및 공원 조성, 대기 환경, 소음 환경, 마을 전반적인 만족도
	거주자	생태교통마을 환경 만족도 : 방문객 증가
	방문객	생태교통마을 환경 만족도 : 행공동 내 주요거점별 보행동선 정보, 대중교통 이용 정보
생태교통 마을 불편정도	공통	불법주차 불편수준 주차 위치 및 이용 환경 불편수준 : 공영주차장 위치, 주차장 접근성, 주차장 주차면수
	거주자	마을 방문(관광) 차량에 대한 불편수준
	방문객	도보통행 시 지나다니는 차량에 대한 불편수준 주차 위치 및 이용 환경 불편수준 : 주차장 이용 정보

2) 생태교통마을 거주자 및 방문객의 마을 환경의 만족도 비교분석

(1) 응답자의 일반 특성

응답자들의 성별 특성 분석 결과 거주자 남성(41%), 여성(59%)이고, 방문객은 남성(41.9%), 여성(58.1%)로 나타났다.

〈표 2〉 응답자의 성별 현황

구분	거주자		방문객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남성	189	41.0	197	41.9
여성	272	59.0	273	58.1
합계	461	100.0	470	100.0

〈표 3〉 응답자의 연령대 현황

구분	거주자		방문객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10대	-	-	10대	18
20대	45	9.8	20대	107
30대	56	12.1	30대	100
40대	43	9.3	40대	66
50대	98	21.3	50대	65
60대 이상	219	47.5	60대 이상	114

〈표 4〉 응답자의 거주기간(거주자)과 체류시간(방문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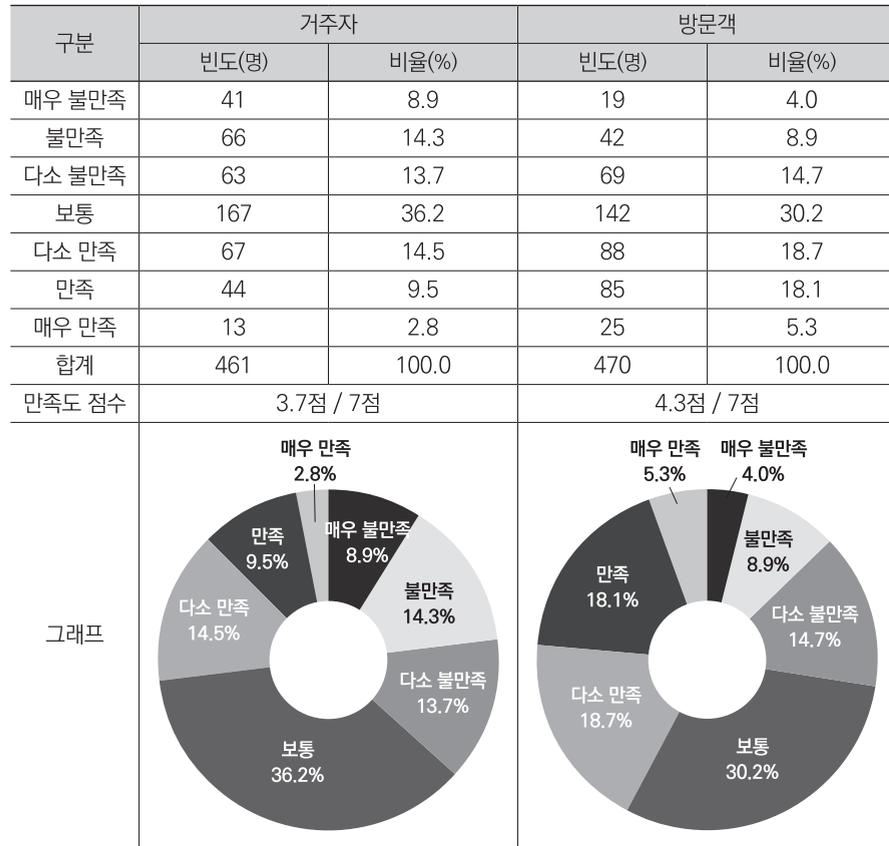
거주자	평균	방문객	평균
거주기간	21년	체류시간	3.2

(2) 보행 환경 만족도

보도 폭, 장애물 여부 등 보행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 대부분으로 나타났고, 방문객이 거주자보다 보행 환경에 대해 더욱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거주자는 보행 환경에 대해 '다소 만족' 이상 26.8%, '다소 불만족' 이상 36.9%로 불만족 의견이 비교적 많았다. 방문객은 보행 환경에 대해 '다소 만족' 이상 42.1%, '다소 불만족' 이상 27.6%로 만족하는 의견이 많았다. 방문객은 보도 포장 및 정비 등으로 보행 환경에 만족하는 것으로 보이나, 거주자는 방문객 증가 및 불법주차 등으로 보행 환경에 대해 비교적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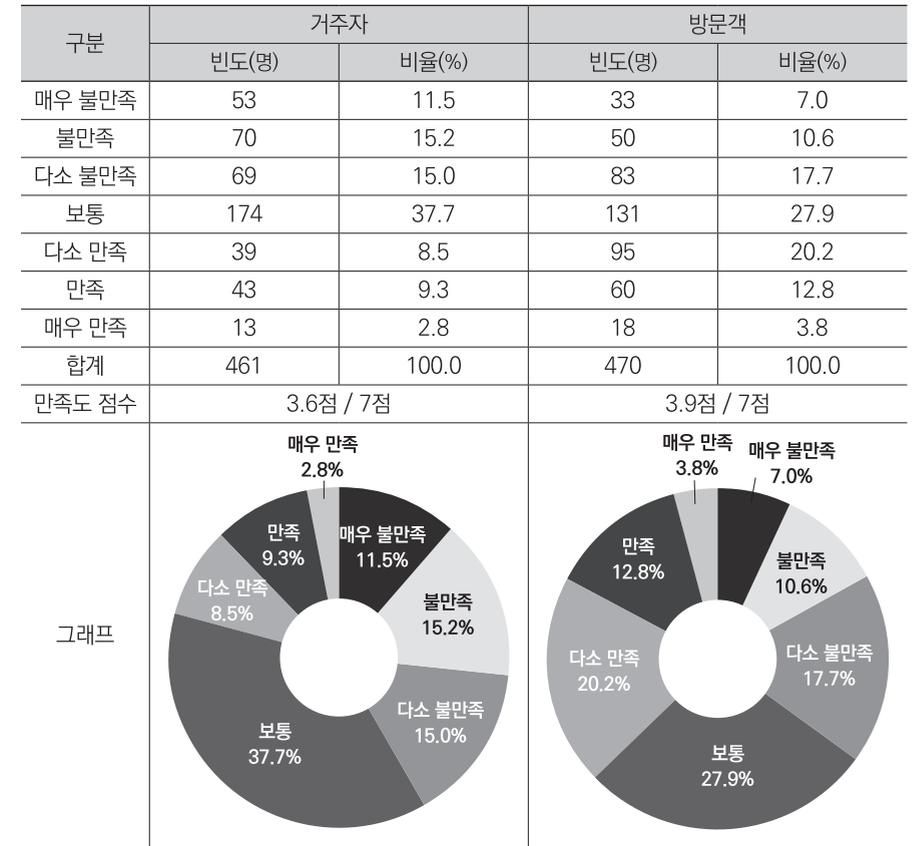
〈표 5〉 보행 환경 만족도



(3) 자전거 이용 환경

자전거 이용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거주자는 ‘다소 불만족’이 높고, 방문객은 만족과 불만족 의견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며, 이는 자전거로 방문하는 사람이 적어 자전거 이용 환경에 대해 체감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거주자는 자전거 이용 환경에 대해 ‘다소 만족’ 이상 20.6%, ‘다소 불만족’ 이상 41.7%로 불만족하는 의견이 많았다. 방문객은 자전거 이용 환경에 대해 ‘다소 만족’ 이상 36.8%, ‘다소 불만족’ 이상 35.3%로 비슷한 수준이다. 거주자의 자전거 이용 환경 만족도는 마을 내 자전거 도로 부재로 인해 비교적 낮게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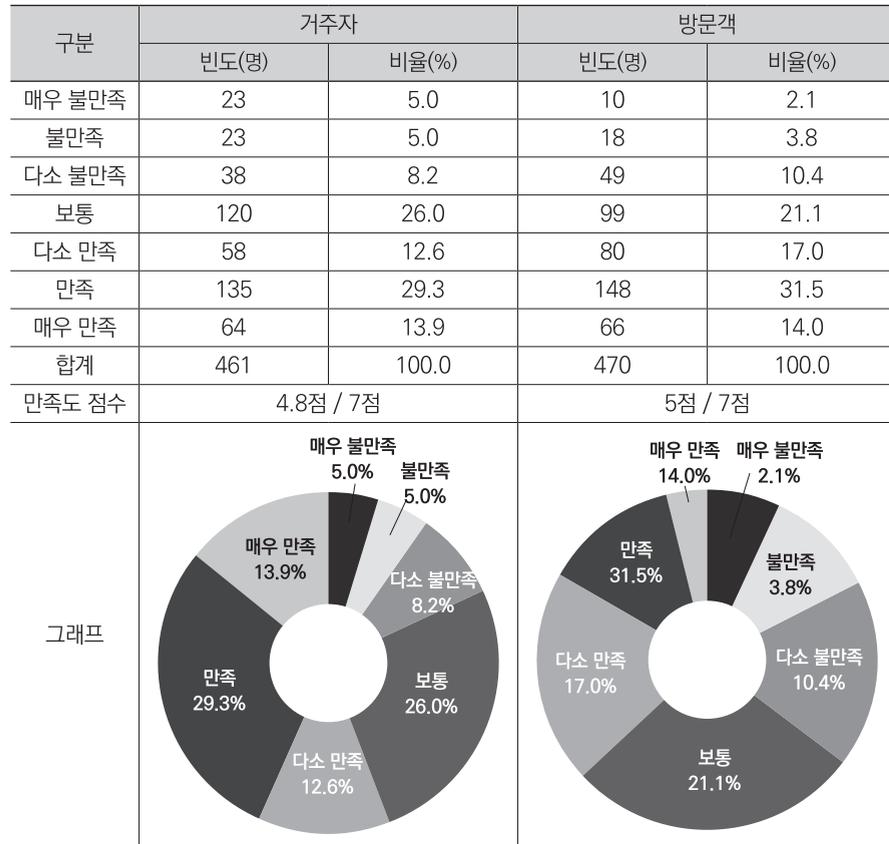
〈표 6〉 자전거 이용 환경 만족도



(4) 대중교통 이용 환경

거주자와 방문객 모두 대중교통 이용 환경에 대한 만족 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거주자는 대중교통 이용 환경에 대해 ‘다소 만족’ 이상 55.8%, ‘다소 불만족’ 이상 18.2%로 만족하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방문객은 대중교통 이용 환경에 대해 ‘다소 만족’ 이상 62.5%, ‘다소 불만족’ 이상 16.3%로 만족하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거주자와 방문객 모두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이는 충분한 대중교통 노선으로 접근성이 좋은 것으로 보인다. 추가로 방문객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이용 정보’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다소 만족’ 이상 비율이 61.3%로 나타나 대중교통 관련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7〉 대중교통 이용 환경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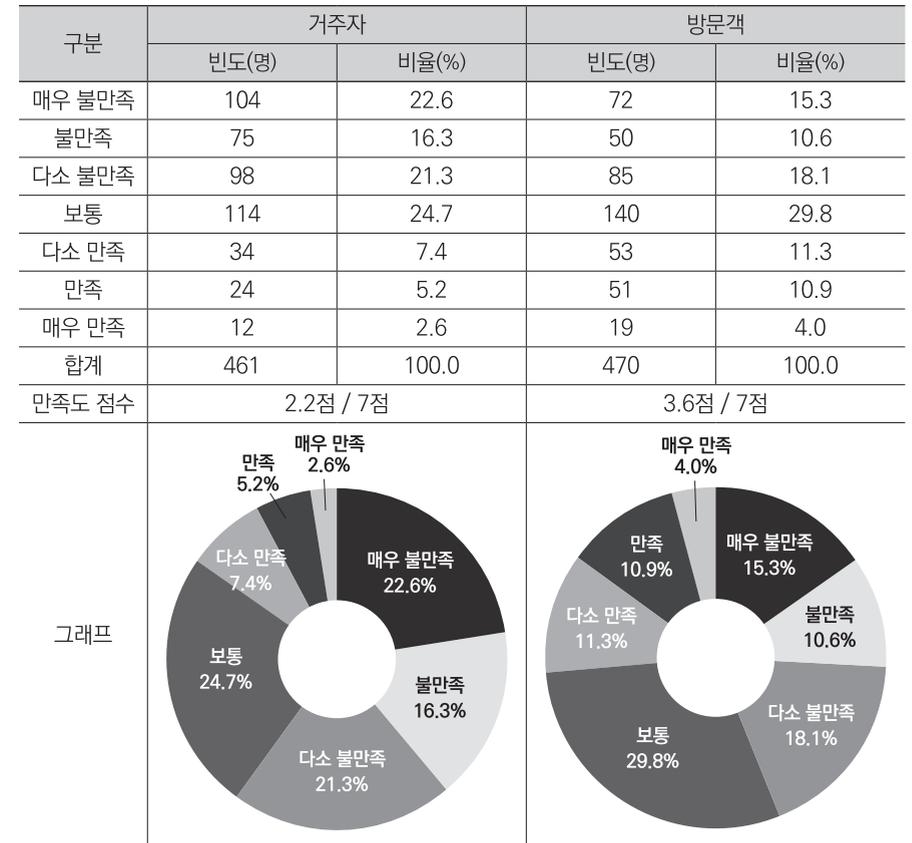


(5) 도로 이용 환경

교통 혼잡 등 도로 이용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거주자는 도로 이용 환경에 대해 ‘다소 만족’ 이상 15.2%, ‘다소 불만족’ 이상 60.2%로 불만족하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방문객은 도로 이용 환경에 대해 ‘다소 만족’ 이상 26.2%, ‘다소 불만족’ 이상 44.0%로 불만족하는 의견이 많다. ‘다소 불만족’ 이상의 비율이 거주자는 60.2%, 방문객은 44.0%로 나타나며, 도로 이용 환경에 대해 거주자가 방문객보다 더욱 불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거주자의 도로 이용 환경 만족도가 상당히 낮으며, 이는 방문객 교통량 증가로 인해 교통 혼잡이 발생

하여 보행불편 등 거주자의 도로 이용에 대한 만족 수준이 낮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표 8〉 도로 이용 환경 만족도



(6) 주차장 이용 환경

주차장 이용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다소 불만족’ 이상의 비율이 거주자는 75.1%, 방문객은 64.2%로 나타나며, 거주자와 방문객 모두 주차장 이용 환경에 대한 불만족 수준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거주자는 주차장 이용 환경에 대해 ‘다소 만족’ 이상 9.6%로 매우 낮으며, 방문객은 주차장 이용 환경에 대해 ‘다소 만족’ 이상 18.5%로 불만족하는 의견이 과반수

이다. 만족도 점수는 거주자(2.5점/7점), 방문객(3점/7점)으로 방문객 보다 거주자의 불만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아 방문객의 차량 증가에 따른 기존 주차공간의 부족에 의한 결과로 판단된다.

〈표 9〉 주차장 이용 환경 만족도

구분	거주자		방문객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매우 불만족	163	35.4	122	26.0
불만족	104	22.6	90	19.1
다소 불만족	79	17.1	90	19.1
보통	71	15.4	81	17.2
다소 만족	23	5.0	39	8.3
만족	16	3.5	27	5.7
매우 만족	5	1.1	21	4.5
합계	461	100.0	470	100.0

만족도 점수	2.5점 / 7점	3점 / 7점
그래프		

3) 생태교통마을 환경의 사회경제적 변수의 차이분석

(1) 방문객 연령대별 방문목적 차이 분석

방문객 중 여가(식사, 카페 등)목적은 대부분 20~30대이며, 문화 및 산책 목적은 60대 이상이다. 10~50대 대부분 여가목적으로 방문하였는데, 특히 20대 비율(69.2%)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40대(51.5%), 30대(45.0%)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문화목적은 60대 이상(35.1%)에서 가장 비율이 높았고 이어서 50대(18.5%), 30대(18.0%), 20대(11.2%) 순으로 나타났다. 업무목적은 10대(22.2%), 50대 이상(20.0%), 60대(18.4%), 30대(18.0%) 순이며, 산책목적은 60대(17.5%), 30대(12.0%), 50대(6.2%) 순으로 나타났다.

〈표 10〉 방문객 연령대별 방문목적

구분	빈도(명)	방문목적						x ²
		본가방문	여가	문화	업무	산책	기타	
10대	빈도(명)	3	8	2	4	1	0	116.770*** (p=.000)
	비율(%)	16.7	44.4	11.1	22.2	5.6	0.0	
20대	빈도(명)	2	74	12	13	4	2	
	비율(%)	1.9	69.2	11.2	12.1	3.7	1.9	
30대	빈도(명)	6	45	18	18	12	1	
	비율(%)	6.0	45.0	18.0	18.0	12.0	1.0	
40대	빈도(명)	12	34	6	10	1	3	
	비율(%)	18.2	51.5	9.1	15.2	1.5	4.5	
50대	빈도(명)	3	26	12	13	4	7	
	비율(%)	4.6	40.0	18.5	20.0	6.2	10.8	
60대 이상	빈도(명)	6	17	40	21	20	10	
	비율(%)	5.3	14.9	35.1	18.4	17.5	8.8	
총계	빈도(명)	32	204	90	79	42	23	470
	비율(%)	6.8	43.4	19.1	16.8	8.9	4.9	100.0

주 : p* < .1, p** < .05, p*** < .01

(2) 방문객 연령대별 체류시간 차이 분석

방문객의 모든 연령대는 대체로 2시간 이상 행궁동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대는 1시간 이상~2시간 이상 체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0~40대는 2시간 이상~반일 동안, 50~60대 이상은 1시간 이상 반일 내외로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종일 체류하는 방문객은 거의 없고, 대부분 1시간 이상~반일 동안 체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방문객 연령대별 체류시간

구분	체류시간						x ²		
	1시간 이내	1~2시간	2시간 이상	반일	종일	기타			
10대	빈도(명)	2	6	9	0	1	0	44.490*** (p=.010)	
	비율(%)	11.1	33.3	50.0	0.0	5.6	0.0		
20대	빈도(명)	7	10	50	29	11	0		
	비율(%)	6.5	9.3	46.7	27.1	10.3	0.0		
30대	빈도(명)	5	13	42	25	13	2		
	비율(%)	5.0	13.0	42.0	25.0	13.0	2.0		
40대	빈도(명)	5	15	28	17	1	0		
	비율(%)	7.6	22.7	42.4	25.8	1.5	0.0		
50대	빈도(명)	0	13	27	12	11	2		
	비율(%)	0.0	20.0	41.5	18.5	16.9	3.1		
60대 이상	빈도(명)	10	21	55	13	11	4		
	비율(%)	8.8	18.4	48.2	11.4	9.6	3.5		
총계	빈도(명)	29	78	211	96	48	8		470
	비율(%)	6.2	16.6	44.9	20.4	10.2	1.7		100.0

주 : p* < .1, p** < .05, p*** < .01

(3) 방문객 생태교통 인지도에 따른 사람중심정책 인식

생태교통을 잘 아는 방문객은 차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다소 도움됨’ 이상 분석결과, 잘 알고 있다(57.8%), 들어봤으나 잘 모른다(25.1%), 전혀 들어본 적 없다(24.1%)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람중심정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생태교통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표 12〉 생태교통 인지도에 따른 사람중심정책 인식 기여도(방문객)

구분	사람중심정책 인식 기여도							x ²		
	매우 도움 안됨	도움 안됨	다소 도움안됨	보통	다소 도움됨	도움됨	매우 도움됨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빈도(명)	20	11	14	56	10	13	9	64.263*** (p=.000)	
	비율(%)	15.0	8.3	10.5	42.1	7.5	9.8	6.8		
들어봤으나 잘 모른다	빈도(명)	10	17	28	130	27	15	20		
	비율(%)	4.0	6.9	11.3	52.6	10.9	6.1	8.1		
잘 알고 있다	빈도(명)	4	1	1	32	16	14	22		
	비율(%)	4.4	1.1	1.1	35.6	17.8	15.6	24.4		
총계	빈도(명)	34	29	43	218	53	42	51		470
	비율(%)	7.2	6.2	9.1	46.4	11.3	8.9	10.9		100.0

주 : p* < .1, p** < .05, p*** < .01

(4) 방문객 생태교통 인지도에 따른 수단전환 기여도

생태교통은 보행·자전거·대중교통 수단전환에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으로 생태교통을 잘 아는 방문객이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다소 도움됨’ 이상 비율을 분석한 결과 ‘잘 알고 있다’(56.7%), ‘들어봤으나 잘 모른다’(27.5%), ‘전혀 들어본 적 없다’(25.6%) 순으로 나타났다.

〈표 13〉 생태교통 인지도에 따른 수단전환 기여도(방문객)

구분	보행·자전거·대중교통 수단전환 기여도								x ²	
	매우 도움 안됨	도움 안됨	다소 도움안됨	보통	다소 도움됨	도움됨	매우 도움됨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빈도(명)	15	14	12	58	14	11	9	42.293*** (p=.000)	
	비율(%)	11.3	10.5	9.0	43.6	10.5	8.3	6.8		
들어봤으나 잘 모른다	빈도(명)	11	19	24	125	24	22	22		
	비율(%)	4.5	7.7	9.7	50.6	9.7	8.9	8.9		
잘 알고 있다	빈도(명)	6	2	3	28	15	16	20		
	비율(%)	6.7	2.2	3.3	31.1	16.7	17.8	22.2		
총계	빈도(명)	32	35	39	211	53	49	51		470
	비율(%)	6.8	7.4	8.3	44.9	11.3	10.4	10.9		100.0

주 : p* \lt .1, p** \lt .05, p*** \lt .01

거주자와 방문객 모두 생태교통 인지 여부에 따라 마을 만족도, 사람중심정책 인식 및 수단전환 기여도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생태교통에 잘 아는 사람일수록 마을 만족도, 사람중심정책 인식 기여도, 수단전환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생태교통 홍보를 통해 거주자의 생활권에 대한 만족도 향상 및 생태교통 운영에 시민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방문객의 사람중심정책에 대한 인식 향상뿐만 아니라 자가용이 아닌 보행, 자전거, 대중교통 등 친환경 이동수단 전환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거주자 생태교통 인지도에 따른 전반적인 마을 만족도

생태교통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거주자는 비교적 전반적인 마을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전반적인 마을 환경’에 만족한다는 의견은 생태교통에 대해 잘 아는 거주자가 가장 많았다. 잘 알고 있다(41.1%),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31.1%), 들어봤으나 잘 모른다(20.8%)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생태교통 용어 정도는 들어봤으나 잘 모르는 거주자’의 마을 환경 만족도가 ‘전혀 모르는 거주자’보다 낮았다. 그러나 생태교통을 들어봤으나 잘 모르는 사람의 만족 의견은 20.8%로 생태교통 배경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보다 만족도가 더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생태교통에 대해

잘 아는 거주자는 생태교통 정책 추진 후의 마을 변화를 체감하나, 모르는 사람들은 생태교통의 영향을 체감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생태교통 추진 사업에 대해 아는 바가 없어 각 사업으로 인한 체감 정도가 낮을 것으로 보인다.

〈표 14〉 생태교통 인지도에 따른 전반적인 마을 만족도(거주자)

구분	전반적인 마을 만족도								x ²	
	매우 불만족	불만족	다소 불만족	보통	다소 만족	만족	매우 만족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빈도(명)	3	3	8	17	6	5	3	28.096*** (p=.005)	
	비율(%)	6.7	6.7	17.8	37.8	13.3	11.1	6.7		
들어봤으나 잘 모른다	빈도(명)	15	17	45	83	27	13	2		
	비율(%)	7.4	8.4	22.3	41.1	13.4	6.4	1.0		
잘 알고 있다	빈도(명)	14	13	26	73	38	36	14		
	비율(%)	6.5	6.1	12.1	34.1	17.8	16.8	6.5		
총계	빈도(명)	32	33	79	173	71	54	19		461
	비율(%)	6.9	7.2	17.1	37.5	15.4	11.7	4.1		100.0

주 : p* \lt .1, p** \lt .05, p*** \lt .01

(6) 거주자의 주택종류에 따른 주차장 주차면수 불편수준

거주자 주택유형 중 연립주택 거주자의 주차장 주차면수에 대한 불편수준이 가장 높았다.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확보된 주차공간이 있기 때문에 불편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조금 불편함’ 이상의 비율 분석결과, 연립주택(87.0%), 오피스텔(83.3%), 다세대/다가구주택(77.0%), 단독주택(75.9%), 아파트(41.7%) 순으로 나타났다.

〈표 15〉 주택종류에 따른 주차장 주차면수 불편수준(거주자)

구분	주차장 주차면수 불편수준								x ²
	매우 불편함	불편함	조금 불편함	보통	조금 불편치 않음	불편치 않음	전혀 불편치 않음		
아파트	빈도(명)	0	3	2	2	0	2	3	106.564*** (p=.000)
	비율(%)	0	25.0	16.7	16.7	0	16.7	25.0	
연립주택	빈도(명)	32	10	18	5	4	0	0	
	비율(%)	46.4	14.5	26.1	7.2	5.8	0	0	
다세대/ 다가구주택	빈도(명)	41	16	10	11	4	3	2	
	비율(%)	47.1	18.4	11.5	12.6	4.6	3.4	2.3	
단독주택	빈도(명)	91	55	62	51	9	5	1	
	비율(%)	33.2	20.1	22.6	18.6	3.3	1.8	0.4	
오피스텔	빈도(명)	2	0	3	0	1	0	0	
	비율(%)	33.3	0	50.0	0	16.7	0	0	
기타	빈도(명)	9	3	0	1	0	0	0	
	비율(%)	69.2	23.1	0	7.7	0	0	0	
총계	빈도(명)	175	87	95	70	18	10	6	461
	비율(%)	38.0	18.9	20.6	15.2	3.9	2.2	1.3	100.0

주 : p* < .1, p** < .05,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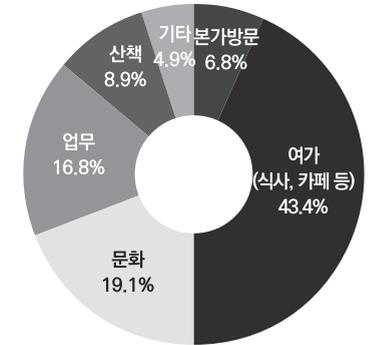
4. 생태교통마을의 운영요소 및 불편수준 분석

1) 방문객 방문목적·횟수·수단

방문객은 주로 식사, 카페 등 여가목적(43.4%)으로 마을을 방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가(43.4%), 문화(19.1%), 업무(16.8%), 산책(8.9%), 본가방문(6.8%), 기타(4.9%) 순으로 나타났다.

〈표 16〉 방문 목적(방문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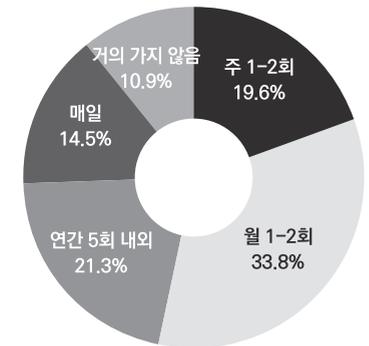
구분	빈도(명)	비율(%)
본가방문	32	6.8
여가 (식사, 카페 등)	204	43.4
문화	90	19.1
업무	79	16.8
산책	42	8.9
기타	23	4.9
합계	470	100.0



대부분의 방문객은 월 1~2회(33.8%), 연간 5회 내외(21.3%), 주 1~2회(19.6%), 매일(14.5%), 거의 가지 않음(10.9%) 순으로 나타났다.

〈표 17〉 방문 횟수(방문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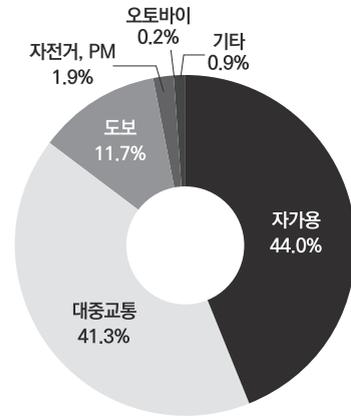
구분	빈도(명)	비율(%)
주 1-2회	92	19.6
월 1-2회	159	33.8
연간 5회 내외	100	21.3
매일	68	14.5
거의 가지 않음	51	10.9
합계	470	100.0



방문객은 주로 자가용, 대중교통을 통해 방문하며, 그 중 자가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용(44.0%), 대중교통(41.3%), 도보(11.7%), 자전거·PM(1.9%), 기타(0.9%), 오토바이(0.2%) 순으로 나타났다.

〈표 18〉 방문 수단(방문객)

구분	빈도(명)	비율(%)
자가용	207	44.0
대중교통	194	41.3
도보	55	11.7
자전거, PM	9	1.9
오토바이	1	0.2
기타	4	0.9
합계	470	100.0



2) 생태교통 인지도 및 인식

거주자 및 방문객의 생태교통 용어 인지도는 거주자 중 '생태교통에 대해 잘 알고 있다'가 46.4%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들어봤으나 잘 모른다'(43.8%),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9.8%) 순으로 나타난 반면 생태교통 용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방문객은 소수이며, '들어봤으나 잘 모른다'가 52.6%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28.3%), '잘 알고 있다'(19.1%)순으로 나타났다.

〈표 19〉 생태교통 용어 인지도

구분	거주자		방문객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45	9.8	133	28.3
들어봤으나 잘 모른다	202	43.8	247	52.6
잘 알고 있다	214	46.4	90	19.1
합계	461	100.0	470	100.0

3) 불법주차 및 외부(방문)차량에 대한 불편수준

마을 내 불법주차에 대한 불편수준은 '매우 불편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불법주차에 대해 '매우 불편함'이 거주자 47.5%, 방문객 32.8%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조금 불편함' 이상 비율이 거주자 74.0%, 방문객 63.9%로 전반적으로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방문객 대비 거주자가 불법주차에 대한 불편수준이 높아 불법주차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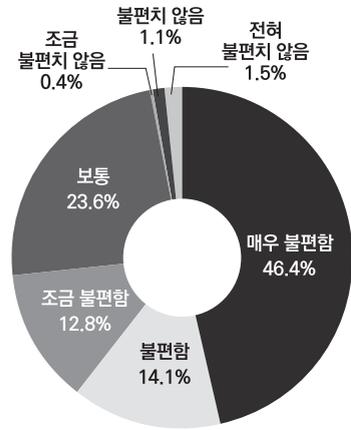
〈표 20〉 불법주차에 대한 불편수준

구분	거주자		방문객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매우 불편함	219	47.5	154	32.8
불편함	57	12.4	60	12.8
조금 불편함	65	14.1	86	18.3
보통	105	22.8	132	28.1
조금 불편치 않음	4	0.9	21	4.5
불편치 않음	5	1.1	6	1.3
전혀 불편치 않음	6	1.3	11	2.3
합계	461	100.0	470	100.0
불편수준 점수	5.7점 / 7점		5.3점 / 7점	

거주자 대상으로 관광 등의 목적으로 방문차량에 대한 불편수준을 조사한 결과, 응답 항목 중 '매우 불편함' 46.4%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거주자는 '조금 불편함' 이상 73.3%로 전반적으로 불편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방문객의 교통량 증가로 인해 도로 혼잡 및 보행 안전 위협 등을 야기시켜 거주자의 불편수준이 높은 것으로 예측된다.

〈표 21〉 마을 방문(관광)차량에 대한 불편수준(거주자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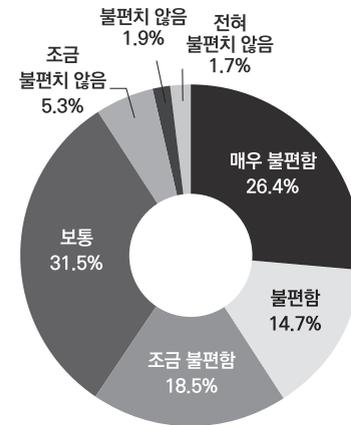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 불편함	214	46.4
불편함	65	14.1
조금 불편함	59	12.8
보통	109	23.6
조금 불편치 않음	2	0.4
불편치 않음	5	1.1
전혀 불편치 않음	7	1.5
합계	461	100.0
불편수준 점수	5.7점 / 7점	



방문객 대상으로 도보통행 시 지나다니는 차량에 대한 불편수준을 조사한 결과, 응답 항목 중 ‘보통’ 31.5%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방문객은 ‘조금 불편함’ 이상 59.6%로 대체로 불편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불법주차 및 차량 통행에 의한 보행 공간 침범에 따른 보행자 안전 미확보로 방문객의 불편수준이 높은 것으로 예측된다.

〈표 22〉 보행 시 차량에 대한 불편수준(방문객 대상)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 불편함	124	26.4
불편함	69	14.7
조금 불편함	87	18.5
보통	148	31.5
조금 불편치 않음	25	5.3
불편치 않음	9	1.9
전혀 불편치 않음	8	1.7
합계	470	100.0
불편수준 점수	5.1점 / 7점	



4) 주차 이용 환경 불편수준

공영주차장 위치, 주차장 접근성, 주차면수 등 마을 내 주차 환경에 대한 불편수준을 조사하였다. 마을 내 주차를 어디에 하는지 주차 위치에 대해 조사한 결과, 거주자는 주택, 건물 내 주차장 등 자체적으로 확보된 주차 공간(29.1%)에 다수 주차하며, 방문객은 대부분 공영주차장(46.0%)에 주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영주차장 위치에 대한 불편수준은 ‘보통’이 가장 많이 차지하였다. ‘조금 불편함’ 이상 비율이 거주자 40.9%, 방문객 48.5%로 응답하였으며, 방문객의 공영주차장 이용률이 거주자보다 더 높아 실제 체감하는 불편수준이 높은 것으로 예측된다.

〈표 23〉 공영주차장 위치에 대한 불편수준

구분	거주자		방문객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매우 불편함	61	13.2	100	21.3
불편함	62	13.4	56	11.9
조금 불편함	66	14.3	72	15.3
보통	168	36.4	118	25.1
조금 불편치 않음	40	8.7	58	12.3
불편치 않음	50	10.8	37	7.9
전혀 불편치 않음	14	3.0	29	6.2
합계	461	100.0	470	100.0
불편수준 점수	4.4점 / 7점		4.6점 / 7점	

주차장 접근성에 대한 불편수준은 응답 항목 중 ‘보통’이 가장 많이 차지하였다. ‘조금 불편함’ 이상으로 거주자 45.9%, 방문객 49.8%가 불편하다고 응답하였다. 불편수준에 대한 만족도 점수는 거주자와 방문객 모두 4.6점 / 7점으로 나타나 불편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4〉 주차장 접근성에 대한 불편수준

구분	거주자		방문객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매우 불편함	71	15.4	103	21.9
불편함	62	13.4	61	13.0
조금 불편함	79	17.1	70	14.9
보통	160	34.7	116	24.7
조금 불편치 않음	32	6.9	53	11.3
불편치 않음	47	10.2	47	10.0
전혀 불편치 않음	10	2.2	20	4.3
합계	461	100.0	470	100.0
불편수준 점수	4.6점 / 7점		4.6점 / 7점	

마을 내 주차장 주차면수에 대한 불편수준은 '매우 불편함'이 가장 많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금 불편함' 이상으로 거주자 77.5%, 방문객 67.5%가 불편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거주자와 방문객의 불편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아 마을 내 발생하는 주차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주차난이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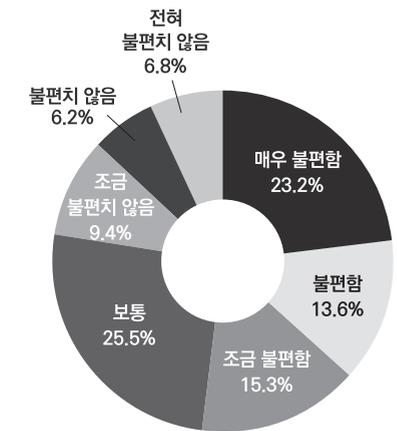
〈표 25〉 주차장 주차면수에 대한 불편수준

구분	거주자		방문객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매우 불편함	175	38.0	147	31.3
불편함	87	18.9	85	18.1
조금 불편함	95	20.6	85	18.1
보통	70	15.2	94	20.0
조금 불편치 않음	18	3.9	35	7.4
불편치 않음	10	2.2	20	4.3
전혀 불편치 않음	6	1.3	4	0.9
합계	461	100.0	470	100.0
불편수준 점수	5.6점 / 7점		5.3점 / 7점	

방문객 대상으로 마을 내 주차장 이용 정보에 대한 불편수준은 응답 항목 중 '보통'이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주차장 이용 정보에 대해 '조금 불편함' 이상 52.1%로, 전반적으로 불편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방문객은 마을 지리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차장 위치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표 26〉 주차장 이용 정보에 대한 불편수준(방문객 대상)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 불편함	109	23.2
불편함	64	13.6
조금 불편함	72	15.3
보통	120	25.5
조금 불편치 않음	44	9.4
불편치 않음	29	6.2
전혀 불편치 않음	32	6.8
합계	470	100.0



5. 결론 및 정책제언

1) 거주자와 방문객의 만족도 비교분석 결과

본 연구는 거주자와 방문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보행 환경, 자전거 이용 환경, 대중교통 접근성, 주차 문제 등의 주요 요인들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주요 요인들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고, 정책방향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도출하였다.

(1) 생태교통마을 환경 만족도 비교

대중교통 이용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거주자가 4.8점, 방문객이 5점으로, 방문객의 만족도가 거주자보다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방문객들이 생태교통마을의 대중교통 접근성과 편리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거주자는 상대적으로 일상적인 불편을 더 크게 인식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보행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거주자가 3.7점, 방문객이 4.3점으로, 방문객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생태교통마을이 보행자 중심의 설계를 강조하고 있으나, 거주자들은 장기적인 사용 경험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자전거 이용 환경에서는 거주자가 3.6점, 방문객이 3.9점으로 방문객의 만족도가 더 높았다. 방문객은 자전거 이용 환경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거주자는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음을 반영한다. 지역 내 미관에 대한 만족도는 거주자가 4.1점, 방문객이 4.6점으로, 방문객의 평가가 더 긍정적이었다. 이는 방문객이 생태교통마을의 시각적 환경을 더 인상 깊게 받아들이는 반면, 거주자는 장기적인 시점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더 명확히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대기 환경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3.9점, 방문객이 4.4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방문객이 대기 환경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거주자보다 외부인의 인식이 더욱 우호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차장 이용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거주자가 2.5점, 방문객이 3점으로 두 집단 모두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는 생태교통마을이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며, 주차에 대한 불편함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도로 이용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거주자가 2.2점, 방문객이 3.6점으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늘어나는 방문객으로 인해 교통 혼잡과 불법 주정차로 보행자의 안전과 보행하기 편하지 않은 환경을 느끼고 있음을 시사한다.

(2) 시사점

전반적으로 방문객의 만족도가 거주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대중교통 이용 환경, 야간 조명시설, 지역 내 미관 등의 항목에서 그 차이가 두드러졌다. 이는

방문객들이 일시적인 체험을 통해 생태교통마을의 환경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거주자들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주차장 및 도로 이용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두 집단 모두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생태교통마을의 방문객 증가에 따른 교통 혼잡이 거주자와 방문객 모두에게 불편을 주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러한 항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거주자를 위한 생활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표 27〉 생태교통마을 환경에 대한 거주자·방문객 만족도 비교(단위 : 7점 만점)

순위	거주자		방문객	
	항목	만족도	항목	만족도
1	대중교통 이용 환경	4.8	대중교통 이용 환경	5
2	야간 조명시설	4.6	야간 조명시설	5
3	쉼터 및 공원조성	4.5	쉼터 및 공원조성	4.9
4	지역 내 미관	4.1	지역 내 미관	4.6
5	대기 환경	3.9	대기 환경	4.4
6	보행 환경	3.7	보행 환경	4.3
7	자전거 이용 환경	3.6	소음 환경	4.1
8	소음 환경	3.3	자전거 이용 환경	3.9
9	주차장 이용 환경	2.5	도로 이용 환경	3.6
10	도로 이용 환경	2.2	주차장 이용 환경	3

(3) 생태교통 불편수준 비교

마을 내 차량 및 주차 문제는 거주자와 방문객 모두에게 높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불법주차와 통행 차량의 증가로 인한 보행자 불편이 두드러진다. 불법주차에 대한 불편수준은 거주자 5.7점, 방문객 5.3점으로 나타났고, 공영주차장의 접근성과 주차면수 부족이 주요한 불편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연립주택 거주자의 주차 불편이 가장 심각했으며, 아파트 거주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불편을 나타냈다.

〈표 28〉 생태교통마을 불편수준에 대한 거주자·방문객 비교(단위: 7점 만점)

순위	거주자		방문객	
	항목	만족도	항목	만족도
1	불법주차	5.7	불법주차	5.3
2	마을 방문(관광)차량	5.7	주차장 주차면수	5.3
3	주차장 주차면수	5.6	보행 시 통행차량	5.1
4	주차장 접근성	4.6	공영주차장 위치	4.6
5	공영주차장 위치	4.4	주차장 접근성	4.6

(4) 방문객의 특성 및 생태교통 인지도에 따른 차이 분석

방문객의 연령대별 방문 목적과 체류시간 분석 결과, 20~30대 방문객은 주로 여가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반면, 60대 이상은 문화 및 산책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비율이 높았다. 모든 연령대의 방문객은 대체로 2시간 이상에서 반일 동안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태교통 인지도에 따른 사람중심정책 인식 및 수단전환 기여도 분석에서는 생태교통을 잘 아는 방문객일수록 차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강화되었으며, 보행·자전거·대중교통으로의 수단전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생태교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생태교통에 대한 인식과 인지도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2) 정책제언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제언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거주자와 방문객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생태교통마을로서의 행궁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다.

(1) 도로 및 주차장 이용 환경 개선

마을 내 도로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해 불법주차 방지, 통행체계 변경 등으로 보행자와 차량 간 상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해 공영주차장 확대 등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외부에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내부로는 자동차를 최대한 제한하고 셔틀을 운행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2) 차량 수요관리와 ITS 기반 교통체계 개선 방안

지속가능한 차량 통행 관리를 위해 마을 외곽 주차장을 조성하여 차량 진입을 최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차 없는 거리’ 및 일방통행을 통해 교통 혼잡 해소 및 보행자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거주자와 방문객은 차량 통행을 완전 제한하는 것보다 차량 진입을 조절하여 마을 내 교통 문제를 대응하는 것을 선호한다. 마을 내 일방통행을 통해 차량 및 보행자 간 상충을 줄여 보행자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3) 차 없는 거리 정례화 및 차 없는 마을 조성

현재 행궁동에서 주말과 공휴일에 운영되는 차 없는 거리의 운영 시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차 없는 거리 운영 시간 확대하여 보행자 중심의 교통 환경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주말 및 공휴일에 방문객이 급증하는 점을 고려할 때, 차 없는 거리의 정례화는 혼잡한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차 없는 거리의 문화 콘텐츠와 지역 문화 콘텐츠와 연계한 행사를 정례화하여 보행자들이 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정책적으로 유의미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차 없는 거리’ 정책의 단계별 로드맵은 점진적 확대를 목표로 구축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실현 가능한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체계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단기와 중장기로 나누어 단계별 추진을 계획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단기 방안으로는 매주 주말 및 공휴일에 특정 도로에 대해 ‘차 없는 거리’를 정례화하고, 주말 동안 마을 내 주차장 요금을 인상하여 통행 수요를 관리하는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 또한, 수원시 지역화폐와의 연계를 통해 외부 주차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마을 외곽 주차장에서 주요 지점으로 연결되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생태교통마을에 맞는 차 없는 마을 조성을 제안한다.

(4)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방문객들은 대중교통 접근성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였으나, 거주자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는 거주 지역과 주요 대중교통 정류장 간의 연결성 부족이 원인으로 보인다. 따라서 거주자 중심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거주지와 주요 대중교통 정류장을 연결하는 셔틀버스 서비스를 도입하여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다. 특히 고령층이나 교통약자를 위한 셔틀버스 서비스가 요구된다. 자동차에서 대중교통으로 주요 통행수단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이용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 거주자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생태교통 추진 시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 조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생태교통마을과 대중교통의 연계를 강화하고, 공유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등 다른 이동수단을 활용하여 대중교통 이용 수요 권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스마트 쉘터와 태양열 핸드폰 충전기 등 대중교통 인프라를 개선하여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성을 증진시키는 방안이 요구된다.

(5) 생태교통 홍보

생태교통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일수록 생태교통 영향을 체감하였다. 생태교통의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해 생태교통 홍보를 통한 생태교통 인식 및 인지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시민 생활권 만족도 향상 및 방문객의 생태교통 참여를 독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투고일 2024년 8월 23일 심사일 2024년 10월 24일 게재확정일 2024년 10월 31일

참고문헌

- 김숙희 외, 2013, 「생태교통 수원 2013 사업효과 분석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수원시정연구원.
- 김숙희 · 이승규, 2015, 「생태교통 수원 2013 사업지역의 마을 환경 만족도 분석」, 『교통기술과 정책』 11(4), 대한교통학회, 64~72쪽.
- 김숙희 · 이승규, 2014, 「생태교통 수원 2013 - 교통변화분석」, 『교통기술과 정책』 11(1), 대한교통학회, 54~63쪽.
- Kim, Y., Park, J., Lee, J., & Ha, T., 2016, Methodology of Selecting Criteria for Pedestrian only Stree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36(5), pp.867~879.
- 민현석 · 여혜진, 2012, 「서울시 차 없는 거리 개선 및 확대방안 연구(도심부를 중심으로)」, 서울연구원.
- 차소라 외 2인, 2014, 「거주자의 보행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분석-생태교통수원2013이 개최된 행궁동 일대를 중심으로」.
- 백수진 · 유석연, 2014, 「주거지의 보행친화적 근린 환경 요소 특성에 관한 연구 - 생태교통 수원 2013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도시계획학회지』 15(6).
- 박소현 외, 2008, 「도시주거지의 물리적 보행 환경요소 지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24(1), 161~172쪽.
- 수원시, 2012, 「생태교통 시범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한국환경연구원.
- 장재민 · 이영인 · 김숙희 · 최희균, 2018, 「보행자 우선도로 개선 사업으로 인한 교통사고 변화에 대한 연구」, 『대한교통학회지』 36(2), 2018.
- 차소라 외, 2014, 「거주자의 보행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분석-생태교통수원2013이 개최된 행궁동 일대를 중심으로」, 대한교통학회 제70회 학술발표회.
- 최효승 · 김혜영, 2009, 「문화거리조성을 위한 보행 환경개선사업이 상업 환경에 미치는 영향분석(충장로 특화거리 조성 시범 가로를 대상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9(8), 237~247쪽.
- 하정원 · 하재현 · 이수기, 2022, 「통제집단합성법을 활용한 차 없는 거리 정책의 도시활력 증진 효과 분석」, 『지역연구』 38(2), 한국지역학회지, 59~72쪽.
- Carlos Moreno, Zaheer Allam et al, 2021, "Introducing the '15-Minute City': Sustainability", *Resilience and Place Identity in Future Post-Pandemic Cities*, MDPI, Smart Cities 2021, 4, pp.93~111(<https://doi.org/10.3390/smartcities4010006>).

요 약

‘생태교통 수원 2013’ 시범사업 이후, 행궁동은 인기 있는 드라마 촬영지로 부상하며 젊은 층에게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다. 하지만 행궁동을 방문하는 방문객이 증가함에 따라 주차 문제와 보행 환경 악화 등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생태교통마을 환경에 대한 거주자와 방문객의 만족도와 불편수준을 분석하고, 생태교통 인지도에 따른 전반적인 마을 만족도 및 사람중심 정책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보행 및 자전거 이용 환경에 대한 거주자의 만족도는 비교적 낮았으며, 보도 폭과 장애물 여부 등의 보행 환경 만족도는 거주자(3.7점), 방문객(4.3점)으로 나타났다. 자전거 이용 환경 만족도는 거주자가 3.6점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반면, 대중교통 이용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거주자와 방문객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대중교통 정보에 대한 방문객의 만족도는 가장 높았다. 도로 및 주차장 관련 요소에 대한 만족도는 가장 낮게 평가되었고, 소음 환경에 대해서도 거주자(3.3점)가 방문객(4.1점)보다 낮게 평가하였다. 불편수준 분석결과 불법주차와 통행 차량에 대한 불편이 두드러졌으며, 주차장 접근성과 주차면수에 대한 불편수준이 높았다. 특히, 연립주택 거주자의 주차장 주차면수 불편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생태교통 인지 여부에 따라 전반적인 마을 만족도와 사람중심정책 인식, 수단전환 기여도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생태교통을 잘 아는 거주자와 방문객이 더 높은 만족도와 인식을 보였다. 방문객의 경우, 20~30대 여가목적, 60대 이상 문화 및 산책 목적으로 마을을 방문하며, 대부분 2시간 이상에서 반일 정도 체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체류시간이 길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생태교통 정책의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해 인식 및 인지도를 향상시킬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생태교통마을의 발전과 정책 개선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생태교통, 생태교통 수원 2013, 생태교통마을, 행궁동 마을 환경 만족도, 행궁동 거주자 및 방문객 만족도

ABSTRACT

Analysis of Satisfaction with the EcoMobility Village Environment and Policy Directions in Suwon City

: Focusing on the Comparison of Residents and Visitors

Kim Sukhee / Kwon Namju

Since the pilot project "EcoMobility Suwon 2013," Hwanggeumdong has emerged as a popular filming location for dramas and has become a well-known tourist destination among young people. However, with the increase in visitors to Hwanggeumdong, new issues such as parking problems and deteriorating pedestrian conditions have arisen. This study analyzes the satisfaction levels and inconvenience experienced by residents and visitors regarding the Ecomobility village environment, and examines the differences in overall village satisfaction and people-centered policy perceptions based on awareness of Ecomobility. The results show that residents' satisfaction with pedestrian and bicycle usage environments is relatively low, with satisfaction regarding pedestrian environments such as sidewalk width and obstacles rated at 3.7 for residents and 4.3 for visitors. Bicycle usage environment satisfaction was rated low at 3.6 by residents. In contrast, satisfaction with public transportation was the highest for both residents and visitors, with visitor satisfaction regarding public transportation information being the highest. Satisfaction with road and parking-related elements was the lowest, and residents rated noise environment lower (3.3) compared to visitors (4.1).

The analysis of inconvenience levels revealed significant discomfort related to illegal parking and passing vehicles, with high levels of inconvenience regarding parking accessibility and the number of parking spaces. In particular, residents of multi-unit housing experienced the highest level of inconvenience regarding the number of parking spaces. Differences in overall village satisfaction, perceptions

of people-centered policies, and contributions to mode shifts were found based on Ecomobility awareness, with those more knowledgeable about Ecomobility exhibiting higher satisfaction and perceptions. Visitors were found to be primarily in their 20s to 30s visiting for leisure and those aged 60 and above visiting for cultural activities and walks, with most staying for about two hours to half a day, although their stay was not very long.

This study suggests the need for measures to enhance awareness and understanding in order to maximize the impact of Ecomobility policies. The findings provide important foundational data for the development and policy improvement of Ecomobility villages.

Key words : Ecomobility, EcoMobility Suwon 2013, EcoMobility village, Satisfaction with Hwanggeumdong, Satisfaction of residents and visitors in Hwanggeumdong

수원시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 분석

: 고용안정성, 임금, 일자리 미스매치를 중심으로

황광훈*

- 1. 서론
- 2. 선행연구 검토
- 3. 자료 및 분석모형
- 4. 실증분석
- 5. 결론

1. 서론

청년실업이 사회경제적 문제로 점차 고착화되면서 청년층 노동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실업문제뿐만 아니라, 취업한 이후 그 일자리가 ‘괜찮은 일자리’ 또는 ‘희망일자리’인지에 대한 문제가 남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 청년들은 일시적인 실업상태를 피하기 위해 잠시 거쳐 가는 일자리에 진입을 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학력 청년층의 고용률은 OECD 국가 평균에 비하여 크게 낮은 수준이며,¹ 이렇게 낮은 고용률은 고학력 청

*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research fellow,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E-mail : hunzzang96@keis.or.kr, Tel : 043-870-8394

1 우리나라 청년고용률은 2008년 41.9%에서 2018년 42.7%로 10년간 0.8%p 증가했지만, OECD 내 순위는 31위에서 32위로 1단계 떨어졌다. 2018년 우리나라 청년고용률은 OECD 평균 청년고용률(54.0%)보다 10%p 이상 차이가 나며, 고용률이 제일 높은 국가(아이슬란드, 78.7%)와는 36%p의 격차를 보인다

년층이 직면하는 입직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입직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장기간 근속하지 못하고 곧 그만두는 비중이 높다. 고학력 청년층의 입직이 어려운 것은 직업선택의 기준이 임금이나 고용안정성과 같이 노동시장에서 외부적으로 결정되는 것을 적성이나 흥미와 같이 개별적이고 내재적인 요인보다 우선하는 현상과도 관련되어 있다.²

한국 청년노동시장의 노동시장 진입(취업)과 관련된 문제는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 왔으며, 노동시장 상황과 여건은 더욱 개선되지 못한 상태로 나빠지고 있어 청년의 삶은 더욱 고단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개인의 청년들은 자신의 취업 가능성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취업준비와 스펙 쌓기 활동을 꾸준히 쉬지 않고 하고 있다. 과거의 경우 일자리 진입과 안착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는 학력수준이었지만, 지금은 학력뿐만 아니라 대학에서의 학점, 외국어 능력(점수), 다양한 자격증 보유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스펙들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들어 정부는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별, 학력, 지역 등으로 발생하는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블라인드 채용을 크게 확산 및 장려하고 있다. 이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구직자와 학생들은 고등학생 때는 좋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대학진학 후에는 자신의 직무 및 업무수행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졸업을 연기하면서까지 취업준비 활동에 몰입하고 있다. 더군다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노동시장에서의 청년층 취업난이 더욱 악화되었으며,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청년층은 취입이 늦어지게 될 경우, 임금손실과 경력상실 등을 겪게 되고, 이후에는 취업기회나 임금 자체가 줄어드는 '이력효과'가 발생 할 수 있다.

또한, 일자리와 학력·기술·전공 간의 주관적 미스매치는 노동시장 효율성과 관련이 있는 이슈 중 하나이며, 특히 고학력 청년층(대학졸업자)의 노동시장 미스매치는 학력수준, 기술수준, 전공 등 다양한 차원이 존재할 수 있다. 또한 미스매치의 방향도 학력이나 기술 수준이 업무내용에 미치지 못하는 미스매치와 업무내용에 비해 본인이 갖춘 학력이나 기술수준이 높기 때문에 발생하는 미스매치도 있을 수

있다.³ 특히, 우리나라는 학력 및 기술의 상향평준화로 인해 고학력 청년층의 실업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고학력자들의 일자리 부족 문제는 하향 취업과 같은 결과를 발생시켜 결과적으로 청년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청년 고용문제(이슈)는 광역, 권역, 시도 등 지역들 사이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은 수도권 지역과 비교하여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과거 우리 경제와 산업구조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불균형하게 발전해 온 결과물로서 청년들이 희망하는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 등 1차 노동시장 일자리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인해 각 지역의 지자체들은 청년일자리 창출, 주거지원 서비스, 출산율 제고 노력 등 청년인구의 유출을 줄이고 인구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의 청년고용정책들을 설계하여 추진함에 있어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역 노동시장의 상세한 현황과 특징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작업이다.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의 경우도 지역 노동시장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를 경험하면서 기존의 중앙집권적 산업육성정책에서 벗어나 분권적 지역산업정책으로 전환되었고, 이를 반영하여 참여정부 시절 국가균형발전을 핵심적인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하였다.⁴ 기본적으로 지역 내에서 요구되는 인력이 지역 안에서 공급되는 구조가 정착되는 것이 바로 탐색비용과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인력수급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데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성장과정에서 지방대학이 배출하는 인력의 다수는 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찾는 인력배출 문제가 심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사회의 한편에 존재하고 있다.⁵ 지역의 우수인력의 수도권 유입에 따라 발생하는 지방의 중소기업 인력부족 문제의 심화, 이는 다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문제가 고착화되는 악순환 구조가 발생 및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한국경제연구원, 2019).

2 박천수, 2015, 「대학 졸업 임금근로자의 희망임금 충족과 고용」, 『노동정책연구』 15(1).

3 김세움·김진영·조영준, 2011, 「학력별 노동시장 미스매치 분석과 교육제도 개선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정책연구』 2011-04.

4 양정승, 2014, 「지방대학 졸업생의 지방중소기업 취업과 이직 결정요인 분석」, 『직업능력개발연구』 17(2), 153~177쪽.

5 양정승, 2014, 「지방대학 졸업생의 지방중소기업 취업과 이직 결정요인 분석」, 『직업능력개발연구』 17(2), 153~177쪽.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이다. 이는 지역경제의 입장에서는 인재유출(brain drain)에 의한 지역 인적자본(human capital)의 감소라는 측면에서 지역경제의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⁶

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이 생산하여 제공하고 있는 청년패널조사(Youth Panel) 자료와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 Graduate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자료를 이용하여 수원시 청년층⁷의 대표적인 노동시장 성과 요소인 고용 유지기간, 임금, 일자리 미스매치 등의 결정요인을 추정한 후, 그 결과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수원시 청년층이 취업한 일자리에서의 고용안정성(일자리 유지)과 임금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무엇이고, 그러한 요인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심층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수원시 청년 노동시장의 현상과 특징을 이해할 것이다. 또한 수원시 대졸 고학력 청년층의 취업 결정요인들이 무엇이고, 그 영향요인이 어느 정도 작용하는지 분석하고, 일자리의 수준과 학력·기술·전공과의 미스매치 결정요인들을 규명한다. 특히, 본 연구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고학력 청년들의 구직난과 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구인난이 상호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역의 청년 노동시장 정책의 다양한 시사점과 함의를 도출할 수 있는 기초연구로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충실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본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구성한다. 다음 장은 주제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제3장은 분석자료 및 모형을 설명하고, 제4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 장은 본 연구의 내용을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시사점 등을 제안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6 양정승, 2014, 「지방대학 졸업생의 지방중소기업 취업과 이직 결정요인 분석」, 『직업능력개발연구』 17(2), 153~177쪽.
7 우리나라의 공식통계상 청년의 연령기준은 15~29세로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연령기준인 15~24세보다 넓은 범위를 사용하는 것은 높은 대학진학률, 남성의 군복무 의무, 자녀 독립이 늦은 문화적 차이 등에서 기인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정부의 청년대상 일자리정책이 상당수 34세까지의 연령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34세 이하의 대학졸업자들을 분석대상으로 간주하여 분석한다.

2.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의 청년 노동시장의 성과(고용안정성, 임금 등)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연구는 전체 청년층을 대상으로 취업 결정요인, 취업 이후의 이동과 노동시장 성과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여기서는 청년 노동시장의 성과를 연구한 논문들을 중심으로 관련 연구들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먼저 청년층의 취업 특성과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상은⁸은 청년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직업훈련이 청년층의 취업과 소득에 미치는 효과성을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직업훈련의 효과는 대학재학 이상의 학력, 20~24세 연령의 청년들의 취업성고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으나, 소득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는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장식 외⁹의 연구에서는 대졸학력의 취업자들의 재직기간의 경우 개인 특성, 취업한 직장의 소재지역 특성의 영향을 동시에 받는 복수의 분석단위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고, Cox의 혼합모형을 활용하여 재직기간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개인 특성 항목에서는 성별, 연령, 평점, 대학유형 및 전공 계열, 기업의 종사자 규모, 정규직 여부 등이 탈출 확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장 소재지역 특성에서는 지역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율이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대웅 외¹⁰의 연구는 위계선형모형이라는 방법론을 활용하여 대졸 고학력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 중 임금 및 고용형태의 결정요인을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서울 4년제 대학 졸업여부, 대학의 재정·교육·연구수준이 임금성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개인의 취업목표가 분명하고 소속 대학이 연구역량이 확보되어 있다면, 임금성고에 긍정적인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형태에서는 대기업의 정규직 취업 측면에서, 서울의 4년제와 지방의 4년제 졸업 여부는 부정적인(-)의 영향을 미쳤으며, 대학의 재정, 교육, 연구수준은 긍

8 이상은, 2005, 「청년들에 대한 직업훈련의 취업 및 근로소득 효과」, 『사회복지정책』 23, 5~28쪽.
9 조장식·강창완·최승배, 2015, 「Cox의 혼합모형을 이용한 대졸취업자의 재직기간 분석」, 『한국자료분석학회』 17(3), 1337~1346쪽.
10 이대웅·손주희·이소담·권기현, 2015,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 결정요인 분석-위계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4(4).

정적인(+)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신정우 외¹¹는 청년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이산선택모형을 통해 경남지역 청년층의 취업상태 결정요인을 추정하였는데, 추정 결과, 청년들 개인특성과 가구의 배경은 취업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취업준비활동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문석·송일호¹²는 청년패널조사 10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과 전공 불일치가 임금 및 직장만족도에 주는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교육수준 및 전공과 일치하지 않는 일을 할 경우, 임금과 직장만족도 모두 부정적인(-)의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교육일치도는 '자가발전'과 '장래성'에, 전공 일치도는 '업무내용'에 대한 직장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최근의 연구로, 조윤서¹³는 4년제 대졸자를 대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행동이 취업과 관련한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인문, 사회, 공학, 자연계열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직무적성준비와 면접준비는 모든 취업과 관련한 일자리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취업행동으로 나타났으며, 자격증, 외도관리, 취업서류작성교육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청년취업자의 직장이동 및 임금 효과를 분석한 대표적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청년층이 노동시장 정착과정에서 초기의 빈번한 직장이동은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가기 위한 직업탐색(job shopping) 과정이므로 생산적인 투자활동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는 연구¹⁴와 청년취업자의 잦은 직장이동은 인적자본 투자를 저해하여 임금과 근로조건에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는 연구¹⁵가 있다. 해외에

11 신정우·김태현·이미숙, 2017, 「이산선택모형을 이용한 경남지역 청년의 취업상태 결정요인 분석」, 『산업경제연구』 30(5), 1837~1854쪽.
 12 신정우·김태현·이미숙, 2017, 「이산선택모형을 이용한 경남지역 청년의 취업상태 결정요인 분석」, 『산업경제연구』 30(5), 1837~1854쪽.
 13 조윤서, 2021,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취업준비행동이 취업 및 관철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1)
 14 Topel, R. H. and M. P. Ward, 1992, "Job Mobility and the Careers of Young Men",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7(2), pp.439~479; 어수봉, 1994, 「우리나라 일궁합 실태와 노동이동(I)」, 『노동경제논집』 17(2), 89~124쪽.
 15 문영만·홍장표, 2017, 「청년층의 노동시장 격차 및 지역인재 유출요인-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25(2), 165~187쪽; 이병희, 2002, 「노동시장 이행 초기 경험의 지속성에 관한 연구」, 『노동정책연구』 2(1); Light, A. and K. McGarry, 1998, "Job Change Patterns and the Wages of Young Men",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0(2), pp. 276~286; Neumark, D., 2002,

서 연구한 주요 결과들은 앞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상반된 분석 결과들을 도출하고 있다.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이후에서의 직장변동을 분석한 대표적 선행연구로 Topel & Ward¹⁶와 Light & McGarry¹⁷가 분석한 연구를 들 수 있다. 사업체-근로자 연계추적자료(LEED, 1957~1972)를 사용하여 청년 남자의 15년간에 걸친 직장이동과 임금 변화를 분석한 Topel & Ward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노동시장 진입 초기 10년 동안 미국의 남성 근로자는 평균 7회의 직장을 경험하여, 40여 년간의 근로생애에 걸친 직장이동의 3분의 2에 이른다.¹⁸ 또한 근로생애 초기 10년 동안 임금 증가의 3분의 1은 직장이동에 따른 것으로 나타나, 노동시장 이행시기의 빈번한 직장이동은 안정적인 고용관계에 이르는 경력개발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한다.¹⁹ 반면 Light와 McGarry²⁰의 분석결과는 이와는 상반된 결과를 도출하였다. NLSY(청년층 종단면 추적조사;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 표본자료 중에서 1957~1964년생 1만 2,684명을 선정한 후, 1979년부터 1994년까지 조사에 참여하여 응답한 백인계층 남성 3,790명의 응답자 표본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노동시장 초기에서의 직장이동이 빈번한 근로자에 비해서 직장 이동경험이 없는 근로자의 임금이 유의미하게 높음을 확인하였는데, 특히, 직업이동이 많은 근로자일수록 임금수준이 낮으며, 저임금을 동반한 이동과 이행과정을 경험할 가능성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²¹ 이 결과는 대체로 직업이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변적이면서 관측이 불가능한 다양한 요인들에 의존하게 되는 경험재의 특성을 갖고 있는데서 기인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다음으로 지방대 출신 청년층 노동시장 성과 관련 연구들 대부분은 수도권과 비

"Youth Labor Markets in the U.S.: Shopping Around vs Staying put", *NBER Working Paper*, p.6581.
 16 Topel, R. H. and M. P. Ward, 1992, "Job Mobility and the Careers of Young Men",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7(2), pp.439~479.
 17 Light, A. and K. McGarry, 1998, "Job Change Patterns and the Wages of Young Men",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0(2), pp.276~286.
 18 황광훈, 2019, 「청년층의 이직 결정요인 및 임금효과 분석」, 『직업능력개발연구』 22(1), 137~172쪽.
 19 이병희, 2002, 「노동시장 이행 초기 경험의 지속성에 관한 연구」, 『노동정책연구』 2(1).
 20 Light, A. and K. McGarry, 1998, "Job Change Patterns and the Wages of Young Men",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0(2), pp.276~286.
 21 황광훈·오윤석·홍석현, 2022, 「수도권 지역 청년층의 직장 이동과 임금의 변화」, 『GRI연구논총』 24(1).

수도권 지역 소재 대학 졸업 청년층을 서로 비교하여, 노동시장 여건과 성과 등에서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지, 또는 수도권 소재 대학을 졸업한 청년층의 임금 효과가 실제로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는지 등의 여부와 그 정도의 크기를 실증적으로 추정하는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류장수²²는 지방대 졸업생의 현 직장 특성을 수도권대학 졸업생의 그것과 비교 분석을 한 결과, 지방대 졸업생은 첫 일자리로의 이행기간이 더 길었고, 첫 일자리의 사업체 규모도 작았으며, 임금수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 간에도 차이가 존재하여 충청권 지역의 경우 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생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박성재²³의 연구는 첫 일자리를 중심으로 지방대 졸업생과 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생과의 노동시장 성과를 비교하였는데, 지방대 졸업자들일수록 취업한 사업장의 규모가 작고, 학력 및 적성에 맞지 않는 일자리에 취업하는 비율이 높고, 하향취업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김희삼²⁴은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를 이용하여 출신대학 소재지가 노동시장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고, 그 결과 비서울지역 대학 졸업자는 서울 소재 대학 졸업자와 비교하면 평균적으로 16% 정도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박환보와 김성식²⁵은 대학을 졸업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이들의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주고 있는 개인 요인과 취업준비 노력행위, 대학서열의 영향력을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를 보면, 서울의 4년제 대학졸업자 일수록 직장에서의 지위와 임금 수준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선행연구에서 분석되는 내용들이 대부분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성과에 초점을 맞추어 비수도권 지방대학 졸업생들의 노동시장 성과를 수도권 지역 대학 졸업생들과 비교·분석하는 것이었다면, 일부 연구주제들은 노동시장의 성과 이외에 발생할

22 류장수, 2003a, 「지방대학 졸업생의 첫 일자리 이행기간과 특성 : 수도권대학 졸업생과의 비교」, 『직업능력 개발연구』 6(1), 1~25쪽; 2003b, 「지방대학 졸업생의 노동시장 이행 실태와 성과 분석 : 수도권 대학졸업생과의 비교」, 『산업노동연구』 9(1), 한국산업노동학회, 171~196쪽; 2005, 「지방대학 졸업생의 노동시장 성과 분석 : 수도권대학 졸업생과의 비교」, 『노동경제논집』 28(2), 1~27쪽.
23 박성재, 2005, 「지방대 졸업생의 노동이동과 노동시장 성과 : 첫 번째 일자리를 중심으로」, 『노동정책연구』 5(4), 65~99쪽.
24 김희삼, 2010, 「지방대학 졸업자의 노동시장 성과와 지역별 교육격차」, 『한국개발연구』 32(2), 55~92쪽.
25 박환보·김성식, 2011, 「개인배경, 취업준비노력, 대학서열유형이 대졸자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21(3), 한국교육사회학회, 77~98쪽.

수 있는 핵심역량 차이, 인력유출의 결정요인, 취업의식에 관한 조사 등의 형태로 분석내용 및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김기승·정민수²⁶는 부산지역의 인력유출 현황을 분석하고, 부산지역 청년층의 유출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대도시로 분석범위를 한정할 경우 기대임금의 수준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16개 시도로 대상범위를 확장하면 취업 가능성, 의료환경, 일자리의 질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을 졸업한 경우, 임금에 대한 프리미엄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으며, 최근에 졸업한 청년일수록 임금 프리미엄은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미스매치에 대한 국·내외 연구동향은 대부분 하향취업(학력 및 기술과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외연구는 1960년대 이후 대학진학률이 높아지고 하향취업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형성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²⁷ 초기에는 하향취업의 원인 및 규모 등에 관한 논의에서 하향취업이 임금, 직무만족도, 이직 등 사회적·개인적 성과를 중심으로 확대되어 갔다.²⁸ 국내연구는 1990년대 중반 이후 하향취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해외연구에서 이루어졌던 연구동향과 비슷한 맥락으로 하향취업의 측정과 규모,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최근에는 하향취업이 미치는 사회적·개인적 결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²⁹

26 김기승·정민수, 2013, 「청년층 인재유출 결정요인 분석과 정책과제 :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연구』 31(2).
27 황광훈, 2018, 「청년취업자의 주관적 미스매치 결정요인 및 임금효과 분석」, 『산업노동연구』 24(2), 181~214쪽.
28 김종성·이병훈·신재일, 2012, 「청년층 구직활동과 하향취업」, 『노동정책연구』 12(2), 51~73쪽; Tsang, M. and H. Levin, 1985, "The Economics of Overeducation",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4, pp.93~104; Sicherman, N., 1991, "Overeducation in the Labor Market", *Journal of Labor Economics*, 9(2), pp.101~122; Alba-Ramirez, A., 1993, "Mismatch in the Spanish Labour Market : Overeducation?", *Journal of Human Resource*, 27, pp.259~278; Buchel, F., 2002, "The Effects of Overeducation on Productivity in Germany: The firms' viewpoint" *Economic of Education Review*, 21, pp.263~275; Bender, A. K. and S. J. Heywood, 2006, "Educational Mismatch among Ph.D's: Determinants and Consequences", *NBER Working Paper*, National Bureau of Economics Research, 12693; Fleming, C. M. and Kler, P., 2008, "I'm Too Clever for this Job: A bivariate probit analysis on overeducation and job satisfaction in Australia", *Applied Economics*, 40(9), pp.1123~1138.
29 강순원, 1993, 「1990년대 상대적 과잉교육의 일반적 추이와 그것의 정치경제학적 귀결」, 『한신논문집』 10, 107~129쪽; 어수봉, 1994, 앞의 논문, 89~124쪽; 김기현, 2003, 「하향취업 실태 및 과잉교육 노동자의 특성」, 『KLIPS Research Brief』 3, 1~12쪽; 김주섭, 2005, 「청년층의 고학력화에 따른 학력과잉 실태 분석」, 『노동정책연구』 5(2), 1~29쪽; 이찬영, 2008, 「청년층 임금근로자의 하향취업 행태」, 『직업능력

다음은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 활발히 논의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학력, 기술 미스매치에 관한 연구들을 정리한 내용이다. 먼저 김주섭³⁰의 연구에서는 청년패널 조사(YP2001) 1~3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학력과잉 규모, 학력과잉 결정요인, 학력과잉 상태변화, 학력과잉으로 인한 임금손실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과잉에 빠질 확률이 높았으며, 중퇴자나 재학생에 비해서 졸업을 한 경우가,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이, 산업별로는 3차 산업에 속한 근로자가 학력과잉에 빠질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노일경과 임연³¹의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를 활용하여 전문대졸을 졸업한 여성 신규취업자의 직무 불일치 요인과 직무 불일치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에 보면 직무 불일치 비율은 약 31~35%로 나타났으며, 가구 소득과 같은 특성이 직무 불일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금에 미치는 효과성은 전공 불일치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학력과잉, 기술과잉의 순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임연·서유정·이지은³²은 미스매치의 경우 개인적 수준에서는 직무만족도를 낮추면서 이직을 유발시키며, 정규교육 과정에서의 투자 유실을 초래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부정적 성과를 야기시킨다고 분석하였다. 남성일과 전재식³³의 연구를 보면,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를 분석하여 하향취업이 직장이동 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하향취업은 유의미한 수준에서 직장이동의 성향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현 직장의 임금 수준이 높거나, 고용상태가 안정적이거나, 전공과 직무일치도가 높아질수록 하향취업은 직장이동 가능성을 높이지만 추정치의 절대적 크기는 감소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근로조건은 하향취업 미스매치로 인한 직장이동 성향을 개선시키는 완충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향취업 상태라도 이러한 근로조건들을 일부 개선시킬 수만 있다면 직장이동 성향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개발연구」 11(3), 49~69쪽; 신선미·민무숙, 2010, 「대졸 청년층 하향취업자의 하향취업 상태변화 요인」, 『직업능력개발연구』 13(2), 47~66쪽.

30 김주섭, 2005, 「청년층의 고학력화에 따른 학력과잉 실태 분석」, 『노동정책연구』 5(2), 1~29쪽.

31 노일경·임연, 2009, 「직무불일치의 원인 및 임금과의 관계, 불일치에 대한 대응 양상: 전문대졸 여성 신규 취업자를 중심으로」, 『직업교육연구』 28(2), 1~18쪽.

32 임연·서유정·이지은, 2012, 「청년층의 학력과잉과 스킬불일치 측정 방법 연구」, 『기본연구』 2012(18).

33 남성일·전재식, 2011, 「하향취업이 직장이동 성향에 미치는 효과」, 『노동정책연구』 11(3), 25~51쪽.

김종성·이병훈·신재열³⁴은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구직활동의 방식이 청년층의 하향취업 미스매치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추정하였으며, 하향취업 상태를 객관적인 하향취업과 주관적인 하향취업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학력수준은 객관적 하향취업에만 영향을 미쳤으며, 학력이 높아질수록 객관적 하향취업의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정규직 유무의 경우 주관적 하향취업에만 영향을 미쳤으며, 비정규직 근로자일수록 주관적 하향취업을 하는 경향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류기락³⁵의 연구에서 분석한 내용은 노동시장 분절 현상과 미스매치의 일자리의 질, 직업훈련 참여, 소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분석이다. 추정 결과에 따르면, 학력과 스킬 미스매치는 소득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오는데, 노동시장 및 복지제도의 차이에 의해 서로 다른 영향을 받았다. 정규직과 임시/파견직 간의 고용보호 수준 차이가 커질수록 학력 및 스킬 미스매치는 일자리의 질적 수준에 부정적 영향을 강화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마지막으로 황광훈³⁶은 청년패널조사를 활용하여 청년 노동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학력, 기술, 전공 등의 주관적 미스매치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주관적 미스매치를 결정하는 요인과 주관적 미스매치가 임금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학력/기술수준은 모두 미스매치 상태 중 학력 및 기술과잉 미스매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학력부족과 기술부족 미스매치는 완만하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다음으로, 학력 및 기술과잉 미스매치와 같은 하향취업 결정요인에 대한 추정 결과, 남성은 여성에 비해 하향취업에 빠질 가능성이 낮았으며, 상용직 및 비임금근로자의 하향취업 확률이 임시/일용직보다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상의 선행연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차별점을 갖는다. 먼저 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청년패널(YP2007) 1~14차 자료와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 Graduate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등 대표적인 청년층 관련 2가지의 조사를 모두 사용한다. 먼저 청년패널은 2007년 기준 만 15~29세를 대

34 김종성·이병훈·신재열, 2012, 「청년층 구직활동과 하향취업」, 『노동정책연구』 12(2), 51~73쪽.

35 류기락, 2014, 「노동시장 제도와 미스매치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정책』 21(4), 103~136쪽.

36 황광훈, 2018, 「청년취업자의 주관적 미스매치 결정요인 및 임금효과 분석」, 『산업노동연구』 24(2), 181~214쪽.

표하는 표본에 대해 매년 추적조사하는 종단면조사(longitudinal survey)로 전체 모든 청년층을 대표할 수 있는 청년층 특화 자료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14여 년간 자료를 연결(merge)하여 많은 표본 수를 확보한다. 또한 일자리 질, 일자리 지속 기간에 대한 여러 선행연구를 포괄한다. 기존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성별, 연령, 학력, 기업규모, 지역뿐만 아니라, 직·산업, 직업훈련경험, 자격증, 학력과 기술의 미스매치, 전공불일치 등 다양한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한다.

다음으로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를 활용하여 고학력 청년층의 취업 결정요인과 미스매치 결정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들 대부분 대졸 청년층 노동시장을 분석하면서 지방에 소재한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과의 임금 격차 또는 차별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는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대학 졸업자들을 상호 비교하여, 노동시장 조건 및 성과에서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따라서 지역을 세분화시켜 특정 지역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은 많이 이루어지지 못한 반면, 본 연구는 특정지역(수원시)의 대학 졸업생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취업 결정요인과 미스매치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3. 자료 및 분석모형

1) 분석자료 및 자료구축 과정

본 연구에서는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고용유지 기간 및 임금 결정요인, 일자리 미스매치)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조사 자료(직업력 자료 및 전체자료)와 2016-2019 GOMS 자료를 활용한다. 먼저 청년패널 직업력 자료를 이용하여 1~14차 조사까지 한번이라도 취업자로 노동시장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관측치(7만여 개) 중, 수원지역 거주 청년취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만 추출한 결과 총 1,055개의 관측치로 구성된 분석용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또한 데이터 구축과정에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성 및 환경, 정책의 변화 등 외부적 요인들의 영향력을 최대한 통제하기 위해서 2000년 이전에 노동시장에 진입한 표본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직업력 자료는 패널자료의 형태로 구

성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차수에 따라 동일 응답자의 중복된 일자리 경험이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에 중복된 케이스들도 최종적으로 제거하는 과정을 거쳤다.

다음으로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 자료를 이용하여 수원시 대졸 고학력 청년층의 취업 및 학력·기술·전공 미스매치 결정요인을 추정한다.³⁷ 현재 2019 GOMS 자료는 가장 최근에 공개된 자료이다.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³⁸는 전국의 전문대학과 일반대학 졸업자 중 약 3~4%의 표본을 추출하여 졸업 이후의 초기 노동시장 이행과정에서의 경력개발 및 직업(직장) 이동 경로 등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조사이다. 이를 통해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및 이동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노동시장에서의 시그널을 교육시장에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2016~2019 GOMS 자료의 4개년 자료를 합동(병합)하여 총 1,855명의 수원시 대졸 청년층 표본을 새롭게 추출하여 구축하였다. 또한 GOMS 자료는 대학졸업자를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조사의 특성으로 인해 조

37 미스매치의 판단 기준은 주관적 평가방식을 적용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교육수준, 기술수준, 전공일치 등 3가지로 항목으로 구분하여 미스매치를 측정하였다. 청년패널조사에서는 5개 범주에 그 정도를 응답받고 있는데, 교육수준 및 기술수준의 경우 “① 수준이 아주 낮다, ② 수준이 낮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미스매치 상태 중 “학력과잉 및 기술과잉”으로, “④ 수준이 높다, ⑤ 수준이 아주 높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미스매치 상태 중 “학력부족 및 기술부족”으로 보았다. 그리고 “③ 수준이 적절하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비(非) 미스매치로 “적정학력 및 적정기술”로 간주하였다. 전공일치의 경우는 “① 전혀 맞지 않다, ② 맞지 않다”라고 응답한 경우 미스매치 상태로, “③ 그런 대로 맞다, ④ 맞는다, ⑤ 아주 잘 맞다”는 비(非) 미스매치 상태로 보았다. 또한 미스매치 중 학력/기술 수준에서 “과잉”인 경우는 하향취업으로, “부족”인 경우는 상향취업 상태로 간주하였다(황광훈, 2018, 「청년취업자의 주관적 미스매치 결정요인 및 임금효과 분석」, 『산업노동연구』 24(2), 181~214쪽).

〈미스매치 측정 변수 및 구분〉

구분	학력/기술		전공
미스매치	과잉 (하향취업)	① 수준이 아주 낮다 ② 수준이 낮다	① 전혀 맞지 않다 ② 맞지 않다
	부족 (상향취업)	④ 수준이 높다 ⑤ 수준이 아주 높다	
비(非) 미스매치	적정	③ 수준이 적절하다	③ 그런 대로 맞다 ④ 맞는다 ⑤ 아주 잘 맞다

38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 GOMS)의 주요 조사 내용은 졸업 후 18개월 시점의 경제활동 상태, 대학 졸업 후 일자리 이동, 교육 및 직업훈련 등이며, 조사목적은 교육·노동시장간 신뢰성 있는 인력수급 정보제공 및 인력수급 불일치 완화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개별 학교 및 전공별 세부 노동시장 성과를 학부모와 수험생에게 제공하여 대학 및 전공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사대상 연령이 20~70대까지 여러 연령대로 넓게 분포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35세 이상 연령대를 제외하고, 34세 이하 연령으로 분석대상 표본을 추출한 뒤, 최종적으로 수원시 거주 대졸 청년층 분석자료를 구축하였다.

2) 분석모형 소개

먼저, 수원시 청년층이 취업한 일자리에 대한 고용유지기간 결정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을 적용하여 분석한다. 생존분석은 선형 회귀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기법과 유사하지만 자료 수집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분석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원시 청년층의 고용유지기간 결정요인을 추정하기 위해 콕스 비례위험모형(Cox Proportional Hazard Model)을 활용하도록 한다. 여기서 해저드 함수를 나타내는 $h(t)$ 는 어떤 사건이 t 시점까지 발생하지 않았음을 전제한 상태에서 이 사건이 t 시점에서 발생가능한 조건부적인 순간탈출의 확률로 정의되며, 이 모형은 비례적 해저드(Proportional Hazard)모형으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앞서 기술한 비례적 해저드란 개인들 사이의 존재하는 해저드 비율(hazard ratio)이 시간과 상관없이 항상 일정(constant)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종속변수인 일자리 지속기간의 관측치는 월 단위로 측정되기 때문에 비연속적인 시간 정보가 아닌 연속성을 갖춘 시간 정보로 간주하게 된다. 따라서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결정요인 또는 영향요인을 추정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생존분석의 방법 중 콕스의 비례위험 회귀분석(Cox Proportional Hazard Model)을 활용하게 된다. 본 모형은 생존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예측변수들을 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범주형 변수와 연속형 변수 둘다 모형에 투입할 수 있다. 아래 모형에서 x_i 는 각 개인 i 의 예측변수이며, 이것의 계숫값인 $\beta_1 \sim \beta_p$ 라 정의할 수 있다.

$$h_i(t) = h_0(t) \exp(\beta_1 x_{i1} + \beta_2 x_{i2} \dots + \beta_p x_{ip}) \quad (1)$$

여기서 x 는 해저드에 영향력을 주는 변수들의 벡터이며, $h_{(0)}(t)$ 는 기준(baseline)

함수이며, 시간 t 에서 i 번째 개인의 해저드인 $h_{(i)}(t)$ 는 ① 기준 해저드함수 $h_{(0)}(t)$, ② 지수형태로 표현되는 p 개 변수들의 선형함수라는 2가지 요소의 곱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h_{(0)}(t)$ 는 모든 변수들의 값이 제로(0)인 개인에 대한 해저드이며, 위의 해저드함수의 형태를 로그형태로 변환하면 다음과 같은 회귀모형을 구할 수 있다.

$$\log h_i(t) = \alpha(t) + \beta_1 x_{i1} + \dots + \beta_p x_{ip}, \alpha(t) = \log h_0(t) \quad (2)$$

다음으로 수원시 청년취업자의 임금 결정요인³⁹을 분석하기 위하여 OLS 모형을 사용한다. OLS 모형(식 3)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임금 회귀방정식을 변형하여 이용하게 된다. 종속변수(wage)는 로그월평균임금이고, 설명변수는 개인 특성 관련 변수(성별 더미, 연령, 연령제곱, 학력 더미, 결혼 여부, 가구주 여부)와 일자리 관련 변수(종사상위, 기업규모, 근로시간, 산업, 노동조합 유무), 직업훈련 및 자격증 취득 경험, 교육·기술·전공 미스매치 상태로 구성된다.

$$\log(wage)_i = \beta_0 + \beta_1 sex_i + \beta_2 age_i + \beta_3 age_i^2 + \beta_4 edu + \beta_5 marry_i + \beta_6 house_i + \beta_7 jobstat_i + \beta_8 size_i + \beta_9 workhour_i + \beta_{10} san_i + \beta_{11} jobunion_i + \beta_{12} ojt_i + \beta_{13} licence_i + \beta_{14} edumis_i + \beta_{15} skillmis_i + \beta_{16} majormis_i + \epsilon_i \quad (3)$$

다음으로 수원시 거주 청년층 중 대학을 졸업한 후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최종적으로 일자리에 진입한 경우와 그렇지 못하고 미취업 상태(실업자 또는 비경제활동인구) 있는 경우를 구분하여 취업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추정하도록 한다. 다음으로는 학력·기술·전공 미스매치의 결정요인을 추정하기 위해 하향취업(학력과잉, 기술과잉), 상향취업(학력부족, 기술부족), 전공불일치로 분류하여 결정요인을 추정하였다. 두 가지 실증분석 주제에 대해 모두 로지스틱 회귀모형(logistic regression model)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회귀분석은 변수간의 종속구조, 즉 설명변수와 종속변수의

39 노동경제학에서 일반적으로 임금 결정요인은 Mincer의 임금방정식을 활용하며, 임금이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은 성별, 연령, 학력 등 인적속성들과 고용형태, 기업규모, 직업 및 산업분야 등 직장속성 등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Mincer의 임금방정식을 기본 모형으로 하여 추가적으로 관련된 여러 변수들을 포함하여 모형을 확장시켜 분석하였다.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분석방법으로 주로 종속변수와 설명변수가 연속적으로 측정 및 관찰된 경우에 사용하지만, 종속변수가 연속변수가 아닌 질적인 특성을 가질 경우(예 : 0과 1)에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게 된다.⁴⁰ 여기서는 종속변수가 0과 1의 값을 갖는 이변량의 특성을 갖고 있는 모형이므로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을 실시한다.⁴¹ 실증모형은 $y^* = X\beta + \epsilon$ 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에서 취업 의지를 나타내는 y^* 는 관찰 불가능한 잠재변수(latent variable)이므로 이를 관찰 가능한 변수로 전환시키면 취업 여부 y 는 두 개(binary)의 값을 갖는 이항변수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⁴²

$$y = \begin{cases} 1, & y^* = X\beta + \epsilon \geq 0 \text{인 경우 (취업)} \\ 0, & y^* = X\beta + \epsilon < 0 \text{인 경우 (미취업)} \end{cases} \quad (4)$$

여기에서 X 는 취업하고자 하는 의지 또는 취업 여부를 결정짓는 요인들의 벡터 값, β 는 추정되는 계수 값, ϵ 는 오차항이다. 여기서 취업 여부를 결정하는 설명변수로는 성별, 연령, 결혼 여부, 부모님 학력, 학점, 휴학경험, 경제적 독립여부, 직업훈련 및 자격증 취득 경험, 구직활동 유무, 시험준비 유무, 전공계열 구분, 학교 유형 구분, 학자금 대출 경험, 졸업 전 취업목표 설정 여부 등이 포함된다.

다음으로 학력·기술·전공 미스매치 결정요인의 경우도 취업결정요인 분석과 마찬가지로 하향취업 여부(학력과잉=1, 비학력과잉=0, 기술과잉=1, 비기술과잉=0), 상향취업 여부(학력부족=1, 비학력부족=0, 기술부족=1, 비기술부족=0), 전공미스매치 여부(전공불일치=1, 전공일치=0) 등을 종속변수로 하여 추정한다. 학력·기술·전공 미스매치를 결정하는 설명변수로는 성별, 연령, 학점, 휴학경험, 독립여부, 직업훈련 경험, 자격증 취득 경험, 시험준비 유무, 구직활동 유무, 전공계열, 학교 유형, 학자금 대출 경험, 졸업 전 취업목표 설정 여부, 결혼 여부, 부모님 학력, 종사상 지위, 기업체규모, 직장소재지 등이 포함된다.

40 황광훈, 2023, 「기업 규모별 청년층의 고용 유지기간 결정요인 및 일자리 이동에 따른 임금의 변화」, 『지역정책연구』 34(1), 159~182쪽.

41 황광훈, 2023, 「기업 규모별 청년층의 고용 유지기간 결정요인 및 일자리 이동에 따른 임금의 변화」, 『지역정책연구』 34(1), 159~182쪽.

42 황광훈·이은혜·홍석현, 2021, 「청년층은 희망직업으로 취업하고 있는가?」, 『직업능력개발연구』 24(3).

$$y = \begin{cases} 1, & y^* = X\beta + \epsilon \geq 0 \text{인 경우 (학력, 기술, 전공 미스매치)} \\ 0, & y^* = X\beta + \epsilon < 0 \text{인 경우 (비미스매치)} \end{cases} \quad (5)$$

4. 실증분석

1) 수원시 청년층의 고용 유지기간 및 임금 결정요인 분석

본절에서는 수원시 청년층의 고용 유지기간 및 임금 결정요인을 추정하도록 하겠다. 분석에 사용된 표본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학적 속성변수를 중심으로 보면, 남성과 여성 비율이 각각 50%로 같으며, 조사시점 기준에서의 평균연령은 29.7세이다. 학력수준별로 비율에서는 고졸이하 학력층의 비율은 17%, 전문대졸 22%, 대졸이상 62%의 비율로 구성되었다. 다음으로 혼인상태에서는 기혼자 비율이 34%로 나타났고, 분석대상자가 속해 있는 가구에서 본인이 가구주인 비율이 36%로 나타났다. 둘째, 수원시 청년층이 취업한 직장 특성에서는 기업체 종사자 규모는 소기업(50인 미만) 27%, 중기업(50~299인) 20%, 대기업(300인 이상) 53%로 나타났고, 종사상 지위의 경우 상용직이 90%로 임시/일용직(10%)보다 월등히 높았다. 또한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44.3시간으로 확인되고, 산업에서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이 4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제조업' 종사자 비율은 37%, '도소매/숙박/음식업'이 11%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직업에서는 '경영/금융/무역/사무직'이 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건/의료/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23%,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22%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이 21%로 나타났다. 셋째, 직업훈련과 자격증 취득 경험 비율에서는 각각 24%, 64%의 경험 비율을 보이고 있다. 넷째, 조사대상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본인의 학력/기술/전공 미스매치와 관련해서는 학력 미스매치(부족+과잉), 기술미스매치(부족+과잉), 전공 미스매치가 각각 23%, 22%, 15%로 확인된다.

〈표 1〉 기초통계량(N=1,055)

변수		평균, 비율	표준편차	
남성		0.50	0.50	
연령		29.77	4.87	
학력	고졸이하	0.17	0.37	
	전문대졸	0.22	0.41	
	대졸이상	0.62	0.49	
기혼		0.34	0.48	
가구주		0.36	0.48	
종사상지위(상용직)		0.90	0.30	
기업 규모	소기업(50인 미만)	0.27	0.44	
	중기업(50-299인)	0.20	0.40	
	대기업(300인 이상)	0.53	0.50	
주당 근로시간		44.31	8.24	
산업	제조업	0.37	0.48	
	건설업	0.02	0.14	
	전기/운수/정보통신/금융/보험업	0.07	0.26	
	도소매/숙박/음식업	0.11	0.31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0.42	0.49	
직업	경영/사무/금융/보험직	0.33	0.47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0.22	0.42	
	보건/의료/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0.23	0.42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0.02	0.14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영업/판매/운전/운송직	0.11	0.32	
	건설/채굴직/설치/정비/생산/농림어업직	0.08	0.27	
노동조합 유		0.21	0.41	
직업훈련경험 유		0.24	0.42	
자격증 유		0.64	0.48	
미스 매치	학력	적정학력	0.77	0.42
		학력부족	0.13	0.33
		학력과잉	0.10	0.30
	기술	적정기술	0.78	0.42
		기술부족	0.13	0.33
		기술과잉	0.10	0.30
전공일치		0.85	0.36	
로그실질월평균임금		5.53	0.47	

2) 실증분석 결과

〈표 2〉는 수원시 청년취업자의 고용 유지기간 결정요인을 추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수원시 청년취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추정한 결과, 대졸이상 학력층이 고졸이하 청년층과 비교하여 일자리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가구주인 경우 기준집단이 가구원에 비해 일자리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종사상 지위가 상용직인 청년근로자는 임시/일용직 근로자에 비해 일자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기업체 종사자 규모에서는 대기업 종사자의 일자리 이탈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반면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길수록 일자리에서 이탈할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이탈 가능성은 낮았으나, 근로자가 자격증을 취득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이탈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반면, 미스매치(학력·기술·전공 미스매치) 항목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추정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다. 하지만, 직장에서의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이탈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남성 집단을 기준으로 보면, 연령, 학력, 혼인상태, 가구주 여부 등 기본적인 인구학적 속성 및 가구배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는 않았다. 직장특성에서는 상용직 근로자 또는 대기업 종사자는 기준집단인 임시/일용직과 소기업 종사 근로자에 비해 일자리에서 고용을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길어질수록 이탈 가능성은 높은 반면, 노동조합 유무, 직업훈련 경험, 자격증 취득 여부 항목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다만 미스매치 항목에서는 기술부족 미스매치 상태인 청년취업자는 적정기술 집단과 비교하여 일자리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직장에서의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일자리에서 이탈할 확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번에는 여성 집단을 기준으로 추정결과를 살펴보도록 한다. 연령, 혼인상태 등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은 반면, 학력에서는 대졸이상 학력층인 경우 고졸이하 학력층에 비해 일자리에서 이탈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가구주인 경우 이탈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직장특성에서는 상용직 근

로자 또는 대기업 종사자는 기준집단인 임시/일용직과 소기업 종사 근로자에 비해 일자리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매우 낮았다. 또한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이탈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미스매치 항목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추정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직장에서의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일자리에서 이탈할 확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종합해서 정리해 보면, 수원시 청년층의 경우 상용직 및 300인 이상 대기업 종사자, 고임금근로자의 경우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성별로 집단을 분리하여 분석하더라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임시/일용직, 50인 미만 소기업 종사자, 저임금근로자의 경우 현재의 일자리에서 이탈할 확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대다수의 청년층은 고임금과 고용 안정성이 보장된 대기업, 공기업 등 1차 노동시장으로의 진입과 안착을 희망하고 선호하기 때문에 원하는 일자리로 안착하지 못할 경우, 지속적인 일자리 이탈 및 이동 등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키면서 다양한 문제점들을 야기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표 2〉 수원시 청년층의 고용 유지기간 결정요인(콕스비례위험 모형) : 전체 및 성별

구분	전체			남성			여성			
	추정치	표준 오차	위험비	추정치	표준 오차	위험비	추정치	표준 오차	위험비	
성별 (기준:여성)	0.431	0.263	1.540	-	-	-	-	-	-	
연령	0.153	0.308	1.165	0.232	0.464	1.262	0.388	0.673	1.475	
연령제곱	-0.006	0.005	0.994	-0.006	0.008	0.994	-0.013	0.012	0.987	
학력 (기준:고졸이하)	전문 대졸	0.252	0.320	1.287	-0.224	0.558	0.799	0.689	0.523	1.992
	대졸 이상	0.795**	0.348	2.213	0.372	0.528	1.451	1.224**	0.596	3.400
결혼 (기준:미혼)	-0.182	0.306	0.833	0.194	0.472	1.214	0.387	0.541	1.473	
가구주 여부 (기준:비가구주)	0.460*	0.272	1.584	-0.471	0.462	0.625	1.317***	0.420	3.732	
상용직 (기준:임시/일용직)	-1.744***	0.313	0.175	-0.956*	0.578	0.385	-1.771***	0.448	0.170	

구분	전체			남성			여성			
	추정치	표준 오차	위험비	추정치	표준 오차	위험비	추정치	표준 오차	위험비	
기업체 규모 (기준:소기업)	중기업	-0.263	0.276	0.768	-0.061	0.434	0.941	-0.250	0.403	0.779
	대기업	-1.132***	0.293	0.322	-1.753***	0.520	0.173	-0.916**	0.414	0.400
주당 평균 근로시간	0.031***	0.011	1.032	0.051***	0.019	1.053	0.005	0.022	1.005	
노동조합 유무 (기준:없음)	-1.005***	0.361	0.366	-0.692	0.598	0.501	-1.425***	0.506	0.240	
직업훈련 경험 (기준:비경험)	0.175	0.267	1.191	0.526	0.501	1.692	0.405	0.383	1.499	
자격증 취득 여부 (기준:미취득)	0.443*	0.236	1.558	0.228	0.397	1.256	0.567	0.364	1.763	
학력 미스매치 (기준:적정)	학력 부족	-0.549	0.497	0.577	-1.297	0.904	0.273	-0.239	0.641	0.788
	학력 과잉	-0.444	0.471	0.641	-0.467	0.746	0.627	-0.341	0.697	0.711
기술 미스매치 (기준:적정기술)	기술 부족	0.698	0.437	2.009	1.244**	0.599	3.470	0.591	0.755	1.806
	기술 과잉	0.527	0.422	1.693	0.823	0.690	2.277	0.532	0.589	1.702
전공일치 (기준:전공불일치)	-0.297	0.311	0.743	-0.109	0.564	0.897	0.058	0.496	1.060	
월평균임금 (로그값)	-1.535***	0.331	0.215	-1.882***	0.548	0.152	-1.042*	0.588	0.353	
-2 LogL	1,255.00			498.56			616.20			
LR 검정 통계량	230.73***			125.48***			135.11***			
N	1,055			528			527			

주 : 1. 직업과 산업은 통제하였음
2. *는 10%, **는 5%, ***는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3)

다음으로 〈표 3〉은 고졸이하, 전문대졸, 대졸이상 학력층으로 집단을 분리시켜 각각의 집단별 고용 유지기간 결정요인을 추정한 결과이다.

고졸이하 학력층을 대상으로 추정한 결과, 가구주인 경우 일자리 이탈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으나, 성별과 연령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종사상 지위가 상용직인 청년근로자는 임시/일용직 근로자에 비해 일자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기업체 종사자 규모에서는 중기업 종사자의

일자리 이탈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반면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길수록 일 자리에서 이탈할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노동조합 유무, 직업훈련 및 자격증 취득 경험 등의 항목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는 않았다. 미스매치 항목에서는 전공일치 청년취업자의 경우 전공불일치 취업자보다 일자리에서 이탈할 확률이 낮았으며,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이탈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전문대졸 학력층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탈가능성은 높았으나, 성별과 혼인여부 항목에서는 유의미한 통계적 추정결과가 도출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상용직 및 대기업 종사자는 임시/일용직과 소기업 종사 근로자에 비해 현재의 일자리에서 고용을 유지할 가능성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길어질수록, 근로자 본인이 직업훈련 경험이 있는 경우는 일자리에서 이탈할 가능성은 높은 반면, 직장에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이탈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스매치 항목에서는 학력과잉 미스매치 상태인 청년층은 이탈가능성이 낮은 반면, 기술부족 미스매치 상태인 청년취업자는 일자리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직장에서의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일자리에서 이탈할 확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마지막으로 대졸이상 고학력층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탈가능성은 낮았으나, 성별과 혼인여부, 가구주 여부 항목에서는 통계적 유의미한 추정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하지만, 상용직 및 대기업 종사자는 임시/일용직과 소기업 종사 근로자에 비해 일자리에서 고용을 유지할 가능성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격증 취득 경험자의 일자리 이탈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주당 평균근로시간, 직업훈련 경험, 노동조합 여부 등의 항목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다. 하지만 임금수준이 높아질수록 일자리에서 이탈할 확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3〉 수원시 청년층의 고용 유지기간 결정요인(콕스비례위험 모형) : 학력별

구분	고졸이하			전문대졸			대졸이상(4년제졸)			
	추정치	표준 오차	위험비	추정치	표준 오차	위험비	추정치	표준 오차	위험비	
성별 (기준:여성)	-0.126	0.712	0.881	0.960	0.710	2.612	0.252	0.595	1.287	
연령	1.054	0.701	2.868	4.078**	1.777	59.042	-1.240**	0.032	0.289	
연령제곱	-0.021*	0.012	0.979	-0.089***	0.034	0.914	0.016*	0.073	1.017	
결혼 (기준:미혼)	1.931	1.176	6.894	0.426	1.026	1.530	0.404	0.346	1.498	
가구주여부 (기준:비가구주)	2.251**	0.982	9.493	-0.147	0.768	0.864	0.244	0.576	1.277	
상용직 (기준:임시/일용직)	-3.621***	1.104	0.027	-4.220***	0.909	0.015	-1.404**	0.013	0.246	
기업체 규모 (기준:소기업)	중기업	-1.871*	0.985	0.154	-0.283	0.601	0.753	-0.353	0.421	0.703
	대기업	-1.154	0.798	0.315	-3.763***	0.999	0.023	-1.338***	0.004	0.262
주당 평균 근로시간	0.107***	0.035	1.113	-0.100***	0.035	0.905	0.020	0.285	1.020	
노동조합 유무 (기준:없음)	-0.350	1.281	0.705	-4.023**	1.766	0.018	-0.375	0.402	0.688	
직업훈련 경험 (기준:비경험)	-0.014	1.130	0.986	4.114***	1.194	61.196	0.315	0.405	1.371	
자격증 취득 여부 (기준:미취득)	-0.108	0.705	0.897	-0.176	0.608	0.839	1.120**	0.014	3.064	
학력미스매치 (기준:적정학력)	학력 부족	-15.296	2.687	0.000	-1.381	0.964	0.251	-1.083	0.167	0.339
	학력 과잉	-1.166	1.244	0.312	-4.104***	1.530	0.017	0.443	0.559	1.557
기술미스매치 (기준:적정기술)	기술 부족	-0.177	1.915	0.838	0.826	0.806	2.284	0.140	2.571	
	기술 과잉	-1.037	1.066	0.355	2.694***	1.016	14.784	-0.076	0.922	0.927
전공일치 (기준:전공불일치)	-1.429*	0.840	0.240	-1.110	1.029	0.33	-0.228	0.684	0.797	
월평균임금 (로그값)	-3.800***	1.418	0.022	-1.830**	0.894	0.16	-1.863***	0.003	0.155	
-2 LogL	190.21			275.95			564.82			
LR 검정 통계량	57.01***			121.64***			126.32***			
N	176			230			649			

주 : 1. 직업과 산업은 통제하였음
 2. *는 10%, **는 5%, ***는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지금부터는 수원시 청년취업자의 임금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들을 실증적으로 추정하고자 한다. 먼저 전체 수원시 청년층 대상으로 분석하고, 성별, 학력별 집단으로 집단을 분리하여 각각의 집단별 임금 결정요인을 추정한다. 앞서 분석 모형에 설명하였듯이 기본적인 Mincer의 임금방정식을 활용하여 임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구학적 특성 및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장(직업) 속성들을 설명변수로 포함하여 그 계수 값을 통해 확인하기로 한다.

〈표 4〉의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수원시 청년취업자를 대상으로 보면, 다른 조건이 일정한 상태에서 남성은 여성보다 7.2%의 임금 상승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학력에서는 대졸이상 학력층의 경우 기준집단인 고졸이하 학력층에 비해 평균적으로 17.9%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혼자와 가구주의 경우 미혼자와 가구원에 비해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특성을 대표하는 항목에서는 상용직 및 대기업 청년취업자의 경우 임시/일용직 및 소기업 취업자에 비해 각각 14.1%, 16.3%의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다. 미스매치 항목에서는 학력과잉 미스매치 상태인 청년층이 적정학력 집단에 비해 평균적으로 17.6%의 임금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반면, 기술부족 미스매치 상태인 경우는 10.1%의 임금 프리미엄이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성별로 집단을 분리시켜 각각의 집단별 추정결과를 보면, 남녀 공통적으로 다른조건이 일정한 상태에서 대졸이상 고학력층, 가구주, 상용직 및 대기업 종사자의 임금 상승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학력과잉 미스매치 상태의 청년층은 임금손실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표 4〉 수원시 청년층의 임금 결정요인(OLS 모형) : 전체 및 성별

구분	전체		남성		여성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상수항	4.133***	0.367	4.637***	0.514	4.103***	0.589	
성별(기준:여성)	0.072***	0.026	-	-	-	-	
연령	0.026	0.025	-0.003	0.034	0.042	0.041	
연령제곱	0.000	0.000	0.000	0.001	-0.001	0.001	
학력 (기준:고졸이하)	전문대졸	-0.026	0.036	0.046	0.055	-0.074	0.054
	대졸이상	0.179***	0.035	0.177***	0.043	0.170***	0.059

구분	전체		남성		여성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결혼(기준:미혼)	0.073***	0.028	-0.023	0.039	0.172***	0.043	
가구주 여부(기준:비가구주)	0.108***	0.025	0.120***	0.034	0.140***	0.043	
상용직(기준:임시/일용직)	0.141***	0.037	0.205***	0.057	0.117**	0.048	
기업체 규모 (기준: 소기업)	중기업	-0.013	0.031	-0.021	0.043	-0.039	0.045
	대기업	0.163***	0.028	0.229***	0.037	0.082**	0.041
주당 평균 근로시간	0.010***	0.001	0.006***	0.002	0.012***	0.002	
노동조합 유무(기준:없음)	0.028	0.027	-0.020	0.037	0.065	0.039	
직업훈련 경험(기준:비경험)	-0.034	0.026	-0.040	0.038	-0.039	0.037	
자격증 취득 여부 (기준:미취득)	0.024	0.022	-0.009	0.029	0.044	0.033	
학력미스매치 (기준:적정학력)	학력부족	0.061*	0.035	0.031	0.043	0.086	0.054
	학력과잉	-0.176***	0.044	-0.185***	0.060	-0.194***	0.062
기술미스매치 (기준:적정기술)	기술부족	0.101***	0.036	0.108***	0.040	0.056	0.064
	기술과잉	-0.007	0.044	0.156**	0.063	-0.107*	0.061
전공일치(기준:전공불일치)	0.025	0.032	0.076*	0.039	-0.079	0.053	
표본수	1,055		528		527		
R-Square	0.578		0.603		0.549		
Adj R-Sq	0.565		0.579		0.522		

주 : 1. 직업과 산업은 통제하였음
 2. *는 10%, **는 5%, ***는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표 5〉는 학력별 주요 추정결과를 정리한 내용이다. 먼저 고졸이하 학력층의 경우, 다른 조건이 일정한 상태에서 남성은 여성보다 18.7%의 임금 프리미엄이 발생하고 있으며, 가구주의 경우 가구원에 비해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특성을 대표하는 항목에서는 중소기업 및 대기업 청년취업자의 경우 소기업 취업자에 비해 각각 18.0%, 23.4%의 임금 프리미엄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근로시간 길수록,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직업훈련 경험이 있는 경우 임금 프리미엄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미스매치 항목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나 나타나지는 않았다. 다음으로 전문대졸 학력층의 경우, 다른 조건이 일정한 상태에서 가구주의 경우 가구원에 비해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장 특성을 대표하는 항목에서는 상용직 취업자는 임시/일용직 취업자에 비해

평균적으로 12.1%의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다. 미스매치 항목에서는 기술과잉 미스매치 상태의 청년층 적정기술 집단에 비해 21.4%의 임금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기타 항목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나 나타나지는 않았다. 마지막으로 4년제 대졸이상 고학력층의 경우, 다른 조건이 일정한 상태에서 기혼자, 가구주의 경우 미혼자 및 가구원에 비해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직장 특성을 대표하는 항목에서는 상용직 및 대기업 청년취업자의 경우 임시/일용직 및 소기업 취업자에 비해 각각 21.6%, 17.7%의 임금 프리미엄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근로시간 길수록 임금상승 효과가 나타난 반면, 직업훈련 경험이 있는 경우는 임금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과잉 미스매치 상태의 청년층은 적정학력 집단에 비해 평균적으로 21.9%의 임금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기술부족 미스매치인 경우는 적정기술 집단에 비해 9.9%의 임금 상승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된다.

〈표 5〉 수원시 청년층의 임금 결정요인(OLS 모형) : 학력별

구분	고졸이하		전문대졸		대졸이상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상수항	4.371***	0.544	3.411***	0.958	3.921***	0.677	
성별(기준:여성)	0.187***	0.057	0.047	0.064	0.027	0.037	
연령	-0.007	0.041	0.064	0.065	0.054	0.043	
연령제곱	0.000	0.001	-0.001	0.001	-0.001	0.001	
결혼(기준:미혼)	0.123	0.078	-0.046	0.069	0.105***	0.035	
가구주 여부 (기준:비가구주)	0.110*	0.059	0.140**	0.062	0.085***	0.033	
상용직(기준:임시/일용직)	0.119	0.075	0.121*	0.062	0.216***	0.061	
기업체 규모 (기준:소기업)	중기업	0.180***	0.062	-0.034	0.063	-0.026	0.046
	대기업	0.234***	0.058	0.055	0.061	0.177***	0.039
주당 평균 근로시간	0.011***	0.002	0.012***	0.003	0.006***	0.002	
노동조합 유무(기준:없음)	0.188**	0.074	0.110	0.074	-0.018	0.033	
직업훈련경험(기준:비경험)	0.274***	0.077	-0.029	0.065	-0.070**	0.032	
자격증 취득 여부 (기준:미취득)	0.063	0.052	0.003	0.050	0.020	0.031	

구분	고졸이하		전문대졸		대졸이상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학력미스매치 (기준:적정학력)	학력부족	0.004	0.136	0.099	0.082	0.044	0.041
	학력과잉	-0.133	0.081	0.017	0.097	-0.219***	0.060
기술미스매치 (기준:적정기술)	기술부족	0.089	0.127	0.115	0.079	0.089**	0.042
	기술과잉	-0.027	0.078	-0.214**	0.088	0.058	0.066
전공일치 (기준:전공불일치)	-0.075	0.057	0.060	0.066	0.098**	0.046	
표본수	176		230		649		
R-Square	0.643		0.470		0.541		
Adj R-Sq	0.574		0.401		0.519		

주 : 1. 직업과 산업은 통제하였음
 2. *는 10%, **는 5%, ***는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2) 수원시 대졸 청년층의 취업 및 주관적 미스매치 결정요인

본절에서의 실증분석은 대졸 고학력 청년층의 취업 결정요인과 학력·기술·전공 미스매치 결정요인 2가지 모형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된다. 첫 번째 모형인 취업 결정요인 분석에 사용되는 표본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수원시 거주 대졸 청년층 표본(34세 이하)은 총 1,855명이며, 이 중 취업에 성공한 표본은 72%(1,341명)이다. 남성의 비율은 53%로 여성의 비율(47%)보다 6%p 높게 구성되어 있으며, 평균연령은 26세이다. 휴학경험 비율은 66%, 독립한 비율은 41%, 직업훈련 및 자격증 취득 경험자가 각각 29%, 55%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시험준비 경험자 비율은 17%, 구직활동 경험 비율은 32%로 나타났고, 전공계열에서는 인문사회계열 30%, 이공계열 50%, 의/약학·교육·예체능계열 20%로 구성되었다. 2~3년제 및 교육대 유형 비율은 20%이며, 4년제 대학 유형은 80%로 나타났고, 학자금 대출 경험 비율은 27%, 졸업 전 취업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표본비율은 47%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두 번째 모형인 주관적 미스매치(학력/기술/전공 미스매치) 결정요인 분석에 사용되는 표본은 취업에 성공한 1,341명이다. 종속변수인 각 미스매치 상태에서는 하향취업(학력) 21%, 하향취업(기술) 19%, 상향취업(학력) 19%, 상향취업(기

술) 20%, 전공 미스매치 25%로 나타났다. 남성의 비율은 56%, 평균연령은 26세, 휴학경험 비율은 68%, 독립한 비율은 45%, 직업훈련 및 자격증 취득 경험자가 각각 32%, 57%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시험준비 경험자 비율은 14%, 구직활동 경험 비율은 31%로 나타났고, 전공계열에서는 인문사회계열 28%, 이공계열 53%, 의/약학·교육·예체능계열 19%로 구성되었다. 2,3년제 및 교육대 유형 비율은 19%이며, 4년제 대학 유형은 81%로 나타났고, 학자금 대출 경험 비율은 27%, 졸업 전 취업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표본비율은 47%로 나타났다. 직업속성들을 살펴보면 종사상 지위에서 상용직이 76%, 임시/일용직 22%, 비임금근로자 2%로 구성되었고, 기업체 규모에서는 소기업 43%, 중기업 19%, 대기업 38%로 나타났다.

〈표 6〉 기초통계량

변수	취업 결정요인 (N=1,855)		학력·기술·전공 미스매치 결정요인(N=1,341)		
	평균, 비율	표준편차	평균, 비율	표준편차	
취업여부	0.72	0.45	-	-	
하향취업(학력)	-	-	0.21	0.41	
하향취업(기술)	-	-	0.19	0.39	
상향취업(학력)	-	-	0.19	0.39	
상향취업(기술)	-	-	0.20	0.40	
미스매치(전공)	-	-	0.25	0.43	
성별(남성)	0.53	0.50	0.56	0.50	
연령	26.00	1.88	26.09	1.85	
학점	3.58	0.42	3.58	0.42	
휴학경험	0.66	0.47	0.68	0.47	
독립	0.41	0.49	0.45	0.50	
직업훈련경험 유	0.29	0.45	0.32	0.46	
자격증 유	0.55	0.50	0.57	0.50	
시험준비 유	0.17	0.38	0.14	0.35	
구직활동경험 유	0.32	0.47	0.31	0.46	
전공계열	인문사회계열	0.30	0.46	0.28	0.45
	이공계열	0.50	0.50	0.53	0.50
	의/약학·교육·예체능계열	0.20	0.40	0.19	0.40
2~3년제 및 교육대	0.20	0.40	0.19	0.39	

변수	취업 결정요인 (N=1,855)		학력·기술·전공 미스매치 결정요인(N=1,341)		
	평균, 비율	표준편차	평균, 비율	표준편차	
학자금 대출경험 유	0.27	0.44	0.27	0.44	
졸업 전 취업목표 유	0.47	0.50	0.47	0.50	
미혼	0.98	0.14	0.98	0.15	
아버님 학력	중졸이하	0.06	0.23	0.06	0.25
	고졸	0.37	0.48	0.37	0.48
	전문대졸 이상	0.54	0.50	0.54	0.50
어머님 학력	중졸이하	0.06	0.24	0.06	0.24
	고졸	0.53	0.50	0.53	0.50
	전문대졸 이상	0.39	0.49	0.38	0.49
종사상 지위	상용직	-	-	0.76	0.43
	임시/일용직	-	-	0.22	0.41
	비임금근로자	-	-	0.02	0.15
기업체 규모	소기업	-	-	0.43	0.50
	중기업	-	-	0.19	0.39
	대기업	-	-	0.38	0.49
자료 연도	2016년	0.26	0.44	0.28	0.45
	2017년	0.23	0.42	0.24	0.43
	2018년	0.22	0.42	0.22	0.42
	2019년	0.28	0.45	0.25	0.43

〈표 7〉은 수원시 청년층의 취업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이다.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다른 조건이 일정한 상태에서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한 대졸 청년층은 독립하지 못한 대졸 청년층에 비해 취업할 가능성이 높으며, 직업훈련 및 자격증 취득 경험이 있는 경우는 취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험준비 활동 경험이 있는 대졸 청년층의 경우는 취업가능성은 다소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본 분석에 사용된 취업 여부 상태는 해당 졸업년월 시점 기준으로 약 18~24개월 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조사한 자료이므로 노동시장 진입 초기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취업한 상태인 청년층은 대부분 졸업과 동시에 취업에 성공한 경우라 볼 수 있으며,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대졸 청년층의 경우는 상당수가 본인이 희망하거나 선호하는 일자리에 진입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험 및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시험준비 활동 경험자 중 상당수가 현재 미취업 상태인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특히, 대졸이상 고학력층의 노동시장 초기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업문제를 완화 및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학 졸업시점과 입직시점의 간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다음으로 가구배경 항목에서는 아버님 학력이 높아질수록 취업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9년 졸업자의 취업확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 자료의 조사시점은 2020년 9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2020년 초에 발생한 코로나 19의 노동시장 충격으로 청년층의 취업이 어려워지고, 대량 실업상태 등이 발생한 원인이 일부 작용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수원시 거주 대졸 청년층의 경우 직업훈련과 자격증 취득 경험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대졸 청년층에 비해 취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해석해 보면, 대부분은 대졸 청년층은 높은 노동시장 진입장벽을 넘기 위해 대학입학과 동시에 자격증, 스펙쌓기 등을 대학재학 전시기에 걸쳐 준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자격증은 취업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스펙쌓기 준비 행동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상당수의 대학졸업자는 재학 중에 자격증 취득을 완료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남성과 여성 집단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집단별 취업 결정요인을 추정 한 결과를 보면(〈표 4〉), 남녀 모두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한 대졸 청년층은 독립하지 못한 대졸 청년층에 비해 취업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시험준비 활동 경험이 있는 대졸 청년층의 경우는 취업가능성은 다소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여성 집단에서는 아버님 학력이 높아질수록 취업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반면, 여성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반면 남성은 최근 2019년 졸업자의 취업확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수원시 대졸 청년층의 취업 결정요인 추정(전체 및 성별)

구분	전체		남성		여성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상수항	-12.556	7.855	-1.454	12.411	-18.443	12.867
남성(기준:여성)	-0.051	0.147	-	-	-	-
연령	0.949	0.587	0.186	0.911	1.378	0.985

구분	전체		남성		여성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연령제곱	-0.016	0.011	-0.003	0.017	-0.024	0.019	
학점	0.020	0.133	0.003	0.184	-0.016	0.196	
휴학경험 있음(기준:없음)	-0.018	0.157	0.321	0.266	-0.161	0.195	
독립(기준:비독립)	0.577***	0.123	0.508***	0.168	0.616***	0.187	
직업훈련 경험 있음(기준:없음)	0.490***	0.134	0.736***	0.196	0.293	0.189	
자격증 있음(기준:없음)	0.303***	0.114	0.153	0.163	0.482***	0.163	
시험준비 경험 있음(기준:없음)	-0.685***	0.143	-0.796***	0.221	-0.675***	0.199	
구직활동 경험 있음(기준:없음)	-0.093	0.135	-0.222	0.196	-0.009	0.189	
전공계열 (기준:인문사회계열)	이공계열	0.201	0.135	0.226	0.197	0.125	0.193
	의/약학·교육·예체능계열	0.178	0.164	0.113	0.297	0.165	0.203
	2~3년제 및 교육대졸 (기준:4년제 졸업)	0.112	0.173	-0.156	0.255	0.272	0.245
학자금 대출경험 유	-0.024	0.128	0.122	0.188	-0.121	0.178	
졸업전 취업목표 유	-0.011	0.118	-0.071	0.173	0.013	0.166	
미혼	-0.171	0.484	-0.647	0.686	0.391	0.710	
아버님 학력 (기준:중졸이하)	고졸	-0.414*	0.246	-0.131	0.304	-1.011***	0.454
	전문대졸 이상	-0.455*	0.254	-0.197	0.320	-1.000***	0.461
어머님 학력 (기준:중졸이하)	고졸	0.311	0.231	0.433	0.290	0.135	0.401
	전문대졸 이상	0.273	0.250	0.287	0.329	0.205	0.416
자료연도 (기준:2016년)	2017년	-0.194	0.174	-0.296	0.255	-0.134	0.246
	2018년	-0.275	0.176	-0.290	0.252	-0.312	0.254
	2019년	-0.565***	0.163	-0.881***	0.239	-0.334	0.229
-2 LogL	2114.18		1074.18		1030.31		
LR 검정 통계량	121.52***		85.55***		51.32***		
N	1855		986		869		

주 : ***, **, *는 각각 유의수준 0.001, 0.01, 0.05에서 유의함

〈표 8〉은 수원시 청년층의 취업 결정요인을 대학 전공계열별 집단에 따라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인문사회계열과, 이공계열 집단에서는 공통적으로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한 대졸 청년층의 취업가능성이 높았고, 이공계열 출신 청년 대졸자는 직업훈련 경험이 있을 경우 취업확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인문사회계열과 의/약학·교육·예체능계열의 경우 자격증 취득 경험이 있는 청년층일수록 취

업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반면, 모든 계열에서 시험준비 활동 경험이 있는 대졸 청년층은 취업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수원시 대졸 청년층의 취업 결정요인 추정(대학 전공계열별)

구분	인문사회계열		이공계열		의/약학·교육·예체능계열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상수항	-3.542	13.735	-11.593	13.405	-20.157	17.633	
남성(기준:여성)	-0.093	0.263	0.022	0.221	-0.045	0.350	
연령	0.431	1.020	0.843	0.994	1.440	1.343	
연령제곱	-0.007	0.019	-0.015	0.018	-0.024	0.026	
학점	-0.020	0.235	0.213	0.202	-0.267	0.305	
휴학경험 있음(기준:없음)	-0.121	0.261	0.226	0.254	-0.188	0.358	
독립(기준:비독립)	0.768***	0.238	0.512***	0.173	0.307	0.305	
직업훈련 경험 있음(기준:없음)	0.206	0.228	0.719***	0.203	0.389	0.323	
자격증 있음(기준:없음)	0.404**	0.199	0.104	0.170	0.864***	0.284	
시험준비 경험 있음(기준:없음)	-0.617***	0.228	-0.863***	0.255	-0.627***	0.321	
구직활동 경험 있음(기준:없음)	-0.188	0.242	0.039	0.204	-0.228	0.306	
2~3년제 및 교육대졸(기준:4년제 졸업)	-0.169	0.354	0.083	0.290	0.265	0.302	
학자금 대출경험 유	0.029	0.223	-0.079	0.193	-0.017	0.291	
졸업전 취업목표 유	-0.059	0.207	0.108	0.179	-0.339	0.270	
미혼	-1.107	1.108	-0.043	0.701	0.624	0.929	
아버님 학력(기준:중졸이하)	고졸	-0.387	0.427	-0.964**	0.393	0.733	0.564
	전문대졸 이상	-0.597	0.437	-0.682	0.415	0.087	0.560
어머님 학력(기준:중졸이하)	고졸	-0.424	0.445	0.829**	0.327	0.102	0.590
	전문대졸 이상	-0.525	0.472	0.585	0.363	0.613	0.622
자료연도(기준:2016년)	2017년	0.031	0.314	-0.181	0.258	-0.624	0.402
	2018년	-0.212	0.319	-0.209	0.262	-0.523	0.394
	2019년	-0.436	0.290	-0.562**	0.244	-0.922**	0.377
-2 LogL	678.72		995.60		425.19		
LR 검정 통계량	45.72**		71.75***		34.76**		
N	551		931		373		

주 : ***, **, *는 각각 유의수준 0.001, 0.01, 0.05에서 유의함

〈표 9〉는 수원시 청년대졸자 중 취업에 성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하향취업(학력/기술 과잉)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정리해 놓은 것이다. 다른 조건이 일정한 상태에서 학점이 높을수록 하향취업 상태에 빠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즉 학점이 높은 대졸 청년층은 비교적 적절한 일자리 또는 자신의 교육 및 기술 수준에 비해 높은 수준의 일자리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대학 재학 중 취득한 학점 수준은 향후 노동시장 진입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가능성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비교적 좋은 일자리에 취업한 청년층은 대부분 대학 재학 시 높은 학점을 취득한 경우라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한 청년층의 경우 기준집단(비독립 청년층)에 비해 하향취업에 빠질 가능성이 낮게 나타났다.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임시직과 같은 취약한 일자리에 취업하기보다는 보다 안정적이면서 고임금이 보장된 일자리로 취업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독립한 청년층의 경우, 대다수가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로 추정해 볼 수 있겠다. 또한 이공계열과 의/약학·교육·예체능계열 전공출신 청년층보다 인문사회계열 출신 청년층의 하향취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여전히 인문사회계열을 전공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여건이 좋지 않음이 확인되고 있다. 즉 인문사회계열 출신 전공자들은 자신의 학력이나 기술수준이나 능력에 비해 다소 업무수준이 떨어지는 일자리에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일자리들은 대부분 자신이 희망하거나, 전공과도 괴리감이 존재하고 있는 일자리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이에 반해 이공계열 및 의/약학·교육·예체능계열 전공자의 경우 인문사회계열 출신 졸업자에 비해 비교적 자신의 학력과 기술수준과 비교하여 적절하거나 높은 수준의 일자리에 진입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상용직 취업자의 경우도 임시/일용직에 비해 자신의 학력 및 기술 수준과 일치하거나 높은 수준의 일자리에 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수원시 대졸 청년층의 하향취업 결정요인 추정

구분	모형 I (종속변수:학력과잉)		모형 II (종속변수:기술과잉)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상수항	16.969**	9.773	7.197	10.028	
남성(기준:여성)	-0.309	0.190	-0.374*	0.200	
연령	-1.188	0.723	-0.470	0.742	
연령제곱	0.022*	0.013	0.010	0.014	
학점	-0.374**	0.166	-0.367**	0.173	
휴학경험 있음(기준:없음)	0.193	0.203	-0.121	0.206	
독립(기준:비독립)	-0.482***	0.154	-0.407**	0.161	
직업훈련 경험 있음(기준:없음)	0.000	0.166	0.112	0.173	
자격증 있음(기준:없음)	-0.024	0.148	-0.076	0.155	
시험준비 경험 있음(기준:없음)	0.442**	0.197	0.257	0.205	
구직활동 경험 있음(기준:없음)	0.218	0.181	0.168	0.186	
전공계열 (기준:인문사회계열)	이공계열	-0.365**	0.170	-0.680***	0.176
	의/약학·교육· 예체능계열	-0.484**	0.216	-0.657***	0.221
2~3년제 및 교육대졸(기준:4년제 졸업)	-0.109	0.226	0.090	0.231	
학자금 대출경험 유	0.242	0.157	0.210	0.165	
졸업전 취업목표 유	-0.064	0.150	0.071	0.157	
미혼	-0.114	0.518	-0.118	0.519	
아버님 학력 (기준:중졸이하)	고졸	0.079	0.299	0.108	0.297
	전문대졸 이상	0.279	0.307	0.143	0.308
어머님 학력 (기준:중졸이하)	고졸	-0.093	0.300	-0.713**	0.285
	전문대졸 이상	0.004	0.321	-0.520	0.308
종사상지위 (기준:임시/일용직)	상용직	-0.615***	0.171	-0.714***	0.178
	비임금근로자	-0.101	0.446	-0.036	0.451
기업체규모 (기준:소기업)	중기업	0.049	0.206	0.064	0.219
	대기업	-0.104	0.169	0.069	0.176
자료년도 (기준:2016년)	2017년	-0.208	0.210	0.157	0.220
	2018년	-0.417*	0.226	-0.034	0.237
	2019년	-0.104	0.207	0.046	0.222
-2 LogL	1,359.14		1,280.28		
LR 검정 통계량	78.19***		87.00***		
N	1,341		1,341		

주 : 1. ***, **, *는 각각 유의수준 0.001, 0.01, 0.05에서 유의함
 2. 기업체규모는 소기업은 50인 미만, 중기업은 50-299인, 대기업은 300인 이상으로 함

〈표 10〉은 수원시 거주 청년층 중 취업에 성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상향취업(학력/기술 부족)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정리해 놓은 것이다. 다른 조건이 일정한 상태에서 남성은 여성보다 기술부족 미스매치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상향취업(학력/기술 부족)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험준비 경험이 있는 청년층은 학력부족 및 기술부족 등의 상향취업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공계열의 경우 기준집단인 인문사회계열에 비해 상향취업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향취업 결정요인 추정결과의 경우 대부분 추정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분석대상 표본이 대학을 졸업한 고학력 청년층이기 때문에 학력과 기술수준이 부족한 것에 취업할 가능성이 비교적 낮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표 10〉 수원시 대졸 청년층의 상향취업 결정요인 추정

구분	모형 I (종속변수:학력부족)		모형 II (종속변수:기술부족)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상수항	-33.318**	14.200	-44.853***	15.428	
남성(기준:여성)	0.263	0.207	0.539***	0.207	
연령	2.388**	1.067	3.264***	1.165	
연령제곱	-0.044**	0.020	-0.062***	0.022	
학점	-0.132	0.179	-0.033	0.180	
휴학경험 있음(기준:없음)	-0.224	0.223	-0.408*	0.221	
독립(기준:비독립)	0.146	0.156	0.251	0.154	
직업훈련 경험 있음(기준:없음)	0.105	0.168	0.162	0.166	
자격증 있음(기준:없음)	-0.194	0.151	-0.260*	0.150	
시험준비 경험 있음(기준:없음)	-0.794***	0.278	-0.624**	0.267	
구직활동 경험 있음(기준:없음)	0.088	0.184	0.027	0.183	
전공계열 (기준:인문사회계열)	이공계열	0.383**	0.194	0.382**	0.193
	의/약학,교육, 예체능계열	0.106	0.258	0.032	0.260
2~3년제 및 교육대	0.077	0.236	-0.143	0.240	
학자금 대출경험 유	-0.085	0.171	0.196	0.165	
졸업전 취업목표 유	0.100	0.159	-0.079	0.158	

구분	모형 I (종속변수:학력부족)		모형 II (종속변수:기술부족)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미혼	-0.064	0.504	-0.141	0.507	
아버님 학력 (기준:중졸이하)	고졸	0.010	0.291	0.506	0.310
	전문대졸 이상	-0.255	0.305	0.196	0.323
어머님 학력 (기준:중졸이하)	고졸	-0.250	0.299	-0.166	0.307
	전문대졸 이상	0.045	0.325	0.075	0.332
종사상지위 (기준:임시/일용직)	상용직	0.371*	0.204	0.482	0.207
	비임금근로자	-0.879	0.767	-0.192	0.653
기업체규모 (기준:소기업)	중기업	-0.207	0.233	-0.153	0.230
	대기업	0.085	0.172	0.116	0.172
자료연도 (기준:2016년)	2017년	0.105	0.225	0.206	0.223
	2018년	0.410	0.223	0.277	0.226
	2019년	-0.010	0.231	0.310	0.223
-2 LogL	1,265.86		1,291.63		
LR 검정 통계량	67.41***		84.13***		
N	1,341		1,341		

주 : 1. ***, **, *는 각각 유의수준 0.001, 0.01, 0.05에서 유의함
 2. 기업체규모는 소기업은 50인 미만, 중기업은 50-299인, 대기업은 300인 이상으로 함

다른 조건이 일정한 상태에서 대학시절 취득한 학점이 높을수록 전공불일치 상태에 빠질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자 취업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다양한 스펙 중에서 대학에서의 학점은 중요한 스펙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된다. 또한 경제적으로 독립한 청년층의 경우 자신의 전공과 관련성이 높은 일자리에 진입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공계열별로는 인문사회계열에 비해 이공계열 및 의/약학·교육·예체능계열 출신 졸업자의 전공미스매치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문사회계열 졸업자의 경우 상당수의 취업자는 전공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직장에 취업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상용직 취업자의 경우도 임시/일용직에 비해 자신의 전공과 비교적 일치하는 일자리에 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수원시 대졸 청년층의 전공 미스매치 결정요인 추정

구분	추정치	표준오차	
상수항	7.215	9.825	
남성(기준:여성)	-0.234	0.186	
연령	-0.454	0.729	
연령제곱	0.009	0.013	
학점	-0.441***	0.161	
휴학경험 있음(기준:없음)	0.479**	0.202	
독립(기준:비독립)	-0.413***	0.148	
직업훈련 경험 있음(기준:없음)	0.134	0.160	
자격증 있음(기준:없음)	-0.178	0.143	
시험준비 경험 있음(기준:없음)	0.466**	0.195	
구직활동 경험 있음(기준:없음)	0.187	0.177	
전공계열	이공계열	-0.884***	0.163
(기준:인문사회계열)	의/약학,교육,예체능계열	-0.923***	0.214
2~3년제 및 교육대	0.358*	0.214	
학자금 대출경험 유	0.148	0.154	
졸업전 취업목표 유	-0.280*	0.147	
미혼	0.303	0.523	
아버님 학력 (기준:중졸이하)	고졸	-0.178	0.274
	전문대졸 이상	-0.164	0.283
어머님 학력 (기준:중졸이하)	고졸	-0.272	0.279
	전문대졸 이상	0.108	0.300
종사상지위 (기준:임시/일용직)	상용직	-0.538***	0.170
	비임금근로자	-0.357	0.465
기업체규모 (기준:소기업)	중기업	0.346	0.198
	대기업	0.083	0.164
자료연도 (기준:2016년)	2017년	-0.455**	0.205
	2018년	-0.318	0.211
	2019년	-0.582***	0.207
-2 LogL	1,453.24		
LR 검정 통계량	117.20***		
N	1,341		

주 : 1. ***, **, *는 각각 유의수준 0.001, 0.01, 0.05에서 유의함
 2. 기업체규모는 소기업은 50인 미만, 중기업은 50-299인, 대기업은 300인 이상으로 함

5. 결론

본 연구는 청년패널조사(Youth Panel) 자료와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수원시 청년층의 고용 유지기간과 임금 결정요인과 대졸 청년층의 취업 및 학력·기술·전공 미스매치 결정요인을 추정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일자리 지속기간 결정요인을 추정한 결과, 수원시 청년취업자 전체를 기준으로 대졸이상 학력층의 일자리 이탈 가능성이 높았으며, 상용직 및 대기업에 종사하는 청년층은 일자리를 이탈할 가능성이 매우 낮았다. 또한 직장에서의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이탈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를 포함하여 공통적인 특징은 수원시 청년층의 경우 상용직 및 300인 이상 대기업 종사자, 고임금근로자의 경우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대다수의 청년층은 고임금과 고용 안정성이 보장된 대기업, 공기업 등 1차 노동시장으로의 진입과 안착을 희망하고 선호하기 때문에 원하는 일자리로 안착하지 못할 경우, 지속적인 일자리 이탈 및 이동 등을 반복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다음으로 수원시 청년취업자의 임금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들을 실증적으로 추정한 결과에서는 성은 여성보다 7.2%의 임금 상승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학력에서는 대졸이상 학력층의 경우 기준집단인 고졸이하 학력층에 비해 평균적으로 17.9%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특성을 대표하는 항목에서는 상용직 및 대기업 청년취업자의 경우 임시/일용직 및 소기업 취업자에 비해 각각 14.1%, 16.3%의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다. 미스매치 항목에서는 학력과 잉 미스매치 상태인 청년층이 적정학력 집단에 비해 평균적으로 17.6%의 임금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반면, 기술부족 미스매치 상태인 경우는 10.1%의 임금 프리미엄이 나타나고 있다.

넷째,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한 대졸 청년층은 독립하지 못한 대졸 청년층에 비해 취업할 가능성이 높으며, 직업훈련 및 자격증 취득 경험이 있는 경우는 취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험준비 활동 경험이 있는 대졸 청년층의 경우는 취업가능성은 다소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시험준비 활동 경험자 중 상당수가 현재 미취업 상태인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특히, 대졸이상

고학력층의 노동시장 초기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업문제를 완화 및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학 졸업시점과 입직시점의 간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다음으로 대학 전공계열별 집단에 따라서는 인문사회계열과, 이공계열 집단에서는 공통적으로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한 대졸 청년층의 취업가능성이 높았고, 이공계열 출신 청년 대졸자는 직업훈련 경험이 있을 경우 취업확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인문사회계열과 의/약학·교육·예체능계열의 경우 자격증 취득 경험이 있는 청년층일수록 취업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섯째, 취업에 성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하향취업(학력/기술 과잉)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학점이 높을수록 하향취업 상태에 빠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즉 학점이 높은 대졸 청년층은 비교적 적절한 일자리 또는 자신의 교육 및 기술 수준에 비해 높은 수준의 일자리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대학 재학 중 취득한 학점 수준은 향후 노동시장 진입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가능성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비교적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높은 학점을 취득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다. 이공계열의 경우 인문사회계열 출신 졸업자에 비해 자신의 학력수준과 비교하여 적절하거나 높은 수준의 일자리에 진입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상용직 취업자의 경우도 임시/일용직에 비해 자신의 학력수준과 일치하거나 높은 수준의 일자리에 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의 경우 수도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학력, 여성, 임시/일용직 등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는 불안정하거나 열악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별, 학력별, 기업규모별, 고용형태별 임금격차가 매우 큰 폭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수원시의 경우 같은 수도권 내에 있는 서울 및 인천, 경기지역 내 타 도시에 비해 양질의 일자리 기반이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수원시 청년층의 인구유출 현상을 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주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겠다. 특히, 저임금 및 고용안정성이 부족한 직장에 진입한 청년취업자의 경우 대다수는 저임금근로 상태를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취약한 노동시장 경험을 지속적으로 경험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따라서 낮은 임금수준과 취약한 근로환경, 열악한 복지혜택 등을 겪고 있는 저임금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저임금근로자일수록 저임금근로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거나 실업 또는 비경제활동인구

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저임금근로 합정에 지속적으로 빠져있거나, 실업상태로 빠질 경우 신속히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는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 하지만 저학력, 여성, 비정규직, 소기업 등 취약계층일수록 고용지원서비스 등 관련 정보에의 접근 및 수혜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정보 접근성을 높여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함께 추진되어야 하겠다.

또한 수원시 거주 대졸이상의 고학력 계층에서도 상당수가 하향취업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노동시장 진입 초기에서 발생하고 있는 하향취업으로 인해 대졸 고학력 청년층 일부는 이직 또는 실업 상태로 전환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문사회계열을 전공한 청년층의 전공 미스매치 현상도 나타나고 있어, 이들 중 상당 규모의 청년은 전공과 관련성이 부족한 일자리에 진입할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결국 지속적으로 이직을 시도하는 등 노동시장 안에서 빈번한 이동 과정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또한 직업훈련과 자격증 취득 경험이 있는 청년층이 취업할 가능성이 높은 현상을 해석해 보면, 대다수가 높은 노동시장 진입장벽을 넘기 위해 대학 입학과 동시에 자격증, 스펙쌓기 등을 대학재학 전시기에 걸쳐 준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자격증의 경우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기본적인 스펙쌓기 준비 과정이므로 많은 청년들은 대학재학 중에 취업관련 자격증 취득을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정책 방향 또는 제도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는 데 미흡한 부분이 남아 있다. 후속 연구를 통해 좀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정책과제를 제시하여 연구를 발전시키도록 하겠다.

투고일 2024년 2월 6일 심사일 2024년 6월 20일 게재확정일 2024년 6월 27일

참고문헌

- 강순원, 1993, 「1990년대 상대적 과잉교육의 일반적 추이와 그것의 정치경제학적 귀결」, 『한신논문집』 10, 107~129쪽.
- 김기승·정민수, 2013, 「청년층 인재유출 결정요인 분석과 정책과제: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연구』 31(2).
- 김기현, 2003, 「하향취업 실태 및 과잉교육 노동자의 특성」, 『KLIPS Research Brief』 3, 1~12쪽.
- 김세음·김진영·조영준, 2011, 「학력별 노동시장 미스매치 분석과 교육제도 개선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정책연구』 2011-04.
- 김종성·이병훈·신재열, 2012, 「청년층 구직활동과 하향취업」, 『노동정책연구』 12(2), 51~73쪽.
- 김주섭, 2005, 「청년층의 고학력화에 따른 학력과잉 실태 분석」, 『노동정책연구』 5(2), 1~29쪽.
- 김희삼, 2010, 「지방대학 졸업자의 노동시장 성과와 지역별 교육격차」, 『한국개발연구』 32(2), 55~92쪽.
- 남성일·전재식, 2011, 「하향취업이 직장이동 성향에 미치는 효과」, 『노동정책연구』 11(3), 25~51쪽.
- 노일경·임언, 2009, 「직무불일치의 원인 및 임금과의 관계, 불일치에 대한 대응 양상: 전문대졸 여성 신규 취업자를 중심으로」, 『직업교육연구』 28(2), 1~18쪽.
- 문영만·홍장표, 2017, 「청년층의 노동시장 격차 및 지역인재 유출요인-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25(2), 165~187쪽.
- 류기락, 2014, 「노동시장 제도와 미스매치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정책』 21(4), 103~136쪽.
- 류장수, 2003a, 「지방대학 졸업생의 첫 일자리 이행기간과 특성: 수도권대학 졸업생과의 비교」, 『직업능력개발연구』 6(1), 1~25쪽.
- 류장수, 2003b, 「지방대학 졸업생의 노동시장 이행 실태와 성과 분석: 수도권 대학졸업생과의 비교」, 『산업노동연구』 9(1), 한국산업노동학회, 171~196쪽.
- 류장수, 2005, 「지방대학 졸업생의 노동시장 성과 분석: 수도권대학 졸업생과의 비교」, 『노동경제논집』 28(2), 1~27쪽.
- 박성재, 2005, 「지방대 졸업생의 노동이동과 노동시장 성과: 첫 번째 일자리를 중심으로」, 『노동정책연구』 5(4), 65~99쪽.
- 박천수, 2015, 「대학 졸업 임금근로자의 희망임금 충족과 고용」, 『노동정책연구』 15(1).

- 박환보·김성식, 2011, 「개인배경, 취업준비노력, 대학서열유형이 대졸자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21(3), 한국교육사회학회, 77~98쪽.
- 신선미·민무숙, 2010, 「대졸 청년층 하향취업자의 하향취업 상태변화 요인」, 『직업능력개발연구』 13(2), 47~66쪽.
- 신정우·김태현·이미숙, 2017, 「이산선택모형을 이용한 경남지역 청년의 취업상태 결정요인 분석」, 『산업경제연구』 30(5), 1837~1854쪽.
- 양정승, 2014, 「지방대학 졸업생의 지방중소기업 취업과 이직 결정요인 분석」, 『직업능력개발연구』 17(2), 153~177쪽.
- 어수봉, 1994, 「우리나라 일공합 실태와 노동이동(Ⅰ)」, 『노동경제논집』 17(2), 89~124쪽.
- 이대용·손주희·이소담·권기현, 2015,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 결정요인 분석- 위계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24(4).
- 이병희, 2002, 「노동시장 이행 초기 경험의 지속성에 관한 연구」, 『노동정책연구』 2(1).
- 이상은, 2005, 「청년들에 대한 직업훈련의 취업 및 근로소득 효과」, 『사회복지정책』 23, 5~28쪽.
- 이찬영, 2008, 「청년층 임금근로자의 하향취업 행태」, 『직업능력개발연구』 11(3), 49~69쪽.
- 임 언·서유정·이지은, 2012, 「청년층의 학력과잉과 스킬불일치 측정 방법 연구」, 『기본연구』 2012(18).
- 조윤서, 2021,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취업준비행동이 취업 및 팬츠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1).
- 조장식·강창완·최승배, 2015, 「Cox의 혼합모형을 이용한 대졸취업자의 재직기간 분석」, 『한국자료분석학회』 17(3), 1337~1346쪽.
- 최문석·송일호, 2019, 「청년층의 교육 및 전공불일치가 임금과 직장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6(2), 85~102쪽.
- 황광훈, 2018, 「청년취업자의 주관적 미스매치 결정요인 및 임금효과 분석」, 『산업노동연구』 24(2), 181~214쪽.
- 황광훈, 2019, 「청년층의 이직 결정요인 및 임금효과 분석」, 『직업능력개발연구』 22(1), 137~172쪽.
- 황광훈·오윤석·홍석현, 2022, 「수도권 지역 청년층의 직장 이동과 임금의 변화」, 『GRI연구논총』 24(1).
- 황광훈, 2023, 「기업 규모별 청년층의 고용 유지기간 결정요인 및 일자리 이동에 따른 임금의 변화」, 『지역정책연구』 34(1), 159~182쪽.
- 황광훈·이은혜·홍석현, 2021, 「청년층은 희망직업으로 취업하고 있는가?」, 『직업능력개발연구』 24(3).

- Alba-Ramirez, A., 1993, "Mismatch in the Spanish Labour Market : Overeducation?", *Journal of Human Resource*, 27, pp.259~278.
- Bender, A. K. and S. J. Heywood, 2006, "Educational Mismatch among Ph.D's: Determinants and Consequences", *NBER Working Paper*, National Bureau of Economics Research, 12693.
- Buchel, F., 2002, "The Effects of Overeducation on Productivity in Germany: The firms' viewpoint", *Economic of Education Review*, 21, pp.263~275.
- Fleming, C. M. and Kler, P., 2008, "I'm Too Clever for this Job: A bivariate probit analysis on overeducation and job satisfaction in Australia", *Applied Economics*, 40(9), pp.1123~1138.
- Light, A. and K. McGarry, 1998, "Job Change Patterns and the Wages of Young Men",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0(2), pp.276~286.
- Neal, D., 1999, "The Complexity of Job Mobility among Young Men", *Journal of Labor Economics*, 17(2), pp.237~261.
- Neumark, D., 2002, "Youth Labor Markets in the U.S.: Shopping Around vs Staying put", *NBER Working Paper*, 6581.
- Sicherman, N., 1991, "Overeducation in the Labor Market", *Journal of Labor Economics*, 9(2), pp.101~122.
- Tsang, M. and H. Levin, 1985, "The Economics of Overeducation",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4, pp. 93~104.
- Topel, R. H. and M. P. Ward, 1992, "Job Mobility and the Careers of Young Men",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7(2), pp.439~479.

요 약

본 연구는 청년패널조사(Youth Panel) 자료와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 자료를 이용하여 수원시 청년층의 고용 유지기간과 임금 결정요인과 대졸 청년층의 취업 및 학력·기술·전공 미스매치 결정요인을 추정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 수원시 청년층의 경우 상용직 및 300인 이상 대기업 종사자, 고임금근로자의 경우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대다수의 청년층은 고임금과 고용 안정성이 보장된 대기업, 공기업 등 1차 노동시장으로의 진입과 안착을 희망하고 선호하기 때문에 원하는 일자리로 안착하지 못할 경우, 지속적인 일자리 이탈 및 이동 등을 반복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수원시 거주 대졸이상의 고학력 계층에서도 상당수가 하향취업에 빠질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초기 노동시장에서의 하향취업으로 인해 상당수 대졸 고학력 청년층이 이직, 또는 실업상태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지역 거주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률 제고 및 양질의 일자리로의 안착을 위해서는 지역을 기반으로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 가장 효과가 클 것임을 생각해야 할 때이다.

수원시의 경우 같은 수도권 내에 있는 서울 및 인천, 경기지역 내 타 도시에 비해 양질의 일자리 기반이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수원시 청년층의 인구 유출 현상을 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주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겠다.

주제어 : 미스매치, 생존분석, 콕스 비례위험모형, OLS 모형, 임금효과

ABSTRACT

Analysis of Labor Market Performance of Suwon City Youth

: Focusing on Employment Stability, Wages, and Job Mismatch

Hwang Kwanghoon

This study estimated the employment maintenance period and wage determinants of youth in Suwon City and the employment, academic background, skills, and major mismatch determinants of youth with college degrees using data from the Youth Panel and the Graduate Occupational Mobility Survey(GOMS). As a result of the main analysis, it is very likely that Suwon City's youth will continue to maintain their jobs for regular workers and large companies with 300 or more employees, and high-wage workers. This is because the majority of young people hope and prefer to enter and settle in the primary labor market, such as large companies and public enterprises with high wages and job security, so if they fail to settle down for the desired job, they are likely to repeat job loss and movement.

Many highly educated people with college graduates living in Suwon are also more likely to fall into downward employment, and many highly educated young people are likely to turn over or become unemployed due to downward employment in the early labor market. It is time to think that the policy of improving job quality based on the region will be the most effective in improving the employment rate of college graduates living in the region and settling into quality jobs.

In the case of Suwon City, it is estimated that there is a lack of a quality job base compared to other cities in Seoul, Incheon, and Gyeonggi Province in the same metropolitan area. In order to alleviate the population outflow of young people in Suwon City in the future and create quality jobs, the region should continue to create quality jobs.

Key words : mismatch, survival analysis,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 OLS(ordinary least squares) model, wage effect

수원시 미혼 청년의 결혼의향에 관한 연구

박건우*

1. 서론
2. 이론적 논의
3. 연구 모형
4. 실증분석 결과
5. 결론 및 정책적 함의

1. 서론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유교적 가치관과 규범 등에 근거한 가족제도와 결혼이 주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결혼에 대한 통념, 즉 결혼은 가족사회 유지를 위한 일련의 체계로 필요하다는 인식이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다. 이처럼 결혼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지속해 왔지만, 이제는 성역할에 대한 평등 의식의 확산과 전통적인 가치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결혼과 출산 등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결정이 아닌 선택이라는 인식도 커지고 있다. 즉, 유교적 사상과 가치가 매우 중요시되었던 과거에는 전통적으로 가부장적 문화가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여성의 교육 참여 등의 확대와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성역할에 대한 변화가 주요

* 국립창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조교수(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E-mail : gpark88@changwon.ac.kr, Tel : 055-213-3225

하게 나타났다.¹

이러한 변화는 이미 한국사회에서 오래전부터 나타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시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관련한 일례로 결혼의 감소와 이에 따른 출산의 감소를 들 수 있다. 2024년 기준, 합계 출산율이 1명도 되지 못하고 인구 소멸과 같은 국가 위기의 상황에 결혼과 출산은 국가의 생존에 필수적이지만, 여전히 복잡하고 다양한 이슈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결혼 양상과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며, 결혼에 대한 인식이 복합적으로 적용됐다는 것이다.² 이와 관련해, 청년들이 결혼을 늦게 하거나 아예 결혼하지 않는 경향이 한국 저출산의 주요 요인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미 2020년에 남성과 여성이 각각 33.2세, 30.8세가 초혼 나이로 밝혀졌는데, 이러한 추세는 지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경향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출산은 대부분 결혼 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청년들의 늦은 결혼이나 아예 결혼하지 않는 결정이 출산율 저하의 악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³

한편, 2023년 우리나라의 전국 조혼인율⁴은 3.8 수준인데 경기도의 조혼인율은 4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그리고 도내 지역 중 평택시는 5.4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가장 높고, 수원시는 4.6으로 나타나고 있다.⁵ 하지만, 단순 결혼의 수 자체는 수원시가 5,523건으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화성시(4,610건)와 고양시(3,671건), 평택시(3,169건) 순이었다. 즉, 수원을 포함하여 경기도 주요 지역에서는 전국적 단위의 출산율 감소, 결혼 지연 등 사회적 이슈와는 다르게 높은 혼인율이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024년 7월 최근 한 발표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중 남성과 여성의 각

1 차혜경·서민숙, 2019, 「부모세대와 자녀세대 간 결혼가치관의 영향요인 비교」, 『한국웰니스학회지』 14(3), 299~315쪽; 유양경, 2020, 「대학생의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 요인」,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8), 539~560쪽.

2 김가현·김근태, 2023, 「청년층의 성장 지역과 대학 소재지 경로별 혼인 가능성의 차이 분석: 성별과 지역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 43(3), 210~225쪽.

3 An, D., Lee, S. L., & Woo, H., 2022, "Marriage intention among Korean young adults: trends and influencing factors",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9(14), p.8557.

4 조혼인율은 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를 의미한다.

5 「결혼 많은 경기도에서 혼인율 1위」(<https://m.sidaeilbo.co.kr/1127497>), 『시대일보』 2024년 5월 21일.

24.2%, 39.9%가 미혼, 즉 “혼자 살고 싶다.”는 결과가 발표되었다.⁶ 하지만, 40.8%가 “원하는 상대를 만나 결혼하고 싶다.”는 응답을 보이기도 했으며, 이에 대해서 남성과 여성이 각각 49.7%, 30.3% 등으로 나타났다. 즉, 결혼이라는 결정 행위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해, 2021년에 조사된 한 결과에 따르면 수원시 20~30대의 64%가 미혼으로 밝혀진 바 있으며, 합계 출산율⁷은 약 0.89명으로 경기도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인 가구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는데, 취업자 수 및 고용률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⁸ 따라서 수원시의 사회·경제적 상황이 장기적으로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적정 인구수의 유지를 통해 지역을 견인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미래의 지역 성장을 주도할 미혼 청년층의 결혼 및 출산 지원이 매우 중요한 정책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1인 가구의 증가와 비혼의 증대에 따라 결혼 자체에 관한 관심이 달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혼인을 그리고 출산율이 감소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근저에는 사회경제적 환경과 문화의 변화뿐만 아니라 결혼을 인식하는 개인의 태도 변화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해된다. 이를 테면,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강화와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약화함과 동시에, 과거와는 달리 전통적인 결혼관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⁹ 따라서 1인 가구 증가와 혼인을 감소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미혼 청년 1인 가구의 결혼의향과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처럼 청년에게 결혼이라는 주제가 사회적으로 다소 무거운 주제가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현상이나 문제가 아니다. 이에 대해서, 과거 수원시는 ‘연애도 힘든데 결혼까지?’라는 주제로 청년이 인식하는 결혼과 연애에 대해서 구체적인 문제의식 공유의 장을 형성하여 의견을 살펴본 바 있다. 청년의 연애·결혼에 대한 의견을 살펴본 결과, 학자금 대출 등으로 인해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빚을 지게 되

6 「‘혼자 살고 싶다’ 男 24.2%, 女 39.9%…수원시정연구원 발표」(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721_0002819311), 『뉴시스』 2024년 7월 21일.

7 합계 출산율은 가임기 여성(15~49세)이 기간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8 「수원시 20~30대 64% 미혼…합계 출산율 0.89명」(<https://www.yna.co.kr/view/AKR20211028066000061>), 『연합뉴스』 2021년 10월 28일.

9 신하은·이지훈, 2024, 「서울시 미혼 청년 1인가구의 결혼의향 관련요인 탐색」, 『가족정책연구』 4(1), 89~103쪽.

며, 결혼을 다소 먼 미래의 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결혼 이후 출산에 대해서 경제적 부담과 여성의 경력단절로 인한 우울증 문제도 결혼을 주저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¹⁰

결국 청년에 대한 결혼의향을 다양한 요인(성별, 종교, 경제상태, 전공 등 사회 인구학적 요인)의 분석은 중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식에 더해 결혼에 대한 인식, 결혼관 등에 대해서 지속해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¹¹ 하지만,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것처럼, 미혼 청년이 인지하는 경제적 요인(소득만족도, 부채 등)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많은 경우 결혼이 부담으로 인식되는 것은 경제적 이슈와 관련한 사항이 크다. 즉,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경제적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한데, 이 과정이 매우 고되고 지남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내용은 기존의 연구에서도 잘 나타나 있는데,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청년에 대한 지원정책이 매우 중요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¹²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실증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수원시라는 특정 지역에 주목하여 내용을 논의한 연구는 극히 드물어서

10 수원시 청년지원센터, 「청년, 대화를 만나다! 첫 번째 이야기는 연애도 힘든데 결혼까지?」, 2017년 5월 31일(<https://www.swyouth.kr/?p=73&page=12&viewMode=view&reqldx=201705311006253310>).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어)로 표현되는 청년들의 현실에서 결혼을 1순위로 포기한다고 하네요. 학자금 대출 등 취업도 전에 빚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기에 결혼은 먼 얘기로 느껴진다고 합니다. 또한 결혼을 한다고 해도 아이를 가지게 될 때의 경제적 부담감과, 여성의 경우의 경력단절로 인해 우울증이 생기는 경우를 종종 접할 수 있어 더욱 결혼을 망설이게 된다고 합니다.”

11 김경숙, 2017, 「보건계열 대학생의 결혼관에 관한 연구」, 『한국웰니스학회지』 12(1), 217~225쪽; 김중운·이정희, 2019, 「대학생이 지각한 가족건강성, 성인애착, 사회적 지지가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3), 677~700쪽; 이세영·홍달아기, 2014, 「대학생의 결혼관과 출산의지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9(2), 3~28쪽; 차혜경·서민숙, 2019, 「부모세대와 자녀세대 간 결혼가치관의 영향요인 비교」, 『한국웰니스학회지』 14(3), 299~315쪽; 주휘정·김민석, 2018, 「청년층의 결혼 이행 여부에 대한 경제적 배경 요인의 영향」,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8(2), 59~88쪽; 임병인·서혜림, 2021, 「여성의 가족가치관과 결혼 및 출산의향」, 『보건사회연구』 41(2), 123~140쪽; 신하은·이지훈, 2024, 「서울시 미혼 청년 1인가구의 결혼의향 관련요인 탐색」, 『가족정책연구』 4(1), 89~103쪽; 유양경, 2020, 「대학생의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 요인」,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8), 539~560쪽; 조성호·변수정, 2020, 「미혼인구의 이성교제와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보건사회연구』 40(4), 82~114쪽; 김가현·김근태, 2023, 「청년층의 성장 지역과 대학 소재지 경로별 혼인 가능성의 차이 분석: 성별과 지역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 43(3), 210~225쪽.

12 주휘정·김민석, 2018, 「청년층의 결혼 이행 여부에 대한 경제적 배경 요인의 영향」,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8(2), 59~88쪽.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상기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수원시 청년 미혼남녀의 결혼관 인지와 이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미혼 청년의 결혼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여 수원시의 지역 발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핵심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연구문제 : 수원시 미혼 청년의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무엇인가?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주요 개념과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연구모형과 자료 그리고 변수를 소개한다. 제4장에서는 통계 패키지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고 결과를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적 함의 그리고 한계점 등을 살펴본다.

2. 이론적 논의

1) 결혼의향의 개념적 이해

먼저, 결혼은 남녀가 정서적 및 신체적 친밀감, 다양한 가치관, 경제적 자원 등을 공유하는 정서적·법적 책임 관계로, 법적 관계를 통해 남편과 아내가 되는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사랑, 신뢰, 그리고 책임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¹³ 결혼 가치관이란 결혼과 배우자를 선택할 때의 관점이나 태도를 의미한다.¹⁴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는 결혼의 당위성이 크게 나타났으나, 개인주의의 확대 그리고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라서, 이러한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변하고 있다. 즉, 결혼은 일련의 통과의례처럼 반드시 해야 하는 결정이 아닌 선택으로 전환되고 있다. 무엇보다

13 김예리, 2009, 「가족생태이론에 기초한 미혼 남녀의 결혼관과 관련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유양경, 2020, 「대학생의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 요인」,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8), 539~560쪽.

14 임병인·서혜림, 2021, 「여성의 가족가치관과 결혼 및 출산의향」, 『보건사회연구』 41(2), 123~140쪽.

다 결혼이 선택으로 인식되면서 남성보다 여성이 이에 대해서 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 하나의 이슈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흥미로운 사실이다.

결혼은 ‘남녀가 정식으로 부부 관계를 맺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결혼관은 이러한 개념에 대해서 ‘결혼에 대한 견해나 주장’¹⁵을 가리킨다. 이와 연관해 결혼관에 대해서 결혼관 그 자체의 개념 그리고 측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본 박선영·이재림¹⁶에 따르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결혼과 관련한 많은 연구에서는 다양한 용어가 혼재되어 활용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경향은 결혼 그리고 결혼관이라는 개념을 명확히 하는 데 상대적으로 부족한 인식이 존재했기 때문인데, 이를테면 결혼관뿐만 아니라 결혼가치관, 결혼태도, 결혼가치, 결혼인식, 결혼의식 등 폭넓게 사용되었다. 결혼인식과 결혼의식은 또 다른 혼용되는 용어들로 볼 수 있다. 이를테면, 결혼인식은 결혼에 대한 지각과 판단을 의미하며, 결혼의식은 사회적으로 형성된 결혼에 대한 개인적·집단적 견해를 의미한다. 의식은 인식보다 더 광범위한 개념으로, 결혼에 대한 심층적인 인식이 축적될 때 형성된다. 그리고 결혼태도는 결혼에 대한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평가의 결과로 정의되며, 긍정적·중립적·부정적 태도로 나뉜다. 이 용어는 설문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의견을 측정하는 데 자주 사용되기도 한다.¹⁷

이와 더불어, 기존의 연구에서도 결혼의향 또는 결혼관을 측정하는 데에 하위 요인들을 살펴보기 위해 제도 및 정서적 안정과 결혼조건,¹⁸ 결혼의 의의, 배우자 선택 조건 및 방법, 결혼과정과 생활설계, 결혼에 대한 시각,¹⁹ 낭만적 결혼관, 소극적 결혼관, 보수적 결혼관, 배타적 결혼관, 적극적 결혼관, 도구적 결혼관²⁰ 등으로 이루어진 바 있다.²¹ 이러한 결혼의향은 결혼이라는 행위에 대한 일련의 태도이자

15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stdict.korean.go.kr/>) (검색일: 2024년 8월 11일)

16 박선영·이재림, 2022, 「결혼관의 개념화 및 측정의 이슈: 국내 선행연구 고찰」, 『가정과삶의질연구』 40(1), 53~75쪽.

17 박선영·이재림, 2022, 「결혼관의 개념화 및 측정의 이슈: 국내 선행연구 고찰」, 『가정과삶의질연구』 40(1), 53~75쪽.

18 이지원, 2006, 「가족기능이 대학생의 결혼관 및 자녀관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 이세영·홍달아기, 2014, 「대학생의 결혼관과 출산의지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9(2), 3~28쪽.

20 이보람, 2012, 「대학생들의 결혼 및 출산의식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1 박선영·이재림, 2022, 「결혼관의 개념화 및 측정의 이슈: 국내 선행연구 고찰」, 『가정과삶의질연구』 40(1), 53~75쪽 재인용

규범으로 결혼이행이라는 결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²² 즉, 결혼의향은 개인의 결혼에 대한 의사로서, 결혼의향이 높을 경우에 실제 결혼을 할 가능성도 커지게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청년지원정책 관점에서의 결혼

다음으로, 청년지원의 관점에서 결혼을 파악하기 위해 정책을 중심으로 내용을 살펴보았다. 2016년에 제정된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는 “청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원시 청년의 권의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²³”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 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제2조).”고 천명한 바 있는데, 기본적으로 청년에게 청년정책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건전한 주민으로 안정적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일반적으로 미혼 청년이 인지하고 있는 결혼에 대한 부담은 개인의 행복 추구하고 더불어 삶의 질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불확실성과 연관성이 크다. 즉 개인의 삶의 질과 행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이를테면, 주거환경, 일자리, 경제적 문제 그리고 결혼 이후의 가족정책 등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주거와 관련하여 미혼 청년의 경우, 결혼을 준비하기 위한 주택 구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이자 및 대출)을 경감하기 위해 주택 공급 우선 지원 및 주택 구입 시에 이자 및 대출 조건의 완화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일자리 안정과 관련하여 청년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규직 일자리의 확대 및 고용훈련 및 교육의 활성화 그리고 고용 장려금의 지원 확대 등의 정책을 들 수 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결혼 후 출산을 희망하는 가구에 대해서 육아 부담을 적극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중요할 수 있다.

22 Raymo, J. M., Uchikoshi, F., & Yoda, S, 2021, “Marriage intentions, desires, and pathways to later and less marriage in Japan”, *Demographic Research*, 44, p.67.

23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검색일: 2024년 7월 14일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2024년 현재 수원시의 청년지원정책은 청년의 능력 개발, 고용 촉진, 창업 지원, 주거 안정, 생활 안정, 복지 증진, 금융 지원, 문화 활동 지원, 그리고 결혼 장려를 포함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창의적 및 전문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취업지원 및 창업환경 개선, 주거문제 해결 및 생활 안정, 신체·정신 건강 증진, 부채 상환 및 금융교육 제공, 문화 활동 지원을 통해 청년의 전반적인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특히 결혼장려를 위한 분위기 조성 지원을 위해, 결혼장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 결혼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결혼에 대한 인식개선 및 결혼장려사업이 포함되며, 결혼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 및 결혼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이 있다.

〈표 1〉 수원시 청년지원정책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청년의 능력개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의적·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등 지원 취업애로 등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자아탐색, 진로설정, 해외연수 등 역량개발 맞춤형 정보제공 및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방안을 마련
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지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취업 지원 방안을 마련
청년의 창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의 창업을 촉진, 창업환경을 개선위한 대책을 마련
청년 주거안정 등 생활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유경제를 활용한 주거임차, 주택임차보증금 및 차임의 보조 방안, 이사비용 지원 등의 대책을 수립·시행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또는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 보건, 안전, 결혼, 보육 등의 생활안정지원
청년의 복지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의 신체·정신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증진
청년 금융생활 지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을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 청년의 합리적 금융생활을 위한 금융소비자 교육과 상담 지원

구분	주요 내용
청년 문화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 문화를 활성화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 청년의 문화의식과 이해를 높이고 문화활동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결혼장려 분위기 조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혼장려사업) 청년 결혼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결혼에 대한 인식개선 및 결혼장려 사업 추진 결혼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 및 결혼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주 :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의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재구성(2024년 7월 기준).

또한, 수원시는 많은 부서가 전방위적으로 청년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등 5개 분야에서 59개의 다양한 청년 지원사업을 포함한다. 특히 청년 주거비 지원, 취업준비생 교통비 지원, 농업 창업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자립과 미래 준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장학금과 청년기본소득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며, 보호 종료 청년을 위한 자립지원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청년의 주거와 일자리, 그리고 자립을 지원하는 수원시의 실비 지원정책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월세 지원’을 2021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데, 이는 미혼 1인 가구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매 월 임차료를 10만 원씩 5개월간 지원한다. 그리고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저소득 대상 주거급여를 매월 70건 정도를 지급한다. 구직 청년지원을 위해서 취업준비생 교통지원을 위한 ‘청카드’는 30만 원을 지급하며, 390명에게 지원된 바 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은 농업 분야 창업을 위해 3년간 매년 90만~110만 원이 지원된다. 기업과 취업자의 상생을 위한 ‘내:일로’ 사업은 구직 청년에 인센티브 제공의 일환으로 시행된 것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최장 2년 인건비의 80% 수준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학생 장학금 지원’, 청년기본소득(분기별 25만 원),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등의 지원을 통해 청년이 일자리 및 경제와 관련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오고 있다.²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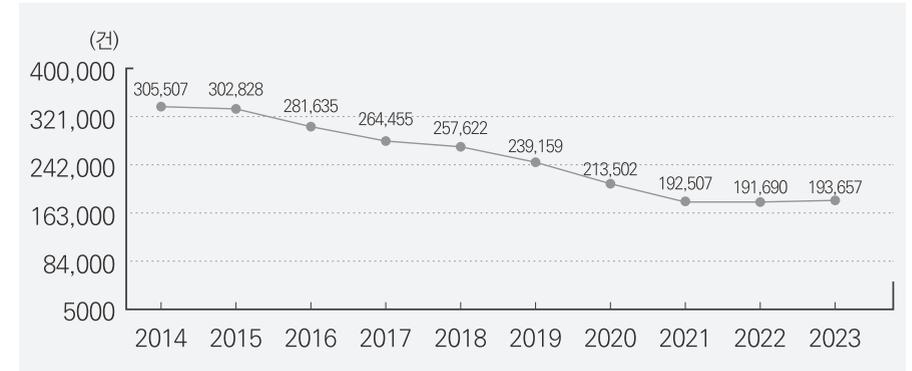
24 「‘힘내라 수원 청년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수원시 청년지원정책’」, 『경기신문』(https://www.

3) 결혼의 추세에 대한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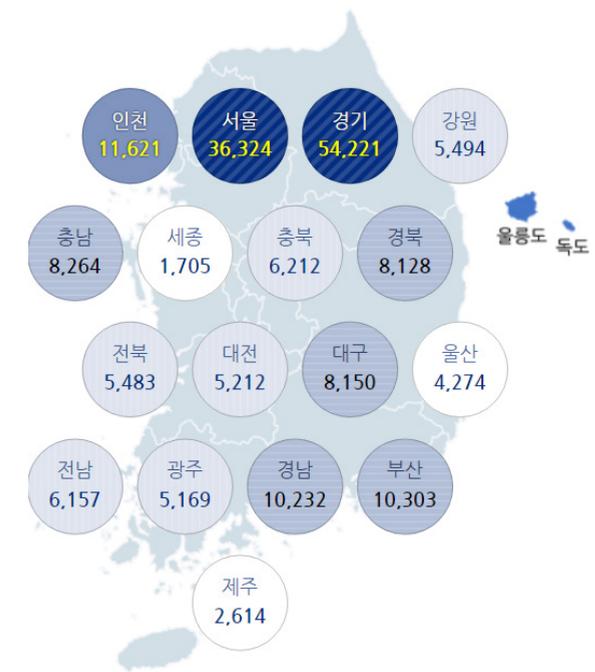
다음으로 우리나라 결혼의 추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림 1>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우리나라의 결혼 건수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14년에 30만 5,507건이었던 결혼 건수는 꾸준히 감소하여 최근 2023년에는 19만 3,457건으로 현저하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감소세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변화, 경제적 불안정,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의 요인과 관련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결혼 건수가 더욱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은 2023년 기준, 모두 초혼 14만 9,649건, 남재혼-여초혼 7,583건, 남초혼-여재혼 1만 1,383건, 모두 재혼 2만 3,670건 등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즉, 초혼과 더불어 재혼의 수도 높은 것이 특징이다.

<그림 2>는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별 조혼인율을 통해서 결혼 건수의 차이를 비교한 것이다. 먼저, 경기도가 5만 4,221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조혼인율을 기록하였고, 이어서 서울특별시는 3만 6,324건, 인천광역시는 1만 1,621건을 보인다. 한편,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부산(1만 303건)과 경남(1만 232건) 그리고 충남(8,264건) 등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전북과 강원, 제주 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도권-비수도권의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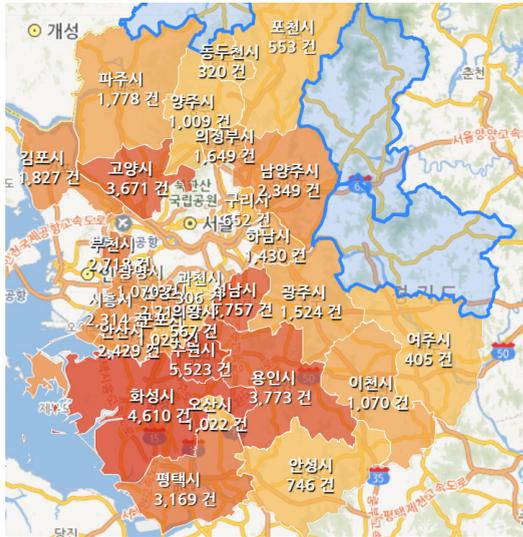
다음 내용은 경기도 시군별 조혼인 수를 나타낸 것이다. 본 연구가 주목하는 수원시는 5,523건으로 단순 결혼 건수 자체는 매우 높다. 물론, 서론에서 제시한 바, 조혼인율은 평택시에 이어 경기도 내 4위 수준이지만 절대적 규모는 여전히 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화성시(4,610건)와 고양시(3,671건), 평택시(3,169건)가 높은 결혼 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동두천시와 포천시는 각각 320건, 553건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대도시 지역일수록 그리고 경기 남부 지역일수록 결혼 건수가 높다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2014~2023년 우리나라 결혼 건수 추세(통계청 KOSIS)



<그림 2> 2023년 전국 광역자치단체별 조혼인율 비교(통계청 KOSIS)



〈그림 3〉 2023년 경기도 시군별 결혼 건수(통계청 KOSIS)

4) 선행연구 검토

다음으로 결혼의향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먼저, 언론보도 내용을 활용하여 대학생의 연애·결혼에 대한 의식과 문화를 분석한 한금윤²⁵은 대학생들이 결혼을 포기하는 주요 이유로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감정적 내면 문제를 지적하며, 감정적 관계 형성에 미숙한 청년들이 연애, 결혼, 출산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디지털 세대는 감정적 피로와 복잡한 관계를 피하고 자족적인 삶을 선호하며,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며, 대학생들이 결혼이라는 감정적 관계를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

대학생의 결혼관을 분석한 유양경²⁶의 연구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결혼에 대한 태도가 더 낮게 나타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여성들이 경제활동과 더불어 육아 및 가사노동의 부담을 함께 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

25 한금윤, 2015, 「대학생의 연애, 결혼에 대한 의식과 문화 연구-언론 보도와 대학생의 '자기서사' 쓰기의 간극을 중심으로-」, 『인간연구』 28, 7~29쪽.
 26 유양경, 2020, 「대학생의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 요인」,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8), 539~560쪽.

며,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평등한 성역할 규범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켜 결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한다. 그리고 지역 대학생 2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자료를 활용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결혼관에 성역할 태도, 대인관계의 유능성, 종교와 성별 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일수록, 종교를 가진 학생일수록, 그리고 대인관계의 유능성이 높고,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진 학생이 보수적인 결혼관을 가질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하은·이지훈²⁷은 서울시 거주 미혼 청년 중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이들의 결혼의향에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이론적 논거로 Ajzen이 제시한 계획된 행동이론(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에 따른 결혼의 태도, 주관적 규범 그리고 지각된 행동 통제 등을 통해, 결혼의향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 태도를 보일수록, 안정된 직업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그리고 교제 상대가 있을 때 결혼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보다는 남성이 그리고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결혼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인지된 가족 건강성, 성인애착 그리고 사회적 지지가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김종운·이정희²⁸의 연구에서는 부산 일대 대학생 354명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가족 간 의사소통 그리고 문제해결, 가치체계 공유 등 가족 건강성이 결혼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의 성장지역-대학 소재지 경로가 혼인 가능성과의 연관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김가현·김근태²⁹에 따르면, 수도권과 지방 간의 혼인율 차이가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있다. 분석에 따르면, 지방에서 성장하고 지방 소재 대학에 진학한 청년층이 수도권에서 성장하고 수도권 소재 대학에 진학한 청년층보다 혼인 가능성이 컸으며, 이러한 차이는 특히 여성에게 더 크게 나타났다고 주장하였다.

27 신하은·이지훈, 2024, 「서울시 미혼 청년 1인가구의 결혼의향 관련요인 탐색」, 『가족정책연구』 4(1), 89~103쪽.
 28 김종운·이정희, 2019, 「대학생이 지각한 가족건강성, 성인애착, 사회적 지지가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3), 677~700쪽.
 29 김가현·김근태, 2023, 「청년층의 성장 지역과 대학 소재지 경로별 혼인 가능성의 차이 분석: 성별과 지역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 43(3), 210~225쪽.

재정패널 조사 자료를 활용해, 청년의 결혼행태(결혼이행 여부)에 대해서 경제적 배경이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주휘정·김민석³⁰의 연구에서는 청년 개인의 경제 상황과 가구의 사회적 배경 그리고 인구통계학적 요인을 중요하게 살펴보고 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청년이 정규직 직업에 종사하고 있을 때 결혼 가능성이 커지며, 남성은 자가 보유 및 높은 지출 등 요인이 결혼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성호·변수정³¹은 결혼 가능성이 큰 연령대의 미혼 인구를 대상으로, 이성교제와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분석하고, 결혼 상대의 조건에 대한 기대나 가치관이 이성교제와 결혼의향에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성별에 따른 이성교제와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남성-여성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제2차 코로나19 시대 한국인의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 조사’ 자료를 활용해 청년의 결혼 연령규범과 결혼의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최슬기·최세은³²에 따르면, 결혼 적령기를 인식할수록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러한 인식이 스스로의 생각인지 대중적으로 인식되는 규범인지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청년의 결혼 및 출산 인식을 살펴본 정기용·조민혁·민효상³³은 언론보도 빅데이터 자료 분석과 경기도에서 실시한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청년은 결혼과 출산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이를 통해 행복감과 안정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담감이 부정적 인식에 영향을 미치며, 호감을 제외하면 청년들은 결혼을 슬픔으로, 출산을 거부감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실태조사 자료의 분석에 따르면, 성별 및 연령별로 결혼 및 출산 의향에 대해서 남성과 여성 모두 경제적 부담이 결혼 및 출산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

30 주휘정·김민석, 2018, 「청년층의 결혼 이행 여부에 대한 경제적 배경 요인의 영향」,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8(2), 59~88쪽.

31 조성호·변수정, 2020, 「미혼인구의 이성교제와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보건사회연구』 40(4), 82~114쪽.

32 최슬기·최세은, 2022, 「청년들이 인식하는 결혼 연령규범과 결혼의향」, 『KDI School Working Paper 22-13』.

33 정기용·조민혁·민효상, 2022, 「경기도 청년들의 결혼 및 출산 인식 차이에 관한 연구: 감성분석과 교차분석을 활용하여」, 『GRI 연구논총』 24(3), 119~148쪽.

용하고 있었다. 남성은 직장과 신체적 문제가, 여성은 부담감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결혼과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담감의 원인이 연령별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 주요 선행연구 검토 결과

연구자(연도)	주요 내용
신하은·이지훈 (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가족서베이(2021, 2022년) 자료를 활용해, 서울시 미혼 청년(20~39세) 1인 가구의 결혼의향을 실증적으로 분석 남성, 연령이 낮을수록, 교제 상대가 있을 때, 결혼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낮을수록, 안정된 직장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결혼의향이 높다는 결과를 도출
유양경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생의 결혼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별, 종교, 대인관계 유능성, 성역할 태도를 확인 대인관계 유능성이 결혼관에 영향을 미친다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고, 평등한 성역할 규범의 확산과 결혼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주장
김종운·이정희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산 지역 대학생의 결혼관에 가족건강성, 성인애착, 사회적 지지가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이들 요인이 결혼관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존재
김가현·김근태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의 성장지역, 대학 소재지 등을 결혼과의 연관성 살펴봄으로써, 지방에서 성장하고 지방 대학에 진학한 청년층이 수도권 청년층보다 혼인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 이러한 차이는 여성에게 더 크게 나타났으며, 수도권 청년층의 경쟁과 불안감을 완화하고 지방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
주휘정·김민석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패널의 6차연도(2013년)~9차연도(2016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해 결혼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 정규직 남성과 여성 모두 결혼 이행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여성은 정규직 외에는 개인 경제활동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남성은 자가 보유와 높은 지출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
조성호·변수정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연구는 결혼 가능성이 높은 연령대의 미혼 인구를 대상으로 이성교제 및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분석 남성 여성 차이를 보기 위해, 결혼 상대에 대한 기대와 가치관이 이러한 요인들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조사하면서, 성별에 따른 이성교제 및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분석
최슬기·최세은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차 코로나19 시대 한국인의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 조사’ 자료를 활용해 청년의 결혼 연령규범과 결혼의향을 실증적으로 분석 결혼 적령기를 인식할수록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러한 인식이 스스로의 생각인지 대중적으로 인식되는 규범인지에 따라서 차이를 보임

주 : 각 연구를 토대로 저자 재구성

3. 연구 모형

1) 분석 자료

본 연구는 「2022년 수원시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자료를 분석을 위해 활용하였다. 해당 자료는 2020년 8월 「청년기본법」 시행 이후, 수원시 최초로 해당 법에 근거하여 조사한 것으로, 수원시 청년의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는 데 의미가 있다. 즉, 수원시에 거주하는 지역 청년의 사회 및 경제적 환경변화 그리고 청년의 삶 전반에 걸친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청년의 니즈(needs)를 반영할 수 있는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해당 조사 자료는 2022년 6월 20일부터 7월 7일까지 실시되었다. 그리고 수원시에 거주하는 만 19~34세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수원시와 경인지방통계청이 공동으로 수행했다. 조사에 포함된 항목은 총 12개 부문, 50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여기에는 기본사항, 주거와 교통, 가족, 희망 일자리, 취업지원정책 등 46개의 공통항목과 청년지원센터, 청년 참여기구, 수원시 청년축제 등 4개의 자율항목이 포함되었다. 조사는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면접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필요시 자기기입식 방법도 병행되었다. 이 조사는 3년 주기로 실시되며, 청년들의 생활과 정책에 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청년기본법」에 따르면,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동시에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고 나타난다.³⁴ 본 연구에서는 19~34세 청년 1,000명 중에서 미혼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³⁵ 그 이유는 미혼청년과 기혼청년이 인식하는 결혼의향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고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파일럿 분석 결과에서 이미 결혼한 집단은 결혼의향에 대해서 반드시 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미혼 집단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분석에서는 처음부터 제외하였다.

34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청년기본법」 제3조(검색일 : 2024년 10월 30일).

35 지역마다 청년의 개념과 범위가 다소 상이하지만, 「경기도 청년기본 조례」 제3조의 내용에서는 청년을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다.

즉, 미혼 청년 집단에서는 결혼의향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기혼 집단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표 3〉 조사 자료의 개요

구분	내용
조사시기	• 2022.6.20.~7.7. • 조사주기 : 3년(통계자료 작성주기 : 3년)
조사대상	• 조사기준일 기준, 수원시 거주하는 만 19~34세 청년 1,000명
추진주체	• 수원시, 경인지방통계청 공동 수행
조사항목	• 12개 부문, 50개 항목 • 공통항목(46개) : 기본사항, 주거와 교통, 가족, 희망 일자리, 취업지원정책 등 • 자율항목(4개) : 청년지원센터, 청년 참여기구, 수원시 청년축제 등
조사방법	• 조사원이 가구 직접 방문 조사하는 면접 조사(현장방문 면접조사) • 필요시 자기기입식 방법 병행

출처 : 2022년 「수원시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2) 변수

다음은 본 연구에서 활용한 변수의 개요에 관해서 설명한 것이다. 본 조사 자료는 결혼의향에 대한 인식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이를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를 포함하고 있다. 종속변수인 결혼관은 ‘하지 말아야 한다’를 1로, ‘반드시 해야 한다’를 5로 측정하였다. 주요 독립변수로는 일자리-경제의 중요성(1: 전혀 중요하지 않음~5: 매우 중요함), 소득만족도(1: 매우 불만족~5: 매우 만족), 부채 유무(있음=1, 없음=0) 등이 포함되었다. 통제변수로는 성별(남성 : 1, 여성 : 0), 연령(19~24세=1, 25~29세=2, 30~34세=3), 학력(초등학교~대학원 박사 과정), 부모와의 동거 여부(동거=1, 비동거 및 독립=0), 그리고 1인 가구 여부(1인 가구=1, 비1인 가구=0)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서, 수원시 미혼 청년 남녀가 인식하는 결혼의향에 대한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4〉 조사 자료의 개요

구분	내용	측정
종속변수	결혼의향	하지 말아야 한다=1~반드시 해야 한다=5
독립변수	일자리-경제의 중요성	전혀 중요하지 않음=1~매우 중요함=5
	소득만족도	매우불만족=1~매우만족=5
통제변수	부채 유무	있음=1, 없음=0
	성별(남성)	남자=1, 여자=0
	연령	19~24세=1, 25~29세=2, 30~34세=3
	학력	안 받았음(무학)=1, 초등학교=2, 중학교=3, 고등학교=4, 전문대(4년제 미만)=5, 대학교(4년제 이상)=6, 대학원 석사 과정=7, 대학원 박사 과정=8
	부모 동거 여부	동거=1, 비동거·독립=0
	1인 가구 여부	1인 가구=1, 비1인 가구=0

3)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로는 남자가 431명(51.13%), 여자가 412명(48.87%)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는 19~24세가 364명(43.18%), 25~29세가 318명(37.72%), 30~34세가 161명(19.10%)으로 각각 분포된 것을 알 수 있다. 학력(교육 수준)에서는 대학교(4년제 이상) 졸업자가 523명(62.04%)으로 가장 많으며, 전문대(4년제 미만) 졸업자는 178명(21.12%), 고등학교 졸업자는 103명(12.22%), 중학교 졸업자는 1명(0.12%)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학원 석사 과정과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응답자는 각각 32명(3.80%)과 6명(0.71%)이다. 한편, 부모와의 동거 여부에 대해서 부모와 동거가 573명(67.97%), 비동거가 71명(8.42%), 독립이 199명(23.61%)으로 나타났으며, 1인 가구는 611명(72.48%), 비1인 가구는 232명(27.52%)이다. 이러한 데이터의 분포를 통해 조사에 응답한 수원시 미혼 청년의 대략적인 인구통계학적 특성(성별, 연령대, 학력, 부모동거 여부 및 1인 가구 형태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표 5〉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명)	비중(%)
성별	남자	431	51.13
	여자	412	48.87
연령대	19~24세	364	43.18
	25~29세	318	37.72
	30~34세	161	19.10
학력	중학교	1	0.12
	고등학교	103	12.22
	전문대(4년제 미만)	178	21.12
	대학교(4년제 이상)	523	62.04
	대학원 석사 과정	32	3.80
	대학원 박사 과정	6	0.71
부모동거	동거	573	67.97
	비동거	71	8.42
	독립	199	23.61
1인 가구	1인 가구	611	72.48
	1인 가구 x	232	27.52

4) 연구 가설

본 연구의 주요 가설은 수원시 미혼 청년의 결혼의향에 대해서 경제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다. 즉, 경제적 요인과 연관한 수준이 결혼의향에 긍정적일지 혹은 부정적일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결혼이라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함과 동시에 경제적 조건과 경제적 수준 그리고 직업 등이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나타나고 있다.³⁶ 즉, 경제적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주거환경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서 이성교제를 할 수 있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도 결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무엇

36 조성호·변수정, 2020, 「미혼인구의 이성교제와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보건사회연구』 40(4), 82~114쪽.

보다 경제적 요인 및 취업 등이 이성교제에 미치는 여부를 살펴본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계가 실제로 유의미하다고 밝혀진 바 있다.³⁷ 유사하게, 일자리가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결혼의향이 높다는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다.³⁸ 탁현우³⁹의 연구에서도 소득이 높을수록 미혼 남녀 모두 결혼의향에 긍정적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⁴⁰ 마찬가지로, 30대 미혼 남녀의 결혼의향에 대한 경제자원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 결과에서도 재정적 자원(주택 소유, 소득, 취업)이 결혼의향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⁴¹ 즉, 선행연구의 결과는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이성교제와 결혼의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경제적으로 안정될 경우, 결혼의향에 긍정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상기 맥락에서 수원시의 미혼 청년 남녀의 경우도 경제적 요인과 결혼의향이 일련의 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크다. 정리하면, 결혼의향에 있어, 소득만족도는 경제적 안정감이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강화한다는 것으로 이해되며,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할 수 있다.

가설 1 : 소득만족도가 높을수록 결혼의향이 높아질(+) 것이다.

가설 2 : 부채가 없는 경우, 부채가 있는 경우보다 결혼의향에 긍정적일(+) 것이다.

4. 실증분석 결과

1) 기술통계

실증분석에 앞서, 먼저 기술통계를 살펴보았다. <표 6>은 미혼 및 기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결혼의향과 관련된 변수들의 기술통계를 제시하고 있는데, 평균, 표준

37 조성호, 2018, 「청년층 경제적 자립과 이성교제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보건사회연구』 38(4), 398~430쪽.
 38 진미정·정혜은, 2010, 「미혼남녀의 결혼의향과 결혼희망연령에 대한 가족 가치관의 영향 추세 연구」, 『한국인구학』 33(3), 31~51쪽. 진미정·정혜은(2010)은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결혼의향과 결혼희망연령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분석한 바 있다.
 39 탁현우, 2020, 「미혼남녀의 결혼지연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31(2), 223~244쪽.
 40 탁현우(2020)는 월 소득, 취업여부 등 경제적 요인이 결혼지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41 고선강·어성연, 2013, 「30대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에 대한 경제자원의 효과」,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7(1), 63~79쪽.

편차, 그리고 분산팽창계수(VIF)가 포함된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종속변수인 결혼의향에 대해서, 전체 표본(기혼+미혼)에서 결혼의향의 평균은 3.437로 나타났으며, 미혼 청년들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 평균은 3.348로 다소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미혼 청년들이 기혼자에 비해 결혼에 대한 의향이 다소 낮음을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경제-일자리 중요성에 대해서, 평균치는 전체 표본에서 4.646, 미혼 청년에서는 4.659로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는 결혼 여부에 상관없이 청년들이 경제적 안정성에 높은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소득만족도는 전체와 미혼 청년 집단이 각각 2.962, 2.944로 나타나 큰 차이는 없으나 전체에서 조금 더 높았다. 부채의 경우, 전체 표본에서 평균 0.337, 미혼 청년에서는 0.275로 나타나, 미혼 청년들이 기혼자보다 상대적으로 부채가 적은 경향을 보였다.

<표 6>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구분	전체(미혼+기혼)		미혼 청년		Min	Max
	평균	SD	평균	SD		
결혼의향	3.437	.790	3.348	.770	1	5
경제-일자리 중요도	4.646	.607	4.659	.590	1	5
소득만족도	2.962	1.015	2.944	1.026	1	5
부채	0.337	0.472	.275	.446	0	1

주 : 분석에서는 미혼 청년만을 대상으로 선정

2) 상관관계

다음은 본 연구에서 활용한 각 변수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정리한 것이다. <표 7>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는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결혼의향 및 소득만족도(0.09, $p<0.05$)와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며, 이는 직업 만족도가 높을수록 결혼의향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부채는 결혼의향과 상대적으로 약한 긍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데(0.08, $p<0.05$), 이는 부채가 결혼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음을 의미할 수 있다. 성별에 대해서, 남성은 결혼의향과 강한 긍정적 상관관계를 보인다(0.18, $p<0.05$). 이는 남성이 여성보다 결혼에 대한 의향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부모 동거 여부와 관련해, 부

모와 동거하는 경우 결혼의향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며(-0.17, $p<0.05$), 이는 부모와의 동거가 독립적 생활과 결혼에 대한 의사결정에 부(-)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1인 가구는 결혼의향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이는 1인 가구 여부가 결혼의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다중공선성을 의심할 만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7〉 상관관계 분석 결과

구분	(1)	(2)	(3)	(4)	(5)	(6)	(7)	(8)	(9)
결혼의향	1								
경제-일자리 중요도 인식	-0.00	1							
소득만족도	0.09*	-0.03	1						
부채	0.08*	0.01	-0.05	1					
연령	0.04	-0.00	-0.02	0.30*	1				
성별(남성)	0.18*	-0.01	0.02	0.02	-0.00	1			
학력	0.03	0.02	0.06*	0.05	0.03	-0.00	1		
부모동거	-0.17*	0.00	-0.08*	-0.38*	-0.33*	-0.05	0.02	1	
1인 가구	-0.00	-0.03	-0.09*	-0.14*	-0.038	-0.11*	-0.04	0.64*	1

주 : * $p<0.05$

3) 실증분석 결과

다음으로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의 가설에 따른 주요 변수를 중심으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결혼의향에 대한 회귀분석을 위해서 모형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결과를 비교하였다. 세 모형은 전체 집단(Model I), 부모동거(Model II), 부모비동거(Model III) 등으로 구분하였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소득만족도는 세 모형에서 모두 결혼의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집단(Model III)에서 가장 높은 결과를 보이는 것이 특징인데($\beta=0.123$,

$p<0.01$), 이는 소득만족도가 높을수록 결혼의향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다른 경제적 요인으로 제시한 부채 유무는 세 모형에서 모두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부채 유무가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경제-일자리 중요도 인식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통제 변수로 제시한 연령과 성별은 결혼의향과 큰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전체 집단(Model I)과 부모동거 집단(Model II)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으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결혼의향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집단(Model III)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부모와 동거할 경우, 상대적으로 연령에 따른 결혼 지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성별(남성=1)은 모든 모형에서 결혼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남성일수록 결혼의향이 더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부모와 동거하는 집단에서 남성의 결혼의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beta=0.231$, $p<0.01$). 또한, 학력도 전체 집단(Model I)과 부모 미동거 집단(Model III)에서 결혼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학력이 높을수록 결혼의향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집단에서는 더 강한 영향을 미쳤다($\beta=0.227$, $p<0.01$). 반면, 부모와 동거하는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한편, 부모와 동거 여부는 전체 집단에서 결혼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1인 가구 여부도 결혼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부모동거 여부와 1인 가구 여부 그 자체는 결혼의향과 큰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부모 동거 여부에 따른 소득만족도가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모델별로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전반적으로 소득만족도는 중요한 요인이지만, 부채 유무, 경제-일자리 중요도 인식, 부모 동거 여부 등은 결혼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득만족도는 특히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청년들 사이에서 그 정도의 차이가 존재함으로써, 특정 집단에서의 효과가 더욱 현저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표 8〉 수원시 미혼청년의 결혼의향 실증분석 결과

구분	Model I (전체)	Model II (부모동거)	Model III (부모 미동거)
소득만족도	0.089*** (0.0255)	0.081** (0.0315)	0.123** (0.0435)
부채 유무 (부채=1)	0.028 (0.0618)	0.037 (0.0834)	0.011 (0.0917)
경제-일자리 중요도 인식	0.021 (0.0436)	0.039 (0.0516)	-0.015 (0.0822)
연령	-0.071** (0.0353)	-0.069* (0.0439)	-0.044 (0.0605)
성별 (남성=1)	0.216*** (0.0518)	0.231*** (0.0628)	0.159*** (0.0920)
학력	0.097*** (0.0331)	0.027 (0.0442)	0.227*** (0.0504)
부모동거 여부 (동거=1)	-0.065 (0.128)	0.000 (.)	0.000 (.)
1인 가구 여부 (1인 가구=1)	0.025 (0.132)	0.000 (.)	0.025 (0.132)
N	843	573	270
R2	0.074	0.068	0.102

주 : Standardized beta coefficients;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 < 0.1, ** p < 0.05, *** p < 0.01

4) 결과의 종합적 해석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소득만족도가 높을수록 결혼의향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채나 경제-일자리 중요도 인식은 결혼의향과 상대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후속 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 이유는 현실적으로 경제적 이슈에 대한 고려가 결혼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미 많은 뉴스 등에서도 일련의 사회 통념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⁴² 특히, 연관하여 배호중·한창근⁴³의 연구에서도 학자금 대출 경험

42 다음의 내용을 참조할 수 있다. 「결혼정보회사, “결혼 전 채무관계가 결혼생활에 미치는 영향 커”(https://www.etnews.com/201204030126), 『전자신문』 2012년 4월 3일; 「학자금 대출 많을수록 대출 여성 결혼 가능성 낮춰」(https://www.yna.co.kr/view/AKR20180411161300017), 『연합뉴스』 2018년 4월 12일.

43 배호중·한창근, 2018, 「학자금 대출과 혼인이행: 4 년제 대학 졸업 여학생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이 있을 경우 혼인의 가능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그리고 부모동거 여부에 따라서, 소득만족도가 상대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과 관련해 다음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최근 청년들이 결혼에 대해 점점 더 늦거나 결혼을 포기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경제적 불안정성과 가치관 변화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며, 경제적 안정성이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부모와의 동거가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어 소득만족도가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이 덜 중요할 수 있다는 관점을 기반으로 한다. 즉,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이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청년들은 경제적 독립성과 안정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소득만족도가 결혼의향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유추된다. 무엇보다 부모와 동거할 경우, 경제적 안정감이 일부 제공되어 결혼을 서두를 필요가 줄어들면서, 결혼에 대한 의지가 약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경제적 독립성의 결여가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들의 결혼의향을 낮추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의 결혼이 긍정적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일자리 및 경제적 이슈와 같은 현실적 이슈가 잘 해결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 결과⁴⁴와 마찬가지로 결혼에 대한 정책 지원은 일자리 정책이 중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청년에 대한 지원 정책이 매우 중요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즉, 안정적인 일자리는 결혼의향을 증가시키는 데 긍정적인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비정규직 청년보다 정규직 청년의 결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부채가 없을수록 결혼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청년의 결혼에 중요한 요인으로 직장 등 일자리 여건과 경제적 상황이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⁴⁵ 또한, 일련의 연구⁴⁶에서는 지방과 수도

38(1), 520-555쪽.

44 주희정·김민석, 2018, 「청년층의 결혼 이행 여부에 대한 경제적 배경 요인의 영향」,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8(2), 59-88쪽; 신하은·이지훈, 2024, 「서울시 미혼 청년 1인가구의 결혼의향 관련요인 탐색」, 『가족정책연구』 4(1), 89-103쪽.

45 한편, 일련의 연구에서는 경제적 요인과 결혼의향이 연관성이 없다고 보고되기도 했다. 대학생을 중심으로 결혼관을 살펴본 유양경(2020)의 연구에서는 경제상태가 결혼관과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46 김가현·김근태, 2023, 「청년층의 성장 지역과 대학 소재지 경로별 혼인 가능성의 차이 분석: 성별과 지역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 43(3), 210-225쪽.

권 거주 청년의 혼인 가능성이 소재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러한 내용이 수원시에 거주하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청년의 결혼의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측면을 고려한 분석이 수행될 필요성이 있다.

5. 결론 및 정책적 함의

1) 결론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소득만족도가 높을수록 결혼의향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동거 여부에 따라서 그 정도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부채나 경제-일자리 중요성은 결혼의향과 상대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리고 연령이 상대적으로 적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여성보다는 남성이 결혼의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2) 정책적 함의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로 수원시 청년 기본조례의 내용을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수원시 청년지원정책 조례의 내용(제30조)에서는 청년의 결혼 장려 분위기 조성 지원을 위한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소득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 공급, 정규직화 문화의 확산, 일자리 관련 교육 증대 등의 관련 정책의 실효성이 있는 추진과 더불어, 청년이 체감하는 적정 소득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청년이 인지하는 경제와 일자리의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공유할 수 있는 일련의 공론의 장 형성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동 조례의 청년지원센터(제20조)의 운영을 통해 청년정책을 위한 다양한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과정에서 수원시 청

년의 니즈와 선호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또한, 청년의 적극적인 참여 확대를 통해 효과적인 정책을 발굴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 지원 및 장려와 같은 정책이 한시적인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청년 중심의 네트워크의 구축 및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다. 물론 관련 위원회와 청년 네트워크 등에서 청년의 참여 등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고 있으나 여전히 제한적인 상황(현재는 관련 위원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그 비율을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야 될 것이다.⁴⁷ 이를 통해, 수원시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기반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수원시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결혼관에 미치는 인식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그 의의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한계가 존재하며 후속연구를 통해 보완될 필요성이 있다. 먼저, 본 연구는 설문조사 자료에 기반하고 있어서, 인터뷰 분석 및 정책의 세부적인 내용분석 등 질적 분석을 통해 분석 내용을 일반화할 수 있는 더 많은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론적으로 결혼의향 그리고 결혼관 등에 미칠 수 있는 요인은 본 연구에서 주목한 주요 변수 이외에도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다. 이를테면, 결혼에 대한 가치관(전통적 규범 준수 수준, 결혼에 대한 압력, 결혼 적령기 인식)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개인단위에서 결혼의향과 연관된 다양한 태도와 변수를 함께 고려해야 될 것이다. 무엇보다 본 연구는 2차 자료(secondary data)를 활용했다는 측면에서, 연구자의 자율성이 확

47 현재 조례에서는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 20명 이상의 위원으로 이루어지는데, 1.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원, 2. 관내 대학 학생회 및 청년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 3. 청년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청년정책에 관심이 있는 청년, 5.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어느 정도 대표성을 가진 일반 청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적정 인원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다.

보이지 못한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설문조사를 설계하고 수행하여, 연구의 독창성을 확보하는 노력도 요구될 것이다.

투고일 2024년 8월 30일 심사일 2024년 10월 24일 게재확정일 2024년 10월 31일

참고문헌

- 고선강 · 어성연, 2013, 「30대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에 대한 경제자원의 효과」,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7(1), 63~79쪽.
- 김가현 · 김근태, 2023, 「청년층의 성장 지역과 대학 소재지 경로별 혼인 가능성의 차이 분석: 성별과 지역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 43(3), 210~225쪽.
- 김경숙, 2017, 「보건계열 대학생의 결혼관에 관한 연구」, 『한국웰니스학회지』 12(1), 217~225쪽.
- 김남조 · 고상진, 2018, 「간호대학생의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요인」,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9(4), 178~185쪽.
- 김예리, 2009, 「가족생태이론에 기초한 미혼 남녀의 결혼관과 관련변인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중운 · 이정희, 2019, 「대학생이 지각한 가족건강성, 성인애착, 사회적 지지가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3), 677~700쪽.
- 박선영 · 이재림, 2022, 「결혼관의 개념화 및 측정의 이슈: 국내 선행연구 고찰」, 『가정과삶의 질연구』 40(1), 53~75쪽.
- 배호중 · 한창근, 2018, 「학자금 대출과 혼인이행: 4년제 대학 졸업 여학생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8(1), 520~555쪽.
- 신하은 · 이지훈, 2024, 「서울시 미혼 청년 1인 가구의 결혼의향 관련요인 탐색」, 『가족정책연구』 4(1), 89~103쪽.
- 유양경, 2020, 「대학생의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 요인」,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8), 539~560쪽.
- 이세영 · 홍달아기, 2014, 「대학생의 결혼관과 출산의지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9(2), 3~28쪽.
- 이지원, 2006, 「가족기능이 대학생의 결혼관 및 자녀관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보람, 2012, 「대학생들의 결혼 및 출산의식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병인 · 서혜림, 2021, 「여성의 가족가치관과 결혼 및 출산의향」, 『보건사회연구』 41(2), 123~140쪽.
- 정기용 · 조민혁 · 민효상, 2022, 「경기도 청년들의 결혼 및 출산 인식 차이에 관한 연구: 감

- 성분석과 교차분석을 활용하여, 『GRI 연구논총』 24(3), 119~148쪽.
- 조성호, 2018, 「청년층 경제적 자립과 이성교제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보건사회연구』 38(4), 398~430쪽.
- 조성호·변수정, 2020, 「미혼인구의 이성교제와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보건사회연구』 40(4), 82~114쪽.
- 주휘정·김민석, 2018, 「청년층의 결혼 이행 여부에 대한 경제적 배경 요인의 영향」,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8(2), 59~88쪽.
- 진미정·정혜은, 2010, 「미혼남녀의 결혼의향과 결혼희망연령에 대한 가족 가치관의 영향 추세 연구」, 『한국인구학』 33(3), 31~51쪽.
- 차혜경·서민숙, 2019, 「부모세대와 자녀세대 간 결혼가치관의 영향요인 비교」, 『한국웰니스학회지』 14(3), 299~315쪽.
- 최슬기·최세은, 2022, 「청년들이 인식하는 결혼 연령규범과 결혼의향」, 『KDI School Working Paper 22-13』.
- 탁현우, 2020, 「미혼남녀의 결혼지연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31(2), 223~244쪽.
- 한금윤, 2015, 「대학생의 연애, 결혼에 대한 의식과 문화 연구-언론 보도와 대학생의 '자기 서사' 쓰기의 간극을 중심으로-」, 『인간연구』 28, 7~29쪽.
- An, D., Lee, S. L., & Woo, H, 2022, "Marriage intention among Korean young adults: trends and influencing factors",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9(14), p.8557.
- Raymo, J. M., Uchikoshi, F., & Yoda, S, 2021, "Marriage intentions, desires, and pathways to later and less marriage in Japan", *Demographic Research*, 44, 67.
- Tai, T. O., Baxter, J., & Hewitt, B, 2014, "Do co-residence and intentions make a difference? Relationship satisfaction in married, cohabiting, and living apart together couples in four countries", *Demographic Research*, 31, pp.71~104.

요약

본 연구는 수원시 거주 청년 미혼 남녀의 결혼의향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청년의 경제적 요인에 주목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의 방향성 등을 살펴보고자 했다. 분석을 위해서 「2022년 수원시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했으며, 구체적으로 결혼의향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경제적 요인(소득만족도, 부채, 경제적 중요도 인식 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소득만족도는 결혼의향에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부채와 경제적 중요도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부모와 동거 여부에 따라서, 소득만족도의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부모와 동거하지 않으면 소득만족도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부모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유의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소득에 대한 중요성을 더 크게 인식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수원시 청년의 결혼 장려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되는 데 긍정적일 것이다.

주제어 : 청년, 결혼의향, 수원시, 청년지원정책

ABSTRACT**An Empirical Study on the Marriage Intentions
of Unmarried Youth in Suwon-si**

Park, Geonwoo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analyze the marriage intentions of young unmarried men and women living in Suwon. In particular, this study focuses on the economic factors of young adults and examines the direction of policies for promoting marriage. For the analysis, it uses data from the 'Suwon Survey on the Social and Economic Condition of Youth 2022'. Specifically, it sets marriage intention as the dependent variable and economic factors (income satisfaction, debt, and perceived economic importance) are set as independent variable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income satisfaction was highly positive for marriage intention, but debt and perceived economic importance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Moreover, the level of income satisfaction differs according to whether one lives with one's parents or not, with income satisfaction being higher when one does not live with parents. In other words, when parental support is relatively important, the perceived importance of income is greater than when it is not. These findings can be used as policy material to support the promotion of marriage among young people in Suwon.

Key words : youth, marriage intentions, Suwon-si, youth support policies

수원시민들의 직업 만족과 가정 만족이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 나이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문준호*

1. 서론
2. 이론적 고찰 및 가설 도출
3. 연구 방법
4. 분석 결과
5. 결론

1. 서론

수원시의 인구는 2019년에 123만 명에서 2023년 133만 명으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증가에 대한 영향을 동시에 받고 있기 때문이다.¹ 이는 수원이 거주에 적합한 지역이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내국인과 외국인이 동시에 많이 거주한다는 점에서 수원은 다양한 특성을 가진 대규모 인구가 거주하기에 적합한 지역이기 때문에 연구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추가로, 사회적으로 인구감소가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인구가 늘어나는 수원의 인구의 특성을 파악하는 점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수원 시민들이

* 강원대학교 경영대학 관광경영학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Tourism Administra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E-mail : joonhmoon@kangwon.ac.kr, Tel : 033-250-6163

1 수원시, 2024, 「통계로 보는 수원」(<https://www.suwon.go.kr/stat/index.do>).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탐구해 보는 것은 의의가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주관적 건강은 스스로 자신에 대한 정신적 측면과 육체적 측면을 종합한 결과를 담은 요인이다.² 즉, 주관적 건강은 정신적 건강과 육체적 건강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반영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진 변수라고 볼 수 있으며 건강이 좋지 못한 경우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탐구를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종합하여, 본 연구는 수원 시민의 건강에 관한 탐구를 진행하고자 하며 주관적 건강을 종속변수로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이를 종합해 보면, 본 연구의 목적은 수원 시민을 대상으로 주관적 건강의 결정요인을 탐구하는 것이다. 독립변수로 본 연구는 가정 만족과 직업 만족을 활용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나이의 조절효과를 확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수원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미진하다는 측면을 보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본 연구는 주관적 건강, 가정 만족, 직업 만족, 나이의 변수 간 관계를 명확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수원 시민들의 복지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정보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실용적 가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인구분포를 보이고 인구수가 증가하고 있는 수원 시민들의 특성을 탐구한 결과는 궁극적으로는 타 지역의 인구소멸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고찰 및 가설 도출

본 연구는 가정 만족과 직업 만족을 독립변수로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개인의 삶에서 가정과 직업은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개인은 가정을 통하여 회복을 하고 행복을 느끼며 직업을 통하여 자신의 욕구를 해결하는 특성을

2 이지수, 2007, 「장애인의 주관적 삶의 질: 삶의 만족도 구조모형의 성별 비교」, 『한국사회복지학』 59(2), 89~114쪽; 문영임, 2021, 「정신장애인의 장애수용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대인관계능력과 주관적 건강인식의 이중매개효과」, 『정서·행동장애연구』 37(4), 185~201쪽.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³ 즉, 개인은 가정에서 회복을 하고 직업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요인은 개인의 삶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⁴ 즉, 선행연구들은 개인의 삶에서 가정과 직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요인들이 개인의 주관적 건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데 주관적 건강은 정신적 건강과 육체적 건강을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가정 만족과 직업 만족에 대한 측면을 변수로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나이를 조절변수로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인간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정신적 육체적 체력이 저하되는 특성이 있다.⁵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가정과 직업에서 얻는 긍정적인 영향이 실질적인 개인의 건강 증진에 나타나는 영향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즉, 나이가 많은 개인의 경우 직장생활과 가정생활로부터 얻는 긍정적인 영향의 정도가 개인의 건강 증진의 향상에 미치는 영향이 적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나이의 가정 만족과 직업 만족의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1) 주관적 건강

주관적 건강도는 개인이 평가하는 자신에 대한 신체 및 정신 건강의 정도를 의

3 이요행·방묘진·오세진, 2005, 「가족친화적 조직문화가 조직몰입, 직장만족, 이직의도, 그리고 가정 만족에 미치는 영향: 직장-가정 갈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18(3), 639~657쪽; 이유덕, 2011, 「가족친화경영이 조직성과와 가정생활 만족에 미치는 영향」, 『인적자원관리연구』 18(2), 71~83쪽; 정연정, 2020,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자율성이 직업 만족에 미치는 영향 및 협업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8), 223~231쪽.

4 김진현, 2017, 「다차원적 사회적 배제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주관적 건강 및 우울상태에 미치는 영향: 정규직 근로자와의 비교분석」, 『보건사회연구』 37(3), 398~432쪽; 설수황·이광용, 2021, 「베이비붐세대 골프참여자의 건강관심도와 여가몰입 및 가정생활 만족의 구조적 관계」, 『한국사회체육학회지』 83, 205~215쪽; 심다빈, 2024, 「중증 발달장애인 직업 만족 자기보고의 필요성 및 보호자 대리응답 시 직장 관계자 소통의 조절효과」, 『장애와 고용』 34(1), 71~93쪽.

5 안관영, 2005, 「안전분위기와 안전성과의 관계 및 연령의 조절효과」, 『한국안전학회지』 20(4), 122~129쪽; 정효선·윤혜현, 2010, 「패밀리 레스토랑의 물리적인 환경이 고객의 감정, 만족도 및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 성별과 연령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Culinary Science & Hospitality Research』 16(4), 190~205쪽.

미한다.⁶ 기존 연구들은 건강한 상태는 개선된 삶을 살아가는 데 기본조건으로 작용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탐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⁷ 유재남⁸은 중·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주관적 건강의 특성을 밝힌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주관적 건강은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하나의 중요한 선결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탐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권현수⁹는 노인을 대상으로 주관적 건강을 주요인으로 활용한 실증연구를 실시하였는데, 수원의 경우에도 고령화와 관련된 문제는 하나의 중요한 화두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연구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지수¹⁰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관적 건강을 주요 변수로 활용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장애인들도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정신적·육체적으로 더 나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때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처럼, 주관적 건강은 다양한 선행연구가 탐구하고 있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요인들이 주관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추론해 볼 수 있다.

2) 가정 만족

가정 만족은 개인이 자신의 가정에서 구성원들과 지내는 동안 만족감을 얻는 정도를 지칭한다.¹¹ 선행연구는 가정은 개인이 휴식과 회복을 하는 공간으로 가족 구성원과의 긍정적인 관계가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¹² 기존 문헌은 가족생활 만족 관련

6 이지수, 2007, 「장애인의 주관적 삶의 질: 삶의 만족도 구조모형의 성별 비교」, 『한국사회복지학』 59(2), 89~114쪽; 문영임, 2021, 「정신장애인의 장애수용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대인관계능력과 주관적 건강인식의 이중매개효과」, 『정서 행동장애연구』 37(4), 185~201쪽.
 7 권현수, 2009, 「노인의 사회참여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8(5), 995~1008쪽.
 8 유재남, 2015, 「중고령자 주관적 건강상태와 삶의 만족도의 중단분석」, 『노인복지연구』 68, 331~356쪽.
 9 권현수, 2009, 「노인의 사회참여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8(5).
 10 이지수, 2007, 「장애인의 주관적 삶의 질: 삶의 만족도 구조모형의 성별 비교」, 『한국사회복지학』 59(2).
 11 이유덕, 2011, 「가족친화경영이 조직성과와 가정생활 만족에 미치는 영향」, 『인적자원관리연구』 18(2), 71~83쪽; 설수향·이광용, 2021, 「베이비붐세대 골프참여자의 건강관심도와 여가몰입 및 가정생활 만족의 구조적 관계」, 『한국사회체육학회지』 83, 205~215쪽.
 12 이요행·방묘진·오세진, 2005, 「가족친화적 조직문화가 조직몰입, 직장만족, 이직의도, 그리고 가정 만족에 미치는 영향: 직장-가정 갈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18(3), 639~657쪽.

연구 결과를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이유덕¹³은 가정 만족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가정생활 만족을 통하여 개인은 더욱 활력을 얻고 조직에서 더 나은 성과를 보이는 점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최유정·최미라·최선헌¹⁴은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가정생활 만족도가 높은 경우 더욱 건강한 정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가정에서의 안정감은 개인의 우울감을 낮출 수 있게 하여 더욱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김계하·김현숙·박경숙¹⁵은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가족의 기능이 잘 유지되는 경우 중년여성의 가정 만족에 대한 부분이 향상되고 이는 개인의 주관적 건강이 증진된다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을 밝혔다. 이를 종합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제시한다.

H1: 가정 만족은 주관적 건강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3) 직업 만족

직업 만족은 개인이 생계를 위하여 수행하는 일에서 느끼는 기대를 충족하는 정도를 의미한다.¹⁶ 직업은 개인의 삶에서 사회적 욕구 및 성취 혹은 자아실현의 욕구의 해결을 하는 역할을 하므로 직업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삶을 더욱 활력 있게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선행연구는 주장한다.¹⁷ 실제로, 심지민·이원석·문준호¹⁸은 청년을 대상으로 직업 만족이 주관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

13 이유덕, 2011, 「가족친화경영이 조직성과와 가정생활 만족에 미치는 영향」, 『인적자원관리연구』 18(2).
 14 최유정·최미라·최선헌, 2018, 「맞벌이 부부의 역할분담이 일가정 갈등과 가정생활 만족도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 19(1), 47~93쪽.
 15 김계하·김현숙·박경숙, 2005, 「중년 여성의 가족기능, 자아존중감 및 외로움이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성인간호학회지』 17(2), 200~207쪽.
 16 정성지·마상진, 2021, 「귀농·귀촌인의 농촌사회 적응, 무엇이 결정하는가? -귀농·귀촌 동기와 직업 만족을 중심으로」,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53(1), 1~27쪽; 심다빈, 2024, 「중증 발달장애인 직업 만족 자기보고의 필요성 및 보호자 대리응답 시 직장 관계자 소통의 조절효과」, 『장애와 고용』 34(1), 71~93쪽.
 17 정연정, 2020,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자율성이 직업 만족에 미치는 영향 및 협업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8), 223~231쪽.
 18 심지민·이원석·문준호, 2020, 「대졸자 직업 이동 경로조사를 이용한 외식속박업 종사자들의 주관적 건강도의 결정요인」, 『관광레저연구』 32(12), 213~225쪽.

향을 미치는 점을 밝히며 개인에게 직업은 성취를 통하여 더욱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김진현¹⁹은 개인이 직업 만족을 통하여 더욱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점을 실증연구를 통해 밝혔는데, 이는 개인의 긍정적인 멘탈 에너지가 육체적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 주장하였다. 또한, 김향수·김송순²⁰은 중년남성을 대상으로 직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주관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 연구가설을 제시한다.

H2 : 직업 만족은 주관적 건강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4) 나이의 조절효과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인지적 능력과 정신적 체력이 저하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²¹ 또한, 기존 문헌은 개인이 나이가 들수록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해 나가는 데 체력이 부족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나이가 들어갈수록 젊은 시절보다는 상대적으로 삶의 기회나 변화가 적어지는 특성을 보인다고 주장한다.²² 젊은 시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에너지는 가정생활에서 상대적 에너지 소모를 줄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이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결혼생활에 대하여 오는 익숙함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나이가 적은 집단과 많은 집단 사이에는 가정생활 만족으로 인한 주관적 건강 향상의 정도가 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나이가 많은 집단의 경우 상대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시간이 적게 남은 특성을 가지

19 김진현, 2017, 「다차원적 사회적 배제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주관적 건강 및 우울상태에 미치는 영향: 정규직 근로자와의 비교분석」, 『보건사회연구』 37(3), 398~432쪽.
 20 김향수·김송순, 2017, 「기혼 중년 남성의 직업스트레스, 직업 안정성, 우울, 가족유대감, 주관적 건강상태,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융합적 연구」, 『한국융합학회논문지』 8(3), 101~114쪽.
 21 김주희·유정원·송인한, 2015, 「사회경제적 박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연령의 조절효과 분석」, 『보건사회연구』 35(3), 42~70쪽; 김성태·김진동, 2020, 「전염병 발생에 따른 관광위험지각, 지각된 행동통제, 행동의도의 구조적 관계 연구: 연령의 조절효과」, 『관광연구저널』 34(12), 75~89쪽.
 22 문철아·변광인, 2020, 「확장된 기술수용모델 (ETAM) 을 적용한 외식 O2O 서비스의 지속사용의도에 관한 연구: 연령의 조절효과」, 『호텔경영학연구』 29(5), 119~137쪽; 안관영, 2005, 「안전분위기와 안전성과의 관계 및 연령의 조절효과」, 『한국안전학회지』 20(4), 122~129쪽.

고 있거나 은퇴 후 직장을 잡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와 관련 가치를 더욱 높게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젊은 시절에 비하여 성취나 발전의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리지만 일자리의 소중함에 대한 부분은 젊은 시기보다는 더 중요하게 인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이에 따른 직업 만족의 효과가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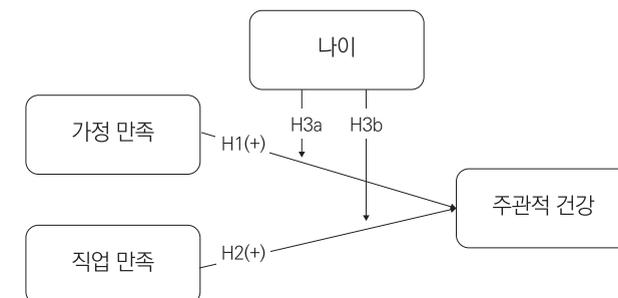
H3a : 나이는 가정 만족의 주관적 건강의 영향에 대하여 유의한 조절효과를 보일 것이다.

H3b : 나이는 직업 만족의 주관적 건강의 영향에 대하여 유의한 조절효과를 보일 것이다.

3. 연구 방법

1) 연구 모형

본 연구의 모형은 <그림 1>에 제시되었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주관적 건강이다. 본 연구는 2개의 독립변수를 이용하였다. 독립변수는 가정 만족과 직업 만족이다. 가정 만족과 직업 만족은 주관적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나이는 가정 만족과 직업 만족의 주관적 건강의 영향에 대한 유의한 조절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그림 1> 연구 모형

2)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는 서울대학교 한국사회과학자료원(kosssda.snu.ac.kr)으로부터 한국인의 행복조사데이터를 활용하여 수집하였다. 한국인의 행복조사는 국회미래연구원(2020년부터) 해마다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설문조사이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데이터의 연구 기간은 2020년과 2021년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표본 수는 614부이다. 표본의 거주 구를 살펴보면, 178명은 수원시 권선구에 거주하고, 163명은 수원시 영통구에 거주하며, 161명은 수원시 장안구에 거주하고, 112명은 수원시 팔달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변수 측정

변수의 측정은 <표 1>에 제시하고 있다. 주관적 건강은 5점 척도(1=매우 나쁨, 5=매우 좋음)로 측정되었다. 가정 만족은 7점 척도를 활용하였으며 가족이 없는 경우의 설문참여자들은 0으로 측정하였다. 직업 만족은 10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무직의 경우는 0으로 측정하였다. 나이는 설문참여자의 현재 나이를 기입하는 방식으로 측정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조절변수로 활용되었다. 본 연구는 성별과 월 가구 소득을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성별은 명목변수는 0이 남성, 1이 여성으로 측정되었고 월 가구 소득은 12점 척도로 측정되었고 1은 소득 없음, 12는 1,000만 원 이상으로 측정하였다. 이는 개인의 주관적 건강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과 월 가구 소득의 수준이 개인의 주관적 건강에 미칠 수 있는 가능성에 관한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표 1> 변수 측정

변수	측정
주관적 건강	1=매우 나쁨, 5=매우 좋음
가정 만족	0=비해당, 1=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7=매우 만족한다.
직업 만족	0=무직, 1=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10=매우 만족한다.
나이	설문참여자의 나이
성별	0=남성, 1=여성
월 가구 소득	1=소득 없음, 2=100만 원 미만, 12=1,000만 원 이상

4)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자료 분석을 위하여 기술 통계 분석을 통하여 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을 파악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하여 본 연구는 STATA 13 활용하였다. 또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여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일종의 고정효과를 패널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자료 분석을 하였다. 패널 데이터의 경우 시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효과 때문에 추정에 편향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간 관련 변수를 더미변수로 활용하여 회귀분석식에 포함하여 계수를 추정하는 방식을 활용한다.²³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나이변수를 가정 만족(나이×가정 만족)과 직업 만족(나이×직업 만족)에 곱하여 회귀식에 포함시켜 분석에 활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중간값을 이용하여 나이와 가정 만족, 직업 만족에 대한 집단을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나누어 조절효과를 추가로 확인하였다. 나이의 중간값은 49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 만족의 중간값은 6으로 나타났고 직업 만족의 중간값은 7로 나타났다. 추가로, 본 연구는 나이에 대한 측면을 면밀히 분석하고자 히스토그램을 이용하여 자료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분산팽창계수 10을 기준으로 하여 다중공선성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였으며 전반적인 다중공선성의 수치의 평균이 1.14로 나타났기 때문에 변수 간 독립성이 적절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하우스만 검정과 Breusch-pagan lagrange multiplier (BPLM) test를 통하여 최소자승법, 고정효과, 독립효과 중 가장 효과적인 모형을 판별하고자 하였다.

4.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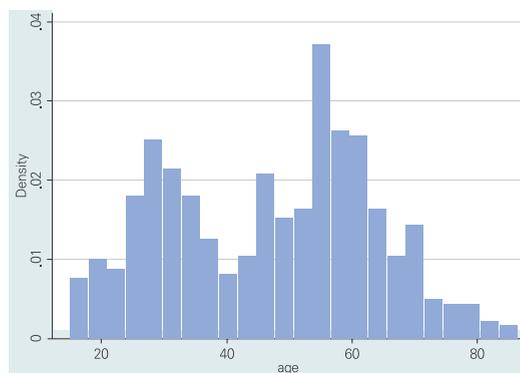
23 Wooldridge, J., 2009, "Introductory econometrics", a modern approach, South Western, Cengage Learning.

1) 기술통계 분석 결과

〈표 2〉는 표본의 기술통계에 관한 결과를 제시한다. 주관적 건강의 평균은 3.651 이고 표준편차는 0.791로 나타났다. 가정 만족의 평균은 5.573이고 표준편차는 1.253으로 나타났다. 직업 만족의 평균은 5.493이고 표준편차는 4.048로 나타났다. 나이의 평균은 46.980이고 표준편차는 16.533으로 나타났다. 성별을 살펴보면, 설문참여자의 55.3%가 여성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월 가구 소득의 평균은 7.379 표준편차는 3.215로 나타났다. 〈그림 2〉는 추가적으로 표본의 나이에 대한 분포를 제시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20대 미만과 80대 이상의 표본은 매우 소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 인구통계학적 특성(n=614)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주관적 건강	3.651	0.791	2	5
가정 만족	5.573	1.253	1	7
직업 만족	5.493	4.048	1	12
나이	46.980	16.533	15	86
성별	0.553	0.497	0	1
월 가구 소득	7.379	3.215	1	12



〈그림 2〉 표본의 나이에 대한 분포 히스토그램

2) 상관관계 분석 및 다중회귀 분석 결과

〈표 3〉은 상관관계 분석 결과이다. 주관적 건강은 가정 만족($r = .342, p < .05$), 직업 만족($r = .302, p < .05$), 월 가구 소득($r = .281, p < .05$)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반면, 주관적 건강은 나이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r = -.525, p < .05$). 가정 만족은 직업 만족($r = .230, p < .05$), 월 가구 소득($r = .184, p < .05$)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나이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다($r = -.168, p < .05$). 직업 만족은 나이($r = -.081, p < .05$)와 성별($r = -.237, p < .05$)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월 가구 소득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r = .278, p < .05$). 다음으로, 나이는 월 가구 소득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r = -.218, p < .05$).

〈표 3〉 상관관계 분석 결과

변수	구성 개념 간 상관관계				
	1	2	3	4	5
주관적 건강	1				
가정 만족	.342*	1			
직업 만족	.302*	.230*	1		
나이	-.525*	-.168*	-.081*	1	
성별	-.043	-.015	-.237*	-.016	1
월 가구 소득	.281*	.184*	.278*	-.218*	-.005

주: * $p < .05$

〈표 4〉는 가설검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F값과 Wald 카이제곱의 수치의 유의성에 따라서 제시된 세 개의 모형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p < .05$). 또한, BPLM 검증과 하우스만 검증의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왔으므로 세 개의 모형 중 최소자승법 모형이 가장 효과적인 모형으로 볼 수 있다. 가설검증 결과를 보면, 가정 만족은 주관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304, p < .05$). 다음으로, 직업 만족은 주관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052, p < .05$). 조절효과의 결과를 살펴보면, 나이는 가정 만족의 주관적 건강에 대한 영향의 조절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beta = -0.002, p < .1$). 추가로, 나이는 직업 만족의 주관적 건강에 대한 영향의 조절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beta = -5.09 \times 10^{-4}, p < .05$). 또한, 월 가구 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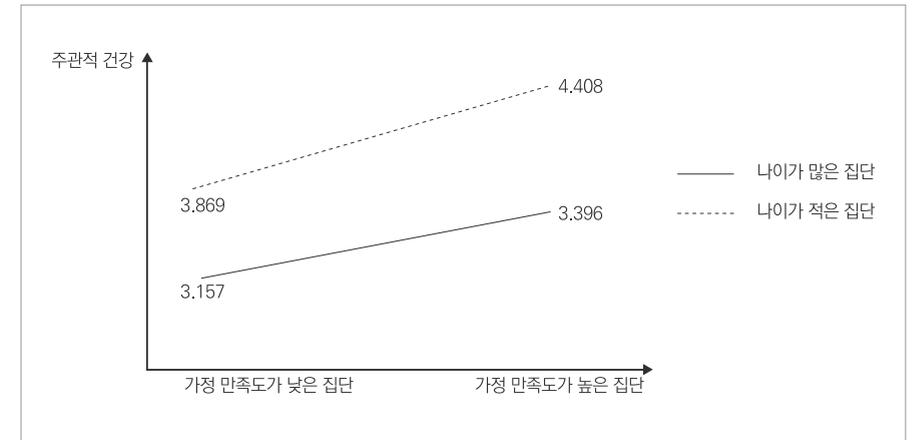
특은 주관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beta = 0.029, p < .05$). 이와 관련된 변수들의 유의도와 방향은 세 개의 모형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제시된 모든 가설이 지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 가설검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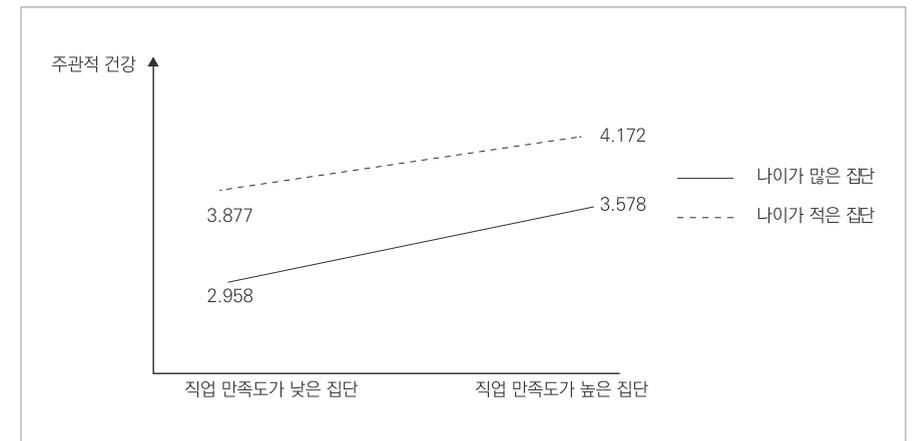
변수	종속변수 : 주관적 건강		
	Model 1 β (t-value)	Model 2 β (t-value)	Model 3 β (Wald)
(상수)	2.474(5.62)**	2.658(5.89)**	2.474(5.62)**
가정 만족	0.304(4.05)**	0.282(3.72)**	0.304(4.05)**
직업 만족	0.052(6.64)**	0.054(6.86)**	0.052(6.64)**
나이	-0.002(-0.29)	-0.003(-0.45)	-0.002(-0.29)
나이×가정 만족	-0.002(-1.96)*	-0.002(-1.74)*	-0.002(-1.96)*
나이×직업 만족	$-5.09 \times 10^{-4}(-3.45)**$	$-6.07 \times 10^{-4}(-3.87)**$	$-5.09 \times 10^{-4}(-3.45)**$
성별	-0.004(-0.10)	-0.012(-0.24)	-0.004(-0.10)
월 가구 소득	0.029(3.40)**	0.023(2.50)**	0.029(3.40)**
F-value	60.03**	57.61**	-
Wald x2	-	-	420.21**
R ²	.4095	.4077	.4095

주 : * $p < .1$, ** $p < .05$, 모형 1 : 최소자승법, 모형 2 : 고정효과, 모형 3 : 확률효과

〈그림 3〉은 나이의 가정 만족의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절효과를 추가 검증한 것에 관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나이가 많은 집단에서 가정 만족도가 낮은 집단의 평균은 3.157로 나타났고, 가정 만족도가 높은 집단의 평균은 3.396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나이가 적은 집단에서 가정 만족도가 높은 집단의 평균은 3.869로 나타난 반면, 가정 만족도가 높은 집단의 평균은 4.408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그림 4〉는 나이의 직업 만족의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절효과를 추가 검증한 것에 관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나이가 많은 집단에 있어서 직업 만족도가 낮은 집단의 평균은 2.958로 나타났고, 직업 만족도가 높은 집단의 평균은 3.578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나이가 적은 집단에서 직업 만족도가 낮은 집단의 평균은 3.877로 나타난 반면, 가정 직업 만족도가 높은 집단의 평균은 4.172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나이의 가정 만족의 주관적 건강에 대한 조절효과



〈그림 4〉 나이의 직업 만족의 주관적 건강에 대한 조절효과

5. 결론

본 연구는 수원 시민들의 주관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탐구를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가정 만족이 개인의 주관적 건강 증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유덕²⁴이 주장한 바와 같이 더욱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데에 화목한 가정 분위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수원의 사례를 통하여 확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연구의 결과는 직업 만족이 개인의 주관적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심지민·이원석·문준호²⁵의 연구 결과처럼 수원 시민의 삶에서도 직업 만족에 관한 부분이 더욱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나이의 조절효과에 관하여 살펴보면, 가정 만족의 주관적 건강에 대한 영향은 나이가 많은 집단의 경우 다소 약하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연구 결과는 직업 만족이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서 나이가 많은 집단의 경우가 나이가 적은 집단에 비하여 다소 약하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로, 본 연구는 월 가구 소득이 많을수록 더 나은 주관적 건강을 보이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관관계 분석으로부터, 본 연구는 여성들이 전반적으로 직업 만족에 대하여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나이가 들수록 월 가구 소득이 줄어드는 현상이 수원 시민들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즉, 연구 결과를 통하여 김성태·김진동²⁶의 주장처럼 개인의 행동은 나이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는 주장이 수원 시민의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이론적 의의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본 연구는 수원 시민들의 주관적 건강에 대한 선행요인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수원 지역이 특례시의 명칭도 받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

24 이유덕, 2011, 「가족친화경영이 조직성과와 가정생활 만족에 미치는 영향」, 『인적자원관리연구』 18(2).

25 심지민·이원석·문준호, 2020, 「대졸자 직업 이동 경로조사를 이용한 외식숙박업 종사자들의 주관적 건강도의 결정요인」, 『관광레저연구』 32(12), 213~225쪽.

26 김성태·김진동, 2020, 「전염병 발생에 따른 관광위험지각, 지각된 행동통제, 행동의도의 구조적 관계 연구: 연령의 조절효과」, 『관광연구저널』 34(12), 75~89쪽.

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삶의 형태와 관련된 탐구는 상대적으로 불충분하게 수행되었다는 점을 일종의 연구 격차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수원의 특성이 다양한 종류의 인구가 많은 지역이라는 측면을 보았을 때 이와 관련된 연구 결과를 제시하는 것은 의의 있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패널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수원 시민들의 행동 특성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나이의 조절 효과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를 갖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가정 만족, 직업 만족, 나이, 주관적 건강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수원 시민들에게는 가정 만족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데 정부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가정 만족을 위하여 가족 구성원들이 가정에서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는 여건을 고민하여 정부는 예산 운용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실제로 수원에서는 일 가정 양립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를 둘 다 지원하는 일과 육아 양립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부분을 강화한다면 개인의 주관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수원을 더욱 활기 있는 도시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시민들을 위한 복지정책 예산 활용을 직업 만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거나 직장 내에서 복지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지원하여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 역량강화사업에 대한 내용을 강화하여 수원 시민들이 보다 나은 직업을 구할 수 있는 준비 작업을 지원하는 부분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수원 시민들이 이를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에 대한 홍보에 자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추가로, 정부의 예산은 나이가 많은 수원 시민들을 소외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나이가 많은 집단이 주관적 건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게 증가한다는 점을 반영하여 나이가 많은 집단이 가정생활에서 소외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예산을 배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오히려, 나이가 많은 집단에서 직업 만족도와 관련하여 주관적 건강에 관한 증가분이 더 크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의 정책 방향에서 직업

마련 및 교육 관련 예산은 나이가 많은 집단에 초점을 맞추어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갖는다. 우선 본 연구는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독립변수를 두 개만을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향후 연구는 보다 다양한 변수를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2년의 기간에 한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갖는다. 향후 연구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더욱 다양한 연구기간을 고려하여 연구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수원 시민들의 행동의 특성을 더욱 심도 있게 파악한 결과를 제시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수원 시민의 복지에 대한 예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투고일 2024년 8월 22일 심사일 2024년 10월 24일 게재확정일 2024년 10월 31일

참고문헌

- 권현수, 2009, 「노인의 사회참여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8(5), 995~1008쪽.
- 김계하·김현숙·박경숙, 2005, 「중년 여성의 가족기능, 자아존중감 및 외로움이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성인간호학회지』 17(2), 200~207쪽.
- 김성태·김진동, 2020, 「전염병 발생에 따른 관광위험지각, 지각된 행동통제, 행동의도의 구조적 관계 연구: 연령의 조절효과」, 『관광연구저널』 34(12), 75~89쪽.
- 김주희·유정원·송인환, 2015, 「사회경제적 박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연령의 조절효과 분석」, 『보건사회연구』 35(3), 42~70쪽.
- 김진현, 2017, 「다차원적 사회적 배제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주관적 건강 및 우울상태에 미치는 영향: 정규직 근로자와의 비교분석」, 『보건사회연구』 37(3), 398~432쪽.
- 김향수·김송순, 2017, 「기혼 중년 남성의 직업스트레스, 직업 안정성, 우울, 가족유대감, 주관적 건강상태,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융합적 연구」, 『한국융합학회논문지』 8(3), 101~114쪽.
- 문설아·변광인, 2020, 「확장된 기술수용모델 (ETAM) 을 적용한 외식 O2O 서비스의 지속사용의도에 관한 연구: 연령의 조절효과」, 『호텔경영학연구』 29(5), 119~137쪽.
- 문영임, 2021, 「정신장애인의 장애수용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대인관계능력과 주관적 건강인식의 이중매개효과」, 『정서·행동장애연구』 37(4), 185~201쪽.
- 설수황·이광용, 2021, 「베이비붐세대 골프참여자의 건강관심도와 여가몰입 및 가정생활 만족의 구조적 관계」, 『한국사회체육학회지』 83, 205~215쪽.
- 수원시, 2024, 「통계로 보는 수원」, (Available at: <https://www.suwon.go.kr/stat/index.do>).
- 심다빈, 2024, 「중증 발달장애인 직업 만족 자기보고의 필요성 및 보호자 대리응답 시 직장관계자 소통의 조절효과」, 『장애와 고용』 34(1), 71~93쪽.
- 심지민·이원석·문준호, 2020, 「대졸자 직업 이동 경로조사를 이용한 외식숙박업 종사자들의 주관적 건강도의 결정요인」, 『관광레저연구』 32(12), 213~225쪽.
- 안관영, 2005, 「안전분위기와 안전성과의 관계 및 연령의 조절효과」, 『한국안전학회지』 20(4), 122~129쪽.
- 유재남, 2015, 「중고령자 주관적 건강상태와 삶의 만족도의 종단분석」, 『노인복지연구』 68, 331~356쪽.
- 이요행·방묘진·오세진, 2005, 「가족친화적 조직문화가 조직몰입, 직장만족, 이직의도, 그

리고 가정 만족에 미치는 영향: 직장-가정 갈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18(3), 639~657쪽.

이유덕, 2011, 「가족친화경영이 조직성과와 가정생활 만족에 미치는 영향」, 『인적자원관리연구』 18(2), 71~83쪽.

이지수, 2007, 「장애인의 주관적 삶의 질: 삶의 만족도 구조모형의 성별 비교」, 『한국사회복지학』 59(2), 89~114쪽.

정성지·마상진, 2021, 「귀농·귀촌인의 농촌사회 적응, 무엇이 결정하는가?-귀농·귀촌 동기와 직업 만족을 중심으로」,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53(1), 1~27쪽.

정연정, 2020,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자율성이 직업 만족에 미치는 영향 및 협업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8), 223~231쪽.

정효선·윤혜현, 2010, 「패밀리 레스토랑의 물리적인 환경이 고객의 감정, 만족도 및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 성별과 연령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Culinary Science & Hospitality Research』 16(4), 190~205쪽.

최유정·최미라·최셋별, 2018, 「맛별이 부부의 역할분담이 일가정 갈등과 가정생활 만족도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 19(1), 47~93쪽.

Wooldridge, J., 2009, "Introductory econometrics", a modern approach, South Western, Cengage Learning.

요약

이 연구는 수원 시민을 대상으로 주관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속성들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독립 변수는 직무 만족도와 가족 만족도이다. 또한, 본 연구는 연령이 주관적 건강에 대한 직무 만족도와 가족 만족도의 영향을 조절하는 효과를 살펴보는 것을 다른 목적으로 한다. 데이터 출처는 한국인의 행복도 조사이며, 연구 기간은 2020년에서 2021년까지이다. 연구 대상은 수원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로 정하였다. 본 연구의 총 관측 대상은 614명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패널 회귀 분석을 사용하였으며, 분석 방법으로는 일반최소제곱법, 고정 효과, 랜덤 효과를 포함한 방법을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직무 만족도와 가족 만족도가 주관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연령은 직무 만족도와 가족 만족도가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미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수원 시민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다.

주제어 : 주관적 건강, 직무만족도, 가족 만족도, 연령, 수원 시민

ABSTRACT

Effect of job satisfaction and family satisfaction on subjective health of Suwon citizens

: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Age

Moon Joonho

This research investigates influential attributes on subjective health focusing on Suwon citizens. Independent variables of this work are job satisfaction and family satisfaction. Moreover, this work is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 of age. The source of data is Koreans' happiness survey. The study period of this work is 2020-2021. The target of this work is citizens living in Suwon area. The number of observation is 614. This work used panel regression for data analysis, which include ordinary least square, fixed effect, and random effect. The results showed that job satisfaction and family satisfaction positively affect subjective health.

Also, age significantly moderates the effects of family satisfaction and job satisfaction on subjective health. The results of this work could be used for the policy making for citizens living in Suwon.

Key words : Subjective health, Job satisfaction, Family satisfaction, Age, and Suwon citizen

『수원학연구』 간행 및 편집 규칙

제정 2017.08.28. 규칙 제 54호

개정 2018.12.04. 규칙 제 70호

개정 2021.08.19. 규칙 제109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정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수원학연구 간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수원시정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수원학연구 편집·발간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수원시정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

제3조(편집위원회) 수원학연구 발행의 기획, 논문 투고,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세부 사항을 주관하는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및 임기)

- ① 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간사로 구성하며, 그 인원은 간사를 제외한 20명 이내로 한다.
- ② 편집위원은 원내 연구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부서장의 제청으로 원장이 임명한다.

- ③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간사는 수원학연구센터의 학술지 담당자로 하며, 학술지의 편집과 간행에 따른 실무를 담당한다.

제5조(임무) 위원회는 학술지 관련 업무를 관장하며 다음 각 호를 수행한다.

1. 학술지 논문 심사 및 편집, 발간에 관한 사항 결정
2. 논문 심사를 위한 해당 전공분야 심사위원 추천 및 승인
3. 투고 논문의 게재 여부 결정
4. 그 밖에 학술지 발행과 관련된 제반 업무의 결정

제6조(편집위원장)

- ①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② 편집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논문 심사위원 위촉
 2. 편집위원회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소집
 3. 논문 심사에 관련된 제반사항의 조정
 4. 학술지 편집 및 간행에 대한 제반사항 총괄

제7조(운영)

- ① 위원회의 회의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② 정기회의는 매 학술지 발간일 4개월 이내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임무와 관련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
 2. 편집위원 5인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
 3. 그 밖에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③ 정기회는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서면의결도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④ 임시회는 편집위원 5인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이 의결사항은 다음 정기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 ⑤ 편집위원장의 부재 시에는 출석한 편집위원 중 1인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학술지 발간

제8조(발행횟수 및 시기) 학술지는 연 2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행일은 매년 6월 30일, 12월 30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발행 횟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행일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9조(논문 공모)

- ① 학술지에 수록하는 논문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특집을 제작하거나 또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0조(원고료 지급) 학술지에 게재하는 원고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발행부수) 학술지의 발행부수와 인쇄의 질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4장 논문의 심사 및 게재

제12조(심사대상) 학술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모든 논문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13조(심사위원 선정)

- ① 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전공자(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중에서 투고 논문과의 전공 일치도 및 연구업적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을 선정·위촉한다.

- ② 편집위원장은 위원회를 거쳐 투고논문에 대해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 ③ 편집위원이 투고한 논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편집위원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연구원 직원이 투고할 경우에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구원 직원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 ④ 편집위원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할 경우, 연간 전체 논문 심사위원의 30% 미만을 유지하도록 한다.
- ⑤ 논문 심사 위원에게 소정의 심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비밀유지)

- ①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투고자와 심사위원은 비공개로 한다.
- ② 심사위원은 심사과정 중에 얻은 정보를 공개하거나 남용하지 않아야 하며, 투고자와 심사위원은 위원회를 통해서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15조(심사 기준)

- ① 심사위원은 객관적 기준과 자율적 판단에 의거해 심사를 하되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 1. 논문 주제의 적절성
 - 2. 연구의 창의성과 독창성
 - 3. 연구방법의 적절성과 연구 자료의 신뢰성
 - 4. 논문 전개의 논리성과 일관성
 - 5. 연구결과와 학술적·실천적 기여도
 - 6. 표·그림·사진·지도·참고문헌(각주)의 적절성
 - 7. 선행연구 분석의 적절성
 - 8. 국문·영문 초록의 질적 수준
- ② 심사위원은 학문적 양심에 따라 논문을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논문의 위조, 변조, 표절, 이중게재 등 연구부정행위의 혐의 발견 시 즉시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심사 판정)

- ①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논문심사의견서와 함께 심사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3주까지 연장할 수 있다.
- ② 심사결과는 게재(A), 수정게재(B), 수정 후 재심(C), 게재불가(D)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
- ③ 재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후 10일 이내에 논문심사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2주까지 연장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실명을 삭제한 후 ‘논문심사 결과 및 수정 요구서’를 투고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 ⑤ 투고자는 수정보완을 요구받으면, 10일 이내에 수정 보완한 논문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기한을 연장하되 최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초과할 경우 ‘게재 불가’로 판정할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제출된 심사결과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⑦ 재심사 결과는 A, B, D의 3등급 중 하나로 판정한다.
- ⑧ 최초 심사결과가 ‘수정 후 재심’으로 나올 경우,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심사위원이 최초 심사와 동일한 심사기준으로 1회에 한해 재심사를 수행한다.
- ⑨ 논문의 최종게재 여부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와 저자의 논문수정 여부에 대한 위원회의 검토결과에 의거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⑩ 재심사의 심사위원이 1인일 경우 그 심사결과에 따라 논문을 처리하고, 2인 또는 3인일 경우 게재불가가 둘 이상일 경우에만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제17조(이의신청)

- ① 투고자는 원칙적으로 심사위원의 수정요구 사항에 따라야 한다. ‘게재’판정이 난 논문에 대하여도 수정보완 사항이 있는 경우 동일하게 적용된다.
- ② 투고자가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투고자의 이의신청에 대해 내용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발간일 전까지 투고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투고자는 위원회의 통보내용에 대해 더 이상의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

부 칙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논문심사 판정기준표〉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AAA AAB AAC	ABB ABC BBB BBC	AAD ABD ACC ACD BBD BCC BCD CCC CCD	ADD BDD CDD DDD

『수원학연구』 발간 윤리 규칙

제정 2017.08.28. 규칙 제 55호

개정 2018.12.04. 규칙 제 71호

개정 2021.08.19. 규칙 제11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학연구의 간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 및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학술지 발간을 위해 투고된 논문 및 그 밖에 관련 자료, 학술지 편집 및 심사와 관련한 일체의 행위에 적용되며, 이 윤리규칙을 준수해야 할 주체는 편집위원, 논문 심사위원, 논문 저자이다.

제2장 편집위원회의 윤리

제3조(편집위원의 책임) 편집위원은 투고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4조(공정성) 편집위원은 투고 논문의 저자 성별·나이·소속기관 등에 대하여 어떠한 선입견이나 사적 친소성을 가져서는 안 되며, 논문의 질적 수준과 심사평가 기준에 근거하여 공정한 시각을 유지해야 한다.

제5조(심사위원 선정의 객관성)

- ①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 ② 심사위원 선정 시에는 저자와의 친분, 적대적인 관계 등을 피함으로써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비밀유지) 편집위원은 투고 논문의 내용과 저자 및 심사위원에 관한 사항을 비밀 유지해야 한다.

제3장 심사위원의 윤리

제7조(성실성과 적실성)

- ①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의뢰하는 논문을 정해진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 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 ② 본인이 논문심사에 부적임자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편집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8조(객관성) 심사위원은 학문적 양심에 따라 논문을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평가 해야 한다. 충분한 근거 없이 논문을 저평가 하거나, 본인의 관점과 불일치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제9조(타당성)

- ① 심사위원은 전문인으로서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 ② 논문심사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심사자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그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 ③ 논문심사 중 논문의 위조, 변조, 표절, 이중게재 등 연구부정행위의 혐의 발견 시 즉시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10조(비밀유지)

- ① 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 ② 논문평가를 위하여 특별한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타인에게 공개 하거나 그 내용에 대해 논의해서는 안 된다.
- ③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 및 편집위원회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4장 저자의 윤리

제11조(저자의 의무)

- ① 논문의 저자는 학문추구에 정직성, 정확성, 성실성을 가질 의무가 있다.
- ② 투고 및 게재 논문에는 표절·위조·변조·이중게재·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의 연구 부정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제12조(타인의 표절) 타인의 표절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절”이란 고의성의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아이디어나 연구결과 등의 고유한 내용을 원저작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출처 명시 없이 임 의로 변형, 삭제, 왜곡하는 행위
2. 표절의 대상은 타인의 저작물에 담긴 고유한 생각(아이디어), 독특한 표현(단어, 어구, 절, 문장, 그래프, 도표, 사진 등), 연구 착상(가설)이나 방법(분석 체계 또는 논리), 이론 및 연구결과, 데이터, 조사자료 등

제13조(자기 표절)

- ①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도 적절한 출처표기 없이 그 일부 혹은 전부를 새로운 사실처럼 재사용하는 것도 표절에 해당한다.
- ② 출처를 표기하더라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도록 인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표절로 간주한다.

제14조(이중 게재)

- ① 저자는 국내외 타 학술지에 출판 혹은 게재한 자신의 연구물, 게재 예정이거나 투고 심사가 진행 중인 원고를 중복으로 투고해서는 안 된다.
- ② 이미 발표된 연구결과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 편집위원장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중 게재나 중복 출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15조(위조 및 변조) 위조와 변조는 연구자로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이며, 이에 대한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위조”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
- 2. “변조”란 연구자료, 장비, 과정 및 데이터, 연구결과 등을 인위로 조작하거나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제16조(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 ① 논문의 저자는 직접 수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하여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그 업적으로 인정받으며, 따라서 저자의 표기는 연구 기여도에 따라 반영해야 한다.
- ② 연구나 저술에 기여도가 있다면 반드시 공동저자로 기록해야 한다.

제17조(재 투고) 본 학술지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이나 이와 유사한 논문은 재투고할 수 없다. 단,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기존 논문과의 연구방법, 자료해석, 논리전개방식 등 상당부분 차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인용 및 참고 표시)

- ① 공개된 학술자료를 인용할 경우 이를 정확히 기술해야 하며, 반드시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 ② 타인 또는 자신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한 경우에는 반드시 본문 또는 각주, 그 밖에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인용 및 참고사실을 밝혀야 한다.

제5장 연구윤리위원회

제19조(구성과 의결)

- ① 학술지 발간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편집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학술지 간행 및 편집 규칙」 제6조에 따른 편집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편집위원장이 임명한다.
- ②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의 판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연구 부정행위 혐의가 인지·접수되었을 경우, 위원회는 학술적 전문성을 가진 조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④ 조사위원은 혐의가 있는 논문의 내용에 정통하다고 인정되는 연구자 5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조사위원의 신원을 비밀로 할 수 있다.

제20조(기능 및 활동)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연구윤리 관련 제도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 연구 부정행위의 제보 접수 및 조사, 판정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3. 제소된 사람의 보호 및 제소된 사람의 명예회복 조치와 관련된 사항
-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21조(연구 부정행위의 처리)

- ① 위원회는 연구 부정행위의 혐의가 인지·접수되었을 경우,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에 즉시 착수하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하며 그 결과를 제보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② 조사결과 연구 부정행위가 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 해당 논문은 게재불가로 처리하고 부정행위 내용을 투고자, 투고자 소속기관장, 한국연구재단에 통보한다.
- ③ 연구 부정행위를 한 투고자는 해당 논문으로 인해 발생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향후 5년간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제22조(권리보호)

- ① 위원회나 조사위원은 제소한 사람의 신원을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나 조사위원은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제소된 사람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
- ③ 위원회나 조사위원은 제소된 사람이 무혐의로 판명되었을 경우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 그 방법은 위원회에서 논의·결정한다.

제23조(이의제기 및 소명기회와 비밀보장)

- ① 위원회는 제소한 사람과 제소된 사람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
- ② 연구윤리위원은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제소된 사람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24조(조사결과서의 작성 및 보관)

- ①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 후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을 토대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여기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소내용
 - 2. 조사 대상 연구과제 및 부정행위 관련 의혹의 내용
 - 3. 심사 절차 및 연구 부정행위 의혹의 사실 여부
 - 4. 심사 결정의 근거와 관련 증거 및 증언
 - 5. 조사결과에 대해 제소한 사람과 제소된 사람의 이의제기 및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 ② 조사 및 심의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 ③ 결과보고서는 판정 후 공개할 수 있으나 신원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학연구』 논문 투고 및 작성 요강

▣ 논문 투고와 작성 일반사항

1. 원고 접수

- 1) 접수일자는 원고가 학술지 편집위원회에 도착한 날로 한다.
- 2) 논문 투고자는 이메일(E-mail)로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 3) 투고신청서에 논문제목, 주저자의 성명, 소속 및 직위/직급, 주민등록 주소, 연락처, 원고의 주요 내용 등을 성실히 기재해야 한다. 또한, 교신저자(해당 원고 관련 문의에 응할 수 있는 공동저자)가 별도로 있다면, 교신저자의 인적사항도 명확히 기재한다.
- 4) ‘학술지 간행 및 편집 규칙’ 및 ‘수원학연구 논문투고 및 작성 요령’에 의거해 작성하지 않은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투고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2. 원고 분량

- 1) 논문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기준 150매 내외로 한다.
- 2) 원고분량의 지나친 초과나 미달에 대해 편집위원회가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3. 원고 작성

- 1) 원고 작성은 국문 또는 영문을 원칙으로 한다.
- 2) 원고는 워드프로세서(한글)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작성한다. 용지 여백은 위쪽/아래쪽 20mm, 왼쪽/오른쪽 18mm, 머리말/꼬리말 12mm로 한다.
- 3) 논문의 첫 페이지에는 국문요약과 국문 주제어를 첨부하고, 논문 마지막 페이지에는 영문초록(ABSTRACT)과 영문 키워드(Key Words)를 필히 첨부한다.

- 4) 그림 및 표, 사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정 없이 바로 인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림 및 표, 사진에 있는 글자와 숫자 등이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 논문 작성 세부사항

□ 논문의 구성

1. 국문논문

- 1) 국문 제목, 국문 저자명, 국문요약, 국문 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영문 제목, 영문 저자명, 영문초록(ABSTRACT), 영문 키워드(Key Words), 부록(필요한 경우) 등의 순서로 구성한다.
- 2) 저자의 소속, 직급/직위는 논문 첫 페이지의 하단에 각주로 작성하되, 국문을 먼저 작성한 후 괄호 안에 영문을 작성한다.

2. 영문논문

- 1) 영문 제목, 영문 저자명, 영문초록(ABSTRACT), 영문 키워드(Key Words), 본문, 참고문헌(References), 국문 제목, 국문 저자명, 국문요약, 국문 주제어, 부록(필요한 경우) 등의 순으로 구성한다.
- 2) 저자의 소속, 직급/직위는 논문 첫 페이지의 하단에 각주로 작성하되, 영문을 먼저 작성한 후 괄호 안에 국문을 작성한다.

□ 논문 제목 표기

1. 국문논문

- 1) 국문 제목을 먼저 작성하고, 국문 저자명 아래에 영문 제목을 작성한다.

- 2) 한자 또는 영어로 표기하지 않으면 의미 전달이 곤란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영어를 병기한다.

2. 영어논문

- 1) 영문 제목을 먼저 작성하고, 영문 저자명 아래에 국문제목을 기재한다.
- 2) 영문제목(부제목 포함)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시작한다.
- 3) 문장 중의 단어는 전치사와 접속사, 관사를 제외하고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시작한다(예 : Review of Administrative Reform in Suwon)

3. 부제목

- 1) 부제목이 있는 경우, 국·영문 논문 공히 주제목 아래에 부제목을 기재한다.

□ 저자 및 인적사항 표기

1. 저자 표기

- 1) 국·영문 논문 공히 국문 제목 아래에 국문 저자명을 기재하고, 영문 제목 아래에 영문 저자명을 기재한다.
- 2) 영문 저자명은 성, 이름 순으로 기재한다.
- 3) 저자가 복수일 경우,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주저자(제1저자)부터 순서대로 표기한다.
- 4) 논문을 제출한 후에는 저자를 추가하거나 저자의 지위(주저자, 공저자, 교신저자 등)를 변경할 수 없다.

2. 저자의 소속 및 직급, 교신저자 연락처 표기

- 1) 논문 첫 페이지 하단에 각주로 표기한다.
- 2) 저자가 1인일 경우, * 다음에 저자의 소속 및 직급/직위를 표기하고, 저자가 복수일 경우에는 * / ** / *** / ...을 표기하고, 주저자부터 순서대로 표기한다.
- 3) 저자가 1인일 경우, 소속 뒤에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표기한다. 저자가 복수일

경우, 교신저자의 소속 뒤에 ‘교신저자’라고 표기한 뒤 괄호 안에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표기한다.

- 4) 주저자와 교신저자가 같을 경우에도 소속 뒤에 ‘교신저자’라고 표기한 뒤, 괄호 안에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표기한다.

※ 교신저자는 여러 공동저자를 대표하여 논문의 투고 및 심사과정에서 연락과 수정을 책임지며, 논문이 출간되었을 때에는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는 저자를 말한다.

- 5) 저자의 소속 및 직급/직위는 국문으로 먼저 표기한 후, 괄호 안에 영문으로 표기한다.
- 6) 국문 표기방법은 소속기관, 부서(또는 학과), 직급(또는 직위)의 순으로 한다. 그리고 영문 표기방법은 직급(또는 직위), 부서(또는 학과), 소속기관의 순으로 한다.

3. 저자 소속 표기 예시

- 1) 저자가 1인인 경우

*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연구위원(Research Fellow, Center for Suwonology, Swuon Research Institute), E-mail : suwonology@suwon.re.kr, Tel : 031-234-5678

- 2) 저자가 복수이며, 주저자와 교신저자가 같을 경우

*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연구위원(Research Fellow, Center for Suwonology, Swuon Research Institute), 교신저자(E-mail : suwonology@suwon.re.kr, Tel : 031-234-5678)

** 수원시정연구원 도시환경연구부 연구위원(Research Fellow, Urban& Environmental Research Group, Swuon Research Institute)

- 3) 저자가 복수이며, 주저자와 교신저자가 다를 경우

*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연구위원(Research Fellow, Center for Suwonology, Swuon Research Institute)

** 수원시정연구원 도시환경연구부 연구위원(Research Fellow, Urban& Environmental Research Group, Swuon Research Institute), 교신저자(E-mail : Urban@suwon.re.kr, Tel : 031-456-7890)

□ 요약 작성 및 주제어 표기

1. 국문요약 및 영문초록 작성

- 1) 국문요약 및 영문초록(ABSTRACT)은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결과, 연구의 시사점, 향후 연구방향 등을 중심으로 작성한다.
- 2) 국문요약은 ‘요약’이라고 기재하고, 700자 내외의 국문요약을 작성한다.
- 3) 영문초록의 경우, ‘ABSTRACT’라고 기재하고, 200단어 내외의 영문초록을 작성한다.

2. 주제어 표기

- 1) 국문요약과 영문초록 하단에 각각 10개 이내의 국문 주제어와 영문 키워드(Key Words)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 2) 국문 주제어는 ‘주제어’라고 기재하고 콜론(:)을 표기한 후 작성한다.
- 3) 영문 키워드는 ‘Key Words’라고 기재하고 콜론(:)을 표기한 후 작성한다.

□ 본문 작성

1. 본문 작성

- 1) 목차 및 본문의 장(章), 절(節), 항(項) 등의 번호 전개는 ‘장 → 1. 2. 3. / 절 → 1) 2) 3) / 항 → (1) (2) (3)’으로 하고, 목차에는 장과 절만 표시한다.
- 2) 글꼴은 신명조, 글자 크기는 10포인트, 줄간격은 160%로 한다.
- 3) 한자나 외래어가 필요한 경우, ‘수원학(水原學)’ ‘수원학(Suwonology)’과 같이 병기한다. 고유명사의 경우는 처음에만 병기하고, 이후 큰 문제가 없을 경우 한글로 쓴다.
- 4)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고, 모든 단위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2. 본문의 인용문

- 1) 글꼴은 신명조, 글자 크기는 9포인트, 줄간격은 160%로 한다.
- 2) 왼쪽 여백만 2줄림 둔다.
- 3) 자료(사료) 인용은 한글 번역을 원칙으로 한다. 금석문 등 번역이 불가능한 경우는 한자 등 원문을 노출시킬 수 있다.
- 4) 인용문의 출전 표시는 각주로 처리한다.

□ 도표 및 사진

1. 표 번호

- 1) <표 1>, <표 2>의 순으로 표 상단 좌측에 제목과 함께 명기한다.

2. 그림 및 사진 번호

- 1) <그림 1>, <그림 2>의 순으로 그림 하단 좌측에 제목과 함께 명기한다.

3. 본문에 들어가는 도표 및 사진은 수정 없이 바로 인쇄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제출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컬러 인쇄를 하지 않으므로 이에 유의하여 흑백으로 선명하게 작성해야 한다.

4. 인용한 도표 및 사진의 경우 출처를 밝히도록 한다. 출처 표기방법은 인용문헌이나 참고문헌 작성방법에 준하며, 참고문헌에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 각주 및 참고문헌 표기

1. 각주

- 1) 글꼴은 신명조, 글자 크기는 9포인트, 줄간격은 130%로 한다.
- 2) 한자(漢字)를 노출시킬 수 있다.
- 3) 표기 순서와 원칙(√는 띄어쓰기를 표시함).
 - ① 홍길동, √1998, √『의적의 개념』, √『의적연구』1, √활빈학회, √100~101쪽.
 - ② 홍길동, √1960, √『의적연구』, √『의적학보』1 √; √1998 √『의적의 사회사』, √활빈출판사 √재수록, √100쪽.
 - ③ 홍길동, √1997, √앞의 논문(앞의 책), √100쪽. 홍길동, √1988(a), √앞의 논문, √100쪽.
 - ④ 괄호가 중첩될 때는 ...와 같이 처리
 - ⑤ A. √R, √Zolberg, √1972, √“Moment of Madness”, √Politics and Society √Vol. √2, √No. √2, √pp. √183~207.
 - ⑥ 조한욱 √유희김, √1996, √『고양이 대학살』, √문학과 지성사(Robert √Darnton, √1984, √The Great Cat Massacre : And Other Episodes in French Cultural History, √출판사이름), 100쪽
 - ⑦ 『삼국사기』, 『고려사』, 『실록』, 『일성록』 등 흔히 인용되는 사료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를 지킨다.
 - 『고려사』 √권76, √百官1 √贊成事. √“(忠烈王) 二十四年 忠宣以宰執員冗 論議異同事多稽滯 仍罷之.”
 - 『세종실록』 √권9, √세종 √6년 √5월 √1일(경자). √“學而時習之 不亦悅乎”
 - ⑧ 소장처를 표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 李昆洙, √『壽齋遺稿』, 『書啓』(소장처, √도서번호).

2. 참고문헌

- 1) 국문 참고문헌을 가나다순으로 먼저 열거한 후 동양문헌을 기재한다. 그 다음 서양문헌을 알파벳순으로 나열한 후, 인터넷 사이트를 기재한다.
- 2) 논문 및 단행본의 서명은 『 』(국문 및 동양문헌) 또는 이탤릭체(서양문헌)로 표시한다.

- 3) 서양문헌의 저자는 성, 이름순으로 표기한다.
- 4) 저자가 복수일 경우, 모든 저자를 다 밝힌다.
- 5) 기타 사항은 일반적인 원칙을 준용한다.

□ 사사 등 표기

1. 사사 표기

- 1) 연구비의 출처와 사사(謝辭, acknowledgement)는 논문 첫 페이지 각주에 필자의 소속과 직위에 앞서 기재한다.

2. 게재일자 등

- 1) 논문의 투고일, 심사일 및 게재확정일은 논문의 맺음말 말미 하단에 편집위원회에서 기재한다.

편집위원장

한동민 수원화성박물관 관장

편집위원

김종혁 강원대학교 연구교수
민소영 경기대학교 교수
송화성 한림대학교 교수
신기동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유석 경희대학교 연구교수
이동근 서울대학교 교수
정해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책임연구원
정현목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최석환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한상우 아주대학교 교수
Rainer Dormels 비엔나대학 교수

편집간사

홍현영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

수원학연구 Suwon Studies · 21

발행인 | 김성진

편집인 | 한동민

발행일 | 2024년 12월 30일

발행처 |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16429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서둔동)

www.suwon.re.kr

031-220-8058

인쇄 | ㈜아이콘커뮤니케이션(031-245-5500)

ISSN | 2508-6677

